

# 이달의 민변

97년 7월호(통권 제10호)

---

특집 전자주민카드Ⅱ

권두언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시론 버려진 사람들·탈북자 문제를 생각하며

정보등록

# 이달의 민변

97년 7월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차례

변호사 윤리

- 권두언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박연철 • 4
- 시론 버려진 사람들 · 탈북자 문제를 생각하며 -이찬진 • 7

특집

- 전자주민카드Ⅱ 정보지배사회에서 전자주민카드의 의미와 그 위험성 -김기중 • 13
- 호주의 ID카드 반대운동 -임영화 • 27
- 정부는 근거법을 없이 시행하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범국민적 논의를 시작하라 -전자주민카드 공대위 • 32

특별기고

정부의 중앙은행 개혁안 무엇이 문제인가-유중원 • 35

위원회 소개

동북아특별위원회 소개 • 39

지방회원 활동 소개

민변 대전 · 충청지부를 결성하며 -김연수 • 41

변론경험담

변호사와 공공성 -강대성 • 43

인권영화 소개

초록물고기 -이유정 • 46

피고인석에서 본 재판

한국에 과연 '사상 · 양심의 자유' 는 있는가-김영오 • 50

자료

- 5.18 학술심포지움 발제문 광주를 통한 한국 민주주의의의의 유희통로와 미국의 위치 -이삼성 • 57
- 폭력과 언어의 정치: 5.18 담론의 정치사회학 -최정운 • 101
- 위원회 발제문 · 기타 법집행관리의 직무집행강령 -조광희 • 137
- 법집행에서의 국제 인권 기준: 경찰 인권수첩 -이화여대 '인권연대 소중환 사람들' • 146
- 한국 경마 환급금 제도의 문제점 -김도형 • 157
- 남녀 고용평등법의 개정방향과 내용 -이백수 • 162

사무국 보고

• 165

성명서

- 이번 불행한 사태를 계기로 한총련의 혁신과 학생운동의 거듭남을 촉구한다 • 170
- 검찰의 김현철씨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 171
- 정보통신부의 컴퓨터 통신 아이디(ID) 사용 중지 및 게시물 삭제 조치에 대한 성명서 • 173
- 서울지방법원 형사담당 판사들의 한총련 강의 수강에 관한 논평 • 175

#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박연철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의 문제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소한의 기근은 면할 수 있도록 곡물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북한에 대한 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매우 강력하다.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훗날 오늘을 되돌아보아 가장 현명한 방책이었다고 추인받을 수 있는 조치는 어떠한 것일까. 북한에 대한 지성적인 판단과 실천방안은 무엇일까 생각하여 보게 된다.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정보는 서로 다르다. 북한이 비축하고 있는 식량의 절대치가 얼마 되지 않아 금년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아사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급박한 의견이 있는가 하면, 외부로 알리고 있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고 단지 각 지역별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변방지역이 흑심한 기근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는 전문가도 있다. 알려진 바로는 북한에 부족한 식량은 150만톤 내지 200만톤이며, 그 가액은 약 2,7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이 액수는 3억불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다.

세계식량기구의 판단에 따라 먼 나라에서 예방적으로 지원금을 내는 경우 10만 내지 20만불 정도이니 3억불에는 터무니없이 못미친다. 식량대국인 미국의 지원도 미미하기 그지없다. 우리 민변이 만든 1,000여만원, 대한변협에서 만든 1억원, 그리고 한겨레신문사에서 주도하는 전국적인 기부금이 2~30억원등이니 민간인들이 발벗고 성금을 모아도 이 돈을 만들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중국에서 50만톤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언약하였다고 하니 그 분량은 엄청나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지원한 15만톤의 쌀도 결코 적지 아니하였다. 남한도 식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작금의 무역역조는 매우 심화되어 있으니 북한에 대한 지원은 곧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희생이 뒤따르는 것이다.

북한에 대하여 식량을 대량 지원할 수 있는 국가는 인접한 남한과 중국, 일본이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여야 할 주체는 바로 남한이다. 북한이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는 것은 크게 보아 우리가 지원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북한이 중국이나 일본에 매이는 것은 곧 우리가 매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북한이 어려울 때에 외국의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고 남한이 적절한 방법을 찾아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북한에 쌀을 지원하면 군량미로 전용하여 남침하게 될 터이니 쌀을 대주고 침략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북한에 대하여 극도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숨기지 않는 우익적 집단도 있으며, 이 기회에 북한이 자멸하도록 냉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는 잔인하기까지 한 주장도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 북한이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을 선택한다면 아마도 이들은 북한에 대하여 쌀을 지원하자고 한 사람들에게 북한을 잘 모르는 감상적인 행동이었으며, 이적행위를 하였다고 비난할 것이다.

예측 가능한 모든 불행에 대하여 대비하여야 하겠지만, 북한에 대한 지원반대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기아선상에 처하여 있는 동포에 대하여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못본 체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하지 못하고, 남북화해 교류협력에 관한 대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북한이 원조받은 식량을 민간인에게 배급하지 아니하고 군량미로 전용하려 한다면 그것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보다는 북한이 식량원조의 참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견제하고 확인하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북한이 원조식량을 군량미로 사용하여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와 같은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국방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나, 이것은 식량에 한하여 논하여질 일은 아니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논하여질 일이다. 남북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는 하되, 북한에 대하여 식량은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남한으로부터 식량을 지원받는 북한의 자세가 때때로 거북하여 남한사람들의 심기를 언짢게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좀더 넓은 도량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굳이 지원국의 표시를 원하지 않더라도 그 식량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있게 하는 다른 방책이 있을 것이며, 북한이 겉으로 자존심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속으로 식량원조에 대한 고마움은 숨길 수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은 도움은 다른 부분의 화해로 전환되어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배푸는 측인 남한 사람들의 불쾌감에 매이거나 주춤거리지 말고 더이상 식량원조의 시의성과 효율성을 잃지 않도록 기본방침을 표명하고 민간인들과 함께, 민간인들보다 앞서서 추진하여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민변은 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쌀지원의 대열에 먼저 합류하여 당국과 상당한 긴장관계에 놓인 적이 있었으나, 한 민족을 사랑한다는 대의에 어긋나지 않았고, 민변을 뒤이어 민간단체들이 북한을 지원할 수 있을 그 때를 위하여 모금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어 더 이상 긴장관계에 빠져 있지는 않다. 민변과 같이 엄격한 준법단체에서 당국의 방침을 벗어나는

선도적 실천을 과감히 수행한 데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철학과 용기가 반드시 내재하여야, 설혹 정부의 방침에 일시적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새로운 법규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북한에 대하여 쌀을 지원하는 문제가 눈앞의 과제가 되어 있지만 북한에 대하여 고찰하고 대비하여야 할 일이 쌀문제뿐이 아니다. 북한에 대하여는 늘 전반적인 검토와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남북의 통일과 통일 후 이념과 가치관의 재편성 및 새로운 외교관계의 정립 등이 문제될 것이다. 얼마 전 통일문제 전문관료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하여 중앙일보에 게재된 것을 보았는데, 모두 중앙부서의 국과장급들이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특정지역 출신들이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키우는 것은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부의 통일정책에 관하여서는 위 국과장들이 좌우하게 될 것이며, 그 지역 이외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오래 뿌리박은 그 지역 출신 관료들을 기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런데 이들 전문관료만에 의하여 정보를 독점하는 가운데 수립되는 통일정책은 남북을 함께 전진하게 하지 못하고 대립을 심화시키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통일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분단의 단계에서 계속하여 수행하여 나가야 할 실천적 방책은 무엇인가, 현재의 북한정부가 바뀌어 전향적인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논의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그룹에 특정지역에 편중된 직업관료 이외에 우리 민변의 회원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남북한의 실상에 관한 구체적 자료와 정보이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뚜렷한 역사관과 가치관이 있으므로 정책수립의 새로운 면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남으로 망명한 황장엽씨는 남북의 전쟁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간절한 뜻을 표명하였으나, 현재 대선 예비전의 정쟁에 묻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남북간의 전쟁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긴장관계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의명분과 실천력을 아울러 가지고 움직이는 지성적 그룹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버려진 사람들 · 탈북자 문제를 생각하며

이 찬진

황장엽씨가 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이 땅을 밟은 지 2개월 가량 지난 엿그제 그는 귀빈의 대우를 받으면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에 대한 예우는 그가 북한사회에서 누려왔던 지위 이상의 것이 되리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국내법상으로 보면 '귀순 북한동포' 또는 개정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 이고, 그의 법적 지위는 어느 탈북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황장엽씨와 같은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자들은 북한사회에서 누려왔던 지위를 그대로 누리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 사회에서 굶주려서 중국, 러시아 등지로 탈북한 대부분의 북한 하층 주민들은 정부 당국의 냉혹한 입국 거부로 말미암아 생사의 기로에 처하여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책임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탈북자들은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다.

우리는 지난날 군사정권 아래서 북한 주민들에 대하여 체제 우월성을 홍보하고, 장미빛 미래를 보장하는 취지로 귀순 중용 정책을 전개하여왔음을 기억한다. 탈북자들의 대부분은 남한 사회에 오게 된 동기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선전을 믿고 '귀순' 만 하면 모든 것이 보장될 줄 알고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강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그와 같은 정부의 선전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북한 사회가 주민들의 식생활조차 해결 못하는 극한적인 위기 상황으로까지 치닫해 되면서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을 이탈하고 있다. 현재 중국등 주변국에 불법 체류 상태로 우리나라로 귀순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다수의 탈북자들은 중국등 제3국과 북한 및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국제 문제화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체제의 경제적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량의 난민 이탈 사태를 우려한 중국 정부 당국이 적극적인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 강제 송환 정책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장차 중국으로 유입될 탈북자는 물론 현재 중국 내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까지도 법적으로 극히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인도적 측면에서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해나가야 할 절박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 정부의 탈북자 정책은 지나치게 선별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한국 공관측에 귀순 요청을 하는 데 대하여 이를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그들에 대한 보호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냉전체제 하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임을 자처하고, 헌법상으로도 그 영토를 북한의 통치권 하에 있는 38선 이북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하여왔다. 한편, 국제법상으로는 부계 혈통주의를 취함으로써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은 그가 귀화한 외국인이 아닌 한 당연히 출생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언제든지 자유로이 남한 지역을 왕래할 수 있고, 남한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헌법상 당연히 향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북한주민이 직접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든지 제3국으로 이탈하여 그곳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든지 동일하다.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아래서 제3국에서 체류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의사를 피력할 때,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그들의 입국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그들의 입국을 보장하고 실현하여야 할 헌법상의 책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아무리 탈북자들이 보호를 요청하더라도 중국의 대한민국 영사관 등 제외공관은 그들을 애써 외면한다. 그래서, 수많은 탈북자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에서 낯선 전락한 채 언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불안한 나날들을 지내고 있다. 현행 헌법 아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선별하여 그들에 대한 보호 여부 결정을 할 아무런 권한도 없으며, 오히려 이와 같은 선별적인 조치는 심각한 헌법 위반행위로서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심상치 않은 일련의 탈북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귀순 보상 정책'의 포기 및 선별적인 보호 및 제3국 체류 북한 이탈자의 사실상의 보호 배제를 내용으로 하여 1996. 12. 17.자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우리 정부가 위 법률의 입법을 강행한 배경에는 장차의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제3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회피하고자 하는 등의 다각도의 고려가 있었을 것이며, 특히 북한의 급속한 붕괴가 발생할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수긍되는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에서 대한민국으로의 귀순의 날을 기다리며 상당한 기간 동안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사실상 국내 입국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당할 심

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주민은 북한 지역에 있건, 제3국에 있건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세상 어디에도 제3국에 체류하여 국내 입국을 요청하는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대체 이와 같은 위헌적인 발상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유기행위이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반인도적인 조치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정도를 걸으면서 탈북자 문제에 관하여 원론적인 해결에 충실하여야 한다. 탈북자들은 더이상 정부의 선전 홍보물일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림을 피하여 남한으로 가고자 중국 등지로 탈출한 수천명의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외면으로 인하여 생사의 기로를 오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정부의 각성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특집

●  
●  
●

## 전자주민카드 II

## 정보지배사회에서 전자주민카드의 의미와 그 위험성<sup>1)</sup>

김기중

### 1. 전자주민카드의 개요

가. 전자주민카드는 증명의 통합과 정보의 통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먼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카드 등 4개의 증명이 하나로 통합된다. 주민등록관리 대상자는 3,400만명, 운전면허는 1,600만명, 의료보험은 3,200만명, 국민연금은 1,400만명이다. 더불어 각 증명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와 함께 주민등록등초본 사항과 인감에 관한 정보, 지문에 관한 정보 등 7개 분야 42개 정보<sup>2)</sup>가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된다. 카드의 발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던 주민등록정보가 중앙의 전자주민카드 발급센터로 집중되고(그러나 이미 15개 시, 도청에 16대의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등록정보의 상호 교류가 가능하기는 하다), 이 발급센터의 중앙컴퓨터에 의료보험망, 국민연금망, 경찰청의 운전면허망이 연결되어 정보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나. 즉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전국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연결된 수만대의 단말기, 그리고 모든 국민이 소유하고 독자적인 컴퓨터 역할을 하는 3,400만개의 전자주민카드와 이 모두를 연결하여 주는 통신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대한 시스템이다. 강경근 교수는 증명이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전자주민카드로 모든 증명이 완전히 하나의 증명으로 '혼합'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한 장의 카드로 모든 증명이 '수렴' 된다는 점에서 별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 증명이 하나로 통합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도 전자주민카드를 통합증명이라 하고 있다. 또한 비록 각각의 전산망에 보안장벽을 설치하고 일정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그 권한에 할당되어 있는 정도의 정보만을 볼 수 있다고 하여도, 지방자치단체

1) 이 글은 지난 4. 24. 내무부가 주최하는 공청회에서 발표한 글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정부는 1997. 4. 19. 제주도 우선 실시 설명회 자리에서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될 정보를 42개에서 35개 항목으로 줄이며, 인감은 선택사항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제외한 항목은 아래의 표에 제시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주민등록법 입법예고안을 보면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될 정보항목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이 수록항목은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으므로 사실 몇 개 항목을 제외한다고 하여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에 흩어져 있던 주민등록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고, 의료보험기본사항, 운전면허기본사항 등도 주민등록 정보와 통합되는 데다, 이 집중된 정보 중 기본 인적 정보를 상호 교환사용한다는 점에서 정보의 통합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을 논할 때 '카드'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을 옳게 본 것이 아니다.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단순히 여러 신분증을 하나의 IC카드에 수록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가 전자화(Digitalize)된다는 것, 전자화된 개인정보가 표준화된다는 것, 표준화된 개인정보의

일부는 여러 부분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유통된다는 것, 전자화된 개인정보가 상호 유통될 수 있는 통로(전산망의 상호 연결)가 만들어진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 전자주민카드의 표면에는 12개 항목이, IC칩에는 42개 항목이 모두 수록되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42개 항목에서 일단 제외되는 항목은 주민등록 항목 중 기타(혈액형등), 인적사항, 가족사항 등과 국민연금 항목 중 총납입액, 가입자와의 관계, 가입자 연금번호 등이다.

	가시적 기록사항	IC 수록사항	비 고
계	12개 항목	42개 항목	
주민등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발급지) ·사진 ·발급일자 ·발급기관장	·성명 ·사진 ·인감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인사항 ·인적사항 ·개인주소이력 ·병역사항 ·세대사항 ·가족사항 ·세대주소이력 ·기타(혈액형등) ·검증항목	·개인사항과 개인주소이력에는 주소변동마다의 세대주 이름과 주민번호, 변동사유, 호주 이름 포함 ·세대사항에는 호주 호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사유 포함 ·세대주소이력은 세대의 주소 변동과 그 사유 ·인적사항에 포함항목은 미상 ·병역사항은 역종, 군별, 전역일, 병과, 주특기 등 포함 ·가족사항은 세대주, 처, 자 등의 인적사항과 각 주소변동내역
운전면허	·면허종류 ·면허조건 ·면허번호 ·적성검사기간	·면허종류 ·면허번호 ·발행기관 ·면허조건 ·적성검사기간 ·교부일자 ·벌점 ·정지/취소여부	
의료보험	-	·보험자기호 및 명칭 ·보험자구분 ·관리번호 ·피보험자사항 ·피부양자사항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진료지역 ·유효기간	·피부양자의 인적사항 포함
국민연금	-	·최초취득일 ·최초가입종별 ·총납입액 ·총가입월수 ·가입자와의 관계 ·가입자연금번호 ·급여종별 ·수급사유일 ·수급증서번호 ·최종수령일	
지 문	·지문	·지문특징점	
기 타	·의료보험 유의사항	·각 증명의 발급기관장	

라. 시행경과

- 1988. 12. 한국전산원, 「다목적 통합신분증 연구보고서」를 전산망조정위원회에 보고<sup>3)</sup>
- 1994. 2. 행정쇄신위원회, 기획과제로 선정하며 종합전자카드화 방안 연구 요청<sup>4)</sup>
- 1995. 3. 주민등록증 갱신 기본계획 수립
- 4. 7. 전자주민카드 추진협의회 구성(15개 기관<sup>5)</sup> 17명)
- 4. 18. 주민등록증 갱신 기본계획, 국무회의 보고
- 5. 12. 전자주민카드 추진기획단 설치(9개 기관<sup>6)</sup> 20명)
- 11. 22. 신용카드업협회,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sup>7)</sup>
- 1996. 3. 과천 중앙동 주민 1,500명에게 전자주민카드 시범발급, 정부제2청사, 과천시청, 중앙동사무소, 과천경찰서, 5개 병원, 3개 약국에 판독을 위한 단말기 설치
- 1996. 6.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확정(전자주민카드사업을 정보화촉진 중점과제로 선정)
- 9. 정보화촉진 시행계획 확정
- 10. 7. 전산망 전담사업자로 데이콤 선정
- 10. 14. 16개 시민·사회단체,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10. 30.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사업 설명 간담회 개최
- 11. 2.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토론회 개최
- 1997. 2. 내무부, 시행일정 일부 조정  
- 1998. 1.부터 전 국민에게 발급하기 시작하여 1999. 1.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던 계획을, 1998. 10.부터 발급하기 시작하여 1999. 10.부터 전면 시행.
- 3. 7. 내무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 예고
- 4. 7.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대위 구성(제주지역 10개 단체)
- 4.~5. 제주지역 토론회 2회(정부측 1회, 공대위측 1회), 서울에서 공청회 2회(정부측)

3) 한겨레신문, 1988. 12. 28.; 내무부, 전자주민카드제도관련설명자료, 1996. 11., 11쪽

4) 내무부, 위 자료

5) 내무부(차관, 지방행정국장), 국가안전기획부(3실장), 재정경제원(사회교육예산심의관), 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 정책심의회),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장), 통상산업부(생활공업국장), 경찰청(형사국장, 교통지도국장), 한국조폐공사(사업본부장), 한국전산원(기술지원단장), 의료보험연합회(사무이사), 의료보험관리공단(사무이사), 국민연금관리공단(사무이사), 고려대학교(교수), 한양대학교(교수), 포항공대(교수).

6) 내무부, 국가안전기획부, 재정경제원,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통상산업부, 경찰청,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전산원, 전산망사업자(13개 기관)(1997. 2. 내무부가 발표한 추진경과에 의하면 9개 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내무부의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나열된 추진기획단 참가기관의 수는 위와 같이 13개 기관임).

7) 조선일보, 1995. 11. 24., 8면

## 2.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

전자주민카드시스템이 완비되면 행정부의 통제시스템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동시에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는 경찰의 경우에는 그 힘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지 추측하기 힘들 정도라는 점도 명백하다. 말하자면 전자주민카드시스템은 국민 모두에게 컴퓨터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도록 하고 이 개인별 컴퓨터와 국가전산망을 서로 연결하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모든 국민과 모든 경제주체들은 전자주민카드의 강력한 신분 확인기능과 컴퓨터 자동처리기능으로 인하여 전자주민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된다. 즉, 사회활동 전반에 걸쳐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대부분의 개인활동은 어떤 형태로든 전자적인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행과 카드회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IC카드(금융스마트카드)의 경우도 이른바 '폐쇄형'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므로<sup>8)</sup> 모든 사용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고, 이 점은 전자주민카드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기록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기록되지 않거나 현실적인 피해가 없을지라도 국민들은 항상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을 전제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자유로운 행동을 크게 제약할 수밖에 없다.

한편 입법부나 사법부는 행정부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지만, 행정부는 모든 국가전산망을 상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공안전산망의 비밀파일은 전자

주민카드 전산망의 잘 정비되고 표준화된 정보와 결합하여 갈 것이나, 이러한 결합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설혹 눈에 보이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이 모든 전산망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궁극적인 힘이 될 것이다. 앞으로 올 사회체제(물론 현재도 거의 그러하지만)에서는 '정보'의 가치가 중시되고 '정보'에 의한 지배사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결국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시스템 강화는 힘의 균형을 파괴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의 분립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 3. 전산화된 개인정보의 의미와 우리 보호법제의 현황

가. 전자주민카드시스템이 결국 권력분립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의한 개인정보의 통제능력이 갖는 막강한 힘 때문이다. 전산처리정보는 서류에 기록된 개인정보와 달리 온라인 시스템에 의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수수·전달·활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 단위로 이루어지던 정보관리가 조직간의 연결과 공동이용의 통합정보관리체계로 기능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분실이나 손실의 가능성이 훨씬 적어 오랜 기간동안 보관할 수 있으며, 대량의 정보를 한 곳에 보관하여 상호 대조할 수 있고, 정보의 일부만을 추출하거나 일괄적인 변환 등이 가능한데다, 개인의 다양한 생활상을 동시에 기록·보관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자유로운 개인활동을 침해할 가능성은 비

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전산화된 정보는 전산화되었다는 것 자체가 곧 비밀의 성질을 갖게 되며 전산정보에 대한 지식과 관련 장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투명해진 개인이 조직이나 국가에 대하여 아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 나라는 국가가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전산처리하는 것을 규제하는 입법을 하여온 것이다.

나. 다른 나라에서 데이터법, 프라이버시법 등의 이름으로 제도화된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핵심은 개인정보의 전산처리 자체를 규제하고, 전산화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며, 전산화된 개인정보의 상호이용과 목적 외 사용을 엄격하게 금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위원회등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사전에 신고하도록(스웨덴, 미국, 프랑스) 하고 있으며, 모든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수집방법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는 원칙, 따라서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고 행정부처 상호간에 교환하여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는 원칙은 어느 나라에서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sup>9)</sup> 왜냐하면 각종의 상이한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에 관한 정보가 여러 수집 주체간에 교환되고 집중되는 경우에는 정보가 수집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처음에 수집할 당시에 유의된 관련 사정이 무시되거나 오인되거나 부분적인 정보에 의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허상이 형성되어 예단을 가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sup>10)</sup>

특히,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80. 9.에 제안한 이른바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입법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원칙은, 개인데이터의 수집은 제한되어야 하고 그러한 자료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단에 의하여 그리고 데이터 주체의 인지도에 의하여 수집되어야 한다는 '수집제한의 원칙', 개인데이터의 수집목적은 수집할 당시에 구체화되어 있어야 하고, 그 후의 이용은 구체화된 목적의 실현 또는 수집목적과 모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목적구체화의 원칙', 개인데이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와 데이터 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외에는 목적 외로 공개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 등 8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1)</sup>

다. 특히, 전산화된 개인정보의 문제는 국가신분증제도와 관련하였을 때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전산화된 개인정보가 국가신분확인제도와 결합하게 되면 그 힘이 배가되므로, 여러 나라의 정부는 국가신분제도를 기초로 하여 개인정보를 전산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국가신분증제도가 없는 나라의 정부는 신분증을 도입하려고 하였고, 국가신분증이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읽을 수 있는 제도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여왔다. 그러나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는 정부가 효율성을 이유로 도입하려는 국가신분증 제도에 국민이 반대함으로써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특히 지난 80년대말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였던 국가신분증(National ID Card)제도를 온 국민의 저항으로 막아낸 사례는 유명하다.<sup>12)</sup> 이들은 국민에게 ID카드의 보

9) 차명진, 「프라이버시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인하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참조

10) 강경근,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 행정과전산, 1988. 12. Vol.10 No.4, 20쪽

11) 전문은 URL <http://www.oecd.org/dsti/iccp/legal/pliv-en.html#2>에 있다.

8) 임상빈, 「국내 금융기관의 IC카드 추진현황 및 전망」, 정보화사회 1997. 3호 참조.

유를 요구한다면 다음에는 그 휴대, 또 그 제시 등을 요구하게 되어 시민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사람은 숫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취급받아야 한다. 특히 ID카드가 중앙컴퓨터와 접속되면 정부는 광범한 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권위주의국가로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또한 서독 정부도 1983년에 기계적으로 읽을 수 있는 신분증을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시행 중지결정으로 도입하지 못하였으며<sup>13)</sup> 심지어 최근에야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선택한 헝가리도 지난 1991. 4. 인구조사(the state census)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개인번호제도를 위헌이다(a general and uniform personal identification mark(personal number) for unrestricted use is unconstitutional)라고 판정한 사례도 있다.<sup>14)</sup>

라. 198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의 전산처리도 급진전하여 평균 성인남자의 경우 그에 관한 각종 정보가 최소한 20~30개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구나 1980년대 초반부터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은 모든 국가부문을 전산화하여 이를 상호 연결하겠다는 것이어서 전세계에서 선행이 드문 초유의 사업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서구에서는 1960년대 이래 이러한 국가적인 개인정보의 통합관리는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면에서 항상 사회의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신중한 논의를 거쳐 조심스럽게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전산화에 의한 긍정적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이에 의한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도입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마. 1991. 초경부터 주민등록전산망이 본격 가동되는 등 국가부분의 전산망 사업은 갈수록 확대되고 국가가 보유한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전산처리방식으로 바꾸고 이를 전산망으로 연결한 상태에서도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늦추다, 1994. 1.에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외에 몇몇 개별법에 개인정보의 누출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외에 전산화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바.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이 열람과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는 외에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설정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공공기관이 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한 필요만 있다면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고(제5조), 보유하고 있음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파일목록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비밀 파일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제6조), 보유기관의 장이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시정조치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더구나 보유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설정하여, 각 행정부처가 개인정보파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행정부처의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보유목적 외에 사용하도록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제10조 제2항 제2호). 이렇듯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전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을 근거로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헛된 환상에 불과하다.

앞으로 각 행정부처의 전산망이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에 연결되어갈 것이고 기초정보를 상호 사용하여갈 것인데, 이를 제한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

#### 4.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위험성

가.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정점에 놓여 있다. 내무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다른 국가전산망 사업과 분리되는 독자적인 사업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애초에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고, 앞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연결되며, 자동차전산망과 연결되는 등 모든 국가기간전산망과 연결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문제점은 곧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의 문제점이 되며,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으로 인하여 그 문제는 증폭될 것이다.

나. 먼저 국가기간전산망은 정부주도로 추진되면서 전산화의 지배적인 가치체계는 정보화사회에 대한 낙관론을 근거로 한 효율중심주의였다가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사적 가치보다는 공적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는 2차적인 목표에 불과하였거나 거의 목표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침해조

건은 크게 확대되었다. 전산망 사업의 기본적인 목표인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이념은 예산조건의 뒷받침 없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컴퓨터의 사용이 곧 비용의 절감이라는 관점에서 조직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조직중심의 관리체계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결합하여 외형적, 지리적인 분산화나 지역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결국 정부의 업무를 기능적으로 통합시키고 통제의 집중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즉 통합정보관리체계에서는 개인에 대한 모든 것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국가에게 주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은 오히려 권력이 큰 정부를 만들 위험도 크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무척 위험한 상태이다. 그래서 내무부도 지난 1985년 행정전산망 사업에 대하여 '지방화하여가는 흐름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것이다.<sup>15)</sup>

다. 둘째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핵심적 기초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의한 전산망 연결계획 외에도 모든 행정전산망을 상호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주민망은 경찰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다. 주민등록정보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거주관계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원칙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무너지고 있다. 지문에 관한 정보도 원래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정보인데(물론 지문정보는 애초에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경찰청 감식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에도 이 지문을 수록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모든 국민으로부터 지문을 강제 채취하는

12) 자세한 사항은 공동대책위원회 주최의 1996. 11. 2.자 토론회 자료집 참조

13) 차명진, 위 논문, 72쪽; 배준상, 「서독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의 동향」, 공법연구 제15집, 243쪽.

14) URL [http://www.privacy.org/pi/countries/hungarian\\_const\\_court\\_decision\\_id\\_number.txt](http://www.privacy.org/pi/countries/hungarian_const_court_decision_id_number.txt)

15) 최수목, 「과학기술계의 5공비리, 행정전산망」, 신동아 1989. 12., 475쪽

것이 과연 합헌적인지, 이렇게 강제 채취한 지문을 경찰청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관하여 새롭게 검토할 때이다. 여권발급전산망도 공개적인 확인절차 없이 주민등록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다. 국민복지망 계획은 의료보험망, 국민연금망 등 복지관련 전산망을 모두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1996. 9. 3. 제2차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는 자동차 등록, 검사, 세금, 보험, 도난 및 무적차량 추적업무 등을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보험회사, 차량검사소, 관세청, 주민등록전산망, 경찰청, 국세청을 상호 연결하는 전산망자동차종합민정정보망을 구축하며,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 주민등록정보를 필요로 하는 6개 업무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망을 연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화추진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sup>16)</sup> 이러한 개인정보시스템의 연결은 개인정보의 직접 수집 원칙과 목적 외 이용금지의 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기에 각국은 법률로 컴퓨터의 연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우리 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전산시스템의 상호연결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문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장치 없이 시행되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개인정보보호의 모든 원칙을 폐기하겠다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 5. 주민등록증제도의 폐해

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우리의 주민등록증제도의 문제는 곧 전자주민카드제도가 도입되어서는 아니되는 이유가 된다.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국가신

분증을 사용하고 있다.<sup>17)</sup> 하지만, 우리처럼 생년월일과 출생지, 호주 성명, 지문, 병역사항까지 함께 수록된 신분증의 발급을 강제하고, 그 소지의무를 부과하며, 모든 국가행정과 경제부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하여도 무방하다. 이러한 주민등록증제도에 내포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시행할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인권 후진국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나. 현행 주민등록의 역사는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총독부는 이른바 '대동아전쟁'이 한창이던 1942. 9. 26. 조선기류(寄留)령(제령 제32호)와 기류수속규칙(조선총독부령 제235호)을 공포(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본적지 외의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는 등록하여야 한다)하여 모든 주민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하였다. 이후 박정희 군사정부는 1962. 1. 15. 기류법(법률 제967호)을 제정, 공포(1가구별 1용지의 기류부를 개설하고, 본적지 이외의 일정한 장소에 30일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신고를 해태하면 과태료를 부과함)하면서 위 법령을 폐지하였고(주민등록법의 제정, 시행으로 이 법은 시행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다시 1962. 5. 10. 주민등록법(법률 제1067호)을 제정, 공포하여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의 기반을 만들었다. 제정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주거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제1조), 기류법과 달리 '본적지를 떠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본적을 시·읍·면에 등록하도록 하고, 세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동할 때에도 퇴거와 전입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제2조, 제6호, 제10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제20조). 이후 주민등록제도는 남북대치상황을 이유로 점차 확대되어왔고 현재는 개인별, 세대별 주민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은 법령에 규정된 신고사항을 훨씬 초과하여 주소이동사항, 가족사항 등을 포함한 140개 항목에 달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주민등록제도는 모두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회변동기(주민등록제도는 박정희 군사정부의 '최고입법회의'에서, 주민등록증의 소지의무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도입되었다)에 시행됨으로써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의 공유와 시정없이 오로지 행정편의만을 추구하면서 발전되어 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주민의 주거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행정목적상 필요하고 또 타당한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국민에게 주소와 주소이동사항, 그리고 가족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강제등록하게 하는 제도는 분명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도이며,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국민의 자유로운 행동권을 제약하는 제도임이 분명한 만큼,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을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있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되고 확장되어왔다는 점이 원래의 행정목적을 벗어나 주민등록정보가 자유롭게 유통, 사용하게 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는 큰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즉,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주민의 주거관계를 파악하고 인구동태

를 명확히 하는 목적에서만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마땅한데, 병역관련사항이 주민등록업무에 통합되고, 의료보험사항, 자동차관련사항 등 대부분의 국가행정이 주민등록제도와 결합, 시행되어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 주민등록제도의 또 다른 축은 주민등록증제도와 전 국민 단일식별코드인 주민등록번호제도이다. 주민등록증제도는 제정 주민등록법에서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1968. 5. 29.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때 도입되었다(법률 제2016호).<sup>18)</sup> 이 개정법에서는 '18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하여 발급을 강제하지 않았으나, 1970. 1. 1. 주민등록법 제2차 개정(법률 제2150호)에 의하여, '치안상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개정 이유 중 일부), 18세 이상의 모든 주민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에게 간첩의 색출·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75. 7. 25.의 3차 개정(법률 제277호)때에는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거주사실과 일치시키고 민방위대, 예비군 기타 국가의 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총력전 태세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개정이유),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연령을 17세로 낮추고 모든 국민과 17세 이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의무를 부과하였으며, 1977. 12. 31.의 4차 개정(법률 제3041호)때에는 주민등

16) 조선일보, 1996. 9. 4.자

17) 각국의 국가신분증제도의 개요에 관하여는 [http://www.privacy.org/pi/activities/idcard/idcard\\_faq.html](http://www.privacy.org/pi/activities/idcard/idcard_faq.html)에 있는 'Identity Cards, Frequently Asked Questions' 참조

18) 그 이전에는 시·도민증 발급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급하는 시민증 또는 도민증이 있었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법 제2차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김병유, 「주민등록증 제도에 관하여」, 사법행정 1979. 2., 114쪽)

특종의 발급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태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는 형벌 규정을 신설하고, 1980. 12. 31.의 5차 개정(법률 제 3330호)때에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 소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을 통한 국민관리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이렇듯 주민등록증제도가 애초부터 복지행정의 대국민 행정에서 수급자의 신분확인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신분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름, 사진, 주소)만을 수록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쉽게 색출하기 위한 여러 정보들(지문, 병역사항, 본적, 호주, 고유일련번호 등)을 뭉뚱그려 주민등록증에 수록하게 된 것이다.

마.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정보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여러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주민등록증제도의 개선 없이 전자주민카드를 시행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지문'은 사실 본질적으로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지문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보겠다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는 세계적인 비판의 대상인데, 그 이유는 외국인 지문날인제도가 외국인을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일동포와 관련된 일부 단체에서 일본의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10지 지문을 받고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 일본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또한 본적과 호주성명, 병역사항 그리고 개인의 생년월일은 신분확인과 별 관련이 없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을 권리, 신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헌법상의 권리는 주민등록증 자체에 의하여 침해당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특히 우리 사회와 같이 연공서열을 중시하며 병역의무의 수행 여부를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나이가 출산지역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이 분명히 존재하는 사회에서 그와 같은 정보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는 프라이버시의 존재를 부정하는 제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하고, 이러한 인식이 없이는 결코 그 침해의 양상이 훨씬 클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sup>19)</sup> 전자주민카드의 표면에는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외에 의료보험사항과 운전면허사항이 기재되므로, 구체적인 기재사항에 관계없이 전자주민카드를 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무릇 홀로 존재할 때 무의미한 정보라도 통합되고 모아지면 별개의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강제로 발급받아야 하는 전자주민카드에 주민등록사항과 운전면허, 그리고 의료보험사항이 수록된다는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점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개인의 고유식별코드인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증의 제시와는 또 별개로 개인을 특정하는 모든 서류에 요구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호만으로 그 사람의 생년월일과 본적지, 성별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용되고 있다는 데 주민등록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1992. 1. 25. 경기 평택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23세에 두 아이를 둔 아버지인데 어린 나이에 벌써 아이를 들뜨이나 두었나는 놀림이 싫어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두번째 자리를 칼로 끊어 고쳐 사용하다가 공문서위조죄로 입건된 사례가 있다(조선일보, 1992. 1. 26., 19면). 주민등록증제도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 이전에 이미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중복되지 않고 단 하나만 존재하며, 생년월일을 포함하는 숫자로 되어 있다는 특징 때문에 행정전산화사업과 각 행정전산망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전제이며, 다른 나라의 전산망 사업과 핵심적으로 구별되는 우리만의 고유한 특징이다. 모든 국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나라는 벨기에,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의 주요한 나라에서는 거의 예가 없다. 하지만 이른바 노르딕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나라의 국민개인별 고유번호제도와 신분증명제도는 주로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다양한 이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오히려 개인정보의 정확성 유지에 관심이 크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적 장치가 잘 정비되어 있고, 관료제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정부가 시민으로부터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sup>20)</sup> 우리의 주민등록제도와 주민등록번호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되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정보화사업도 그 실질적인 목적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는 공공부분뿐만이 아니고, 민간부분에서의 전산화 사업에서도 개인정보를 페는 연결자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행정 전산망사업을 전제로 하는 전자주민카드제가 시행되는 고도정보화사회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켈 수 있는 키워드로 기능할 것이다. 이러한 표준통일식별번호(Universal Identification Number)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 없이 무분별하게 주민등록정보를 통합하고 전산망을 상호연결하는 국가정보화사업은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헝가리의 헌법재판소도 국민고유번호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사. 최근 일본은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기록시스템 네트워크'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열 자리의 전국민 고유번호제(전국 공통의 중복되지 않는 주민기본대장번호)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나,<sup>21)</sup> 번호만 두드리면 개인에 관한 기록이 통합되고 공개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강력한 비판(국민총배변제 반대운동)에 직면해 있다.<sup>22)</sup> 일본의 주민기록시스템네트워크 구축방안은 '개인식별의 필수 4정보(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만을 전산화 하되, 국가단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분권적 시스템으로 하며, 개인코드에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판별할 수 없는 단순한 10자리의 숫자로 하되 다른 행정기관이 작성한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제도와의 커다란 차이가 있다.

19) 주민등록에 의하여 수집하는 정보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강경근, 위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 21쪽 참조

20) 박홍윤, 「한국의통합정보관리체계에서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2., 171쪽  
21) 주리스트, 1092호, 1996. 6.15.자, 「住民記録システムネットワークの課題」  
22) 국민일보, 1995. 3. 2.자

## 6.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이 도입되어서는 아니 되는 이유

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 이는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다.

더구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의 보장이 되지 않는 정보화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 정보화가 될수록 시민은 정보의 완전한 통제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정보에 관하여도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것이 일정한 기관에 집중되면 남용되기에 정보의 분산을 요청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권력분입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sup>23)</sup>

나. 국가전산망 사업의 문제점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전산화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시스템이 전혀 없으며, 보안대책도 부실하다. 모든 국가전산망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망이나 전자주민카드의 발급센터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주도에 의한 전산화 사업으로 인하여 전산정보의 의미와 위험성, 프라이버시의 의미 등에 관하여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형편없이 낮다. 특히 IC카드 또는 스마트카드에 관하여 외국처럼 출입카드 등 보안이나 암호와 관련된 낮은 차원의 사용경험조차 없는 우리의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다.<sup>24)</sup>

다.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의 문제, 즉 지문날인, 주민등록번호에 중요한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제, 신분확인에 필요없는 여러 정보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그

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전자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 프라이버시 보호원칙에 위배된다.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이 신고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주민등록정보의 경우는 신고를 강제하고 있고, 주민등록증 발급 거부와 신고사항 해태에 관하여 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개인정보를 전산화하고, 전산화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므로, 단순히 정보수집에 관한 근거법을만으로는 부족하다. 독일 헌법재판소도 인구조사법에 대한 일부 위헌결정을 하면서 정보의 수집과 그것을 자동화하는 것은 별개이며, 개인정보의 자동처리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모든 전산화된 개인정보는 그 존재 자체가 비밀로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확고한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의 공안전산망에는 어떠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다. 이렇게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공안전산망 등의 존재는 표준화되고 잘 정비되어 있는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크게 할 수밖에 없다.

마. 보안과 정보유출의 문제는 기술적인 보안대책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안문제는 사람문제이다. 그런데 우리의 행정체계는 그리 안정적이라 할 수 없고, 부패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지도 못하다. 혹자는 우리 사회를 총체적 부패사회라고 하기도 하고, 되는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안되는 일도 없다고 자조하기까지 할 정도이다. 물리적인 보안장치도 결

국 현재의 기술수준에 따른 안전장치에 불과하다. 더구나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거대한 시스템으로 모든 곳에 군사시설에 준하는 보안시설을 갖출 수는 없다. 이에 엄청난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 23. 어느 동사무소에 외부인이 침입하여 주민전산망의 컴퓨터를 훔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전국 5,000여개 기관에 설치된 단말기 모두에 군사시설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 7. 전자주민카드를 시행하더라도 별도 입법이 필요한 이유

가. 전자주민카드시스템은 모든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전자주민카드시스템은 모든 국민에게 모든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가지고 다닐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접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며, 자신의 증명을 전자주민카드로만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좀더 차원을 높여 얘기하면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이며 국민을 전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계획안에 의하면 전자주민카드의 중요성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전자주민카드의 관리의무를 부과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렇듯 새로운 의무를 설정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를 단순히 개별법의 '서식개정'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태도 자체가 전자주민카드시스템이 도입되어서는 아니되는 이유가 된다.

나. 또한 전자주민카드의 기존의 주민등록증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전혀 새로운 '통합국가신분증' 제도이다. 따라서 정부가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의 항목의

예산으로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예산의 전용이라고 봐야 한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입법적 조치와 예산조치를 마련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다. 한편, 전자주민카드를 이를 운전면허증이라 할 수도 없고, 의료보험증이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단순히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점에도 달리 보아야 한다. 더구나 각각의 증명서는 그 발급 목적과 사용처가 달라 공통점이 전혀 없다. 국가적 신분확인제도인 주민등록증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기반제도이며, 운전면허증은 운전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국가가 자격이 있음을 인증하여 주는 일종의 자격증이기도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벌이나 형사처벌과 관련이 될 수 있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자격증이며, 의료보험증과 국민연금증서는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명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는 것은 법률체계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신분확인만이 필요한 자리에서 운전면허증과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의 제시를 강제하는 결과가 되거나, 의료보험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까지 제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되어 각 제도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의 제시의무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특정한 경우 엄격한 요건에서만 강제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 이러한 주민등록증 제시의무도 헌법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운전면허증의 경우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한하여 면허증의 제시의무가 있을 뿐이다(도로교통법 제77조). 따라서 지금의 헌법과 법률체계에서는 각 증명서를 통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이 분명하다. 만

23) 강경근, 위 글, 27쪽

24) 하이테크 정보, 1996. 11. 20.자, 전자주민카드 특집기사중 인터뷰기사에서 컴퓨터보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L교수는 "정보사회로 발전하는 데 정부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전체의 인식이라고 본다"고 하였다.

약 다른 제도적 목적에 의하여 증명의 통합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다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사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명의 통합이 갖는 법률 체계상의 문제점과 전자주민카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별도의 입법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8. 결론

고도의 정보처리기술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 체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기술로 이용될 수도 있지만, 반면 고도의 국민 통제장치로 사용될 수도 있음은 당연하다. 정보화 사회의 현상을 논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정보처리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그것을 적용할 사회의 상태에 따라게 된다고 한다. 적용할 사회가 민주적 원칙이 뿌리깊은 사회라면 참여민주주의를 확대시키는데

일정하게 기여할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통제 기술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과연 우리 사회가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민주적 체원칙이 뿌리내린 사회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누구도 우리 사회가 정치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등에 걸쳐 민주적 원칙이 뿌리내린 사회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그나마 일정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흔들고 권력의 강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 있는 세계미래 협회에서 발행하는 『퓨처리스트』지는 97년 1~2월 호에서 미래사회에는 사람의 몸 속에 초소형 컴퓨터 칩이 삽입되어 신용카드는 물론 여권, 운전면허증 등 각종 개인기록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다.<sup>25)</sup> 만약 전자주민카드제도가 도입되면,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이듯, 우리나라는 사람의 몸 속에 컴퓨터칩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다. 끔찍한 일이다.

25) 조선일보, 1996. 12. 17.자 기사

## 호주의 ID카드 반대운동<sup>1)</sup>

임 영화

### 1. ID카드계획안 관련 3단계 공론화 과정

1단계 : "신원확인(identification)은 개인적 권리와 관계된 문제(issue)가 아니다"

- \* 카드 자체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토론 단계
- \* 신원확인 '이익' 이 논의의 중심인 단계
- \* 신원확인 '증명' 의 목적으로 엄격히 사용되는 카드라는 개념은 간과되는 시기
- \* ID카드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초기단계

2단계 : "ID카드의 숨겨진 위협들이 점차 인식된다"

- \* 카드 기능에 대한 전율(function creep), 권력남용의 잠재성, 카드 분실로 야기되는 문제점 등
- \* 경찰의 상투적인 신분증 검사와도 같은 권력남용의 질문에 대해 "숨길 게 없으면, 두려울 게 없다" 는 정도의 일반적 반응 단계

3단계 : "권리와 책임에 관한 보다 복잡한 문제점들이 논의되고, 컴퓨터 백업과 숫자시스템의 중요성

이 고조된다"

### 2. ID카드 반대운동의 2대 요소

가. '부정적 이미지 폭로' - 감청에 호소

\* '빅 브라더' 식의 부정적 이미지를 조직적으로 알리는 캠페인

\* 정부가 아무리 괜찮다는 보장을 한다 하더라도 ID카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국민들의 거부감(hysteria)에는 어쩔 수 없다.

나. '체계적이고, 대중적인 교육' - 이청에 호소

### 3. 세계 ID카드 반대운동 사례

프랑스: 카드장치를 해독하려는 정권적 차원의 노력에 대한 반대운동

1) 본 자료는 PI(Privacy International)이라는 단체의 인터넷 자료로서 호주에서의 ID카드반대운동사례를 소개한 것이며, 본 자료의 인터넷 주소는 <http://www.privacy.org/pi/activities/idcard/campaigns.html> 임.)

독일: 독일ID카드용 국가적 번호 부여 체계에 대한 대중적인 반대운동과 법적인 장벽

필리핀: 인권단체들에 의한 반대운동을 통해 공론화된 '비용적 요인'으로 1991년 좌초

뉴질랜드: '키위카드' 반대운동

호주: 가장 대규모적인 반대운동(의회 해산, 총선거 실시, 노동당 정부 내 분열 등)

모든 호주 국민들과 영주권자들에게 교부되고, 일시 체류자와 방문객들에게는 별도 표시된 카드가 교부된다. 카드에는 사진, 이름, 고유번호, 서명, 유효기간이 포함되며, 고용될 권리 입증을 위해 사용되고, 은행구좌의 작동, 정부혜택의 공급, 복지건강혜택의 공급, 이민과 여권 등 통제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다. 카드의 6대 구성요소

##### (1) 자동등록기(REGISTER)

모든 인구의 구성원들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중앙등록기 - 건강보험위원회(HIC)에 의해 유지됨.

##### (2) 코드(CODE)

모든 인구 구성원들에게 부여되는 고유식별번호 - HIC에 의해 지정됨.

##### (3) 카드(CARD)

HIC에 의해 의무적으로 발급되는 다목적 ID카드

##### (4) 의무(OBLIGATION)

법에 따라 모든 개인은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 카드를 제시할 의무가 있고, 해당기관들은 카드를 요구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에 그 자료들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 (5) 사용(USE)

숫자들과 소형 카드등록기들은 다양한 하부기관과 조직에서 운영, 관리의 토대로 사용된다.

##### (6) 교차통지(CROSS NOTIFICATION)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하부기관들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변화들을 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 라. 카드 반대운동의 경과

(1) 카드 계획안에 내재된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초기 여론조사 결과 약 70%의 대다수 대중들

## 4. 호주의 사례

### 가. 오스트레일리아카드의 출현

\* 1940년대, 2차대전중 카드 등록과 발급을 자극하려는 식량배급에 의존하는 카드정책(전쟁 후 소멸)

\* 1970년대, 3개의 정부보고서(복지정부의 효율성 제고, 범죄 적발기능 제고 측면에서의 ID카드 유용성 보고서)는 프레저정부에 의해 '정치적으로 쓸모없는 계획'이라 간주되어 추가 논의 중지

\* 1980년대초, 세금 포탈과 세금 기피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와 복지행정에서의 부정부패에 대한 우려, 불법이민 확산에 대한 우려 등으로 ID카드 또는 국가적 등록절차의 유용성이 제기됨

\* 1985년, 국가세금정상화회의에서 ID카드 개념이 제기되고, 다음해 입법화하기로 결정(처음에는 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인 데이빗 시몬스, 이후에는 호주 납세자협회의 대표에 의해 ID카드 개념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정부는 애국심을 부추겨 ID카드의 명칭을 'Australia Card'로 함(그러나, 나중에는 그 명칭보다 오히려 'UnAustralia Card' 또는 'Aush-tralia Card'로 널리 알려지게 됨)

나. 오스트레일리아카드의 이용 방향

은 지지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 계획안에 열광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부 소수의 언론인, 의회의 반대론자들, 소수의 헌신적인 학자들과 소수 반대론 주창자들은 카드계획안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도를 알리려 애썼다.

(2) 1985. 7. 정부기관인 NSW프라이버시위원회는 특정주제를 '프라이버시보고서'로 정해, ID카드 계획안이 단순한 신원 확인 이상의 문제이고, 정부에로의 권력과 권위의 집중화 수단으로서, 호주에서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내포된 제안이라는 점을 경고하였다.

(3) 법률센터, 시민자유평의회, 대학교수들, 반대론자들은 ID카드 계획안에 대한 반대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4) 1985년말, 반대운동가들은 호주상원에 압력을 행사하여 '공동선정위원회'에 임명된 사람들이 그 제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언젠가는 정부를 괴롭히게 될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다수의 위원들은 정부측 인사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계획이 시민과 국가간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프라이버시와 시민의 자유에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 계획안에 반대하였다. 위원회는 그 계획안의 비용편익 근거가 불확실하고 탄력적이며, 모든 관습법 국가들이 그런 제안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 어떤 관습법 국가에서도 ID카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스트레일리아카드를 둘러싼 토론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5) 그러나 정부는 선정위원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계획안을 진행시켰다.

(6) 스스로 '부정한 동맹'이라고 선언한 집단(건설노동자연합의 놈 깰러거, 서부광산회사사장 휴 모건, 시민의 자유 대표 론 캐스턴, 대중가수 피터 개럿 등)이 결성되고, 국가발행지에 광고를 실었다.

자유주의자 아담스미스클럽, 센터2000, NSW와 시민의 자유를 위한 빅토리아평의회, 호주 컴퓨터 소사이어티의 NSW지부, 그리고 수많은 좌파노동조합들을 포함한 몇몇 조직들 또한 공개적으로 카드에 반대하였다. 로저 클라크, 조프리 드 규 워커 교수, 가라함 그린리프 등 3명의 대학교수들은 정부계획안에 대한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비판분석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매스미디어에서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실어주지 아니하였는데, 아마 정부의 (카드를 이용한) 세입확대 문제에 설득당한 듯하였다.

(7) 위원회 보고서는 의회 내 반대세력들이 계획안에 반대하는 근거가 되었다. 정부는 그 입법안을 상원에 두 번 제출하였으나, 상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결국 계획안이 부결되었다.

(8) 상원에서 두번째로 부결된 후 정부는 그 문제를 ID카드 입법에 대한 투표와 의회에서의 과반수 확보를 위한 연정을 요구하는 헌법적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계기로 이용하려 하였다.

(9) 그런데, 1987. 7. 당시 총선거운동에는 ID카드문제가 거의 다뤄지지 않았고, 매스미디어에서도 ID카드문제를 의제로 삼지 아니하였다. 결국 정부는 재선출되자 즉각 ID카드 입법안을 다시 제출하였다. 그때까지도 전체 호주사람들은 그 안에 대해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10) 그러나, 선거 후 3주가 지나자 오스트레일리아카드의 운명은 뒤집어졌다.

1987. 7. 28. 매우 다른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진 17명의 사람들이 카드의 소멸을 계획하기 위해 만났다. 자유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주류 정당의 지도자들, 미디어 인사들, 사업가, 농부, 지역지도자들이 그 회의에 관련되었다. 그 회의는 '트러스트'를 설립하였고(이후 '오스트레일리아 프라이버시 파운데이션'의 전신), 미디어의 관심이 결여된 상태에서 반대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묘안을 강구하였다. 이에



그들은 시드니의 호화로운 세벨타운하우스의 무도회장에서 캠페인을 열기로 결정하였다.

(11) 캠페인 대회의 핵심요소는 연사들의 다채로움에 있었다.

우익방송인 알랜 존스, 민주당 지도자 재닌 헤인스, 아메리카컵 우승자 벤 렉슨, 록가수 피터 개럿 등은 멋진 재능의 혼합체를 보여주었다. 벤 렉슨은 "그 계획이 계속 진행되면 호주를 영원히 떠나겠다"고 경고하였고, 피터 개럿은 "호주가 지금껏 직면해온 가장 거대한 위협"이라고 말하였다.

(12) 이렇게 일단 유명인사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게 되자 다른 명망인사들도 그 계획에 대한 비난에 신속히 동참하였다. 전 웨스트팩 은행장 노엘 풀리는 "카드가 모든 시민의 사생활, 자유,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올 것"이라고 솔직히 평가하여 그의 동료들을 놀라게 하였고, 호주의학협회장인 브루스 셰퍼드 박사는 "카드는 호주인이 호주인을 적대하도록 할 것이다. 카드가 호주에 미칠 끔찍한 영향력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내전도 불사할 가치가 있다"고까지 말하였다. 그러자 이런 독특한 동맹에 부추겨진 신문들과 토크쇼들은 점차 증가되는 대중들의 관심을 보도하였다.

(13) 그 후 더 많은 호주인들이 그 계획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프라이버시 파운데이션'에 결합하였고, 이를 위해 우익 대학교수 런칠렌 칩맨, 공산주의자인 저술가 프랭크 하디, 전 수상 짐 맥클러랜드, 좌익경제학자 테드 윌라이트 교수 등 모두가 카드계획안 반대운동을 위해 이데올로기의 적들과 제휴하였다.

(14) 그 후 몇 주 이내에 거대하고 잘 조직된 운동이 진행되었다. 반대운동집회가 거의 매일 열렸다. 1987. 9. 14. 대중들의 열의는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나서 4,000명의 성난 군중들은 오렌지의 중앙 뉴 사우스 웨일즈 타운으로 몰려갔다. 도시인구의

1/8이 그 집회에 참석하였고, 다른 도시들도 유사하게 대응하였다.

(15) 대중적 분노의 거대한 움직임은 각 지방, 지역의 임시특별위원회들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매일 집회의 정점은 서부 오스트레일리아 의사당 밖에서 모인 30,000여명의 집회였다. 캠페인을 조직했던 오스트레일리아 프라이버시 파운데이션은 중앙경제지구를 틀어막는 끝을 이루는 시드니와 멜보른에서의 군중집회를 계획하였다.

(16) 그 몇 주 간의 열정은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불복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동당 간부회의에서는 폭력사태가 일어날 뻔하였고, ID카드에 반대하는 대중들의 시위는 과격해지기 시작하였다.

(17) 대부분 신문들의 독자편지란에는 호주인들의 강력한 열의가 나타났다.

"우리들은 숫자가 아니다"가 전형적인 신문 헤드라인이었고, "나는 신청할 생각이 없다", "선택은 죄수가 차는 쇠고랑이다", "역사상 가장 큰 반대", "나찌 독일을 연상시킴", "나는 이 나라를 떠나겠다", "소극적 저항은 내 표를 가져갈 뿐이다" 등의 내용들이 실렸다. 만화가들은 나찌의 제복을 입은 로버트 호크 수상을 지속적으로 그리면서 그 열의에 부응하였다.

(18) 캠페인 마지막날, 채널 9의 TV네트워크에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카드에 대한 반대가 90%로 나왔다. 평상적 논조인 오스트렐리언 파이낸셜 리뷰지조차 "국민의 자유를 확대시키는 길을 택하지 않고, 권위주의적인 과세를 지지하면서 카드를 이용하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세입 증대를 주장하는 것은 그저 추잡한 일이다"라는 결론의 통렬한 사실을 내보냈다.

(19) ID카드 입법안의 세부내용이 전해지면서 그 입법안에서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폭로하는 식으로 반대운동은 더욱 강화되었다.

(20) 1987. 9. 중순경 정부는 내부 위기에 직면하였다.

당내 비주류 좌파들은 카드에 반대하기 위해 대오를 흐트러뜨렸고, 주류 우파들은 간부회의에서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에 수상 대변인인 라이오넬 보윈은 정당이 조심하여 길을 걸을 것을 촉구하며 재고가 필요하지도 모른다고 제안했다.

(21) 몇 주일 내에 대중의 거대한 저항과 정당의 반란, 시민들의 불복종에 직면한 정부는 ID카드 입법안을 폐기하였다. 그러나 반대론자인 상원의원 존 스톤의 지적에 의해 입법안의 기술적 결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하여 정부가 폐기하는 체면을 세워주는 식으로 되었다.

(22) 호크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카드 계획을 준비함에 있어 몇 가지 핵심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우선, 정부는 지역사회의 기대에 배치되는 정부의 권한(확대)에 대한 우려를 야기했다.

둘째,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카드'라고 하면서 애국심에 의지하였다.

셋째, 정부는 카드의 메카니즘과 더불어 그 법적 강제기능까지도 신뢰될 수 있다고 입증할 수 없었다.

## 공동성명서

**정부는 근거법을 없이 시행하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범국민적 논의를 시작하라.**

정부는 지난 1995. 4. 이른바 '전자주민카드' 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이미 전자카드 발급 기계 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에는 임시국회 내무위원회에 전자주민카드제도의 근거법률이 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우리는 내년 10월부터 전 국민이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하게 될 것이고, 제주도 주민의 경우는 내년 4월부터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하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순히 종이신분증이 전자신분증으로 대체된다거나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이 줄어드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제도는 우리들의 생활 방식을 하루 아침에 바꾸어버릴 수도 있는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도,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아주 낮고, 국민들은 제도의 문제점은 고사하고 전자주민카드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 공대위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상정에 즈음하여 다시 한번 이 제도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히 고자 한다.

먼저, 전자주민카드제도는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전자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면 정보유출의 위험이 증가함은 물론 권력기관에 의한 오용, 남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헌법이 정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도 하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3,400만개의 전자주민카드와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국가전산망은 행정부의 권한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권력분립의 기초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더구나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전제인 주민등록 제도 자체에 대하여도 위헌의 의심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기도 하다. 우리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위와 같은 점에서 위헌의 여지가 많은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 미국, 호주, 헝가리 등 많은 나라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시민의 절대적 반대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무산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제도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오만한 태도이다. 전

자주민카드제도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제도이기 에, 그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정밀한 검토와 다양한 토론을 거쳐 국민적인 의견수렴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만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을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는 커녕, 안기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관료들이 밀실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이 제도를 추진하여왔다. 더구나 근거법률도 제정되기 전에 제도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며 그 시행을 기정사실로 만들려 하고 있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기술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미리 법률적 근거를 만들 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의 모든 행위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이다. 제도의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고 그 시행을 기정사실화한 다음 국회에서는 법률을 '통과' 시키는 절차만을 밟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깔보는 의식의 발로에 다름아니다. 정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산도 전자주민카드 사업비가 아니라 주민등록증 갱신사업비이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는 비판 외에, 국회를 속이고 예산을 배정받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우기 지금은 정권교체기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분위기여서 이 문제에 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없는 시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주민카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더하여, 이런 어수선한 시기를 택하여, 국민적 공감대형성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서둘러 시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정부가 국민의 눈을 피하려 일부러 이 시기에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이 제도의 시행을 미루고, 다음 정부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부가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지하지 않는다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며, 나아가 관련 산업체에서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전제로 하여 많은 시설투자를 하게 된다. 만약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거나 전자주민카드 발급 거부라는 국민적 저항을 받아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될 경우 국가는 물론이고 이 사업을 전제로 투자를 하였던 많은 기업들이 입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제도의 도입 여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국민적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보겠다고 공표한 모든 후보들도,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에 관한 공식입장을 천명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997. 7. 15.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대표 이창복의장),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법률소비자연맹(대표 김대인총재),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센터(대표 박형규목사), 천주교 인권위원회(대표 김형대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 최영도회장),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대표 임기관 상임의장), 민주사회를위한교수협의회(대표 유초하교수),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 정부의 중앙은행 개혁안 무엇이 문제인가

유중원

### 1.

최근 정부는 강경식 재정경제원 부총리,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박성용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 등 4인의 밀실 합의를 거쳐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에 대한 개편안을 김영삼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다음 공표하였다.

개편안은 한국은행의 상급기관으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의장이 한국은행 총재를 겸임하며, 그동안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으로 분리되어 있던 금융감독기관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금융감독 업무를 정부에서 직접 수행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떼어낸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 최악의 개편안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측에서 당연히 결사 반대를 하고 있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 재정·금융을 전공한 경제학자들도 역시 한결같이 반대하고 있다.

당초 금개위에서 중앙은행 개편안을 마련할 당시 자신들의 기득권에 집착한 재정경제원은 이를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애써 만든 금개위의 개편안을

깎아뺄 것 같았던 차에 4인 밀실 합의를 거쳐 자신들의 독자안을 정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위 4인 중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박성용 위원장을 제외한 3인이 모두 재경원 출신들이었으니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만하다.

이번 정부 개편안에 대하여는 우선 개편안을 만드는 절차에 대한 비판과 개편안의 내용상 독소 조항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

### 2.

중앙은행의 독립을 둘러싼 헌법 개정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그때마다 이 문제는 재경원과 한은간 밥그릇과 기득권 다툼으로 그 본질이 왜곡되어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중앙은행을 정부의 예속에서 분리·독립시켜 관치금융을 근절시키고 중앙은행에게 통화신용정책에 따른 물가안정을 전담·책임지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앙은행 독립을 위한 개혁은 입안과정에서부터 두 당사자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객

관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금융에 정통하고 개혁 의지를 가진 제3자 중심의 금융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켜 중립적인 위치에서 개혁안을 만들도록 한 것은 잘한 일로 평가되었다. 또한 금개위가 만든 개혁안은 몇 개월 동안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고 다소 미흡하긴 하여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되었다. 대체적으로 합리적이고 중용을 지킨 내용으로 여겨져 여론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금개위 안을 재경원과 위 3인이 완전히 뒤엎어버린 것이다. 정부안은 관치금융을 시정하고 중앙은행을 완전히 독립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그 내용이 변질되어 5공 시절의 개편안보다 더 후퇴한 최악의 내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번 개편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관치금융을 종식시키자는 데 있다면 지금까지 관치금융의 총 본산인 재경원의 개혁과 역할 조정이 중요한 핵심과제인데 기득권에 집착한 완고한 관료집단인 그 재경원이 주도하여 금개위안을 수정하여 정부안을 만들었으니 최악의 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전개와 우려곡절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위 3인이 져야 할 일이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 역시 대통령 직속으로 금개위를 설치하였으면 금개위의 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최종 정리했어야 할 터인데도 이를 완전히 묵살한 과오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도대체 김대통령은 금개위가 애써 만든 개혁안을 내팽개칠 바에 무엇 때문에 금개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였는지 참으로 궁근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김 대통령은 현재의 정부 안을 즉시 철회하고 금개위안으로 돌아가는 용기와 결단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 3.

가. 원래 금융통화위원회는 중앙은행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정치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금통위는 재경원의 의안을 자동 통과시키는 시너 역할만 하여왔다.

그래서 금개위안에서는 금통위를 한국은행의 내부 기구화하여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규정하였는데 반하여 정부안에서는 금통위를 정부 조직으로 하여 한국은행의 상급기관으로 두며 금통위의 의장이 한국은행 총재를 겸임하고 그 의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책결정권을 갖는 금통위와 그 산하에서 집행기능만 담당하는 한국은행으로 양자를 완전히 분리하였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는 정부기관인 금통위와 사무국을 완전히 지시·통제하면서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제도적으로 중앙은행이 정부에 예속되게 된 것이다.

또한 매년 물가안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금통위의 의장을 해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금통위 의장, 즉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하수인이 임명되어 물가 불안이 심화되면 그 책임을 온통 뒤집어쓰고 물러나야 하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금통위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산하에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설치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핵심 기구인 조사부와 자금부 등이 사무국에 흡수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사무국의 업무나 보조하는 아주 단순한 기능 업무만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개위안처럼 금통위를 한국은행의 내부기관화하여 그 의장을 한 총재가 겸임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무국은 자동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나. 이번 정부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전술한 것처럼 금융감독기구를 하나의 정부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감독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장점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이에 찬성하는 견해도 많다. 물론 금융의 겸업화 추세에 따라 감독기능을 통합하면 상호간의 업무와 기능을 보완하고 협조를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게 된다.

그러나 금융감독이 분야별로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기 때문에 통합보다는 전문성을 살린 자유회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실제로 금융감독기능을 하나의 정부기관으로 통합한 나라는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고, 독일의 경우 최근 증권업의 전문화와 국제화 추세에 따라 증권감독청을 따로 분리하였다.

특히 문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원을 분리한다는 것이다. 은행감독원의 주요 기능은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은행 경영이 부실화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혼란이 야기되거나 자금결제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경우 궁극적으로 이를 수습·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결국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이다.

한편 통화금융정책의 효과는 금융기관을 경유하여 경제의 각 부문에 파급되는데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을 가지지 않게 되면 한국은행은 그 파급효과를 확인할 길이 없고, 따라서 효율적인 통화금융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고 중앙은행으로서의 영(令)이 도대체 서지 않을 것이다.

은행감독권을 정부가 가져야 한다는 논리는 별 설득력이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은행감독권을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으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 미국은 연방

국가로 특이한 금융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연방준비은행이 향유하고 있는 독립성, 역할과 기능, 막강한 권한 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정부에서만 독점적으로 금융감독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오히려 예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제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동 위원회는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등 금융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권력기구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결국 관치금융을 제도화·법제화하면서 우리 경제는 또다시 정경유착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금융행정과 통화정책이 정부와 한국은행으로 분리되어 있는 만큼 은행감독권도 각기 해당 분야에 맞춰 나누어 갖도록 한 금개위안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여간에 금융감독체계는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금융감독기관의 통합에 대해서는 아직 선진국에서도 그 이론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자신 없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중앙은행제도가 실험의 대상이 될 수야 없지 않은가.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점진적으로 개정하여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다. 재정경제원은 지금까지 특수은행과 더불어 제2금융권의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등을 직접 관할함으로써 중앙은행의 통화금융정책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현재 한국은행이 통화관리상 통제할 수 있는 수신고는 전체의 30% 정도로, 이러한 실정이라면 중앙은행의 통화금융정책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리가 없는 것이다.

한편 외환관리 업무에 대한 권한도 재경원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 자본의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교란이 거의 중앙은행의 통제권 밖

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앙은행의 업무영역을 극히 좁은 범위로 한정하면서 한편 수많은 요인에 의하여 물가는 변동하는 법인데 한은 총재가 물가안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돈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경우는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과 외환부문도 포함된다. 따라서 중앙은행에 통화신용정책의 책임을 맡긴다면 당연히 그에 관한 통제 권한도 중앙은행에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정부안은 이러한 업무에 관하여 한국은행이 정부와 협의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금개위안에서는 제2금융권 업무와 외환 업무 중에서 통화신용정책에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중앙은행의 내부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경원이 보유한 업무검사권, 정관 변경 승인권과, 정부안에 새로 삽입된 한국은행 감사에 대한 재경원의 임명 제청권 및 한국은행의 경비성 예산에 대한 재경원의 승인권 등을 국무총리가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중앙은행의 독립이 중요하지만 중앙은행 내부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 통제를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위와 같은 권한을 국무총리에 귀속시키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일 것이다. 예산, 세제, 금융에 관하여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재경원을 배제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혹자는 위와 같은 권한을 금통위에 부여하자고 할지 모르나 금통위가 만약 한국은행의 내부기관화 한다면 더욱 더, 금통위가 한국은행과 분리된다고 하여도 그 의장이 한국은행 총재를 겸하게 되므로, 금통위에 부여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본다.

#### 4.

이번 개정 작업이 시작된 계기는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중앙은행을 실질적으로 독립시켜서 통화신용정책을 전담시키고 물가안정을 이룩하며 관치금융을 근절하자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한국은행에 금통위, 집행부, 은행감독원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실질적으로 독립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금개위안이 차선의 대안으로 타당하므로 금개위안에 1997. 6. 30. 경제원로 17인의 합의안을 가지고 보완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재경원은 마음을 비워야 한다. 한국은행이 재경원의 '남대문출장소'라는 인식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과거의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중앙은행제도에 관한 세계적 추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지난 수십년간의 관치금융 밑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을 위해서 스스로 무슨 일을 했는지 냉정하게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 심한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스스로 밥그릇 싸움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은 이번엔 금개위안을 토대로 하여 한국은행법 개정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 정권까지 늦출 시간적 여유가 없다.

## 동북아특별위원회 소개

### 1. 신설 경과

지금까지 민변이 중심이 되어 한일법률가교류회를 3회(92, 94, 96) 하였는데, 일본측은 중심이 되는 사람은 있으나 단체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측도 민변이 담당하는 것은 모양상 적당하지 않겠다고 여겨 작년에는 우리도 민변과는 별도로 실행위원회를 만들었으나, 업무의 계속성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한 단발성 교류보다는 좀더 상대방에 대하여 잘 알고 각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류회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간에 민변 내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비민변회원도 포함하여, 한일법률가교류회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일동포 변호사들과의 교류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민변 집행부에서 이를 승인하여 97. 1. 일본 특별위원회가 임시특위로 신설되었고 지난 정기총회에서 상설특별위원회로 승격되었습니다.

한편 일본특위라는 명칭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민변의 목적사업과의 연결성을 드러내는 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위원회의 역할의 범위를 넓히고 우리나라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지역문제를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관련업무를 수행한다는 취지에서 동북아특위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 2. 위원장 및 회원

위원장은 임종인 회원이, 간사는 이유정 회원이 맡고 있으며 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승현, 박성호, 김선수, 장완익, 한택근, 최봉태, 조광희, 김우진, 최승수, 이유정, 차홍권  
(민변 회원은 아니나 도두형 변호사님도 참여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민변 실무간사 중 동북아특위담당자는 김은영입니다.)

### 3. 이제까지의 활동과 향후 계획

가. 한일법률가교류회 방향 설정 및 준비, 평가

매 2년마다 열리는 한일법률가교류회를 보다 밀도 있고 쌍방간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교류의 방향 설정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일본위원회를 중심으로 평소에도 일본측과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 교환등을 할 것이고 자료 교환등을 하려고 합니다.

나. 재일교포 변호사 교류

현재 30여명의 교포 변호사가 일본에서 활동중인 바 교포변호사들 중 조국과 일본 내 교포들의 지위 향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변호사들과 교류를 합니다. 지난 제3회 한일교류회에서 재일교포 변호사 8명이 참석한 별도의 행사를 가지기도 하였고 상호 자료 교환등 일상적인 교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변 차원에서 재외동포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바를 연구할 예정입니다

#### 다. 일본등 동북아지역 연구

동북아 각국의 역사, 정치사, 경제사, 노동운동사, 사회운동사, 학생운동사 등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할 예정입니다.

#### 라. 초청 강연

관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 4. 모임 일정

우리는 매월 두번째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민변 사무실에 모여 공부를 하며 안전에 대하여 토론도 합니다. 당면한 사업은 많지 않을 것이니, 공부하면서 일본등을 심도있게 알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은 자유롭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민변 대전 · 충청지부를 결성하며

김연수

대전에서 변호사를 시작한 지 어언 6년째에 접어들었다. 연수원에서 노동법학회에 가입하여 활동했던 관계로 변호사로 일한 지 얼마 안되어 민변에 가입하였다. 대전에는 정덕진 변호사가 나보다 1년 먼저 개업하여 민변 활동을 하면서 갖은 고생을 다하였다. 내가 1995년 10월에 민족중대활동가조직사건이라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다룰 때 6명의 피고인들이 부담스러워 공동 진행하자고 제의한 적이 있는데, 자신은 12명의 피고인을, 그것도 민간 법정과 군 법정을 오가면서 한꺼번에 처리했는데 6명이 무어 부담스럽냐고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만큼 정변호사는 홀로 씨를 뿌리며 이 지역 민변 활동의 기초를 세웠다.

곧 이현, 이현주 변호사님이 합류했고, 서울서 내려온 송동호 변호사, 천안에 등지를 튼 소삼영 변호사가 함께 일하게 되어 큰 힘이 되었다. 아쉬운 것은 충북지역에 회원이 한 분도 없다는 점이다.

민변 활동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과 같은 시국사건에 대한 변론이다. 처음 맡았던 사건이 사노맹 유인물을 살포했던 김정수라는 사람이었다. 무슨 대책위인가 하는 단체의 사람이 찾아와 변론을 부탁하기에 몇도 모르고 선임서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가 접견하였다.

접견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변론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해달라는 대로 구속적부심으로부터 시작하여 보석 신청, 그리고 법정에서의 변론까지 해주었다. 나중에 실형을 선고받은 후 구속적부심 신청까지 했다는 사실이 몇쩍기도 했지만, 내 생각에는 피고인이 유죄가 아닌 것만 같았다. 지금에야 국가보안법의 범리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시에는 전적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때는 시국사건 피고인으로부터 선임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몰랐고, 정덕진 변호사나 서울본부에 물어볼 줄도 몰랐다. 그저 피고인측에서 알아서 가져오면 받아야지 하는 정도였는데, 이 사건을 시작으로 고용 변호사 하는 1년 동안 일반사건을 포함하여 열너댓 건 맡은 내 사건 중에 8건 정도가 무료변론이 되었다. 그 후 내 사무실을 갖게 된 후부터 1인당 50만원, 더 지나서는 70만원, 최근에는 100만원씩 받아오고 있다.

그 후부터 국가보안법사건 복이 터졌는지 한 해에 대어섯 건씩 국가보안법 아니면 집시법 관련 사건을 맡게 되었고, 청주에서 구속된 피고인들을 위해 뛰어다니기도 했다. 시국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기억에 남

는 것은 위에서 말한 민족총대활동가조직사건이다. 가을음악회 티켓을 받아놓고 기대에 부풀어 있던 오후 5시경 갑자기 구속자 가족들이 몰려와 학생들이 연행되었으니 접견을 해달라고 하였다. 충남 경찰청으로 가서 접견 신청을 한 지 1시간이 지나도 접견을 시켜주지 않아 청장, 차장 방으로 왔다갔다 하고, 차장은 사건개요에 대해 브리핑해주겠다, 나는 헌법 어찌고 하다가 끝나와,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학생들이 대공분실에 연행된 것 같다고 하여 경찰청에서 멀리 떨어진 대공분실로 차를 타고 갔다. 그런데, 아니 그런데, 전경 1개 중대가 분실 앞 100미터 전방 도로에서 길을 막는 것이 아닌가? 전경 중대장이 상부 지시 운운하여, 여기서도 헌법, 형사소송법을 들먹이며 신성한 변호인 접견권에 관한 강의를 하였으나 요 지부동이였다. 예라 모르겠다, 아스팔트 위에 그대로 주저앉아 농성한 지 4시간이 지난 밤 1시 10분경에 서야 접견을 하였다. 그때부터 청장 이하 관련자를 모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결국 차장의 사과를 받고 일단락 지었지만, 재판은 항소심까지 가서 다음 해 5월에서야 끝났다.

더불어 이런 변호사님과 동업할 때 서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시민생활법률봉사실을 만들었다. 천주교 대전교구청으로 이관하고, 대전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속적인 후원을 하면서 서민들의 애환과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접하면서 노동자와 함께 절망하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였다. 특히 승소율이 20%도 되지 않는 해고무효확인사건은 그에 쏟아붓는 노력만큼이나 큰 실망과 좌절을 겪어야 했다. 노동상담소를 통해 선임하였던 사건 중에는, 버스가사가 바퀴 내부의 결함으로 사고를 냈으나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기소된 사건을 맡아 2년 반의 재판 끝에 결국 회사의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임을 인정받아 금년 2월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의료보험조합 노조위원장

이 출근 도중 장염으로 인한 복통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중 과로로 인한 재해임을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 보상을 받은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그런데 민변 소속 변호사가 6명이나 되면서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독자적으로 시국사건 변론 정도의 활동밖에 할 수 없고,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점, 거리상의 문제로 서울 본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점이 문제로 부각되어오던 중, 금년 정기총회에서 대전·충청지부 결성에 대한 인준을 받아 드디어 지부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지부 결성 인준과 더불어 김귀덕, 이강로, 김용섭(이상 대전), 남현우(서산) 변호사가 새로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질적·양적 성장을 기하게 되었고, 판현판식을 거행하고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아직 활동규약이 정리되지 않아 그 마련을 위해 바쁘기도 하고, 과연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괜히 일거리를 더 만들지 않았는지 하는 두려움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판식을 치르고 나면 정기적인 모임과 연구를 통해 지부의 위상과 권위를 정립하고, 특히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더불어, 인권보장등 민변 본래의 목적에 걸맞는 활동을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펼쳐나가, 다른 지역 지부 결성의 견인차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변호사와 공공성

강대성

법조 경력이 어느새 10년을 넘었지만 아직도 업무에 별 자신이 없고, 사건을 대할 때마다 예전에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었나 어설픈 기억을 되살리려고 애써보기도 하고, 여기 저기 물어보기도 한다.

개업과 함께 바로 민변 문을 두드리지 않은 이유도 변호사라는 자격을 취득한 것일 뿐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해나가며, 또 사무실은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 것인지 자신이 없어서 우선 남들로부터 변호사, 즉 법률전문가라고 불려지더라도 별로 쑥스럽지 않을 정도의 상태는 만들어놓은 다음에야 대외적인 활동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지내놓고 보니 그도 저도 아니게 되어버린 느낌이다. 개업 초기부터는 이런 저런 연고로 수입되는 각양의 사건을 취급했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도 깊은 지식이 없었는데, 한 2년 반쯤 전에 선배들과 함께 법무법인을 설립한 이후부터는 주로 손해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아 손해배상 피고대리 업무를 보고 있어서 약간의 전문화(?)를 기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관심이 배상금 총액에 집중될 뿐이어서 과연 이론적 다툼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막상 대리인으로 재판에 관여하다보면 의외로 까다로운 구석도 있고, 나름대로 판례로 집적되어 있어서 소송다운 면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법원이나 대리인들이 때로는 법률적 쟁점에 천착하다가 배상액 자체를 별로 증시하지 못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당사자들은 훨씬 현명하여 배상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관심을 늦추는 법이 없는 것 같다.

언젠가 모 보험회사로부터 피고대리를 의뢰받았는데 사안은 아래와 같은 것이다.

직장동료들 수명이 군인대하게 된 동료의 송별회식을 하면서 2차, 3차까지 술을 마신 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 합숙소에 있는 동료 2명은 함께 승용차편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물론 동승한 동료까지 몹시 취해 있는 상태였는데, 운전자가 주행중 반대차선을 가로질러 넘어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바람에 동승한 동료는 즉사하고 운전자는 구속되었다. 구속된 이후 운전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절친한 동료의 사망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크게 느끼고 사망한 동료의 부모에게 위로금 겸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합의금액수도 통상의 경우에 비해 2배 이상 많을 뿐더러, 운전자로서는 몇년 동안 저축한 돈의 거의 전부였다.

그후 운전자는 초범인 점, 많은 돈을 들여 합의한 점, 유가족이 극력 선처를 바라는 점, 땅인도 함께 음주하였고 사고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종결되었다.

그런데 그 후 유가족들이 사고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금의 공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형사합의금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그 전액이 공제되어 오고 있는데, 원고대리인은 피고 주장의 합의금액 및 수령사실을 다투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운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게 되었고, 운전자는 피고 주장에 부합되는 내용의 증언을 마쳤다.

그런데 그 운전자(마침 그 운전자는 보험회사와 같은 계열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피고대리인이 합의금 지급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는 피고대리인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고 있었다)는 재판 후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대리인인 나에게 자신이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 재판에서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유가족들에게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물었다. 나로서는 그런 질문을 받고 다소 민망하였지만 사실대로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즉 당신이 합의금을 준 액수만큼 보험회사로부터의 수령금이 적어진다고. 그랬더니 그 운전자는 깜짝 놀라서 합의금은 자신이 주었는데 왜 보험회사가 이익을 보느냐, 유가족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냐는 등의 말과 함께, 자신과 땅인과의 절친했던 관계, 합의금을 마련한 경위 등을 얘기하면서 억울해했다. 법정 밖 복도에서 그런 뉘드리들을 들으면서 나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나 하고 잠깐 망설이다가 그 운전자에게 조언을 해주기로 마음 먹고, 당신이 지급한 합의금액

만큼 보험회사의 지급액이 적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그 지급감소액(합의금) 상당은 보험계약자가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따로 청구하면 전보받을 수 있으니 전보받은 다음에 다시 유가족에게 돈을 주면 되지 않겠냐고 말을 해주었는데, 그 운전자는 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들은 채 딱 말을 자꾸 길게 하였다. 나는 다른 사건이 남아 있던 차였으므로 명함만 건네주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면 자세히 가르쳐주겠다고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사무실로 돌아온 뒤에 사무장과 여직원에게 사건 기록을 넘겨주면서 그 운전자 얘기를 해놓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다른 일에 파묻히는 바람에 그 일을 잊고 있었다. 한 4~5개월 후에 그 운전자에게서 느닷없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은 내 말을 듣고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겼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것이었다. 나는 금시초문이라 사무장에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더니 한 열흘쯤 전에 그 운전자가 사무실로 찾아와서 상담한 일, 보험회사와의 관계상 우리 사무실이 직접 처리하기가 곤란한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그냥 다른 사무실로 보내면 다른 사무실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우선 자신의 구좌번호로 비용 백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한 일, 비용 입금이 확인되면 친구가 근무하는 다른 사무실로 사건을 보낼 생각이었다는 것, 나에게 미처 보고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등의 얘기를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찝찝하게 생각하던 차에 2~3일 후 보험회사 송무팀에서 득달같이 달려와 항의하였다.

그 일로 인해 사무장은 인사 조치가 되었지만 보험회사는 피고대리인이 피고회사에 불이익한 조언을 해준 점을 강력히 항의하였고, 나로서는 변호사의 공공성을 들어 보험계약자에게 법률적 조언을 해준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보험회사로서도 영리만을

추구하여 법에 무지한 보험계약자의 합의금을 가로채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타일렀으나 그들은 별로 귀담아 듣는 눈치가 아니었다.

하여간 그 일로 인해 그 보험회사와의 고문 관계가 거의 끊어질 뻔했고, 나로서도 한동안 그런 보험회사를 도와준다는 일에 회의가 들기도 했지만, 새해가 되어 그 운전자로부터 연하장을 받은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 됐다.

일상업무를 보면서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것은 평소 변호사의 처신, 능력, 인품과 큰 관계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별로 자신이 없고, 보다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만 든다.



## 초록물고기

이 유 정

### 1. 머리말

현대인들의 문화생활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막강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때가 많다. 박정희 대통령 치하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유신시절 국민학교를 다니고, 전두환 대통령 치하의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친, 그리고 대학에 들어온 이후에는 계절의 여왕이라는 그 좋은 오월에도 최루탄 냄새에 눈물을 흘리며 학교를 다녀야 했던 나와 같은 선세대 - 아니 낡세대들조차 『씨네 21』이나 『키노』같은 영화잡지를 열심히 구독하고 영화에 대해 무언가 안다는 듯 한 마디씩 거드는 것을 보면, 게다가 민변의 소식지에서조차 문학, 음악, 미술 등 수천년의 장대한 역사를 가진 모든 예술을 짓쳐놓고 이제 탄생한 지 100여년밖에 되지 않는 영화예술에 대해서만 소개하는 란을 따로 두는 것을 보면 말이다.

영화가 우리 생활에서 이처럼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80년대만 하더라도 연중행사처럼 영화를 관람하던 나 역시 90년대가 시작된 후에야 비로소 영화관을 드나들기 시작했고, 그 동안 개봉되어 불만만 사람들은 다 본 영화들을 비디오로 빌려보면서 영화보는 일에 취미를 붙이며 그러저럭 영상문화세대에 편승하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아직도 '촌티'를 벗지 못한 나는 영화를 '재미있는 영화'와 '재미없는 영화'라는 두 종류로 구분해놓고 대부분 '재미있는 영화'만을 골라 보기 때문에 「인권영화 소개」라는 매우 심각한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지면에서 '재미'도 있으면서 '인권'과도 관련이 있는 - '좋은 영화 소개'라고만 했어도 고르기가 한결 쉬울 텐데 - 영화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일부터가 무척 부담스럽다. 어쨌거나 이번에도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비디오로 출시된 〈초록물고기〉라는 영화를 소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최근에 본 영화로서는 유일한 것일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재미있다고 생각할만한 영화이기 때문이다.

평소의 지론이지만 뛰니뛰니 해도 영화는 재미있어야 한다.

### 2. 영화소개

만든 사람들

이 영화는 여균동, 이창동, 명계남, 문성근이 모여 설립한 '이스트필름'이라는 제작사의 창립작품으로 이창동 감독이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을 맡았으며,

배우 명계남씨가 기획을, 여균동 감독이 프로듀서를 직접 맡았다고 하여 제작 당시부터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다. 이창동 감독은 「녹천에는 똥이 많다」는 작품을 쓰는 등 소설가로 활동하다가 뒤늦게 영화계에 입문하여 〈그 섬에 가고 싶다〉의 조감독으로 영화를 시작했고,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각본을 써 1996년 백상예술대상 각본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신인 감독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과는 달리 이 영화는 작품성과 흥행성 모두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1997년 한국영화평론가협회가 주는 제17회 영평상에서 최우수작품상, 각본상, 남자연기상, 신인 감독상 등 4부문을 수상했다.

나오는 사람들

주인공 막동이로 출연하는 한석규는 〈서울의 달〉이라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를 유행시키면서 갑자기 유명해진 배우로 〈닥터봉〉, 〈은행나무침대〉에 이어 세번째 영화인 〈초록물고기〉에서는 마치 물을 만난 고기처럼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다. 감독이 어느 잡지와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한석규라는 배우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 이외에도 밤무대 가수인 여주인공으로는 심혜진, 깡패조직의 두목으로는 문성근이 출연하는데 주로 지식인 역할을 맡아왔던 그가 깡패로 출연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다.

줄거리

〈초록물고기〉는 막동이라는 스물여섯살 난 청년이 군대를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시작한다. 막동이는 기차에서 카바레 가수 미애의 빨간 스카프를 우연히 줍게 되고 이를 돌려주기 위해 미애가 일하는 카바레로 찾아갔다가, 미애의 정부인 깡패조

직의 두목 배태곤의 눈에 띄어 주차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타고난 끼(?)는 숨길 수 없는 것. 배태곤의 부하와 한판 싸움에서 오직 깡다구 하나로 승리를 거둔 막동이는 배태곤의 깡패조직의 일원이 되고, 재개발 건축의 허가권을 따내기 위한 자해극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배태곤의 심복이 된다. 김밥을 훔쳐먹다가 감옥으로 끌려간 양아치 시절의 기억을 뼈아프게 간직하고 있는 배태곤은 바로 그 김밥집이 있던 건물 전체를 사들여 새 빌딩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거 배태곤이 모시던 깡패조직의 두목 김양길이 감옥에서 출소하여 길건너편에 카바레를 차리고 부하들을 동원해 배태곤의 조직을 위협한다. 배태곤은 조직을 지키기 위해 김양길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막동이를 시켜 김양길을 살해한다.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막동이마저 살해한다.

제목이 상징하는 것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지 않듯 이 영화에 초록물고기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단 한 번 막동이가 김양길을 살해한 후 공중전화에서 뇌성마비에 걸린 큰형에게 전화를 걸며 어린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 초록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 그때에도 막동이는 초록물고기를 잡으러 다니다가 슬리퍼를 잃어버렸다고 했을 뿐 초록물고기를 잡았다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초록물고기〉라는 제목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영화가 끝날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꿈', '유년시절의 추억', '순수함', '잡을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한 그리움', '사랑'과 같은 단어들 이 떠오를 테니 말이다. 해석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 인상적인 장면 두 가지

인듯 보면 <초록물고기>의 줄거리는 지극히 통속적이다.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를 찾아가는 주인공, 여자는 하필이면 강폐조직 두목의 정부이고, 싸움도 못하게 생긴 주인공은 숨겨진 깡다구를 발휘해 단번에 두목의 심복 부하가 되고, 주인공은 두목의 정부를 사랑하고, 두목을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지만 결국 두목에게 배신당하는 것 등등... 사실은 극장에서 개봉한 이 영화를 보러가지 않은 이유도 영화잡지에서 줄거리를 미리 읽어보고 난 후 보나마나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얼마나 상투적인가? - 하지만 영화는 관습적인 영화문법에서 '반걸음'쯤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이 영화의 인상적인 장면 두 가지. 처음 막동이가 미애를 희롱하는 건달들을 실컷 두들겨준 다음 떠나는 기차를 향해 열심히 달리는 - 어디서 많이 보던 - 장면에서 주인공은 끝내 기차에 올라타지 못하고 건달들을 피해 기차길 옆 울타리쪽으로 달아나는 우스운 신세가 된다. (다른 영화에서라면? 주인공이 달리는 기차에 날렵하게 올라타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말이다.)

또 한 가지는 막동이가 김양길을 살해하는 장면인데, 김양길을 칼로 찔러 살해한 막동이가 피투성이가 된 시체를 화장실로 간신히 끌고간 후 손에 묻은 피를 씻기 위해 변기에 손을 씻고, 공포에 떨며 울음인지 비명인지 모를 신음소리를 내며 화장실 바다의 피를 정신없이 닦아내는 모습은 지금까지 흔히 보아온 그럴 듯한 살인장면 - 살인을 저지르고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옷차림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킬러와 같은과는 전혀 다르고 그런 만큼 매우 참신한 느낌을 준다. 위 두 장면에서 드러나듯 영화는 사실주의에 충실하며 주인공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는데, 그것이 요즘 유행하는 영웅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지극히 통속적인 영화들과의 차이점이 아닌가 싶다.

공으로 내세운 지극히 통속적인 영화들과의 차이점이 아닌가 싶다.

### 에필로그

영화는 막동이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그 이후에 한편의 간단한 에필로그가 덧붙여진다. 물론 별다른 내용은 아니다. 그저 막동이의 가족들이 모여 옛날집을 개조한 식당에서 '토종닭, 영양탕' 장사를 하며 살아가고, 배태곤은 일산 신도시의 평범한 주민이 되어 임신한 아내와 함께 손님으로 찾아와 식사를 하고 돌아간다는 평범한 내용이다.

이처럼 평범한 에필로그를 통해 감독은 일산 신도시, 나아가 중산층 문화가 뿌리내린 풍요로운 90년대의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관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무엇보다도 일산 신도시의 고층 아파트 숲과 막동이의 가족들이 경영하는 음식점을 대비하며 길게 찍기(long take)로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은 도시와 농촌, 강한 자와 약한 자, 새로운 것과 전통적인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약한 자들의 조용한 슬픔과 풍요로움의 이면에 깔린 잔인한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다.

영화의 흐름이나 줄거리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 제작진 사이에서 이 장면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만약 마지막 장면이 없었더라면 이 영화는 통속적인 액션드라마 이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떤 영화든 마지막 장면에는 감독이 관객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게 마련이지만, 특히 이 영화의 에필로그에는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치 편지에서 추신에 담긴 내용이 가장 중요할 때가 있는 것처럼.

### 3. 맺음말

누군가의 표현처럼 '어느 날 갑자기 땅 위로 불쑥 솟아오른' 신도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90년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초고속 경제성장, 중산층 문화, 가족 이기주의, 전통적인 가족관의 붕괴, 개인주의, 가치관의 부재, 부실공사 증후군, 풍요로운 소비 문화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다가 느닷없이 밀려난 원주민들의 소외된 삶 등.

영화는 그 신도시의 모습을 생각난 듯 가끔씩 보여 주지만 관객에게 심각하게 생각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영화는 의미나 주제를 찾아내기 위해 눈 똑바로 뜨고 감상할만한 그런 영화는 아니고, 그저 심심하고 극장에 가기는 귀찮은 날,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다 놓고 편안한 자세로 바라보며 이런 저런 생각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영화다.

하기야 현실이 선과 악, 빛과 어둠, 흑과 백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순수하기 이를 데 없는 청년이 살인자가 되고, 강폐조직의 두목은 평범한 중산층 시민이 되고, 밤무대 가수는 임신한 아낙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특히 강폐조직의 두목인 배태곤이 갖은 고생(?) 끝에 그가 말하는 꿈(?)을 이루어 신도시의 주민 - 평범한 중산층 - 이 된다는 설정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에서 주인공 엄석대가 별볼일 없는 강폐로 전락한다는 결말부분처럼 허탈하고 한편은 쓸쓸하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위해 숨들릴 틈 없이 뛰어오는 동안 우리 사회는 혹시 순수함과 꿈, 가족, 어쩌면 막내동생과도 같이 소중한 그 무엇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 세상은 앞으로 얼마나 여러 명의 막동이를 희생시키게 될 것인가...

# 한국에 과연 '사상·양심의 자유'는 있는가?

김 영 오(96년 서울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

## 1. 들어가며

먼저 제 소개부터 해야겠군요.

저는 96년 서울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을 지내다가 96년 9월 5일 '서울대 자주민주통일 애국 청년 선봉대 조직사건'으로 구속되어 97년 2월 중순 경 집행유예를 받고 나온 학생입니다.

제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 사건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속해 있던 '서울대 자주민주통일 애국청년 선봉대'는 공개 학생운동조직으로서 민족자주, 평화통일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한몫 하겠다고 모인 단체입니다. '애국청년 선봉대'는 <관악 이야기한판>이라는 팽장사업(어떤 정치적 문제에 대한 자유토론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과 각종 선전활동, 서명운동, 모금운동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해오던 단체였습니다. 그러던 중 96년 8월에 범청학련 통일추진과 관련해 공안탄압이 조성되면서 저희들은 구속이 되었고 경찰은 "한총련 배후, 주체사상 지하비밀조직 적발"이라는 황당한 수사발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구속이 되어서 집행유예를 받기까지 법의 지배 하에 있으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 수사의 과정에서

제가 구속되던 때는 8월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이 무참하게 탄압당한 직후였습니다. 당시 저는 한총련이 강행하고 있는 좌경적 투쟁의 참혹한 결과, 학생운동 전체에 쏟아지고 있는 비난, 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외면 앞에서 매우 괴로워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던 때였습니다.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반성해야 하나, 학우들과 어떻게 만나나가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심각하게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9월 5일 새벽, 하숙집에서 난데없는 구속을 당한 것입니다. 구속의 이유는 '애국청년 선봉대'가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친북이적단체라는 것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애국청년 선봉대가 폭력적 혹은 불법적 활동을 벌인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수사의 방향은 '사상·양심'의 부분으로 집중되었습

니다. '애국청년 선봉대'의 활동이 철저하게 시민들과 학우들을 만나고 설득하는 평화적, 공개적 활동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측은 '애국청년 선봉대'가 이적단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친북', '이적' 단체임을 자술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전혀 저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적' '친북'을 강요당했습니다. 종이뭉치를 던져주면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에 대하여」, 「주체사상과 사람사랑의 관계에 대하여」, 「광장사업과 친북의식화의 관계에 대하여」 등을 쓰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별 것 아니구나 그냥 내 생각대로 쓰면 되는 거구나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 쓰고 나니 "너 지금 장난치는 거냐. 임마, 너네가 무슨 봉사단체냐. 임마, 너네 주장을 솔직하게 쓰란 말이야." 그러곤 다시 썼습니다. "이 지식이 정말 안되겠네. 너 주사파잖아, 이 새끼야. 사람사랑이 주체사상에서 나온 거 맞잖아 임마. 뭐 우리시대의 휴머니즘? 웃기고 있네, 너네가 무슨 휴머니스트냐, 너네 북한식 사회주의혁명 할려는 놈들 아냐, 그걸 쓰라고 그걸. '애국청년 선봉대'는 정권을 타도하고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하고자 하는 혁명조직입니다. 사람사랑은 주체사상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야, 임마." 그리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쓰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를 계속하였습니다. 마치 포위망을 치고 죄어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각종 일간지 1면에 「주체사상 비밀 지하조직 적발, 한총련 배후인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가는 걸 보면서 저의 혼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우리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법의 보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우리의 주장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철저히 막혀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고통이 큰 쪽은 가족들이었습니다. 저야

그래도 어찌 보면 그런 쪽으로 단련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주사파의 엄마', '주사파의 형', '주사파의 누나'가 되어버렸고, 거대한 권력과 언론의 횡포 앞에서 가족들은 너무나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주변의 손가락질에 큰소리도 못치고 기죽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송에, 신문에 텍스트가 나가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권력과 언론의 근엄한 꾸밈음 앞에서 '그것은 조작입니다'라는 주장은 너무나 왜소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약한 한 개인을 상대로 이 사회는 경찰과 사법부, 언론이 하나가 되어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폭력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가족을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는 무서운 폭력이었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7, 80년대의 조작간첩사건이나 고문수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많이 민주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정신적 폭력 또한 물리적 폭력 못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제 머리 속에는 문화혁명의 장면들이 지나쳐 갔습니다. '사람아 아, 사람아'라든지에 간간히 나오는 인민재판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는 무수한 지식인들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렇게도 폭력을 당할 수 있구나. 물리적 폭력만 폭력이 아니구나.

정신이 황폐화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 속은 온통 헝클어지고 있었습니다. 설핏 잠을 잘 때도 항상 검열관이 등장하였습니다. "너, 주사파지?" "아니예요." "주사파 맞잖아." "아니예요." "주사파라고 이야기하면 더이상 안 괴롭힐게. 그냥 주사파라고 해." ...

나 스스로 무척 혼란스러워져갔습니다.

'도대체 사상·양심의 자유는 무엇인가', '한국사

회가 이렇듯 사상·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일부러라도 내가 그 금기를 깨나가야 하는 것 아닐까, 저는 주사파가 아니에요라고 하는 건 너무 비굴한 태도가 아닐까, 이들의 공격대상이 주사파라면 오히려 내가 연대를 함으로써 주사파를 지켜줘야 하는 건 아닐까, 독일에서도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한 후에 유대인들을 탄압했지 않은가, 그 뒤에 카톨릭 탄압이 있지 않았나,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건 비겁한 짓 아닐까, '그러나 아닌 걸 그렇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가, '일부러 탄압을 당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 시간에 학우들을 더 많이 만나는 게 옳지 않은가.'

머리 속에는 사상·양심의 자유, 주사파, 연대, 나아가 한다는 생각 등이 실타래처럼 얽혀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주사파라는 개념조차 헛갈리면서 내가 주사파인가 아닌가조차 헛갈렸습니다.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이 주사파인지, 사회에 의해 주사파라고 낙인찍히는 사람이 주사파인지.

### 3. 자유의 비결은 용기일 뿐이다 - 최후진술투쟁을 하기까지

약 한 달간의 수사과정에서 저의 정신은 황폐화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변호사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속에서 조금씩 정신적으로 회복이 되어갔습니다. 또한 이런 경험들을 모두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법의 폭력 앞에 모두들 너무나 무기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경찰, 법, 언론의 폭력 앞에서 그냥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판결이야 어떻게 될지라도 우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상

을 가진 사람인지를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인 최후진술을 통해 이러한 실천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최후진술투쟁이라는 방식이 80년대와 같은 의의 혹은 효과를 내기는 힘들겠지만, 아무튼 아직도 피고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최후진술투쟁을 선택하였습니다. 최소한 이 재판을 보러온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우리 가족과 학교 친구들에게만이라도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사상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정은 크게 3단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판사석이 있고, 그보다 아래에 좌우로 검사석과 변호사석이 있었으며, 그 아래 피고인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중은 이 세계의 바깥에 있었으며, 법의 세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재판을 지켜보고 판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저 높은 곳에 있는 판사석은 피고인을 기죽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판사석은 너무나 높은 곳에 있었고, 마치 판사는 신계에 있으며 오류가 있을 수가 없고, 피고인들은 신의 판결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듯하였습니다.

요식적인 재판과정이 짧게 있었고, 검사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검사의 구형을 무심코 듣고 있는데, 갑자기 '6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상을 못한 바는 아니었지만 막상 6년이라는 말을 듣자 순간 다리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어머니의 호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검사의 구형에 이어, 변호사의 최후변론이 있고, 곧바로 최후진술시간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4.19 당시 회자되었다던 '자유'의 비결은 용기일 뿐이다'를 가슴에 굳게 새기고 말입니다.

준비되었던 내용들을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청중석에서는 순간 약간의 술렁거림이 느껴졌습니다. 검사는 아니꼽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판사는 쇼를 구경하듯이 무심히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지겹다는 듯 하품을 하면서 말합니다. 최후진술은 "마지막으로 저희 자주민주통일 서울대 애국청년 선봉대에게 사상이 있다면 사랑을 사랑하는 사상이 있을 뿐이며, 이념이 있다면 애국애족이 있을 뿐입니다"로 끝났습니다. 몇 달 동안의 사상적, 양심적 혼란 끝에 나름대로 제가 내린 대답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떳떳할 수 있으며, 또한 저 자신에게도 떳떳한 결론이었습니다.

### 4. 마지막

정권과 보수언론이 사회적 약자에게 무차별로 행하는 정신적 폭력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구치소에 있으면서 사회적 폭력에 의한 정신적 황폐화의 경험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겪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몇달째 멍한 상태에서 지내기도 했고, 어떤 분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대인관계가 몹시 공격적이 되는 등 출소 후 사회 적응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들었습니다. 심하게는 정신병에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상·양심의 자유'의 훼손은 이렇듯 한 개인에게도 큰 문제로 다가가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사회 전체가 금기가 많은 사회, 닫힌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의 일정 영역이 금기로 되어 있는 한, 우리 사회는 풍부한 토론과 창조적 실천을 통한 사회의 질적 발전을 이룩해나갈 수 없습니다. 특히나 창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현 시대에 금기가 많은 사회라는 것은 국가적 발전을 위해서도 치명적 약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상·양심의 자유'를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듭니다. 그리고 그 길에 민변과 같은 힘있는 대안세력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 희망이기도 합니다. 힘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 사건 변론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리고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던 정연순 변호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 
- 
- 

## 자료 및 성명서

대한민국 헌법 제100조 제2항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임명 또는 해임

제100조 제2항

### 1. 헌법 제100조 제2항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임명 또는 해임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임명 또는 해임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임명 또는 해임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임명 또는 해임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비로잡습니다.

지난 호 자료 중 pp. 155~161에 게재한 두 건의 기획소송 판결문의 재판부를 '서울고등법원'이라고 표기한 것은 '서울지방법원'의 오키이므로 비로잡습니다.

자료

편집자 주: 이 자료는 5.18 기념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정치학회가 주관하여 지난 5월 8일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5.18 학술심포지움)의 발제문을 저자의 허락을 얻어 전재하는 것입니다. 6월호에 「5.18, 왜 어떻게 일어났으며 무엇을 남겼는가?」(박광주)와 「12.12, 5.18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의 역사적 의의」(박연철)를 게재하였으며, 이번 호에 「광주를 통한 한국민주주의의 유혈통로와 미국의 위치」(이삼성)와 「폭력과 언어의 정치: 5.18 담론의 사회학」(최정운)을 게재합니다.

# 광주를 통한 한국민주주의의 유혈통로와 미국의 위치

1979~80년 미국 대한정책의 치명적 비대칭성<sup>1)</sup>

이 삼 성(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 I. 「광주와 미국」의 문제에 대한 접근

### 1. 광주의 유혈과 한국 민주주의, 그리고 미국

역사에 대한 평가는 많은 경우 결과론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한 한국민주주의의 전개를 가능케 한 아픈 계기였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에 광주와 같은 상처가 필요했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결정론이다. 결과론은 결정론과는 다르다. 결정론은 하나의 역사전개 코스만을 상정하는 것이다. 결과론은 여러 갈래의 역사전개의 가능성을 상정하되, 이미 진행된 역사전개의 여러 고비 간의 인과적 연결성을 반추하는 것이다. 광주의 유혈이 없었다면, 그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피를 흘리지 않고 박정희군사정권을 극복한 가운데 좀 더 일찍이 민주주의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음을 의미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광주의 유혈을 통과했다. 그 유혈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내적 기반의 미성숙이 가져온 결과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군부는 무력으로 자신의 권력지지를 관철했고, 그의 지와 무력행사가 노골화되었을 때, 그에 대한 민의 저항은 일부지역에 국한되고, 그 지역의 저항 또한 유혈의 희생과 좌절, 그것에 다름아니었다.

그러나 광주의 희생은 7년 후 전국적 국민항쟁의 거름이 되었다. 왜 1987년에 그같은 치열한 전국적이며 전계층적인 민주화의 운동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전두환정권이 대표하는 군부질서의 정당성에 대한 총체적 거부, 절대부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총체적/절대의 부정은 광주의 유혈과 희생에 기초를 둔 것이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박정희정권의 역사적 정당성에 대한 부분적 긍정과 부분적 부정이 라는 1980년 한국민의 모호한 역사의식이 광주라는 일부지역 국민의 유혈과 비극을 낳았고, 그러나 그 유혈과 비극, 그 상처의 처절함은 서서히 그러나 확고하게 기존질서에 대한 치열한 부정의 의식을 낳았다고. 그렇게 배태되고 확산된 군부질서에 대한 총체적 거부와 절대의 부정의 의식이 6월항쟁이라는 전국

1) 이 글은 1996년 「역사비평」 가을호에 실린 동일주제의 논문에 수정/보완을 가한 것임을 밝힙니다.

적/전계층적 항쟁을 낳았다고.

모호한 역사의식은 모호한 행동을 낳는다. 역사를 바꾸는 의식은 언제나 치열했고 총체적인 변화에의 지향을 동반했다. 전두환정권의 등장은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론의 역사적 정당성에 대한 모호한 국민 의식, 하나의 의식의 분열상태 속에서 파고들 수 있었다. 박정희 개발독재정권의 성공과 실패는 한국인의 의식에 군사권위주의와 개발독재론에 대한 이중성과 모호성을 띤 국민의 역사의식을 유산으로 남겼다. 한국민주주의는 그러한 모호성을 뛰어넘을 때 가능한 것이었다. 그것에 대한 총체적, 절대적 부정이라는 치열한 역사의식만이 개발독재의 질서에 대한 전계층적인 치열한 저항의 행동을 가능케 했다고 볼 수 있다. 광주는 그 희생을 통해서 군사권위주의의 총체적 어처구니없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절대부정의 역사의식을 생산했다. 그것이 광주가 한국 민주주의의 제단에 바친 것의 궁극적인 역사적 의의라고 생각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여정에서 광주가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할 때, 미국이 선 자리는 어디인가? 어떤 의미에서 1980년과 1987년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행태는 개발독재론에 대한 한국인의 역사의식과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 1960년 4.19의 경우와 같이 전국적/전계층적인 한국인의 반정부 쫓겨난 경우 미국은 대체로 한국 독재정권의 무력동원에 반대하고 견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1987년의 경우는 특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리고 필리핀과 파키스탄과 같은 아시아 나라들에서 전개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의 흐름이라는 국제적 흐름이 있어서 한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이 고립되어 있지 않았다. 탈냉전의 전개라는 국제환경 역시 미국이 한국군사정권의 무력동원에 협조할 가능성을 낮춘 요인이었다. 이란-콘트라스캔들의 폭로와 함께 진행된 레이건행정부 내부의 강경파 집단의 퇴

진도 한 요인이었다. 또한 1980년 군부에 대한 미국의 협조가 초래한 한반도에서 미국의 의미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라는 반민주주의의 열풍 역시 미국의 행동을 신중하게 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인의 전국적/전계층적인 쫓겨난, 한국인 사이에 지역의 경계를 넘어 날로 확장되어가는 광주의 기억과 의식이 한국사회에서 전두환 군부정권에 대한 정통성을 전적으로 상실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을 미국이 깨닫게 했으며, 미국은 전두환정권으로서는 한반도에서 더 이상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정치적 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1980년 5월 미국은 한국 군부정권의 등장을 한편 경계하면서도 다른 한편 한국인의 민주화 운동을 '사회혼란'으로 규정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따라서 정치군부가 무력행사에 바탕해 사회혼란을 수습하는 계획과 그 실행을 동의하고 지원하는 협조적 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미국의 행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신냉전의 전개라는 국제환경 속에서 미국 외교기조상의 안보이상주의가 강화되고 있었다. 둘째, 1979년 이란에서 반미 회교혁명으로 친미정권이 붕괴되고 그 직후 발생한 테헤란 미 대사관의 인질위기 사태로 카터행정부는 제3세계에서 혼란의 예방과 안정이라는 문제의식에 크게 집착해 있었다. 셋째, 한국의 군사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이 당시 제3세계에서의 정치상황에 비추어 국제적으로 고립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에서 박정희정권과 그 기초인 군사권위주의의 역사적 정당성에 대해 미국이 당시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모호한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80년 '서울의 봄'은 전국적/전계층적 쫓겨나기보다는 학생시위, 그리고 사복사태와 같은 노동자들의 산발적인 쫓겨나기로 특징지어졌다. 국민은 전체적으로

민주화를 열망하되,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는 태도가 주를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김대중, 김영삼 등 민주화운동의 제도권 지도자들은 활발한 정권경쟁을 시작했고 상당수 국민이 이들에게 희망을 걸었으나, 박정희정권과 유신의 적자임을 내세우는 김종필 역시 일반 국민의 의식에서 배제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선택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박정희 개발독재와 유신에 대한 이같은 국민 일반 내부의 모호하고 관망적인 태도는 1980년 한국의 민주주의의 희망의 좌절과 군부정권의 재등장 과정에서 당장의 정치안정과 안보이익이라는 단기적인 현실이익에 집착한 미국의 행태를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었다.

결국 1980년 광주의 유혈과 그에 뒤이은 한국 민주주의의 지체를 도와준 미국의 군부협조행태는 한국인 사이에 군사권위주의에 대한 총체적/절대적 부정이 없던 시대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한국 군부에 대한 미국의 협조행위는 면책되어야 함을 말하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박정희정권의 군사권위주의와 개발독재에 대해 당시 한국인의 태도가 이중성과 모호성을 안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안정과 안보'의 이름 하에 민주화운동에 대한 유혈억압에 대한 도덕적 평가조차에서도 한국인의 의식이 이중성과 모호성을 떨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광주를 통해 개발독재에 대한 한국인의 역사의식이 부분적 긍정에서 기존의 군사독재질서에 대한 총체적 부정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당시 군부의 유혈억압에 공모한 결과가 되고 만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대전환을 겪으며 특히 젊은 지식인집단에서 미국에 대한 총체적 부정의 시각이 등장하게 된 것은 그만한 역사적 타당성이 있는 것이었다. '반미'가 내포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라는, 일면 지나치고 극단적인 대외인식은 것처럼 한국 현대사에서 군사권위주의에 대한 총체적 부정으로의 인식

변화와 불가분하게 연결된 것으로 파악할 때, 그 역사적 맥락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1980년 군사 권위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이중성과 모호성을 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당시 정치군부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이는 이중성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미국인들은 당시 미국에 죄가 있다면 범죄가 벌어지는 현장에 '그저 있었을 뿐'인 것 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미국은 하나의 관망자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그랬듯이 미국 역시 기본적으로는 손님이고 구경꾼일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구경꾼도 손님도 아니었다. 미국은 한반도의 정치적 운명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또 그것을 행사한 '참여자'였다. 미국은 1980년에도 물론 한국 국내에 가진 그같은 영향력을 배경으로 '행동'했다. 많은 한국인들이 박정희군사정권의 개발독재와 권위주의에 일면 길들여져 있거나 그 정당성에 대해 모호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다수의 한국인들이 정치민주화를 지향하고 거리에 나서 있을 때, 미국은 자신의 권위와 힘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군부의 무력에 의한 '폭동 진압'에 협조한 것이다. 그리고 그 무력에 의한 폭동 진압은 박정희 개발독재에 관용적 태도를 보인 한국인들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미국은 자신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시 정치군부의 정권장악을 막아낼 수 없었을 뿐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문제는 그 영향력의 정도가 어떠한 한국에서 대내적으로 자신이 가진 법적/실질적 권한 안에서 정치군부의 무력행사를 정당화해 주었고, 국제적으로는 그러한 유혈이 낳자한 전두환군부정권의 국제적 고립을 막는 방패막이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데 있었다.

1980년 봄 정치군부의 행동은 힘의 역학에서 가

능한 일이었지만, 그 힘의 역학을 이용해 민주주의라는 공공선을 침해한 행동에 대하여는 역사적 범죄로 간주하고 그것을 단죄한다. 전두환정권이 끝난 이후 전두환과 그의 참모들에 대해 한국의 법정이 행사해 온 재판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힘의 역학과 현실정치를 핑계로 1979년 군부의 등장과 1980년 5월 군부의 무력행사에 힘을 실어주고 그 유형의 결과를 국제사회에서 변호해준 미국의 행동에 대한 평가도 현실인정이라는 논리에 매몰될 수는 없다. 그리고 실제 1980년 광주에서 미국이 군부의 무력행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 미국이 현실적으로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었고, 또 그것이 과연 얼마나 중대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미국은 되짚어보아야 한다. 특정시기 특정지역에서의 미국의 국익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객관적 지상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차원을 가지며 상당한 주관성을 띤다고 할 때, 광주에서 한국의 정치군부에 대한 미국의 협조는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며, 그 선택이 내포했던 부정적 의미에 대한 반성과 이를 훗날의 교훈으로 삼는 태도는 촉구해 마땅한 일이 될 것이다. 학문은 도덕과 다르다. 그러나 학문은 현실의 무한한 긍정과도 다르다. 그것은 과거의 비극을 되돌아보고 훗날의 역사전개에 대비하기 위한 사실적인 동시에 규범적인 판단의 근거들에 대한 끝없는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광주에서 미국의 행태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을 시도해보려고 한다.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지침과 내용의 줄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교정책론 일반과 비추어보면서, 광주에서 미국의 행태에 대한 결정론적 인식을 파하고 그것을 당시 미국의 한 '선택'으로 보는 시각에 주력한다. 둘째, 미국의 그러한 선택을 촉진한 미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본다. 셋째, 그런 상황 속에서 카터행정

부의 인권외교가 내포했던 이중성과 모순들을 살핀다. 지역적 편차와 시간적 편차를 살핀다. 넷째, 그런 맥락을 반영하면서 1979 이후 카터행정부의 대한정책기조에도 일정하게 일어나고 있던 변화에 주목한다. 특히 1979년 여름을 정점으로 본격화되는 '한미 관계정상화'의 움직임, 그리고 그것이 미국정책결정자들의 인식에서 특히 '이란인질위기' 사태와 맺고 있던 연관을 주목한다. 다섯째,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세력의 군사쿠데타 직후, 그 쿠데타의 성격을 규정짓는 과정에서, 윌리엄 글라이스톤 주한 미국대사와 미국무부의 홀부르크 차관보 및 밴스 국무장관 사이에 오고간 전문의 의미를 주목한다. 미국이 이후 한국에서 전개될 사태에서 군부의 정치적 행동들을 한반도에서 안정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삼고 이를 정당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시사하는 증거로서 이 '홀부르크 전문'이 가진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여섯째, 1980년 5월 초부터 학생과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시위가 가열되면서, 한국군부가 군대의 대민투입을 계획하고 이에 관련해 진행된 미국과의 사전협의, 그리고 5.18을 전후한 군부의 군사행동실행과 이에 대한 미국의 협조행위를 검토한다. 결국 1980년 5월의 미국의 대군부협조행위는 12/12사태시 전두환의 군사쿠데타를 '쿠데타'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한 '홀부르크 전문'과 맥이 닿아 있으며, 이것은 1979년 여름 박정희 군사유신정권과의 '관계정상화'의 연장선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 전체에서 이 시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른바 인권외교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분열현상, 즉, '산발적 인권외교'와 '권위주의정권과의 밀월'이 공존하는 현상을 주목하려고 한다. 이것은 이 글에서 강조하는 1979~80년 시기 미국의 대한정책이 내포한 '치명적 비대칭성' 논의의 한 핵심이 된다.

## 2. 외교정책 접근시각과 1980년 미국의 대한정책의 인식

1980년 5월 한국 정치군부가 당시 한국국민의 민주화열망과는 반대로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총검으로 군부독재를 연장하려 했을 때, 그리고 그러한 정치군부의 음모와 시민의 저항이 특히 광주에서 정면으로 대결했을 때,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미국이 1980년 5월 22일경 20사단의 광주투입계획을 한국군부로부터 통보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사실은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등 당시 미국의 주요언론들이 미국방부 관계자의 발표를 근거로 이미 사실로서 보도했다. 또 당시 주한미사령관 존 위컴과 주한미대사 윌리엄 글라이스톤의 증언과 주장 속에서도 확인되어온 바 있다.<sup>2)</sup>

1996년 초에 한 미국 언론인의 노력으로 공개된 광주관련 미국무부 외교전문들이 추가로 밝혀준 부분은 광주에서 시민에 대한 군부의 무차별학살행동이 진행된 후 20사단의 광주추가투입을 승인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태가 전개되기 전인 5월 초순에 당시 가열되어가는 조짐을 보이던 한국의 학생과 시민 그리고 광부 등 노동자들의 민주화와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 본격화해가는 상황을 한국의 신군부가 대민 군사행동으로 대응할 계획을 세웠으며 미국은 이를 사전에 동의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1996년에 공개된 미국무부 문서들이 광주와 관련한 미국의 인식과 행동에 대해 말해 주고 있는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정치군부의 대민무력행사에 대한 미국의 협조행위를 증거하는 개별적인 행동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간사회와 국제질서에서 바람직한 것, 즉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간사회와 국제질서, 즉 현실의 역사에서 무엇이 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둘러싼 몇 가지 다른 세계관에 따라 달리 해석되기 마련이다. 특히 냉전시대를 포함한 현대 국제정치학을 지배해온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본다면, 그같은 미국의 행동은 이상적인 행동은 아닐지 모르지만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행동이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 정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냉정한 계산, 그리고 당시 한국의 정치에서 무엇이 가능한가에 대한 냉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실정치를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 등 한국신군부의 '질서회복' 노력에 협조했을 뿐이다. 미국은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선택을 했을 뿐 이것을 어떤 이상주의적인 도덕적 잣대로 질타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현실주의적 국제정치론의 핵심개념인 '권력정치'(power politics)의 관점에서 미국의 행태를 이해하고 수긍하는 것이다. 국가의 권력정치적 행태는 시대와 상황에 따른 도덕적 시비를 초월하는 하나의 초역사적인 인간과 국가의 행동원리로 간주된다. 1980년 5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행동은 그러한 초역사적 보편적 원리를 재확인해준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권력정치 결정론적 결과를 낳고 있다. 당시 미국의 정치권과 행정부를 채우고 있는 인물과 그들의 인식과 사상의 특성과는 큰 관계 없이 미국은 어떤 행정부도 그 상황에서는 동일하게 인식하고 동일하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결정론적 가정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정론적 인식의 면에서는 당시 한국을 비롯한 제

2) 줄고, 「광주민중봉기와 미국의 역할: 총체적 인식을 위하여」, 『사회와 사상』 1989년 2월호: —, 「마크 피터슨의 미국의 광주 무책임론을 비판함」, 『사회와 사상』, 1989년 5월호: —, 「미국무부의 12.12/광주 답변서를 비판함」, 『신동아』, 1989년 8월호: —,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 광주항쟁, 민족통일, 한미관계」 (서울: 한길사, 1993) 참조.



3세계의 정치상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제국주의라는 문제들에서 파악하는 맑스주의적 관점 역시 크게 예외가 아닐 것이다. 제국주의론의 철학적 기초인 맑스주의는 국제정치사각으로서의 현실주의와는 달리 국가들의 권력정치적 행태를 초역사적 또는 물역사적인 보편적 원리로서가 아니라 지배와 피지배, 계급적 착취가 존재하는 사회구조와 그 위에 선 국가들의 국제적 질서에서 나타나는 것, 즉 역사적 제도의 소산으로 보았다. 그러나 맑스주의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규정된 자본주의질서가 지배하는 국제질서에서 국가의 행동은 불가피하게 경제안보와 군사안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국가와 자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맑스주의의 두 가지 흐름으로서 흔히 도구주의적 관점과 구조주의적 관점이 구별된다. 도구주의적 관점은 미국의 국가는 미국 자본의 경제적 안보를 위해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미국 국가의 대외정책은 국가가 자본가들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제이익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때로 개별적인 미국자본가들의 이익과 상충되면서도 전체적으로 미국자본주의의 대외적 팽창과 유지에 봉사하는 틀을 유지한다는 논리에 강조점을 둔다. 국가는 개발자본가집단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미국 자본주의 전체의 안녕과 팽창을 지원 하는 거시적 안목을 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기여하는 경제 및 군사안보적 차원의 정책들을 국가가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해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주의적인 맑스주의의 관점은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개별자본가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정치적·문화적 가치를 미국 대외정책의 이념적 기초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다소 유연한 사고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온 맑스

주의적 제국주의론은 경제·군사전략적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개입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국가는 의당 제3세계에서의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추상적 가치보다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대외정책을 펼 것으로 파악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현실주의적 권력정치론과는 다르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결정론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맑스주의적 이론도 그와 같은 관점을 취한다면 맑스주의자는 1980년 5월 한국에서 미국은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게 예정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맑스주의가 상당부분 현실주의와 마찬가지로 어떤 자본가집단이나 국가가 추구하는 이익은 이미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으며 국가와 집권세력은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에 맞게 행동한다는, 국익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객관주의'적 시각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한 사회, 한 나라의 집권층 또는 국가의 지도집단이 언제나 자신들의 전체적인 이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실제 언제나 그러한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 국익'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그에 대한 규정은 적어도 어느정도는 항상 주관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1980년 5월 한국에서 미국이 한국정치군부의 대민군사행동에 협조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때, 그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에서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이익을 취하는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이라고 미국정부 고위관리들이 판단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그러한 판단은 처음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가? 현실주의적인 권력정치적 논리에서만만이 아니라 맑스주의적 관점에서도 그러한 판단이 불가항력적인 것인가? 나는 맑스주의적 관점 안에서도

결정론적 인식과 비결정론적 인식간의 긴장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가 적어도 구조주의적 맑스주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긍정하고, 또 정치적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비교적 추상적일 수 있는 가치들이 나름의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상황에 따라서 미국 국가와 자본가집단들의 '장기적인' 이익계산에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긍정한다면, 1980년 5월 한국에서 미국의 행동은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다소 성급한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곧 1980년 5월 미국이 한국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이익이나 가치의 개념에 어느 정도의 주관주의적 성격과 다양성을 부여할 공간이 있음을 말한다. 객관적으로 이미 규정된 이익과 그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따라 당시 미국의 대한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당시 한국에서 미국의 이익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띠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 즉 상대적으로 열린 역사적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1980년 5월 한국에서 미국의 행태를 결정한 것은 당시 한국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전략적·경제적 이익이라고 뭉뚱그려 간결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인들이 그때 자신들의 전략적·경제적 이익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었던 그 당시 시대상황의 특정한 조건들, 그리고 당시 미국 정책결정집단을 구성하는 인물들, 그들의 정치세력적 배경, 그들의 인식의 특성 등의 복합적 결합의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세력에 따라서는 한국에서 미국의 이익을 편협하고 단기적인 군사적·경제적 이익에 입각해 규정할 수도 있고, 비교적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신들의 안보·경제이익을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한

국의 정치적 민주주의나 인권의 문제와 같이 미국인들에게는 다소 추상적인 차원의 가치도 인식여하에 따라서는 미국 내 특정 정치세력의 관점에서는 한국과 동북아에서 미국이 자신들의 장기적인 헤게모니적 위상을 정립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가치로 인식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것은 같은 정치세력, 같은 인물들일지라도 그 시대의 분위기, 그 시대의 총체적인 상황 - 크게 보아 국제정세와 미국내 정치구도 등 두 가지 측면 - 이 변화하면서 한국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점에서의 미국의 국익을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 시점에서 미국의 대외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정치세력(행정부와 의회 등을 포함한 정치권)과 그 시대상황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특정 시점 특정 장소에서의 미국인들의 국익에 대한 인식이 가변성과 유동성을 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보는 것이다. 시대상황을 이끌어가는 주도세력의 세계관과 에토스, 그리고 그것과 상승작용을 하면서 형성되고 변화되어가는 시대의 상황이 두 가지가 1979~80년 역사적 과도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국익의 인식과 정책선택에 의미있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점을 긍정하는 것이다.

미국 대외정책의 성격에 대한 이같은 상대적으로 유연성있는 맑스주의적 인식은 흔히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국제정치적 시각과 맑스주의가 만나는 지점이 될 수도 있다. 철저하게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인식론적 기초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자유주의의 국제정치론은 실제 구체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개인들과 집단들의 인식(또는 오인), 그들의 행태, 그들의 가치관, 성격적 특성을 중요한 정책결정변수로 간주한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지향하는 가치나 국익의 개념에서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절대시하지 않는다. 인권과 민주주의 또는 여러 가지 미국의 문화적

가치들이 미국의 대한정책에 투영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런 점에서 자유주의 시각은 현실주의나 일반적 맑스주의가 경도하기 쉬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결정론적 성향을 견제할 수 있다. 1980년 한국에서 미국의 정책을 이해함에 있어서, 현실주의나 맑스주의는 미국이 추구하는 안보·경제적 이익들을 규정하고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지만, 자유주의론자들은 미국이 나름대로 인권외교와 민주주의의 가치의 차원을 부각시키거나 또는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경우 그것의 원천적 불가능성보다는 그 반영을 억제한 미국 외적인 제약요인들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분석경향은 미국의 대외 정책분석에 구체성과 다양성을 부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방법론적 개인주의 접근의 일반적 문제들을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 미국 대외정책 결정과정을 파악한 형태로 이해하고 그래서 개별적 사건들을 관찰하는 역사적 연속성, 그리고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미국 대외정책 행태의 패턴들과 그 구조의 문제를 주목의 대상에서 소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1980년 5월에 극적으로 표출되는 이 시기 미국의 대한 인식과 정책을 분석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몇가지 접근법상의 긴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이 한반도 현대사에서 자신의 정책결정에서 안보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했고 그것이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행태에 반영되고 또 그것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라는 것은 얼마든지 단기적·장기적 인식간에 긴장이 유발될 수 있고, 그 긴장의 공간에는 그 시대의 상황과 또 그것을 인식하는 미국 대외정책 주도집단의 정치적 성격과 가치관 그리고 그것의 시기적인 변화에 따라 상당한 유동성이 끼어들 수 있다는 것을 긍정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할 때 미국이 카터정권 당시에 스스로 부각시킨 인권외교와 실제 그 전개, 그리고 그것과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미국의 행태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전제한다. 바로 이 점에서 필자는 카터행정부의 내세운 인권외교의 성격을 몇가지 다른 차원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카터정권의 인권논의가 전적으로 유의미했다거나 또는 그와 정반대로 전적인 위선이나 허구에 불과했다고 단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 필자는 1980년 5월 한국 신군부의 대민 군사력사용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포함한 미국의 적극적 협조의 자세가 전적으로 미국외교의 본질적 성격의 결과라고 단정하는 것을 피할 것이다. 그러나 몇가지 중요한 의미에서 미국의 그같은 행동은 1980년 5월 훨씬 이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할 것이다. 그것은 12.12 사태 직후 리처드 홀브루크의 전문에 나타난 미국의 인식과 행동계획에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79년 7월 1일의 한미공동성명과 그것이 의미하는 카터행정부와 박정희정권 간의 '관계정상화'에서 이미 1979년 말 이후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대응의 기본골격, 그리고 그 안에서 인권문제의 부차성과 주변성이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

그리고 카터행정부의 1979년 초부터 그러한 박정희정권과의 관계정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면서 결국 1980년에는 전두환 신군부의 권력장악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기에 이르는 미국의 국내외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카터행정부의 자유주의의 이중적인 성격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그것은 미국 자본주의와 미국 국가의 성격에 대한 본질주의적 분석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자본주의와 그 외교의 본질이 특정한 시점과 장소에서 고유한 형태

로 구현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이는 것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글은 1980년 5월 한국의 신군부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협조 또는 공모를 하나의 음모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을 피할 것이다. 그것은 음모로 보기에는 이미 하나의 공개된 정책이었고 뚜렷한 논리성과 일관성 그리고 어느정도 예측가능성을 가진 1979~80년 시기 미국외교의 기초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런 의미에서 1980년 5월 미국의 대군부협력행태를 하나의 고립적인 행태, 하나의 우연한 선택으로서보다는 적어도 1979년 초부터 일정한 흐름으로 굳어져가고 있던 한 미국외교기조의 연장선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예측가능성이 존재했다는 논지를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하나의 필연이 아니라 선택이지만, 일정한 예측가능성을 가진 선택이었다는 말이 될 것이다.

## II. 카터행정부 대한정책의 성격과 그 역사적 맥락

### 1. 카터행정부 '인권외교'의 지역적 편차

1970년대 말에서 1980년 광주에 이르는 기간에 미국의 대한정책의 기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으로는 카터행정부의 대한정책에 대한 이해를 혼란시키는 주요요소, 즉 인권외교라는 자유주의적 슬로건과 또 실제 그것이 상당부분 거론되고 실천된 측면이 있는 것을 1980년 5월 신군부와의 적극적 협조라는 사실과 어떻게 동시에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일정한 시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카

터정권의 인권외교가 처음부터 세 가지 차원의 긴장된 전선을 안고 있었다는 점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첫째는 지역적 편차이다. 카터행정부는 그 이전 공화당 정부들과는 달리 아르헨티나와 칠레 등과 같이 미국의 군사전략적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지 않은 남미의 독재국가들에 대해서는 무기 금수조치와 같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인권기준외교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란과 한국과 같이 대소봉쇄전략에서 안보전략적 이해관계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역에서는 카터정권의 인권외교는 상대적으로 매우 파상적인 것이었다. 이 문제는 데이빗 포사이스가 이미 정확하게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카터의 인권외교는 제3세계의 친미독재정권이 맑스주의 정치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지 않고 있는 나라로서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나라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했다.<sup>3)</sup> 그래서 카터의 인권외교는 라틴 아메리카에만 한정되는 '라틴 아메리카 정책'에 불과했다고 포사이스는 비판했다. 즉 아르헨티나와 칠레같이 군부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 맑스주의세력들을 일망타진하고 미국이 대소경쟁에서 군사전략적으로 그렇게 의존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에서 미국의 인권외교는 상징적 적용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 크게 비중을 두는 중동의 회교보수정권들의 일상적인 인권유린은 미국의 인권압력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이란 사정권의 악명높은 사바크정치는 카터정권의 비판대상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중동의 빛'으로 높이 칭송되는 아이러니를 낳았다.<sup>4)</sup> 포사이스는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특히 군사적으로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한국

3) David Forsythe, "Human Rights: Realism, Radicalism, and Reform", in David P. Forsythe ed., *American Foreign Policy in an Uncertain World*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4), p.277.

4) Sanford J. Ungar, "The Roots of Estrangement", in Sanford Ungar ed., *Estrangement: America and the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6.

에 대해서도 카터의 인권외교는 실질적으로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그는 카터의 인권외교는 “급진적 성격(철저성)이라고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카터행정부)는 아무리 단기적인 안보적 이익이라도 그것을 희생시키고 인권외교를 추구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미 국방장관 해롤드 브라운이 1979년 10월 초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에서 맡고 있는 방위역할을 빌미로 한국에서 정치적 변화를 모색하는 무기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개선언한 것은 그러한 예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었다.<sup>5)</sup>

## 2. 카터행정부 인권외교의 시간적 편차

미국 인권외교가 내적으로 안고 있던 긴장의 두번째 요소는 시간적 편차다. 이것은 카터행정부의 대외 정책환경으로서의 국제질서와 미국 내 정치역학이라는 당시 시대상황과 그것의 변동의 차원이기도 하다. 1960년대 중엽에 본격화해서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미국의 베트남전쟁 개입 후유증과 워터게이트 추문 등, 미국 국가의 권력이 대내외적으로 타락한 방식으로 남용되어온 데 대한 강한 자기비판의 기풍에 바탕한 자유주의의 분위기 속에서 카터행 정부는 등장했다. 그것이 카터정권의 도덕정치와 인권외교의 슬로건을 가능케 했다. 그것은 또한 전후 세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적 주도권이 도전받는 데 대한 미국 내 보수와 리버럴 간의 대응전략의 차이와 의식의 분열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세계적 패권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와 그것이 초래한 부도덕성에 대한 인식과 비판이 공존했던 때이다.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월감과 함께 워터게이트에서 드러난 미국 민주주의의 부패와 타락의 가능성에 당혹감

과 경계심이 공존했다. 카터행정부의 대내외정책은 이같은 미국의 의식분열시대의 반영인 측면이 있다. 닉슨행정부가 처음에 시도했다 중도하차한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재차 거론한 것, 그리고 코리아게이트로 대표되는 한국 유신독재정권의 추악한 대미로비활동과 인권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비판과 조사활동, 박정희정권의 핵개발 기도로 그것이 초래할 여러 가지 역기능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것처럼 미국이 국내의 적으로 처한 의식분열상태 속에서 한미관계의 긴장된 한 국면을 조성하는 상황적 기초가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그같은 의식분열은 미국이 그간 추구해온 대내외정책의 관성을 유지하려는 힘과 그것의 남용들과 타락상을 도려내려는 힘간의 긴장과 갈등이었고, 그것이 한미관계에서는 박정희정권에 대한 한편에서의 비판과 다른 한편에서의 한미관계 공고화노력으로 이중적으로 표출되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경향이었지만, 그것은 또 시간적으로 편차를 보이며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터정권 출범 초반인 1977~78년 기간은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시기였다. 반면에 1979~80년의 카터정권 후반부는 과거의 관성과 그를 지지하는 정치세력의 힘이 우세해지는 시기였다. 이 점은 미국의 대한정책에서는 카터행정부와 의회가 다같이 한국의 박정희독재정권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1979년 6월 말~7월 초에 이루어진 카터대통령의 한국방문과 카터-박정희 간의 정상회담으로 ‘승화’된다. 카터정권의 대외정책의 이같은 시간적 편차는 초기에 어느 정도 인권외교를 적용했던 나라들, 즉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경우에서도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인권정책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에서 가장 노골

적으로 드러났다. 그 증거는 의미심장하게도 한국에서 정치군부에 의한 광주학살의 초연이 아직 역연했을 1980년 5월말에 카터정권이 아르헨티나의 살인적인 군사독재정권에 대해 종전에 취했던 무기금수 조치를 철회하려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당시 국무부 인권담당차관보였던 패트리샤 데리안은 1980년 5월 말 카터행정부가 취하려 한 이 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카터행정부를 떠날 의사를 언론에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곧 아르헨티나에 대한 중대한 정책전환이 있을 것이다. (카터정권은) 이 정권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 정권에 대한 공식적인 비판을 중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sup>6)</sup> 데리안은 ‘워싱턴의 외교정책수도집단’(foreign policy establishment)과의 싸움에서 스스로 지고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한 그녀의 좌절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당시 워싱턴의 전반적 분위기를 묘사하는 가운데, “(서방과 제3세계 사이엔) 문화적 수준 차이가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등의 몰상식한 주장들(senseless arguments)”이 (카터행정부 안팎을)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초기에 인권외교를 강조하는 듯하던 카터정권의 고위관료들이 1980년 5월의 사태를 두고 “광주사태는 인권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동북아의 안정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미국 국익의 문제”라고 공언하기에 이른 배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카터정권의 인권외교 거론이 이처럼 시간적 편차를 보이는 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카터정권의 인권외교는 슬로건의 성격이 강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미국의 이해가 걸린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철저한 현실주의적 권력정치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하나의 본질주의적인 결정론적 관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다른 두번째 이해방식은 카터정권 초기와 후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카터외교의 대내외적 환경에 일어난 변화를 카터인권외교의 향방에 의미있는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절대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해방식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 상황의 변화를 개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본질주의적 이해방식은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당시 상황에 대한 실증적인 인식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이해를 풍부히 할 필요를 갖게 되는 것이다.

사태의 전개와 그 구조의 성격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는 또한 특정 시점에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미국외교의 ‘본질’을 확인하는 기본적 조건이기도 하다.

1979년이 카터외교의 환경변화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국제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고, 그것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미소관계의 전반적인 냉각이며 다른 하나는 이란의 친미 독재정권 사의 몰락으로 대표되는 제3세계에서의 반미 혁명들의 진전이다. 이 두 가지 점은 다같이 미국의 대한정책고려에서 대소봉쇄를 재확인하기 위한 한미안보동맹조치의 거론과 한국에서 이란사태와 유사한 성격의 정치적 격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서 1977~78년 기간의 카터정권 초기 불편했던 한미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한미동맹관계를 강화한다는 문제의식이 미국의 대한정책을 지배하고 있음을 이번 공개된 국무부 외교문서들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우리가 1979년 이후 미국의 대한정책의 커다란

5)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19, 1979. 이 날짜 기사에서 소급 보도.

6) The New York Times, May 31, 1980.

맥락으로서의 미소관계의 냉각, 즉 제2차 냉전 또는 신냉전으로의 전환을 말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신냉전의 전개에는 카터행정부의 대외정책의 이중성이 처음부터 중요한 추진력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신냉전의 발전이라는 외적인 상황은 사실은 카터외교의 내재적 성격의 구현에 다름 아니었다는 말이 된다. 또 그렇다면 그것은 카터외교의 외적 환경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카터외교의 성격의 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카터외교의 국제환경적 변화를 얘기하는 것은 복합적인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뜻한다.

먼저 신냉전의 전개에 카터행정부의 역할이 거론될 수 있는 것에는 카터외교의 진보적 측면과 미국의 교의 내재적인 보수적 성격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다. 카터행정부의 인권외교는 그 자체로서는 리버럴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잘 적용되지만 한다면 그것을 비판할 일은 애당초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제3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자신이 직접 개입하거나 독재정권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인권을 유린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그 문제를 피상적으로만 거론하면서 소련과 동구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공격적으로 인권을 거론할 때, 그것은 미소관계를 긴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카터의 인권외교는 앞서서 포사이스가 지적한대로 라틴아메리카의 몇몇 나라에만 상징적으로 적용된 '라틴아메리카정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동구권에 비대칭적으로 부풀려 제기된 '반공주의 성전'(anti-communist crusade)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sup>7)</sup> 그 결과 카터의 인권외교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카터정권 초기부터 미소관계를 냉각시키고 그런 가운데 신냉전이라는 악화된 국제환경을 촉진시켰다. 그렇다면 그것은 미국의 제3세계 동맹국 독재 국가들에 대한 카터의 인권외교의 적용 가능성을 내재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만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카터행정부의 대소군사정책이 다소의 변화요소와 함께 그 전의 공화당행정부들과 마찬가지로 강한 냉전적 성격을 처음부터 안고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다. 한편으로 미국외교사자들 사이에 카터의 초기 대외정책은 전례없는 자유주의적 성격을 띤 비군사주의적 노선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가디스 스미스는 카터의 외교정책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국내정치에 불러일으킨 뉴딜이라는 혁신에 상당하는 '외교정책에서의 뉴딜'을 시도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sup>8)</sup> 중동평화협상의 추진, 파나마운하조약의 추진, 쿠바와 베트남과의 관계정상화 시도, 한국으로부터의 미군철수 계획, 무기수취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한 대외무기판매규제,<sup>9)</sup> CIA 활동에 대한 부분적 제약<sup>10)</sup> 등이 그 표현들로 간주된다.

그러나 스미스가 잘 지적한대로 그러한 외교정책에서의 뉴딜은 곧 울드필로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프

7) Fred Halliday, *The Making of the Second Cold War* (London: Verso, 1986), p.217.

8) Gaddis Smith, *Morality, Reason and Power: American Diplomacy in the Carter Years* (Hill and Wang, 1986), p.8.

9) 카터행정부의 무기판매정책의 개혁과 그 원상복귀에 대해서는 Michael Clare, *American Arms Supermarket*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4)를 참조.

10) 카터행정부 하에서 시도된 CIA활동감사강화노력과 그 실패에 대해서는 Mark M. Lowenthal, *US Intelligence: Evolution and Anatomy* (Washington, D.C.: Praeger with CSIS, 1984), pp.48~55; Thomas Paterson, "Oversight or Afterview?: Congress, the CIA, and the Covert Actions since 1947", in Michael Barnhart ed., *Congress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7), p.164.

렛 할리데이는 카터의 외교정책노선이 처음부터 현대 미국의 대소 냉전주의 외교정책의 골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미소관계의 긴장과 냉각을 결과했다는 사실을 잘 지적하고 있다. 할리데이는 카터의 외교정책 접근방식을 '화해와 동시에 호전성을 강조하는 미국 남부인들의 접근방식'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진단한다. 그는 카터외교의 이 같은 이중성은 그가 1976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그의 공화당 전임자들의 지나친 군사중심주의를 비판함과 동시에 포드 대통령이 1975년 헬싱키협정과 제2차 전략무기제한협상에 관한 블라디보스토크 각서(Vladivostok memorandum on SALT-II)에서 소련에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했다고 비판한 행태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sup>11)</sup> 카터는 초기에는 이러한 두 가지 요소들 사이에 모호한 양가적 태도(ambivalence)를 유지했으나, 그것이 정권 후반부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제2차 냉전을 촉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리데이는 분석한다. 그가 지적하고 있는대로 카터의 대외정책노선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냉전주의'(liberal Cold War response)였다. 그는 소련과의 전면적인 대결을 주창한 전형적인 냉전주의자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소련과의 대타협을 선명하게 선호한 것도 아니었다. 카터는 이 모호한 이중성을 유지함으로써 소련을 다루고자 했으나 그 정책은 통하지 않았고 특히 나중에 언급할 제3세계에서의 혁명적 상황은 그러한 정책의 국내적 호소력을 파괴시켰다. 그에 따라 카터정권의 대외정책은 후반부에 가서는 그러한 모호한 양가적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직선적으로 냉전주의적 대결과 군사주의

11) Fred Halliday, p.214.

12) Fred Halliday, p.217.

13) Halliday, p.216.

14) Walter LaFeber, *America, Russia and the Cold War, 1945~1990* (New York: McGraw-Hill, 1991), 6th edition, p.298.

로의 복귀를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카터외교의 이중성은 제2차 전략무기제한협상과 관련해서도 드러났다. 카터는 이 협상을 지속하고 결국 소련과 그 협상을 마무리지었지만 그 제한협상에 소련과 서독이 포함시키고자 했던 유럽에 배치된 전역미사일들을 제외시키는 바람에 그 협상이 불구화되고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 문제는 1974~76년 사이에 미소간 협상에서 최대 이슈였는데, 카터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카터의 국무장관 벤스가 맨 처음 방소해서 밝힌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한 소련측의 제의를 거절한 것이었다.<sup>12)</sup> 무기개발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중적 요소들이 혼재했다. 카터정권 출범초기인 1977년 6월 카터는 B-1폭격기의 생산을 취소하면서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크루즈미사일의 생산을 강행하기로 했으며, B-1의 취소를 훨씬 상쇄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스텔스폭격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sup>13)</sup>

윌터 라페버는 카터행정부가 군사주의노선으로 회귀한 시점을 대체로 1979년 중엽으로 파악하고 있다.<sup>14)</sup> 나중에 1980년대 레이건이 대규모를 추진한 군비팽창은 사실상 카터행정부가 바로 1979년 중엽에 발전시킨 것의 확대판에 불과한 셈이었다. 카터행정부는 페르시아만지역에 미국의 군사기지들을 건설하고 특히 중동지역 등을 염두에 둔 제3세계 지역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이른바 신속배치군이라는 것을 신설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은 미 국방예산의 상당한 수준의 증액과 궤를 같이 한 것이었다. 이것은 소련과의 대화의 중단과도 일치했다. 브레진스키는 당시 미소관계를 "대화도 없고 억지도 없는 상황"

(neither dialogue nor deterrence)이었다고 묘사했다.<sup>15)</sup> 제2차전략무기제한회담(SALT-II)는 타결되었지만 소련과의 군비통제에 대한 미국내적인 정치적 기반은 닉슨행정부때에 비해 오히려 더 약화되고 있었고, 그 결과 전략무기제한협상은 미 의회의 비준신청 자체를 포기한 채 사문화되어가고 있었다.

라페버는 바로 이같은 카터행정부의 군사주의로의 복귀가 1979년 말에 일어난 소련 역시 군사주의적 모험에 경도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고, 그 한 예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소련의 무모한 군사개입이었다고 이해한다.<sup>16)</sup> 소련은 그해 12월 27일 10만의 군대를 적대적 중국의 등장과 광신적 모슬렘세력의 이란 장악으로 취약해진 남쪽 국경에 대한 안보적 관심에서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해 이슬람 게릴라들과 긴 소모전에 돌입했다. 이러한 소련의 행태는 물론 미국의 신냉전정책을 더욱 본격화시켰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그러한 악순환에 카터정권이 1979년 전반부에 보인 군사주의적 회귀가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카터외교의 이중성은 카터외교진용의 인적 구성에서도 반영되고 있었다. 강경한 냉전주의자로 잘 알려진 브레진스키가 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으로 진을 치고 있었고, 베트남전쟁 당시 공군장관을 역임하면서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지휘한 해롤드 브라운이 국방장관으로 기용되어 제3세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능력을 제고하는 작업을 진두지휘했다.<sup>17)</sup> 포드정권 하에서 대소련 강경책을 주창해왔던 제임스 슬레

진저는 카터정권의 에너지성장관으로 들어앉았다. 또 카터의 개인고문이었던 마셜 슈만(Marshall Shulman)은 소련과의 협상을 선호했지만, 막상 모스크바주재 미국대사에는 말콤 톤(Malcolm Toon)이라는, 소련과의 제2차전략무기제한협상 자체를 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포진하고 있었다.<sup>18)</sup>

이러한 이중성은 카터정권의 후반부에 가면서 냉전주의적 성격이 보다 분명히 우세한 쪽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앞서 지적한 바 있는데, 그것은 인적 구성에서 비교적 리버럴한 쪽에 속했던 인물들이 1978년 말에서 1980년 초에 걸쳐 카터정권과 결별하는 데에서도 투영되었다. 카터행정부에서 소련과의 전략무기협상을 이끌어온 견인차였던 군비통제군축국장 폴 완케(Paul Warncke)는 1978년 10월 떠났고, 카터정권의 대제3세계 인종화해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흑인출신 주유엔대사인 앤드류 영은 1979년 7월 해고를 당했다. 그리고 비교적 온건한 인물이었던 사이러스 밴스 국무장관은 1980년 4월 자리를 떴다. 이와 함께 모든 문제를 대소 냉전의 차원에서 바라보던 안보이상주의자라 할 수 있는 브레진스키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갔던 것으로 볼 수 있다.<sup>19)</sup>

이란, 니카라과, 아프가니스탄 등 제3세계에서의 미국에 대한 도전의 증가경향도 다음에 부연할 미국 내 정치의 보수화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후반기 카터외교의 안보이상주의의 성격을 강화했다. 그 중에서도 이란의 사에 대한 카터정부의 대응은 미국에게 비슷한 전략적 가치를 안고 있던 한국에 대한 미국의

15) Melvyn P. Leffler, "From the Truman Doctrine to the Carter Doctrine", *Diplomatic History*, VII (Fall 1983), pp.245~266; LaFeber, p.298.

16) LaFeber, p.299.

17) 1977년에 카터가 서명한 대통령명령18호(Presidential Directive Number-18)은 제3세계에서의 전쟁에 대비한 특수군대를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Halliday, p.218) 이에 따라 오늘날 신속배치군으로 잘 알려진 특수부대가 조직된 것이다.

18) Halliday, p.216.

19) Halliday, p.218.

정책을 이해하는 데 주목할만한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에 이란의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란은 소련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곳으로 미국은 이란 국경지역에 소련의 핵을 비롯한 군사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레이더체제를 설치하는 등 이 지역에 깊은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란은 또한 미국의 주요 무기수출시장이었다. 카터는 취임 첫 해인 1977년 말 이란을 방문해 상호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란 민중은 사를 증오했으나 카터는 이란의 왕 모하마드 팔라비를 "당신의 인민이 당신에게 보이고 있는 존경과 칭송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다.<sup>20)</sup> 그러나 1978년 이미 이란은 폭력적 혁명의 상황에 돌입하고 있었다. 샤는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그것은 혁명적 열기를 가열시켰을 뿐이었다. 카터는 브레진스키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정권에 추가군사원조를 제공하여 이 위기를 넘기려 했다. 그러나 1979년 1월 마침내 샤는 왕위를 내버리고 이란에서 도망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란 종교혁명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1979년 1월 31일 승리자로서 테헤란에 입성했다. 이후 이란은 샤가 추진했던 서구화전략인 '백색 혁명'(white revolution)을 거꾸로 되돌리는 작업을 시작했다.<sup>21)</sup> 이란의 석유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지배는 끝이 났다. 미국은 이로부터 중동 전체에 대한 미국의 지배 체제에 중대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그만큼 중동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증가를 걱정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란사태는 바로 그와 같은 전략적인 차원의 손실

과 위기에 그치지 않았다. 1979년 11월 4일 테헤란에서 400명의 학생행동대가 미국대사관을 장악하고 66명의 미국외교관과 군무원들을 인질로 억류하면서 이란사태는 카터정권의 국내정치환경과 외교정책에 직접적 충격을 던지는 첨예한 정치적 이슈로 발전했다. 1979년 말 이후 한국에서 전개된 상황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1979년 11월 초부터 시작된 이란 인질사태라는 정세와도 긴밀한 연관을 갖는 것이며, 1979년 12.12사태 직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의 요점을 가리키는 리처드 홀브루크 전문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이다. 이 점은 나중에 상술할 것이다.

미국내 정치의 보수화는 많은 미국정치분석가들에게는 1968년 리처드 닉슨의 대통령당선에서 그 출발을 본 것이었지만, 베트남전쟁의 후유증과 워터게이트는 그러한 보수혁명의 물결을 잠시 지연시키고 카터정권의 등장을 허용했다. 그러나 미국 자신이 견인차역을 한 신냉전의 전개와 이란과 같은 제3세계에서 미국에 대한 도전의 가시화와 같은 상황의 변화 속에서 미국내 정치의 보수화는 다시 활력을 갖고 미국정치의 전면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1978년 11월의 의회 중간선거에서 미국의 신우익이 상당한 의석을 차지하는데 성공한 것은 그러한 미국내정치역학구도의 한 증거이기도 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민주당 내 리버럴한 정치인들의 정치의식과 노선이 보수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sup>22)</sup>

이러한 미국정치의 보수화는 외교이데올로기의 영역에서는 이른바 신보수주의적 외교이념의 풍미를 가져왔고 이것은 1979년 『코멘터리』라는 보수적 저널에 실린 진 커크페트릭의 유명한 논문에 실린 '커크페트릭 독트린'으로 표현되었다. 그녀의 독트린은

20) Howard Jones, *The Course of American Diplomacy* (Chicago: The Dorsey Press, 1985, 1988), Volume II, p.676.

21) Jones, p.677.

22) 1970년대 말 본격화하기 시작한 미국 국내정치 보수화의 미국내적 맥락에 대해서는 줄저, 『현대미국의교와 국제정치』(한길사, 1993), 252~272면 참조.

레이건정권이 그녀를 주유엔대사로 임명하면서 유명해졌지만 그것은 이미 1970년대 말 미국의 대외정책 이데올로기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었고 1980년 대통령선거전에서 레이건의 '강력한 미국 재건론'을 뒷받침하게 된 것이었다. 이 커크페트릭독트린의 요점은 제3세계의 독재정권들에 대해 미국이 전략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리버럴들이 느끼는 죄의식을 비판하고 그러한 연대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있었다.<sup>23)</sup>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차원의 배경을 염두에 둘 때, 비로소 1979년에서 1980년 5월에 이르는 한국의 정치적 격동의 시대에 미국이 전개한 대한정책의 흐름을 보여주는 미국정부 외교문서들에 나타난 모순과 착종과 그것을 꿰뚫는 근본적인 보수의 논리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 3. 카터행정부의 대한국 인권외교의 내적 분열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국 인권외교의 내용적인 분열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인권 및 민주주의와 관련한 미국외교에서, 정치범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관심을 보이는 것과 독재정권 자체와의 긴밀한 안보적·경제적 협조체제 유지에 대한 관심이 긴장하면서 공존하는 점이다. 1979~80년 기간에 이러한 긴장은 대표적으로 김대중씨 개인의 제한적인 수준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관심을 보임과 동시에 박정희정권 그리고 그에 뒤이은 전두환 군사체제와 안보적·경제적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는 행태 언뜻 상충되어 보이는 두 가지 행태의 공존과 그들 사이의 긴장이다. 이 두 가지 행태의 공존은 미국 외교문서의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과 같은 나라가 박정희정권이나 전두환체제와 같은 군사독재체제를 벗어나 민간민주정권을 형성해 나간다는 즉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기대나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것은 비교적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의 관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 그것은 정치적 자유를 구속당한 몇몇 개인들에 대한 관심으로 제한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민주주의는 개인들의 인권과 불가분한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초인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몇몇 개인들의 자유에 대한 관심과 독재정권 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공존했다는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그 두 가지가 따로 분리되어 취급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으면 미국이 김대중씨 등 한국의 몇몇 개인에 대해 보인 인권관심 그 자체를 미국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진지한 관심으로 확대해석하는 환상이나 착각을 유발할 수 있다. 또 그와 정반대로 미국의 인권외교 자체의 제한적 의미마저도 허구나 위선에 불과한 것으로 지나치게 축소·매도하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분리할 때만이 우리는 미국 인권외교의 제한적 의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신군부와의 협조와 공모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 III. 1979~80년 미국 대한정책의 전개와 광주로의 귀결

#### 1. 1979년 초 '관계정상화': 미국 대한정책의 치명적 비대칭성의 준비

카터행정부의 대외정책성향이 전반부와 후반부간에 시간적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후반을 통틀어 이중성이 처음부터 내재해 있었다면, 전반과 후반의 차이를 따지는 것이 크게 의미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리고 특히 카터행정부와 같이 1970년대 초·중반이라는 미국 현대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자기환멸과 자기비판의 시기에 나타난 자유주의적 기풍을 던고 출범한 행정부가 한국에서 안보·경제적 이익과 함께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들을 동시에 추구하고 싶어했을 것이란 점을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한국에서 안보·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과 박정희정권에 대한, 또는 전두환정권에 대한 진지한 정치적 비판이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일단 그에 대한 카터행정부의 현실적 인식과 판단은 전반과 후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카터행정부의 전반과 후반의 차이를 증폭시키는 작용을 했을 시대적 상황과 정부 안팎의 인식의 차이들을 지적할 필요도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인권이 미국외교의 한 기준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또 우리는 어떤 시점에서 인권문제의 적극적 거론이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안보·경제적 이익의 추구하고 양립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해치는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판단은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한 행정부인가에 따라 그리고 그 행정부가 시간적 변화 속에서 어떤 국내외적 상황 속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다소간에 변화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안보·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에 대한 미국의 현실적 인식과 판단에 의해 언제나 부차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1977~78년 기간의 카터행정부 초반의 미국의 대한 인권외교라는 것이 후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조

되다가 1979년에 들어서면서 보다 현실주의적 권력 정치의 논리로 변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과 워싱턴 사이에 오간 미국정부 외교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화두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카터와 박정희 간의 한미정상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철수계획을 재조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틀어 미국 외교문서는 한미간 관계정상화로 표현하고 있다. 미국이 내세운 그에 대한 명분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소련의 위협에 대한 강조, 즉 신냉전의 사고였고, 그 다음은 한국정부가 그 직전에 미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대중을 석방했다는 사실이었다.

1979년 초의 한국의 정치상황은 유신체제는 물론이고 당시 한국 내 정부비판세력이 제기하는 최대 이슈였던 긴급조치 9호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김대중의 석방을 비롯한 미미한 몇몇 개별적인 정치적 조치들만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1979년의 한미관계는 미국이 그러한 '인권상황의 개선'과 소련의 위협을 새삼 강조하면서 한미관계의 정상화를 대한국외교의 최대목표로 거론하는 가운데 분위기의 일신이 모색되고 있었다. 이것이 1979년 10월 26일의 박정희의 유고와 뒤이은 12.12 군사쿠데타 이전 약 1년 여간 미국정부 외교문서를 지배한 문제들이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우리가 이 글에서 카터행정부 4년기간의 중간과도기라고 규정한 1979년 초 미국이 한국에서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는 존 글렌 미 상원의원이 방한에 앞서 요청해서 주한미국대사관이 작성해서 국무부로 보낸 '한국의 인권상황 관련 글렌 상원의원을 위한 브리핑 페이지'에 잘 요약되어 있다. 이 브리핑의 주요부분을 그대로 옮겨보자: '박대통령의 제5기 대통령 취임에 즈음해 한국정부는 가장 저명한 정치범인 김대중을 석방했다. 몇몇 정치범들은 아직 감옥에 있지만 석방된

23) 1970년대 말 신보수주의적 외교이념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줄지, 「미국 외교이념과 베트남전쟁: 베트남전쟁 이후 미국 외교이념의 보수화」(법문사, 1991), 제5장을 참조

사람들도 있다. 이 조치들은 인권 준수에서 몇 가지 진전이 있었던 지난 한 해의 결과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1978년 한국정부는 언론에게 이슈들을 다루고 정부를 비판하는데 있어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유를 주었다. 한국정부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정부를 비판할 자유를 더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비판세력(dissidents)을 다루는 데에서도 더 관용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전보다 더 강경한 성명서를 발표할 때도 그들을 기소하는 것을 더 자제하는 것 같다. 정부당국은 총선거기간에 후보자들이 긴급 조치들을 철회할 것 등을 포함한 이슈들을 거론하는 것을 의미있는 정도로 더 허용했다. 또 깨끗한 선거를 운영했으며 (총유효투표 중에서 집권당이 2위를 기록하는) 결과를 수용했다. 이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긍정적 조치들이다. 다른 한편 언론은 일정한 한계 안에서 활동했다. 비판세력이 그들의 견해를 전파하는 노력들은 실질적으로 좌절되었다. 정부는 투표의 과반수를 얻지 못했지만 국회를 계속해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한국정부는 정치적 의견의 표현과 정치활동에 더 많은 자유를 허용했지만 유신헌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였다. 이것이 비판세력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한국정부는 유신체제의 제2기 6년의 출범과 때맞춰 체제정비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 기회를 이용해 사회정책에 더 많은 강조를 하거나 정부에 대한 더 많은 참여의식을 국민들에게 불러일으키려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조건에 따라 추진할 것이며 약한 위치에 몰려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나라가 (북의 남침 - 역자)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어느 정도의 정치적 제한은 이런 상황에서 정당화할 수 있다고

24) From American Embassy in Seoul to the State Department, January 8, 1979, "Briefing Paper for Senator Glenn - Human Rights Situation."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아직도 역사적 및 문화적 요인들 때문에 강력한 정부를 받아들이는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도 틀림없이 사실이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이 근대화함에 따라 분명 적어지고 있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신헌법에 내포된 제약들의 내용이 정확하게 모든 한국인들에게 만족스런 것이라는 합의가 한국인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당분간 그러한 제약들 속에서 살아갈 능력과 용의를 갖고 있다는 증거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정부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미래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더 높은 수준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외부적 원천으로부터의 압력에 응해서 자신의 인권정책을 수정하기를 꺼리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주목할만한 발전은 민족주의를 고조시켰다. 비록 한국인들이 (미국이 - 역자) 제안한 (인권개선 관련 - 역자) 사항들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한국 여론의 주요부분은 한국인들에게 그들의 법이나 행태를 수정하라고 (미국이 - 역자) 공개적으로 압력을 넣는 것을 혐오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우리는 한국에서 인권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우호적이며 튀지않는 충고(friendly and unobtrusive counsel)일 것이다.<sup>24)</sup>

이 전문에서 볼 수 있는 당시 미국의 대한민국 인식과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미국은 박정희정권 하에서 1978년 1년간에 인권문제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간주하고 있는 점이다. 유신체제 자체는 물론이고 긴급조치들이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

적 비판의 결과로 감옥을 들락거리고 있었지만 미국은 그 직전에 있었던 총선거과정과 김대중의 석방을 들어 미국은 한미관계를 '정상화' 하는 데 충분한 인권개선의 명분이 서게 되었다고 보았다. 즉 한국정부가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었다.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대사는 다른 문서에서도 미국무부가 연초마다 펴내는 세계 인권보고서의 한국부분에 한국에서 인권개선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1979년 1월 10일자 워싱턴으로 보낸 전문에서 그는 "우리는 1978년에 한국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인권문제 개선을 이룩했다는 것을 워싱턴의 미국정부당국자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sup>25)</sup>

둘째, 미국은 한국 국민이 '역사적 및 문화적 요인들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위협 때문에 유신체제와 같은 강력한 정부를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용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한국인들이 유신체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인권압력은 무의미하거나 효과가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한국 국민이 유신체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식은 박정희정권에 대한 미국의 협력정책을 정당화할 근거로는 더없이 중요한 점이다. 글라이스틴은 이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는 자신이 서명한 이 브리핑페이퍼에서 지난 총선거의 결과는 한국 국민들이 유신체제를 정열적으로 지지한 것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유신체제를 거부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거한다(In any event, the elections were not a ringing endorsement of the Park regime, but they were not a repudiation either.)

셋째, 이 문서는 위와 같은 인식에 기초해서 미국

25) From American Embassy in Seoul to the State Department, January 10, 1979.

26) From the State Department to American Embassy in Seoul, February 12, 1979, "Visit of Naional Assembly Del Mun."

의 대한 인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한국정부를 비판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되며 박정희정권과 기본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눈에 튀지 않는' 충고의 방식으로 인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197~78년 다소 불편했던 한미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데 필요한 인권부분의 입장을 정리하는 기본문서라고 할 수 있겠다. 조용한 충고로 인권문제를 거론은 하되, 박정희 유신정권과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 점은 1979년 2월 12일 미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부서가 서울의 미대사관에 보낸 전문에 담겨져 있다. 이 문서에는 그 무렵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문형태 의원과의 대담에서 당시 동아태담당차관보였던 리처드 홀브루크가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미국을 방문한 한국관리들이 코리아게이트와 인권문제 등에 관해 공격적인 질문을 받곤 했던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대해 문의원은 그 자신도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을 느꼈다"고 화답하고 있다.<sup>26)</sup>

이런에서 1979년 1월 사의 친미독재정권의 폭력적 몰락이 1979년 초 미국의 대한정책에 파장을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은 한편으로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 국민이 유신체제를 적극 지지하는 하지 않지만 거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식하고 상당한 인권개선이 있었다고 자기만족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안정되어 있는 동맹정권으로 인식했던 이란의 독재정권이 일시에 몰락하자 한국의 유신정권에 대해서도 일말의 불안감을 갖게 되었을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래서 1979년 초 미 국무부 외교문서에는 첫째, 한국에

서 혁명적 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정부의 강제력 남용을 자제할 것을 종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은 그 두 번째 요소로서 김대중과 같은 영향력있는 반정부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라 정부에 강경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추종세력 사이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들은 필요한 조치들로 인식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또 그렇게 해낼 수 있는 박정희정권의 정치적 능력과 수완에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문서들은 풍기고 있다. 미국은 박정희정권이 김대중이나 그의 추종세력 그리고 학생들이 박정희에게 어떤 실질적인 위협도 주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1979년 2월 17일의 전문에서 글라이스틴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춘계 투쟁전선이 다시 그어지고 있다. 우리는 반정부세력이 박정희에게 더 강하게 도전하고 정부 역시 단호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박정희에게 어떤 실질적인 위협이 가해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 마찰의 불꽃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장악하고 있다."<sup>27)</sup>

한국에서 반정부세력의 진정한 잠재력과 그에 바탕한 정치적 도전과 격동의 가능성에 미국이 눈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한국의 상황에서 이란사태의 재연의 먼 가능성이나마 직접적으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한국에서 10월 부마항쟁과 10.26이라는 사태가 전개된 후였다고 할 수 있다. 1979년 초의 상황에서는 미국은 한국의 정치적 사태가 박정희정권의 불안정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이 1979년 박정희정권과의 전반적인 관계개선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

다면 그 기초의 하나는 박정희정권의 정치적 안정 확보 능력에 대한 신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에 대한 기본적 신뢰와 일부 인권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정당화를 바탕으로 미국이 1979년 초 추진한 한미관계정상화는 크게 두 가지 작업으로 투영되고 있었다. 하나는 1979년 여름경 한미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맥락에서 주한미군철수 논의를 수정하는 문제였다.

카터대통령은 1979년 2월 9일 언론인들과의 대담 과정에서 "한국으로부터의 미군철수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며 몇가지 북아시아의 사태 전개에 대한 재평가에 따라 결정한다"(Further troop withdrawal from the ROK would be held in abeyance pending assessment of a number of North Asian developments)고 발언했다.<sup>28)</sup> 이 전문은 당시 한국 언론들의 반응을 조사한 것인데 당시 한국언론들은 카터행정부의 미군철수문제 재평가 발표를 단지 수사적인 제스처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미군은 궁극적으로 철수할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란에서처럼 한국에서도 미국의 안보공약이 허구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등의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이 전문은 한국의 반응을 분석했다. 이 전문이 보고한 당시 한국언론의 인식에서는 아직 미국의 신냉전주의와 군사주의로의 복귀경향, 그리고 그와 연관된 박정희정권과의 관계정상화 의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1979년 3월 21일 글라이스틴이 한미정상회담의 의의와 초점에 대해 건의한 전문은 그해 여름에 있을

카터-박정희 사이의 정상회담이 인권문제에 대한 과거의 불행했던 한때의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신냉전의 기풍에 걸맞는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공약 확인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벤트로 기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전문에서 글라이스틴은 정상회담의 장소를 서울로 할 것인가 워싱턴으로 할 것인가, 또는 괌이나 하와이로 할 것인가를 거론하고 있다. 그는 서울을 제일의 선택으로 추천하고 있다. 그는 괌이나 하와이섬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한국이 갖고 있는 종속적 지위(pariah status for Korea)를 드러내는 것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워싱턴에서 회담을 여는 것은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천명하는 효과가 반감되고 불행했던 한미관계를 협조적 한미관계로 전환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과시하는 효과 역시 반감된다고 시사한다. 반면에 그는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한국의 인권문제와 관련해 풀치 아픈 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들 거의 모두는 이번 여름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우리의 제일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박정희가)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서울에서의 정상회담이) 동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안보공약을 표상하는데 훨씬 나을 것이며 한미관계에서 한 매우 불행했던 시기의 종결을 상징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sup>29)</sup> 이 전문에서 글라이스틴은 보다 분명한 표현으로 1979년 여름 카터의 한국방문과 박정희와의 정상회담이 인권문제의 차원을 부차적으로 뒤로 미룬 가운데 한국에서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이익을 재확인하기 위한 이벤트 여야 함을 재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이

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인권문제 딜레마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하지만, 한국에서 우리의 안보, 경제, 문화 및 다른 이익들이 올해 이 정상회담으로부터 막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중요한 손실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글라이스틴은 한미정상회담이 한국의 인권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에 초점을 두지도 않았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이 점은 1979년 4월 3일 그가 리처드 홀브루크 동아태담당차관보에게 보낸 전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전문에서 글라이스틴은 "우리가 카터-박정희 정상회담을 인권문제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망은 매우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고 나는 믿는다... 정상회담에서도 나는 매우 의미있는 진전을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자제해야 하며 (정상회담이 인권문제에 가져올 수 있는 -역사) 이상적 사태 진전 이하의 것에 만족할 준비를 해야 한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의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진정한 자유화를 고려할 전망은 전혀 없다고 본다."<sup>30)</sup> 이처럼 글라이스틴이 카터의 한국방문이 인권문제에 대해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으면서도 서울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을 강력하게 건의한 것은 왜인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정상회담을 한국의 인권개선에 대한 압력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었으며, 정상회담을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안보 및 경제적 이익이라는 구체적인 물질적 목표들에 한정할 것을 촉구한 것을 뜻했다. 이러한 판단에 걸맞게 글라이스틴은 그 같은 전문에서 인권문제 개선을 한미 정상회담 개최의 조건으로 내세우지 말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글라이스틴

27) From American Embassy in Seoul to State Department, February 15, 1979. "Government and Dissidents Gird for Spring."

28) From Embassy in Seoul to State Dept., February 16, 1979. "Korean Response to President Carter's Troop Withdrawal Moratorium."

29) For the Secretary from the Ambassador, March 21, 1979. "ROK Summit - Need for a Decision."

30) For EA Holbrooke from Ambassador, April 3, 1979. "Human Rights and the Summit."



개인만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한미군사령부를 비롯한 미국의 군부와 카터행정부 안팎의 유력한 관점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같은 전문에서 글라이스틴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국가 대 국가의 대표로서 만나는 의미보다 박정희 개인과의 만남의 측면을 부각시키게 되고 그래서 박정희 개인에 대한 미국의 지지인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풍길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정상회담시 카터대통령이 서울 북쪽의 미군부대 그리고 한국군부대를 방문하고 동시에 야당 지도자들과도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한다. 그는 또한 박정희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좋게 생각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건의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미정상회담을 인권문제 압력을 위한 기회로서가 아니라 인권문제를 부차적으로 한 안보·경제적 차원의 미국의 국익과 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박정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회복하여 한미관계를 '정상화' 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동일한 전문에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 전문을 비롯한 여러 문서에서 글라이스틴과 홀브루크 등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카터가 서울에서 야당 지도자들과 만나고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공개할 것을 거론한 것은 그것을 미국이 이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로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못하다. 그것은 박정희유신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라는, 미국이 공개적으로 천명해온 인권외교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박정희정권과의 정상회담이 불가피하게 수반하게 될

비판을 한편으로 무마하려는 제스처의 성격이 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글라이스틴은 그 이후 다른 한 전문에서도 카터의 서울방문을 박정희의 인권개선과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을 강하게 담고 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긴급조치 9호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것처럼 박정희를 강하게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31)</sup> 그래서 리처드 홀브루크가 작성하고 밴스가 서명해 1979년 4월 10일 서울의 글라이스틴에게 보낸 전문에서 미국무부가 1979년 6월 30일~7월 1일 간 카터가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는 결정을 통보하면서 한국정부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한 카터의 한국방문의 취지는 미국의 현실적인 국익이었다. 즉 "이 방문의 주요목적은 한미관계를 공고히 하고 안보와 지역적 긴장의 완화 그리고 경제에 이르는 광범한 영역에서 한미간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sup>32)</sup> 이 전문은 그러한 한미정상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한국의 국내정치문제 개선이 유익할 것이라는 점을 한국정부에 전달할 것을 지시한다. 그러나 이 전문은 글라이스틴의 의견과 같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인권문제 개선에 어떤 중요한 진전을 예상하지도 또 그것을 조건으로 내세우지도 않았다. 같은 전문에서 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자-) 극적인 조치가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전에 당신이 얻어낼 수 있는 만큼 얻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즉 미국은 박정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한미관계 정상화를 제일의 그리고 거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있었으며,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한국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는 수준에

31) For EA Holbrooke Only from Gleysteen, April 9, 1979, "Carter/Park Summit."

32) From Secretary of State to Embassy in Seoul, April 10, 1979, "U.S.-ROK Summit Meeting."

그치고 있는 부차화한 이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점은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미국이 발표할 예정으로 있던 주한미군감축계획 재조정문제를 박정희와 긴밀히 협의한 다음에 할 것을 요청한 다른 전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글라이스틴은 이 전문에서 주한미군감축계획을 재조정하는 문제를 박정희와 긴밀히 하되, 만일 주한미군감축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쪽으로 즉 '노 체인지'(no change)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이 사실을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발표하는 것은 극력 삼갈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한 행동은 박정희정권에 대한 미국의 '불신임투표'(vote of no confidence)로 비쳐지게 될 것이며, 그럴 경우 박정희정권에게 결정타(a body blow to Park)를 줄 수 있으며 그것은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미국)의 안보 이익에 매우 해로운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sup>33)</sup>

1979년 5월에 들어서서 한국정치상황은 정부와 반정부세력간의 갈등이 본격화되었고, 박정희정권의 대응은 더욱 강경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미정상회담의 정치적 이미지 조성에 긍정적인 것일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물론 정상회담 취소를 고려한 적은 없었다. 글라이스틴의 한 전문은 한미정상회담의 분위기조성에 한국의 인권문제의 '개선'(progress)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더 '악화되는 상황'(regression)만 없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지적하고 있다.<sup>34)</sup> 즉 미국은 한미정상회담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불상사만 없기를 바라는 태도였다고 할 수 있겠다. 글라이스틴은 정상회담이 가까워짐에 따라 한국의 인권문제가 악화되어가는 데에

초조해졌으며, 이에 따라 1979년 6월 26일의 전문에서는 그가 한국의 박동진 외무장관을 만나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안보와 함께 인권문제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전문에서도 미국이 한국정부의 인권문제 개선을 한미정상회담의 어떤 조건으로서 제기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 전문에서 드러난 미국측의 고민은 정상회담 직후 발표할 한미공동성명문안에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이 지나치게 '마일드'(mild)해서, 즉 너무 피상적이고 형식적이어서 국제사회나 한국내 비판세력으로부터 강력한 공격에 직면하는 사태를 어떻게 피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sup>35)</sup> 즉 성명문안에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의 수위를 놓고 막판 질충과정에서 글라이스틴은 박동진외무장관과 상당한 씨름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 태어난 공동성명의 최종문안은 인권문제에 대한 지극히 피상적인 언급만 포함한 것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애당초 한미정상회담의 목표에서 인권문제는 부차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79년 6월 31일에서 7월 1일 사이에 열린 정상회담 끝에 나온 한미공동성명이 인권이나 민주주의 문제는 최소화시킨 가운데 한미간의 군사·경제적 협력관계 부각을 극대화시킨 전형적인 신냉전의 문건이 되고 만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은 카터-박 정상회담 직후에 글라이스틴이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미공동성명은 주한미군철수 자체의 포기를 내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것으로서 냉전주의자들에게는 가장 이상

33) From American Embassy in Seoul to Secretary of State, April 7, 1979, "Carter/Park Summit: Troop Withdrawals Announcement."

34) From Embassy in Seoul to Secretary of State, June 20, 1979, "Talk with KCIA Director on Human Rights Issues."

35) From Embassy in Seoul to American Embassy in Tokyo Immediate, June 26, 1979. 1979년 6월 26일의 이 전문이 동경으로 향한 것은 카터가 방한하기 앞서 일본을 방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적인 문건이 되었던 것이다.

한미공동성명은 모두 21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3항부터 시작되는 이 성명의 구체적 내용은 미소 전략무기회담, 중일관계개선 등 변동하는 동아시아 주변 국제질서에 대한 한미간의 공동인식과 공동대응을 확인하는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 다음은 인도차이나의 난민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협력이다. 그러나 역시 이 성명의 핵심은 7항과 8항 및 9항에 걸쳐 길게 언급되고 있는 한미간의 군사협력문제이다. 7항에서는 1954년의 한미안보조약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안보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기축(pivotal)이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양국 대통령은 침략가능성을 억지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고도의 힘과 전투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간의 협력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요한 기여임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1978년 11월에 출범한 한미연합사(the ROK-US Combined Forces)는 두 나라의 군당국들간의 공동방위협력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터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한 무장공격을 물리치기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상호방위협정에 따라 제공할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미국의 핵무기가 이 지역에 추가적인 안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선언하고 있다.<sup>36)</sup>

이어 8항의 요점은 이 공동성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한미군철수를 사실상 백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주한미군을 한국에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선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내용을 옮겨본다: "카터대통령은 안보문제에 대한 두나라 대통령과 국방장관들간의 충분한 협의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으며 그는 미국에 돌아가면 이런 관

점에서 미 의회지도자들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대통령은 한반도 또는 이 지역의 어떤 불안정화상태도 저지하는 데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한국으로부터의 미국지상군전투부대를 추가로 철수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미국의 군사주둔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박대통령에게 확인해주었다." 이것은 표현은 미지상군을 추가로 철수하되 그 과정에서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를 유지할 것이며 한반도에 어느 정도의 병력은 계속 유지한다는 정도의 약속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선언은 실질적인 주한미군철수 증지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 이 공동성명이 그러한 미국의 정책변화를 강력하게 시사한 매우 중요한 공식문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어 제9항에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을 길게 약속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한군사판매촉진과 한국에 대한 군사기술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12항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북한이 제안하고 있던 북미평화협정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남북당사자간 협의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공동성명이 인권문제를 언급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15항의 매우 짝막한 내용이다. 그 형식과 내용은 1979년 여름 한미정상회담의 기본목표가 카터행정부와 박정희정권 간의 관계 정상화였으며 인권문제 거론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다. 첫째, 인권문제 언급의 표현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피상적이었다. "두 나라 대통령은 모든 나라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카터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경제 및 사회적 성장과 발을 맞추어

정치적 성장과정도 계속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이것이 전부였다. 둘째, 이러한 추상적인 언급에 뒤이어 한국의 인권억압을 정당화하는 한국정부의 논리를 덧붙이고 있다. 즉 앞의 내용에 이어 다음과 같이 이 성명은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재의 특수한 상황과 함께 이 문제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했다." 결국 이 공동성명은 인권문제에 대한 피상적 언급과 함께, 그런 언급의 효과마저도 상쇄하기에 충분한 한국 독재정권의 인권억압논리를 같이 내세운 것이었다.

이어 제18항에서 이 공동성명은 한미간 무역역조 시정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요구와 이에 대한 박정희의 협력약속이 길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카터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미국무부는 한국교회협의회(KNCC)가 작성한 정치범 수감자 명단을 토대로 한국에 요청해 그들의 석방을 이루어낸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이같은 '양보'는 박정희정권이 이 정상회담을 통해 이루어낸 한미관계 정상화라는 정권적 차원의 정당성 지지획득이라는 과실에 대한 부수적인 분장과 같은 효과를 가진 것이었다. 이것은 앞서 이 글의 모두에서 거론한 미국의 인권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양가적 성격, 즉 인권문제거론과 독재정권에 대한 정권적 차원의 긴밀한 협력체제유지라는 것이 분리된 채로 공존하는 현상을 재확인하여주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할 수 있다.

1979년 초에서 1979년 7월 1일의 한미정상회담 공명성명에 이르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미국외교문서를 이제까지 분석하고 거론한 이유는 이 시기의 한미관계의 흐름과 그 기초를 이해하는 것이 1979년 10월 이후의 정치적 격동기에 미국이 보인 인식과 행동을 이해하는 기본전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이후의 미국의 행태와 정책과 관련해 이 앞선 과도기적 시기의 미국의 '한미관계 정상화' 노력과 그 절정

으로서의 한미정상회담과 그 공동성명이 시사하여 주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장단기적인 안보·경제적 이익과 인권문제의 중요성은 그다지 비교대상이 못되었다는 것이다. 인권문제의 비중은 부차적이었다. 둘째, 미국의 인권거론은 박정희정권이든 또는 그에 뒤이은 다른 독재정권이든 미국은 한국에서 독재정권 자체의 변화가능성에 대하여 기대하지도 그것의 변화를 의도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즉 인권거론과 민주주의문제는 전혀 별개의 분리된 차원에서 취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많은 경우에 인권거론은 독재정권과의 협력에 대한 분장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일 수 있다. 바로 이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면서 1979년 10.26 이후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미국의 인식과 대응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 2. 1979년 말 한국의 정치적 격동과 미국의 인식과 행동

10.26 이후 우리가 열망한 새로운 시대는 미국에게는 두려운 불확실성이었다. 이 시기에 미국의교문서가 보여주는 미국의 대한정책의 핵심은 그것을 통제하는데 전두환 신군부와 협력의 택했다는 사실이다. 그 선택 이후 미국의 대한외교정책의 방향은 두 가지 요소를 내포했다. 이 점을 비유적으로 말해보자. 전두환이 쿠데타 후에 용산골프장에 나타났다. 위권과 충돌한 것이 신군부와 미국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구에 회자되어왔다. 이 일화는 주로 신군부에 대한 미국의 불만과 경멸의 태도를 상징한 것으로 인상지워져 있다. 그러나 이 일화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전두환이 용산미군골프장에 나타난 것은 자신과 미국의 관계가 이미 확실한 동반관계로 들어섰다는 그의 자신감이 없이

36) From USDEL Secretary in Seoul to Secretary of State in Washington Immediate, July 1, 1979, "Joint US-ROK Summit Communiqué."

는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일화에 함축된 당시 한미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무장경호원들까지 대동해 미군골프장에 나타난 전두환의 그 '오만방자함' (위킴이 보기에)을 가능하게 했던 미국의 대한정책, 즉 신군부에 대한 미 본국정부의 비호적 태도의 양상과 배경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인 동시에 전두환의 경호원을 몰아냄으로써 결국 전두환을 골프장에서 쫓아낸 위킴의 '로마장교'로서의 행태, 즉 미국관리들의 전두환 길들이기의 행동이 갖는 양면성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다. 이 복합성 또는 이중성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해 미국이 갖는 의미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을 혼란시켜왔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민족에게, 한국의 민주주의에 결국 한국의 현대사에 미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1979년에서 12월에서 1980년 광주에 이르는 기간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무엇을 추구했고, 무엇을 자신의 이익으로 보았으며, 그래서 어떤 세력과 주된 협조체제를 구축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이해하는 것과 상통한다.

광주에 이르는 기간에 미국은 어떤 존재였는가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것은 군사독재의 연장을 기도했고 또 그것에 성공했던 전두환의 신군부가 주도하는 계엄령연장체제와 이에 저항하는 민주화추진세력 - 학생과 시민들 - 의 대결구도 속에서 미국이 취한 이중적 가치들 사이에서 미국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결국 미국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자신의 안보·경제·군사전략적 이익이라고 스스로 인식한 것의 유지를 위해 한국의 새로운 권력집단과 밀착한 것과 미국이 다른 한편으로 한국민의 보다 광범한 요구였던 계엄령체제와 군사독재체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문제에 보여준 관심, 이 두 가지의 외교적 가치 사이에서 미국이 취한 선택과 행

태의 요체를 가능한 명료하게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 문제는 어느 쪽으로든 단순한 도식화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상충되는 복잡한 자료들 속에 매몰되어 전체적인 구도를 외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면서 1996년 초 공개된 미국 정부문서들이 드러내는 진실의 요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위에서 지적한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이중성'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추구한 두 가지 가치들 중에서 미국이 결정적 순간들에서 선택한 가치는 신군부와 밀착을 통한 좁은 의미의 안정 - 한반도의 안정과 한미관계의 안정 - 이었다. 즉 그 두 가지 가치들 중에서 미국의 외교의 기본축은 한국정치발전의 일정의 추구가 아니라 그것을 심오하게 유린하는 신군부와 밀착이었다는 점에서 그 두 가지 가치들간에 미국이 부여한 비중은 본질적으로 다른 '비대칭성'을 안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1979년 10월에서 1980년 5월에 절정에 달한 미국의 대한정책은 '비대칭적 이중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점은 한국현대사 전반에서 미국의 정책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의 후반부는 그같은 미국의 '비대칭적 이중성'의 대한정책이 첫째, 12.12 직전과 직후에 어떤 모습으로 정립되고 있었는가를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 살펴보려는 것이다. 12.12 직전에는 그것이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리처드 홀브루크의 '대한정책 두 가지 원칙'에 요약되고 있음을 먼저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12.12 직후에는 신군부의 군사반란을 '군내부문제'로 축소하여 성격규정하고 신군부와 관계정립을 지시하는 크리스토퍼 미국무차관과 클라이스틴간의 신속한 의견 교환 및 태도 정리에서

분명한 모습으로 정립되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둘째, 이렇게 12.12의 직전과 직후에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난 미국 대한정책의 '비대칭적 이중성'이 1980년 5월 어떻게 그 논리적 귀결에 도달하는가를 주목하려고 한다. 5월 초 신군부의 군사독재연장기도와 민주화세력의 갈등의 본격화 속에서 신군부의 대민 군사력사용계획에 미국이 동조·공모하고 그러한 공모체제가 결국 광주에서 유혈살육사태로 치달으면서 노골화된 신군부와 미국간의 군대사용 및 군사작전상의 공조체제는 바로 12.12를 전후한 시기에 확립된 미국 대한정책의 비대칭적 이중성이 그 논리적 귀결을 본 것이라는 데 주목하려는 것이다.

### 3. 12.12 쿠데타와 미국의 정책: 치명적 비대칭성의 쟁점

미국무부 외교문서의 하나에 따르면, 1979년 11월 30일 위킴과 클라이스틴은 위킴의 집무실에서 정승화 육참총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위킴은 한국군부가 어려운 상황을 잘 다루어가고 있음을 칭찬했다. 단 그는 군부의 제일차적 과제는 북의 위협에 대한 방어이고 민간인에게 맡길 일은 민간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클라이스틴도 한국정부가 국민들에게 정치일정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들의 협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정부의 조치는 국민들의 질서유지협조가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훈수를 두고 있다. 당시는 보안사를 포함한 계엄당국이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속속 체포, 구금하고 있을 때였다. 위킴의 집무실에서 한국의 계엄사령관과 미국 관리들의 대화 분위기는 매우 우호적이었다. 즉, 미국이 한국의 계엄당국에게 한국의 민주화 일정에 대해 온건한 충고를 하기는 하되, 질서유지의 전제 아래 충고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

이었다. 필요할 때 질서유지 명목으로 한국 정부와 군부가 취할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반대를 할 것이라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1979년 12월 4일 미 국무부의 홀부르크가 서울 클라이스틴 대사에게 보낸 '노디스' (No Distribution: 고위정책담당자들 이외에는 볼 수 없도록 한 기밀문서) 전문에서 홀부르크는 닐, 글렌, 울프, 스톤 등을 비롯한 주요 상원의원 하원의원들과 대한전략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을 밝힌다. 홀부르크는 "우리는 지금 그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들의 태도는 다른 모든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란위기에 지배되고 있다. 말할것도 없이 누구도 또 '하나의 이란'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또 하나의 이란'이란 미국의 핵심적인 동맹국에서 혼란과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미국의 행동을 가리킨다." 이 언급을 통해서 홀부르크는 당시 한국정부와 군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한국에서 민주화일정의 명확한 진전과 같은 어떤 가치보다도 당시 이란에서 미국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불안정과 혼란'을 차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이러한 미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미국 정치권이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홀부르크는 이 전문에서 당시 한국에서 'YWCA 결혼식' 사건과 관련해 계엄령 철폐를 요구했던 민주화운동 인사들의 행동을 "비교적 한 줌에 지나지 않는 기독교계 과격파 반정부운동가들로 보이는 자들의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행동의 결과로 한국정정에 양극화 잠재성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다만 김관석과 김추기경과 같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여하지도 고무하지도 않은 것을 인상깊게 주목하고 있다.

홀부르크는 이어서 당시 미국의 대한정책을 요약하고 있다. 그것은 정부와 반정부세력간의 대결이 가

저울 양극화현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텔레키트한 양면 작전을 펴는 것이었다. 군부에 대해서는 군부가 자유화조치에 부응한다면 미국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미국은 기독교계 반정부인사들이 가두시위를 조장함으로써 지난 2주일간에 이미 200여명을 구금하기에 이른 군부의 불행한 대응을 부추겼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 반정부세력들에게 거리 시위는 지난 시대의 구습이라는 것을 일깨워주어야 한다고 홀브루크는 강조했다. 심지어 거리 시위가 아니고 단순한 모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엄령을 위반한 것이면, 계엄령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런 행동들을 미국은 백해무익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알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어서 홀브루크는 미국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리했다: "우리의 메시지는 이것을 강조해야 한다. 반정부세력들은 미국의 정책을 오해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계엄령과 긴급조치 9호의 해제를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텔레키트한 시점에서는 계엄령에 대한 도전을 지지하지 않는다."<sup>37)</sup>

홀브루크는 특별히 그런 메시지를 강조할 이유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그 중의 첫째는 한국의 기독교지도자들이 미국이 지난 10년간에 걸쳐, 그리고 특히 그해 카터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기독교인사들에 보인 특별한 관심 때문에 이들이 미국의 대한정책을 오판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을 특별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미국이 그들을 도와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를 시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홀브루크는 또 그러한 메시지를 반정부세력들에게

강력하게 발함으로써 한국정부와 군부가 미국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즉, 미국은 한국에서 어떤 정치적 변화도 계엄령과 긴급조치 9호를 유지하고 있던 한국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한다는 것, 즉 한국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안정과 질서이며, 정치권력의 연속성이라는 것을 한국정부, 군부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세력에게 명백히 선언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미국은 당시 자신의 이같은 행동들은 당시 한국의 미묘한 정국에서 정부와 군부 내 강경파들과 민주화운동진영간의 양극적 대결양상이 한국 민주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순조로운 민주화이행을 위해서는 마같이 자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이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와 계엄당국에게 자유화조치들을 권유하면서도 많은 인사들이 계엄령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체포구금되는 상황에서 안정과 질서의 확보를 위해서는 계엄령체제를 지지하는 것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이것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한국 정치군부의 유혈무력살상사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협조과정에서 절정에 달하는 미국의 거의 맹목적인 '안보와 안정' 제일 정책의 첫단추였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정 속에서의 변화를 추구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당시 한국 국민은 변화없는, 변화를 향한 분명한 청사진 없는 안정의 논리를 군사독재와 억압의 논리의 다른 표현으로 보았던 것이지만, 미국은 당시 한국정부 및 군부와의 안정적 협조관계 유지가 미국의 대한정책의 제일차적 목적이었음을 확인하여준 셈이었다. 그

37) From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to American Embassy, Seoul, Drafted by Richard Holbrooke, Approved by Richard Holbrooke, December 4, 1979, p.3

것은 대체로 그 이전부터도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대한정책의 일관된 주조였으나, 1979년 12.12 이전 미국의 그같은 태도의 재연이 새삼스럽게 새겨지는 것은 바로 그 12.12와 그의 필연적 귀결인 광주의 비극의 전개라는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시점에서 미국이 무엇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하나의 필연성을 느끼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무부가 주한미국 대사관에 보낸 전문들 중에서 한국에 왜 아직 계엄령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묻는 것은 단 하나인데 그것은 이 글의 모두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미국무부 인권국에 근무하던 패트리샤 데리안 여사(Patricia M. Derian)였다. 12월 4일 데리안 여사가 승인해서 서울에 보낸 전문은 "한국정부는 왜 계엄령과 긴급조치 9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들은 분명히 한국에서 보다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으로 믿는다"고 쓰고 있다.<sup>38)</sup> 며칠 후 보낸 답신에서 글라이스틴은 보다 큰 맥락의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설명한 최근의 전문을 참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긴급조치 9호는 곧 해제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후, 계엄령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국정부의 인식을 들어 답변하고 있다. 그는 한국정부도 처음에는 계엄령을 해제할 생각이었으나, 전대통령 윤보선, 일부 교회활동가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의 "참을성 없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려한 결과 처음의 생각을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한국정부가 계엄령을 해제하기를 원하지만 그럴 경

우 "반정부세력 내부의 과격파들(extremists)이 더욱 대담해져서 항의시위를 부추기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sup>39)</sup> 결국 글라이스틴은 한국정부의 논리를 들어 계엄령해제 연기의 변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 대목에서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대변인이 당시 미국대통령 지미 카터를 평한 말을 떠올리게 된다. 그는 "카터의 문제는 그는 정의보다 안정을 지지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 카터는 물론 적당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질서가 확립된 다음에야야 정의가 지배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sup>40)</sup> 그러나 구체적으로 1979년 12월 초, 한국에 어떤 불안정과 무질서가 있었는가? 미국의 분석에 의하더라도 북한의 비상한 군사적 움직임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만일 같은 논리로 미국이 1979년 12월 초의 한국의 계엄령 연장을 노린 한국정부와 군부의 태도를 두둔하여야 한다면, 당시 한국에 어떤 무질서가 존재했는지를 미국은 설명해야 한다. 그러한 무질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1979년 12.12 이전 미국의 계엄령체제 옹호 태도는 결국 맹목적 안보와 안정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같은 미국의 논리는 한국에서 군부의 강경파들이 안보와 안정의 논리를 더욱 강화하면서 12.12를 통해 정치의 전면에서 나서는 상황을 국내외적으로 정당화하고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12.12 쿠데타가 진행된 이후 미국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 관심사를 축으로 모아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

38) From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to American Embassy, Seoul, Drafted by C.B. Salmon, Approved by Patricia M. Derian, December 4, 1979.

39) From American Embassy, Seoul, to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For Assistant Secretary Derian from Gleysteen, December 7, 1979.

40) Douglas Brinkley, "Jimmy Carter's Modest Quest for Global Peace",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1995, p.96.

각된다. 한 가지는 미국이 10.26 이후 한국정부에 종용해온 '안정 속의 변화'라는 원칙 속에서 강조된 그 안정이라는 가치가 민간 민주화운동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군부 내부의 권력쟁탈전에 의하여 붕괴되고 있는 데 대한 당황함과 불안감이었다. 글라이스틴은 13일 최규하를 방문해서 신군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군부 내의 불복종사태(insubordination)로 규정하고 그것이 "북한의 위협"에 비추어 갖는 위험성을 경고했다.<sup>41)</sup> 그의 경고는 주로 그러한 불안의식에 바탕한 것이었다. 미국정부는 물론 이 사태가 12.12 이전에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이 간주했던 '질서정연한 자유화 과정'(orderly process of liberalization which had developed in recent weeks)에 초래할 악영향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에 미국의 우려를 전달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12일 밤의 항명사태(acts of subordination)가 "북한의 오판"(misinterpretation by the North)을 초래할 가능성을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42)</sup>

둘째, 곧 이어 미국정부는 신군부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 신군부가 취한 조치들(정부각료개편 및 새로운 군부요직 인사조치)을 인정하면서 한국 군부의 통일성을 뒷받침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12월 13일 오전에 본국으로 보낸 전문에서 "우리가 겪은 것은 이름만 아닐 뿐이지 모든 면에서 쿠데타였다"(We have been through a coup in all but name)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쿠데타세력의 주요동기의 하나로서 이들 신군부 집단의 권력욕(lust for power)를 들었다.<sup>43)</sup> 그러나 글라이스틴은 곧 신

속하게 신군부의 행동을 쿠데타로 규정하는 태도를 수정함으로써 신군부의 행동을 군부 내부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태도를 취했다. 미국시간으로 12일 저녁에 미 본국에서 국무차관 워렌 크리스토퍼의 서명과 함께 서울대사관에 타전된 한 전문은 미국이 이미 그런 방향으로 신군부 쿠데타의 성격을 축소조정하는 기민함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그 전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글라이스틴 대사의 권고에 기초하여,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상황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성격 규정하여 이것이 쿠데타라는 인상을 피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것은 서울(미대사관측)에서 이 문제 전체를 하나의 군 내부 문제(an internal military matter)로 다루면서도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 전문은 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보도 지침(press guidance)을 준비해서 미국시간으로 12일 정오에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때 기준으로 삼았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상황에 대한 "미국의 깊은 우려"를 표현하는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 전문은 밝히고 있다.<sup>44)</sup> 말하자면, 공개적으로는 한국의 정치발전에 대한 미국의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큰 맥락의 성명들을 준비하면서, 내밀하게는 신군부의 쿠데타를 군 내부 문제로 축소해서 이 신군부가 장악한 한국 군부와 미국 간의 안보 등 협조관계에 차질이 없도록 보도지침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대응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행동이 여실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글라이스틴이 신군부의 행동을 쿠데타로

41) From Seoul to Secretary of State, 130927Z, December 1979.

42) From American Embassy in Seoul to Secretary of State, 130803Z, Dec. 1979, "Discussion of Military Grab with President Choi."

43) From American Embassy in Seoul to Secretary of State, 130927Z, Dec. 1979, "Younger ROK Officers Grab Power Positions."

44) From Secretary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in Seoul, 121951Z, Dec. 1979.

규정했던 먼저의 전문에서 분석한 대로 이들 신군부 지도자들(the Young Turk officers)이 반공주의자요 친미주의자들이라는 사실도 물론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크리스토퍼의 전문이 있는 이후 글라이스틴이 새로 작성해 본국으로 보낸 전문에서 글라이스틴은 신군부의 행동을 쿠데타로 규정할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반성'한다. "내가 (충격으로) 휘청거리는 통에(in part because of my grogginess), 나는 우리가 12월 12일 사건을 어떻게 성격을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특히 공개적이거나 반(半)공개적인 석상에서,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못했다. 나는 스스로 조심성 없이 그것을 '이름만 아닐 뿐 모든 면에서 쿠데타'라고 묘사했다. 그 사건의 양상이 정확하게 무엇이든지간에 이 사건들은 고전적인 쿠데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정부구조가 '기술적으로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글라이스틴은 크리스토퍼 등 미 본국정부의 기민하고 '올바른' 사태 대응에 한수를 배우면서, 듣기에 민망할 정도의 자아비판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궁색한 쿠데타 이론까지 들먹이고 있는 셈이다. 이어서 글라이스틴은 이것이 왜 쿠데타가 아닌가에 대한 또다른 궁색한 구실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말한다: "더구나 우리는 (그들로부터) 매우 방어적인 톤의 해명들을 듣고 있다. (그들은) 이 사건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쿠데타를 의도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나는 이러한 해명들에 회의적이지만, 우리가 사태를 더 잘 파악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사건에 어떤 딱지를 붙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믿는다."<sup>45)</sup> 여기에서 이미 미국정부와 한국 신군부와의 밀착관계는 예정된 것에 다름 아니었다.

글라이스틴은 한국시간으로 13일 본국에 보낸 먼저의 전문에서 신군부의 권력장악조치가 신속한 것이었던 만큼 이 사태에 불만을 품은 다른 군인집단이 역쿠데타를 기도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이로 인한 한국 군부의 통일성의 붕괴에 대하여 미국은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미국이 신군부의 쿠데타를 사실대로 쿠데타로 규정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한국 군부의 통일성이 더욱 위협해질 수 있다는 계산도 미국이 신속하게 신군부행동을 군 내부 차원의 문제로 축소시키면서 신군부가 핵심이 된 한국군부의 체제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 배경의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위킴이 마크 피터슨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과 연결시켜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위킴은 신군부의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을 때 용산 미군병커에서 신군부 군부대의 서울진입을 저지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사실상 반대하고 '더 기다리자'면서 날을 밝혔음을 인정한 바 있다.<sup>46)</sup> 미국은 사실상 어떤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든 그 군부의 통일성과 이 군부와 미국간의 원활한 관계에 가장 핵심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쿠데타 진행과정에서부터 지켜진 원칙의 하나였다고 보인다.

셋째, 미국은 최규하정부가 유명무실한 것으로서, 한국 군부를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을 전제하면서도, 최규하정부와 전두환 주도 신군부 간의 관계

45) From American Embassy in Seoul to Secretary of State, 141039Z, Dec. 1979, "Need for Care in Characterizing December 12 Incident."

46) Mark Peterson, "Americans and the Kwangju Incident: Problems in the Writing of History", in Donald N. Clark ed., *The Kwangju Uprising* (Boulder: Westview, 1988). 이에 대한 필자의 자세한 언급은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 제1부 제4장.

에 신경을 썼다. 그것은 전두환 신군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가 여전히 민간정부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갖는 데 중요한 것이었다.

미국은 이러한 복합적인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우 세심한 접근방식을 취한다. 먼저 글라이스틴은 12월 14일 전두환과 접촉했다. 이것은 그가 지적하고 있는대로 전두환 실세와 미국이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가동한 것을 의미했다. 미국은 그것을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당연히 초래하는 여파, 즉 미국이 전두환 신군부를 인정하고 그것과 밀착하였다는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글라이스틴이 전두환을 만나서 나누는 얘기는 주로 군부 내 갈등이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과 질서 속에서 한국의 자유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었다.<sup>47)</sup> 결국 전두환 실세의 인정과 관계정립이라는 구체적인 미국의 이익을 한국 민주화일정의 지속이라는 미국의 공식정책의 추상적 언급이라는 틀 속에 한 패키지로 묶는 묘수를 선택한 셈이었다.

이러한 글라이스틴의 행동을 미 본국정부는 현명한 것으로 지원한다. 미국시간으로 16일 서울로 보낸 전문에서 밴스 미 국무장관은 글라이스틴의 행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위의 목적을 모양 좋게 달성해나가기 위해 세심한 작전지시를 내리고 있다: "우리는 전두환과 정례적인 직접 접촉을 확립하지 않기로 한 당신의 전술을 승인한다. 그런 일은 구조적 상황이 변할 때까지는 위کم 장군이 가장 잘 처리할 것이다." 즉, 대사는 주로 정부를 담당하고 다른 한편으로 신군부와의 관계 정립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일을 분담시킨 것이다. 이어서 밴스는 그 시점에서 미국의 정책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군부의 통일성이 해체되는 위험한 사태를 막는 것이었다. 둘째는 질서있는 민간지도 하에서 한국이 광범한 기반을 가진 민주정부로 나아가는 모멘텀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두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규하 대통령과 그의 내각의 이미지를 가능한 한 많이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고 밴스는 강조했다. 밴스는 특히 미국언론들이 신군부 쿠데타 이후 이루어진 최규하의 새로운 내각이 신군부 군인들이 자신들의 인물들로 채워넣은 신군부의 허수아비내각이라는 이미지를 퍼뜨리고 있는 데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sup>48)</sup> 결국 미국 정부는 가능한 최규하내각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미국이 12월 12일의 신군부 쿠데타는 군 내부 문제에 불과한 것인 것처럼 행동해도 미국의 체면이 유지될 수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냈고, 그것의 하나가 최규하정부의 이미지를 실제보다 더 제고시키는 작전이었던 것이다.

신군부 탄생의 순간에서부터 미국이 보인 이같은 밀착과 그 밀착을 겹치레로 감추는 비대칭적 이중정책(신군부와의 관계정상화 및 민주화일정촉구라는 이중 정책 중에서 신군부와의 협조관계를 우선시하는 노선)이 곧 신군부에 의한 그들 주도의 정권창출 구도를 미국이 국내외적으로 두호하는 효과를 냈다. 이러한 구도는 결국 한국 민주화일정의 붕괴와 그것이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되는 학생과 민중의 저항을 낳고, 그것은 광주에서 그 역사의 절정에 달하게 된다. 광주 전후에 미국이 취하게 되는 군부와의 밀착, 그 능동적 협력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군사작전에 대한 공모라는 비극적 귀결은 바로 12.12 쿠데타에 대한 성격규정을 둘러싼 미국정부의 인식과 대응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었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47) From American Embassy in Seoul to Secretary of State, 150834Z, Dec. 1979.

48) From Secretary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in Seoul, 160301Z, Dec. 1979, "Korea Focus - Your Discussion with MG Chon Tu-Hwan."

#### 4. 1980년 5월 미국의 대군부협력: 치명적 비대칭성의 귀결

미국이 그간은 전두환의 신군부와의 협력을 노골화할 수 없었던 이미지관리의 문제로 신군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부분 일정한 긴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한미간의 연례안보회의(SCM)를 연기하고 있었던 것은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계엄령체제 유지를 둘러싼 학생과 시민들의 저항과 이에 대한 신군부의 초강력대응의 구도가 노골화되면서 미국과 전두환 군부간의 긴장은 어쩌면 더 심화될 수도 있었을 터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정 반대였다. 이런 상황이 되자 글라이스틴과 미국은 전두환군부와의 긴장관계를 전두환군부와의 협조관계를 통해 더욱 해소할려는 자세를 보였다. 5월 7일 오전 일찍 글라이스틴이 거의 연달아 미 본국에 보낸 전문들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먼저 글라이스틴은 5월 9일 전두환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이 만남에서 미국과 신군부간의 관계를 더 우호적인 것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글라이스틴이 같은 5월 7일자 워싱턴에 보낸 전문은 이를 잘 보여준다. 5월 9일 전두환을 만나면 글라이스틴은 "우리들 사이(between us)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비대결적인 화제들을 몇 가지 논의할 것이며 우호적인 분위기(businesslike atmosphere)를 유지할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그는 "나는 도발적인 발언을 피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질서 속의 변화를 추진할 형식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 아닌 한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sup>49)</sup>

그러나 이 전문에서는 아직 신군부와의 표면상의 긴장과 내밀한 밀착이라는 요소가 묘한 긴장을 이루

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전두환과 만나서 어떻게 한국의 정치일정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환기시키겠다는 의사는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군부와의 협조관계 강조와 정치일정에 대한 관심환기라는 두 가지의 이중적 동기가 신군부와의 밀착을 축으로 하는 비대칭적 이중성이라는 사실은 한국군부가 미국측에 대민 군대투입 통보 및 유사시 승인요청을 받았을 때 여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앞서의 전문에 바로 뒤이어 글라이스틴이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은 광주에서의 유혈진압에 대한 미국의 공모의 실상의 그 첫 구체적인 증거를 담고 있다. 신군부와의 밀착과 정치일정에 대한 관심이라는 이중성간의 비대칭성이 표면상의 균형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는 순간이다. 그것이 가면이었다는 것, 미국 인권외교라는 것의 기만성이 스스로를 폭로하는 순간이다. 이 전문에서 글라이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 군부는 미군사령부에 다음과 같은 군대이동에 관해 협의(advise)했다. 현재는 연합야전군(Combined Field Army) 지역에 있는 제13공수여단을 5월 8일 임시임무를 위해 서울 동남방의 특수전센터로 이동할 것이다. 5월 10일에는 현재 대한민국 제1군(The First Republic of Korea Army: FROKA)지역에 있는 제11공수여단을 김포반도로 이동해 임시임무를 위해 제1공수여단과 같은 위치에 있도록 한다. 총 2,500명에 달하는 이들 두 여단은 학생시위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지역으로 이동중이다. (한국 군부는 미군사령부에게 현재 포항에 주둔해 있는 대한민국 제1해병사단이 대전·부산지역에서 필요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통보받았다(alerted). 제1해병사단은 연합사(CFC)의 작전통제권 하에 있으며, 따라서 부대 이동시 미국의 승인(U.S. approval)이 필요하다. 아직 (한국 군부로부터

49) From Gleysteen to Secretary of State, 070904Z, May 1980, "Korea Focus - Meeting with Chun Doo Hwan."

터) 그런 요청은 없었다. 그러나 요청을 받으면 유엔 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은 동의해줄 것이다.”<sup>50)</sup> 말하자면 글라이스틴은 위컴과의 협의 하에 한국군부가 통보한 대민 군대투입 작전을 승인하고 있었다. 특전단들은 연합사 작전통제권 밖에 있는 것이므로 한국 군부는 이 부대들의 이동을 연합사에 통보하고 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으나 한국군부는 그렇게 했다. 한국군부는 해병대도 대민 군대투입에 사용할 뜻을 전했는데, 연합사 작전통제권 하에 있는 이 부대의 대민투입을 한국군부가 요청할 경우 미국은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었다. 그로 보아 글라이스틴과 위컴은 한국에서 가열되고 있던 신군부의 군사정권 연장기도에 대한 한국의 학생과 시민들의 저항을 군대투입을 통해 대처하겠다는 발상과 구체적인 작전에 관해 한국군부와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을 증거한다. 이 또한 글라이스틴과 위컴이 12.12에 대한 쿠데타 규정 거부과정에서 구체화하기 시작한 미 국무부 전체와 위컴으로 대변되는 미 군부 그리고 주한미대사관 간의 긴밀한 시각공유 과정을 통해 다져온 정세 인식과 대응전략에 대한 공동보조의 구도가 굳어진 것을 반영한다.

이 전문에서 글라이스틴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학생들은 5월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정부가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으면 캠퍼스를 벗어나 가두시위를 감행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미국의 선택은 15일까지 계엄령을 해제하는 정치적 자유화조치를 한국정부에게 촉구할 것인가 아니면 이에 군대 투입이라는 상상가능한 최극단의 조치로 대응하는 전두환군부의 시나리오에 협조하고 공모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전두환군부와의 협력과 공모

를 선택한 것이었다. 미국이 이 시점에서 한국정부와 군부에게 계엄령해제를 위해 어떤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미국의 선택은 분명한 것이었다.

글라이스틴은 이어 8월에 워싱턴에 보낸 전문에서 최규하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일관되고 균형된 호소를 하도록” 촉구하되, “우리들간의(글라이스틴 자신과 최규하 간의) 어떤 협의에서도 우리는 한국정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경우 경찰을 군대로 보강하여 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비상계획에 대해 미국정부가 반대한다는 시사를 결코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sup>51)</sup> 미국시간으로 5월 8일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글라이스틴에 보낸 답신에서 그는 “법 집행업무가 신중과 자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기가 상승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전두환과 최규하에게 상기시킬” 필요를 지적하긴 하였지만 “우리는 우리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비상계획을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다.<sup>52)</sup>

글라이스틴이 미 본국 고위관리들과 위와 같은 입장 정리를 마친 후 이루어진 5월 9일의 그와 전두환의 만남은 미국측의 다짐대로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그는 “전두환 장군과의 대화는 아주 잘 진행되었다. 나는 분위기를 쉘렁하게 하거나 그와 논쟁을 하지 않으면서 나의 논점을 그에게 전달했다. 더구나 학생들이 제기하는 안보상황에 대한 매우 긴 대화를 통해서 그는 분명 내가 (전두환의 관점에) 동감하고 있음(sympathetic)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학생들 문제에 많은 고려를 했고 과잉대응이나 군사력 사용이 안고 있는 위험도 잘 의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53)</sup> 결국 글라이스

틴은 전두환과 만나 군사력 사용은 가능한 자제할 것을 촉구한 것인데, 이 회담의 효과는 그런 자제 요청보다는 전두환이 학생시위사태를 빌미로 유사시 군사력사용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데 글라이스틴이 동조적인 태도를 보인 데 더 큰 의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전두환과의 대담에 바로 이어 이루어진 청와대 비서실장 최광수와의 협의에서 글라이스틴이 다시 새삼 미국은 “법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군사비상작전계획(military contingency plans)를 개발하는 것을 미국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같은 효과는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펴는 것은 가능한 자제해야 하나 당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찬성한다는 부추김 이외에 이를 무엇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머스키 국무장관은 13일자 전문에서 글라이스틴과 최광수와의 만남의 결과에 만족을 표시한다.<sup>54)</sup>

미 대사관측의 분석에 의할 때에도 5월 10일 들어서 학생들의 시위는 진정되고 있었다. 서울지역 23개 대학의 학생지도자들이 9일과 10일에 걸쳐 가진 모임은 “원칙적으로 장차 시위는 평화적이고 캠퍼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sup>5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 한국정부의 ‘헌법개정심의위원회’는 두달에 걸친 헌법 개정에 대한 공개청문회 개최 계획을 취소했다. 구실은 “청문회가 열릴 주요 도시에서의 학원소요를 비롯한 사회혼란”이었다. 그런

데 이 사실을 보고하는 전문에서 글라이스틴은 청문회가 취소됨으로써 오히려 정부의 정치발전 일정이 가속될 수 있다는 묘한 분석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56)</sup> 그것이 정치일정 단축에 기여할 수 있느냐 여부는 취소의 배경이 문제인데, 정부가 제시한 취소의 구실이 실제로는 학생들의 시위사태가 오히려 진정되려는 참에 학생시위를 비롯한 사회혼란을 들었던 사실을 주목할 일이었다.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물론 계엄령 조속 해제에 대한 학생과 민주화운동세력의 요구를 가열시키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5월 13일엔 정당대표들이 모여 5월 20일 20일간 예정의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결의하게 된다. 계엄령을 해제하는 문제와 헌법개정과 선거일정문제를 다루는 것이 임시국회의 목적으로 제시되었다.<sup>57)</sup> 같은 5월 13일자 전문에서 글라이스틴은 한국의 군부가 전면적인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서울대학 학생들이 철야 계엄령 해제 요구 농성을 중단했으며, 서울지역 학생대표자들이 당분간 모든 공개적인 정치항의시위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음을 보고한다.<sup>58)</sup>

그러나 학생들의 시위는 13일 정오부터 다시 가열되기 시작한다. 글라이스틴은 한 전문에서 그같은 학생시위의 재확산의 직접적인 이유를 5월 12일 퍼지기 시작한 군부쿠데타 가능성에 관한 소문에서 찾았다. 글라이스틴은 “정부당국으로부터 특히 계엄령 해제와 같은 양보조치를 확보할 수 없는 지속적인 불능 상태에서 오는 짐증하는 좌절감이 저변에 깔려 있다”

53) From Gleysteen to Secretary of State, 090939Z, May 1980, “Korea Focus - Meeting with General Chun and Blue House SYG Choi.”

54) From Muskie to Gleysteen, 130254Z, May 1980.

55) From American Embassy to Secretary of State, 120920Z, May 1980.

56) From Gleysteen to Secretary of State, 120922Z, May 1980, “Govern Cancels Public Hearings on Constitutional Reform.”

57) From Gleysteen to Secretary of State, 130750Z, May 1980.

58) From Gleysteen to Secretary of State, 130858Z, May 1980.

50) From Gleysteen to Secretary of State, 070906Z, May 1980, “ROK Shifts Special Forces Units.”

51) From Gleysteen to Secretary of State, 081017Z, May 1980, “Korea Focus - Building Tensions and Concern over Student Issue.”

52) From Secretary of State to Gleysteen, 082057Z, May 1980.

고 그는 분석했다. 글라이스틴은 이어 자신이 최근에 접촉한 사려깊고 온건한 학생들조차도 그같은 좌절감을 토로했다고 적고 있다. 그는 교수와 정치인같은 온건한 세력이 활동하고는 있지만 단기적 전망은 대결이 지속될 것 같다는 분석을 덧붙였다.<sup>59</sup> 말하자면, 학생지도자들은 한때 군부쿠데타 소문에 '군부에 빌미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전술적 판단으로 자제를 결정한 셈이었지만, 학생대중들에서는 그같은 상황에 대한 좌절과 보다 근본적이고 본격적인 저항의 정서가 확산되고 있었던 셈이다. 5월 15일 글라이스틴이 보낸 한 전문은 5월에 들어서 전개된 한국 학생시위의 굴곡과 그 주도세력들에 대해 길게 분석한 장문이다. 여기에서 그는 학생들 내부 분위기를 과격파들(radicals)이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5일에 격렬하게 일어난 시위의 배경을 글라이스틴은 그렇게 평가했다.<sup>60</sup> 5월 16일에 보낸 한 전문에서 글라이스틴은 그날 오후 5시 현재 서울은 조용하다고 보고한다. 학생 지도자들은 그 시간 전술을 토론하며 서울지역 학생지도자 모임을 갖고 있다고 했다. 캠퍼스들은 평화로우며 연세대 등을 포함한 여러 대학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도 지적하고 있다.<sup>61</sup>

같은 5월 16일 글라이스틴의 서명으로 워싱턴 본국에 보내진 한 전문은 당시 미국이 계엄령해제와 정치발전문제를 놓고 한국의 신군부와 학생들간의 대결이 본격화해가는 국면을 맞아 글라이스틴이 과격파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규정한 한국 학생운동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시사하는 장문의 것이다. 여기에서 글라이스틴은 5월 10일 학생지도자

들의 모임에서 발표된 성명서 전문을 번역해 실고 있다. 그는 "워싱턴의 독자들(국무부 관계자들을 의미함 - 필자)에게 약간의 이 지역 분위기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 서울지역 학생지도자들의 5월 10일 성명서 텍스트를 대충이나마 번역해 전한다. 이 텍스트는 외국인혐오(xenophobia)와 과격한 수사들을 드러낸다"고 적고 있다. 그는 이것이 서울과 그 인근지역의 모든 대학의 지도자들이 서명한 성명서라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sup>62</sup> 17일 저녁에 글라이스틴이 본국에 보낸 전문에서 그는 이날 서울은 표면상으로는 조용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15일 늦게 시작해 16일 새벽까지 계속된 모임에서 서울지역 26개 대학 학생지도자들은 당분간 캠퍼스 밖에서의 시위는 중단하기로 결의했다는 소식도 지적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5시 현재 이화여자대학에서 한국전역의 50개 대학 학생대표자들이 모여 향후의 행동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전문에서는 그 시각 현재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 전문은 또 김대중과 김영삼이 회동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사회안정을 위해 학생들이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하고 있다.<sup>63</sup>

글라이스틴은 이 태풍의 전야같은 소강상태를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그는 17일 저녁 청와대로 비서실장 최광수를 방문했다. 그는 조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며칠간을 계엄령과 정치일정문제에 대해 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어떤 양보든 최대한 명확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글라이스틴은 군부가 강경노선의 정치적 조치들을 전단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한 표현을

59) From Gleysteen to Secretary of State, 140926Z, May 1980.

60) From Gleysteen to Secretary of State, 150959Z, May 1980.

62) From Gleysteen to Secretary of State, 160917Z, May 1980.

61) From Gleysteen to Secretary of State, 160902Z, May 1980.

63) From Gleysteen to Secretary of State, 170309Z, May 1980.

사용해 강조했다고 보고한다.<sup>64</sup> 글라이스틴이 이 전문을 작성하는 중에 "폭동진압경찰(riot police)이 이화대학 캠퍼스에 들어가 회의중이던 학생들을 제거하기(반드시 체포한 것은 아니고)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문에 끝에는 글라이스틴은 "곧 우리는 아주 결정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곧 이어서 보낸 전문에서 글라이스틴은 "한국군부 지도자들이... 한국정부의 합법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학생들과 그리고 분명 정치권 전체에 대한 강경한 억압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한다. 이 전문에서 글라이스틴은 한국 군부가 미국측에 어떤 통보도 함이 없이 학생 및 정치인 체포와 계엄령 전국확대(제주도 포함)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을 표현했다.<sup>65</sup> 이러한 좌절감은 크리스토퍼글라이스틴이 미국시간으로 18일 글라이스틴에게 보낸 전문에서도 강한 톤으로 표출되고 있다.<sup>66</sup> 또한 글라이스틴이 18일 계엄사령관 이회성을 만나 나눈 대화에서도 그러한 미국의 심정이 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67</sup> 그러한 좌절감에는 물론 정치일정문제 못지 않게 한국 군부에 대한 미국의 우호적인 밀착의 제스처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군부가 중요한 정치적 조치들에 대하여 미국측과 사전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 결국 한국 군부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의 문제에 대한 미국측, 특히 미국무부측의 불만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전두환의 신군부가 워킹 등 미 군부나 미 중앙정부국 등 미국 다른 부서들과 어떤 교감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는지는 이 국무부 문서만으로는 그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

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자신들이 5월 초부터 전두환 신군부의 대민 군대투입계획에 동조해온 사실에 대하여는 어떤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 자신들의 그같은 동조가 한국의 신군부의 엄청난 대민 군대무력사용의 개연성에 대한 공모였으며, 그러한 공모는 신군부가 군대의 대민투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동원해 전면적인 군사정권확립을 모를 부추길 상황을 방조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성찰도 드러나 있지 않다.

글라이스틴은 미국이 이미 허수아비임을 알고 있던 청와대의 최규하나 비서실장 최광수를 만나 정치일정을 명확히 밝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부분적으로 전개하긴 했으나, 신군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질서유지를 위한 대민 군대 투입에 찬성한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해온 자신의 행동과 정책을 수정하려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즉, 미국은 허수아비를 향하여 민주화일정 제시를 권고했으나, 자신들이 너무나 명백히 실제로 파악하고 있던 신군부와 자신이 맺은 비상작전계획에 대한 암약이라는 실질적 대한정책의 골격에 대한 어떤 반성도 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5월 17일 밤 한국군부가 취한 행동이 12.12 직후부터 노골화된 미국의 대한정책의 '비대칭적 이중성'의 논리적 귀결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글라이스틴을 포함한 미국의 정책담당자들은 어떤 자각도 드러내고 있지 않다. 그들이 실제 그들의 의식 안에서 전적으로 그러

64) From Gleysteen to Secretary of State, 171125Z, May 1980, "My Meeting with Blue House SYG Choi Kwang Soo."

65) From Gleysteen to Secretary of State, 171630Z, May 1980, "Crackdown in Seoul."

66) From Christopher to Gleysteen, 180008Z, May 1980, "Crackdown in Seoul."

67) From Gleysteen to Secretary of State, 181113Z, May 1980, "My Call On Martial Law Commander General Lee Hui Sung."



한 자기모순에 대한 자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는가 여부는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1979년 10월 이후 전두환 신군부의 등장과 1980년 5월 광주 비극에 이르는 기간 미국의 행태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바로 이 사실은 미국이 12.12 이후 신군부와 밀착과 함께 일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였으나, 1980년 5월 학생시위와 노동쟁의가 본격화되면서 신군부가 유사시 대민 군대투입이라는 비상작전계획을 세우는 가공할 상황에서 미국은 오히려 그들과 능동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의 요체이기도 함은 이미 지적한 바이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행동양식은 5월 광주의 비극 앞에서 재연된다. 즉, 신군부가 미국에 통고도 없이(적어도 국무부 채널에) 계엄령확대조치를 취하자 일련의 강력한 항의의 조치들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표시함으로써 외관상 신군부와 일정한 긴장관계를 회복하는 것 같았던 미국은 광주에서 다시 군부와 시민간의 대결이 군부의 주도 하에 유혈사태로 치닫는 가공할 상황에서 미국은 다시 신군부에 대한 능동적 협력이라는 태도를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역시 당시 미국 대한정책이 내포했던 신군부와의 실질적 유착을 기본축으로 하면서 부차적으로 정치일정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던 '비대칭적 이중성'의 태도가 결정적 대결의 국면마다에서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것을 나타낸 것, 즉 그것의 논리적 귀결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광주에서 유혈의 전개와 미국의 대응의 문제를 몇 가지 문제에 초점을 한정해서 살펴보고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먼저 미국은 특전단의 광주투입

과 그에 뒤따른 유혈의 정보를 19일부터 입수하기 시작한다. 이 19일자 전문에서 글라이스틴은 광주의 일부 시민들이 한국군대가 어떤 북한군대보다 더 잔인했다고 증언한 것과, 특전단이 총검을 휘둘러 학생과 시민이 다쳤다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전문의 끝부분은 한국 보안사가 부상자는 없다는 보도를 했다는 것으로 맺어져 있다.<sup>68)</sup> 21일의 전문에서 글라이스틴은 광주에서 '폭동'과 '무질서'의 확산, 그리고 "군부가 상당한 무력을 사용해서 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폭동과 그에 대한 군부의 정당한 질서회복 노력이라는 구도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무력의 사용은 질서회복 노력의 정당한 수단으로 치부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은 조용한데 왜 광주에서 유독 폭동이 크게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한국의 신군부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지역주의적 정서, 호남인들의 오랜 소외감과 불만, 그리고 김대중등 특정정치인 차원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sup>69)</sup> 계엄 해제와 군사독재 극복이라는 보편적인 광주항쟁의 주제와 그에 대한 신군부의 가공할 살육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곧 신군부와의 대민 군사력 투입에 대한 자신들의 공모의 가공할만한 결과에 대한 자기 변호의 표현일 수도 있다. 신군부의 비상계획에 대한 미국의 공모는 광주항쟁의 본질에 대한 신군부의 인식과 논리의 공유를 수반했던 것이다.

21일에 보내진 또 다른 전문에서 글라이스틴은 20년만에 처음으로 한국군부가 최대의 시련에 직면했다고 적고 있다. 광주의 '폭동자들'(rioters)은 무기를 부수고 무기를 들었으며, 적어도 15만명이 폭동에 참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군대는 오늘밤 군병력을 시내 밖으로 철수시키고 도로를 차단하며

68) From Gleysteen to Secretary of State, 190859Z, May 1980.

69) From Gleysteen to Secretary of State, 210932Z, May 1980, "Kwangju Riot and Future Political Stability."

두 개의 군사기지와 2천명의 좌익인물들(2,000 leftists)을 가두고 있는 한 형무소를 지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고 적고 있다. 미대사관이 신군부(계엄당국)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논조이다. 실제 미군사령관 위컴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에 대비해 DEFCON 3 수준의 경계태세를 취하는데 동의함으로써 한국군부의 광주에서의 '폭동진압'을 전후방에서 협조지원하는 작전에 돌입했음을 이 전문에서 글라이스틴은 밝히고 있다.<sup>70)</sup>

미국이 광주민주화운동 시위대가 20만을 넘어서면서 전두환군부가 공수부대만으로 모자라자 박준병의 20사단을 추가로 광주에 증원파견요청하자 미국은 5월 22일 승인을 결정한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였다.<sup>71)</sup> 글라이스틴은 그 승인 결정 이후 한국정치군부 관계자들과 만난 후 미국정부에 보낸 전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그것은 당시 미국외교의 요체를 보여준다: "나는 (한국군부에게) 한국군대가 광주에서 질서를 회복하고 문제가 다른 지역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개하는 노력들을 우리(미국정부)가 지원(facilitate)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공개하지도 않았고 또 그럴 의사도 없었다. (공개될 경우) 우리가 계엄당국과 공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광주지역에서 반미감정이 확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sup>72)</sup>

23일과 24일은 광주 내부에서 시민들 사이에 무장한 시민군 일부가 무기를 반납하고, 몇가지 조건을 내걸며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협상을 제기한 때이다. 거기에는 정부가 정치일정을 명확히 하고 광주의 진상을 공정하게 보도하며 정부가 광주시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 그리고 보복하지 않을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sup>73)</sup> 이 시기에 서울 미 대사관과 워싱턴 사이에 오고간 전문들은 협상에 의한 해결 가능성을 기대하는 태도를 담고 있다.<sup>74)</sup> 그러나 광주 시 성인들의 거의 절반을 헤아리는 수준의 수십만 광주시민들이 참여한 이 항쟁의 저변에 깔린 분노와 열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군부의 정치적 양보가 가능한 것이라고 미국측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글라이스틴은 한국군부가 광주에 대한 진압작전을 재촉하는 것을 며칠간 더 기다릴 것을 종용한 흔적은 엿보인다.<sup>75)</sup> 그러나 그것은 광주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신군부가 상당 부분 받아들일도록 진지하게 노력하는 의지를 담은 것은 아니었고, 광주에서 시민들이 완전히 무기를 놓고 '평화적으로 항복해나오기를 며칠간 더 기다려보자'는 정도의 발상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글라이스틴은 나중에 여러 인터뷰에서 광주에 대한 무력진압작전을 5월 25일에서 27일로 늦춘 것은 자신의 인도적 배려에 기초한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한 바 있다.<sup>76)</sup> 그러나 신군부가 진압작전을 27일로

70) From Gleysteen to Secretary of State, 210956Z, May 1980, "The Kwangju Crisis."

71) 20사단의 광주 추가파견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둘러싸고 글라이스틴이 그동안 제시해온 궤변과 그에 대한 반박, 즉 그것이 공수부대를 대체한 것이 아니고 증원군이었으며 바로 그것에 대한 미국의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더,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 47~50, 138~142, 169~173면 참조.

72) From Gleysteen to Secretary of State, 220938Z, May 1980.

73) From Gleysteen to Secretary of State, 240318Z, May 1980.

74) 예를 들어, 240432Z (From American Embassy in Seoul to Secretary of State), 250314Z (From Gleysteen to Secretary of State).

75) From Gleysteen to Secretary of State, 221024Z, May 1980, "Possible Further U.S. Statement on Kwangju Crisis."

연기한 것은 글라이스틴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신군부와 미국간의 주도면밀한 군사작전 모의의 결과였다는 증거들이 제시되어왔다. 미국이 안보논리의 화신답게 코랄시 항모의 한국근해 도착시간과 광주 진압시점을 맞추기 위한 한미 양국 군부간의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점은 1988년 12월에 열린 광주청문회에서 광주항쟁 당시 육참총장이던 이회성의 증언에 의하여 확인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광주에서의 '최종적인 질서회복'을 위한 군사작전에 한국의 정치군부는 미국측 세네월드 장군을 매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sup>76)</sup> 이회성은 "광주진압작전이 장시간 해결되지 않거나 실패할 경우 사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예비적 판단 아래 김일성의 오판이라도 있을까 해서 그 대비책을 세웠다. 따라서 김일성의 오판을 막기 위해 미국의 해·공군을 오키나와와 필리핀 등에서 한반도 주변에 전개할 시간이 필요했고, 따라서 이 문제를 미국과 협의한 것이다." 이회성은 1996년 5월 6일에 열린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사건관련 법정에서도 같은 점을 확인했다: "80년 5월 24일 국방장관실에서 유병현 합참의장으로부터 항공모함과 조기경보기가 한국에 배치될 때까지 진압작전실시를 유보해달라는 미국측의 요청을 전달받고 25일 새벽 2시 이후에 작전을 실시하기로 했다."<sup>77)</sup>

사실상 광주시민들의 무조건 항복을 기다리고 있던 신군부와 미국의 태도로 협상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등의 상황 속에서 시민군들 일부가 도청 사수를 결의하자, 신군부는 예정대로 코랄시호의 엄호하에 진압작전을 펴게 되는데, 미국은 도청

사수 시민군들의 존재를 '과격파들의 주도권 장악으로' 평화적 해결협상이 결렬되었다는 핑계를 발견하게 되며, 이로써 광주에서 신군부와의 무력작전에 대한 자신의 능동적 협력에 도덕적 면죄부를 부여받았 자 했던 것이다. 이 점은 미 국무장관 머스키의 서명을 담은 25일의 한 전문에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78)</sup> 5월 27일 글라이스틴이 워싱턴으로 보낸 전문에는 "계엄군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과격파 폭도들의 손에서 상황이 악화되었다. 그래서 군대가 광주에 진군했다"는 계엄사의 설명을 옮겨놓은 후 다음과 같은 글라이스틴 자신의 코멘트로 끝을 맺고 있다: "광주에서 보고되는 사상자 숫자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한 정보로는 2명의 군인과 13명의 폭동자(rioters)가 죽었고 295명의 폭동자들이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무기들을 수거하는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모든 보고들을 종합하건대 아직 광주에 있는 미국시민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sup>79)</sup>

미국이 12.12에서 신군부의 유혈하극상을 군 내부 문제로 덮어주면서 시작되었던 신군부와 미국의 밀착은 일정한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신군부주도의 계엄령체제 지속과 이에 저항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대결구도 속에서 신군부와의 밀착의 고도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대민 군부대투입 계획에 대한 인식의 공유로 발전했고, 그것은 마침내 5월 광주에서 광주라는 전방 및 휴전선과 한국근해라는 후방 모두에서의 미국과 신군부의 오케스트라에서 절정에 달한다.

그 오케스트라의 구체적 시작으로서 전두환의 신군부가 1980년 5월 7일 민주화시위사태 확산에 대비

76)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 pp.140~141.

77)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 p.45.

78) 『한겨레신문』, 1996년 5월 7일.

79) From Muskie to Gleysteen, 251555Z, May 1980, "Korea Monitoring Group Situation Report No.7."

80) From Gleysteen to Secretary of State, 270506Z, May 1980.

해 공수부대등 군부대 투입을 골자로 한 비상계획을 미국에 통고한 것은 자신들과 미국간의 '조용한 협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군부 자신들과의 밀착을 원하는 미국과 민주화일정을 거론하는 미국의 두 가지 이중적 정책이 민주화문제 보다는 신군부 자신들과의 밀착을 기본축으로 하는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신군부가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sup>80)</sup> 뒤따른 미국의 승인을 예상하지 않았다면 신군부가 어떻게 그 엄청난 계획을 사전통보했을 것인가. 한국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탕크와 총검으로 억누르겠다는 신군부의 발상을 사전에 통보받고 이에 동조한 미국은 곧 내재적으로 뒤따를 개연성을 이미 갖고 있었던 광주의 비극에 대한 '공모자'에 다름 아닌 것이었다. 5.17 쿠데타 2단계 작업과 5.18 광주의 유혈은 그 공모의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군사독재정권의 '법과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군대를, 그것도 적국의 후방에 대한 침투와 특수군작전을 위해 설치된 공수부대를 활용한 비상작전계획과 구체적인 군대이동에 미국은 찬성했던 것인데, 군부이동과 군사작전에 대한 제도적·상징적 지휘선상에 있는 미군부의 그같은 대응은 단순한 '안보협력'이 아니라 쿠데타군부의 피비린내를 물고올 불도저 노선에 대한 격려에 다름아니었다고 보아야 한다.

실사 광주의 유혈이 없었다고 해도 미국의 이 가공할 공모는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 공모가 엄청난 유혈사태를 물고 온 뒤에도 미국은 여전히 왜곡과 왜변을 일삼고 있다. 글라이스틴은 부마사

태때 투입된 공수부대가 그렇게 잔혹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군부대를 이용한 시위사태 진압에 사전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국민이 미국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가 광주에서의 유혈의 크기가 아니라 한국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무력으로 꺾겠다는 신군부의 엄청난 계획에 대한 미국의 사전동조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IV. 맺는 말: 미국 대한정책의 이해와 미국의 위종의 구도

이 글에서 필자는 1979~1980년 기간 한국의 정치적 격변기에 미국이 취한 정책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것의 하나는 미국의 인권의교를 민주주의 지원이라는 문제와 분리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인권에 대한 지원과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은 서로 결부된 것이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얼마든지 분리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카터 행정부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독재정권이 정치범들을 가혹하게 다루지 않도록 충고하는 '인권의교'를 부각시키면서도 그것과 동시에 독재정권과의 실질적인 군사·경제적 측면에서의 화해 및 교류·협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어떤 시기에 미국이 한국의 군사독재정권에게 김대중 등을 대표적 예로 하는 당시 정치범들에 대하여 인권상의 관심을 표명한 것을 곧 박정희 독재정권이나 전두환정권에 대한 반대나 적극적인

81) 필자는 여기에서 다시 1961년 군사쿠데타의 명목상 우두머리였던 장도영이 쿠데타 성공 직후 향후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을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자신있게 내뱉은 다음의 답변을 상기시키고 싶다: "한미관계에 관한 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 군대는 과거에 한국사회의 어떤 요소보다도 미국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다. 따라서 나는 미국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 (『TIME』, May 26, 1961). 참으로 1960년대 박정희정권과 케네디-존슨정권의 협조체제는 사실로 나타났고, 1980년 광주이후 레이건정권에 들어 특히 강화된 한국의 군사독재정권과 미국의 협조체제 속에서 장도영의 통찰은 다시 현실화한다.

정치적 변화를 촉진하려는, 즉 한국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한다. 정치범들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박정희정권 또는 전두환정권과의 관계정상화 또는 밀월관계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존이 이중성의 형태를 띠는 것이고, 그 이중성의 양측 사이의 비중은 기본적으로 기존 권위주의정권과의 관계유지에 두어지는 비대칭적인 것이었다. 그러한 비대칭성은 1980년 5월처럼 결정적인 고비에서 중대한 비극에 미국을 참여자와 협력자로 만드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정치범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독재정권과의 협력 체제유지·지원과 무관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그러한 타락한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미지상으로 가리우고 보완하는 의미도 내포할 수 있었다. 인권에 대한 관심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관심의 출발점이고 또 그 기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독재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과 지원을 분장(분식)하는 관계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인권의외교와 독재지원이라는 두 가지 얼핏 상반되어 보이는 정책이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분리되어 같이 진행될 수 있는 것, 이것이 1980년 5월을 포함한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계의 핵심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미국 대한정책의 비대칭적 이중성은 한편으로 광주의 비극에 미국을 분명한 군부협력자로 만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그 이중성을 거꾸로 강조함으로써, 즉 군부정권과의 협력의 측면은 은폐하되 한국군부에게 '민주화일정'을 촉구하고 잘 알려진 정치인사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한 인권외교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을 군부에 대한 협력자가 아닌 비판자로서 부각시켜왔다. 이러한 태도는 미국무부의 광주답변서에 내포되어 있는 위중의 전체적인 틀이 되고 있다. 1989년 초 한국 국회 광주특위는 광주비

극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관련한 질의서를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대사와 존 위컴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1989년 봄 미국무부가 이들 관리들을 대신해 성명 및 답변서를 작성해 한국 국회에 보냈다. 한국 국민을 대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 정식 질의서에 대한 미국정부의 공식 답변서는 군부의 무력행사에 대한 미국의 사전협약과 동의에서 협조에 이르는 '협력자'로서의 미국의 행동을 부인하고, 거꾸로 민주화일정을 촉구한 '비판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공식답변서가 안고 있는 위중에 대하여 한국의 국회와 국민은 어떤 형태로든 그 책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형식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세우고 또 과거 결정적인 고비에서 안보지상주의에 바탕해 정치군부에게 나라 안팎에서 실질적인 지원자의 역할을 담당한 미국 대한정책의 구도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경계의 의미도 담는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광주의 상흔이 아직 역연할 무렵 당시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인들은 어떤 지도자든 무조건 복종하는 '들쥐들'(lemmings)이라고 평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것은 대체로 1980년 광주의 비극의 원인과 의미에 대한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인식, 결국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역사인식을 대변한다. 위컴의 발언은 전두환의 등장과 광주의 비극은 한국인들의 '몽매함'과 정치적 후진성의 당연한 결과일 뿐이라는 인식을 대표한다. 글라이스틴의 행동과 태도 역시 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몽매와 불운 이상의 그 어떤 것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그들의 역사인식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군사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이 땅에 개입해 있으면서, 한반도 안팎의 군사, 정치, 경제환경을 결정하고 있던 세력은 그 세력의 국적(nationality)이 어느 나라건, 그것이 가

진 힘과 권위로 1980년 한국에서 새로운 군사독재세력의 등장과 광주에서의 유혈에 협력했다면 그 행위는 평가와 책임 추궁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역사는 국적을 가려서 면책특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 땅에서 미국의 군부와 정치외교적 존재는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주요 결정세력의 하나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더구나 이 문서들이 증명하는 것과 같은 광범하고 긴밀한 협력과 방조에 개입한 세력을 어떻게 1980년 한국 민주주의의 비극적 좌절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은 한국의 정치군부와 같이 민주화물결을 이룬 한국의 시민과 학생들을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이해못하는 조급하고 무책임한 폭도들로 규정하고 이들을 유사시 공수부대를 사용해서라도 짓밟겠다는 계획에 공모(인식의 공유와 동의, 정치외교적 지원이라는 의미에서의 共謀)하였고, 그런 공모와 방조가 5월 17일 정치군부의 쿠데타 2단계작업과 광주에서의 유혈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결과가 되었다고 할 때, 미국의 행동은 실질적으로 한국 민주화세력의 유혈 억압을, 실질과 상징의 여러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들쥐이기를 거부하는 한국 국민들의 처절한 저항을 억압하며 군사안보,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워 피문은 군사독재자들과 검은 유착을 선택한 위컴을 비롯한 미국 관료들이야말로,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의 그러한 행동을 감추기 위해 노력하고 그 노력의 연장선에서 1989년 광주답변서에서 많은 거짓을 동원하여 위증을 한 미국의 권력엘리트 집단이야말로 '진정한 들쥐들'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현장에서 한국 군부와 협력한 위컴은 카터정권과 그리고 뒤이은 레이건정권하에서 육참총장으로 승진되는 등 출세가도를 달렸다. 그 레이건시대에 미국 군부와 한국의 전두환의 군부는 동아시아에서 한국, 미국, 일본 사이의 삼각군사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깊

이 협력하였다. 그것은 광주에서 다져진 전두환과 위컴 사이의 '전우애'에 바탕한 것이기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까. 한편, 위컴이 들쥐의 나라로 묘사했던 1980년대 한국의 역사는 군사독재와 미국적 세계관에 대한 치열한 저항의 기록으로 되었다. 위컴과 글라이스틴과, 그리고 그들과 전문을 주고 받았던 미국의 권력엘리트집단은 작은 이익을 위해 큰 원칙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고 거짓증언을 일삼았던 자신들의 들쥐적 행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한국 국민에게 공개적인 반성을 표해야 한다. 미국이 한미간의 동맹을 군사독재정권들이 아닌 국민과의 동맹이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한국 국민에 의해 광주학살집단이 그들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 있는 지금, 미국정부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제도적·도의적 책임을 인식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인간의 역사와 정치를, 그리고 국제관계를 순전한 권력투쟁의 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끼어들어 개선되고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다. 미국 외교의 한 중대한 흐름으로 미국인들이 거론하는 월슨주의적 또는 이상주의적 접근이라는 것이 미국적인 권력정치론에 대한 수사적 은폐가 아니라고 한다면 더욱 그렇다.

우리는 한편으로 동아시아에서 권력균형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되, 결정적인 한반도 역사의 갈림길에서마다 자주 목전의 단기적인 안목에서 스스로 편협하게 규정한 자신의 '안보 및 경제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미국의 한반도 안팎에서의 행동양식을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대외인식을 필요로 한다. 어쨌든 미국을 활용하고 또 그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상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 거의 전체를 미국의 안보지상주의자들에게 내맡기는 시각이나 미국의 존재에 대한 맹목적 부

정의 시각 등 양 극단의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가 꺼  
안고 살아야 하는 우리 현실역사의 조건의 하나로서  
현존하는 미국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개척해나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워져 있는 과  
제라고 할 것이다.

이 글은 1997년 5월 8일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5.18 학술 심포지움>에 발표하기 위하여 쓴 것입니  
다. 연구에 엄청난 도움과 영감을 주신 손호철 교수와 안종철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 폭력과 언어의 정치: 5.18 담론의 정치사회학<sup>1)</sup>

최 정 운(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 1. 서론: 침묵의 역사

5.18은 가히 세계사에 유례없는 사건이었다. 그토  
록 엄청난 규모의 잔학한 폭력이 국민들에게 백주에  
도심에서 가해졌다는 점에서 우선 그러하며 더욱이  
불과 인구 80만의 도시에서 무려 3개 여단 2,500명  
이상의 국군 최정예 공수특전단을 시민들이 싸워 한  
때 물리쳤다는 점에서 또한 前代未聞이라 할 것이다.  
사상자 면에서 5.18은 일방적인 시민 학살이었지만  
반면 그곳에는 온 시민이 피와 눈물로 한마음으로 용  
화된 공동체가 있었고, 한때 승리의 환호가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고장과 그들의 가치를 위해 초연히 죽  
음을 선택한 수많은 '칼레의 시민'들이 있었다. 5.18  
은 데이터로 나타나는 사건의 규모로 보나 그 안의  
모든 사람들의 경험의 깊이로 보나 우리 현대사의 최  
대의 사건이며 오늘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결과와 의  
미 또한 가능하기 어려운 무게를 갖는다.

이 모든 5.18의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17년간 5.18 담론의 가장 큰 부분은 침묵이었다. 이  
는 언어의 부재라기보다 사회정치적으로 부과된 것  
이었다. 5.18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에 감히 우리

의 세치 혀로, 간사스런 붓끝으로 담아낼 수 없고 담  
아내려 해서도 안되는 것이었다. 침묵은 여러 방면에서  
부과되었다. 사건 초부터 군사정권은 철저히 보도  
를 통제하였고, 보도가 시작된 후에도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공식적 발표 외에는 침묵을 강요하였다. 군  
사정권은 80년 6월 5.18을 일방적으로 규정된 후 오  
랫동안 아무말도 하지 않았고 모든 5.18 유관단체와  
관계자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도록 탄압하였다. 5.18  
에 대한 얘기가 시작된 것은 학생운동권의 끈질긴 투  
쟁의 결과였고 정치적 분위기가 바뀐 85년 총선 이후  
그리고 무엇보다 5월 서울 미문화원 점거사태 이후의  
일이었다. 87년의 6월 항쟁을 거쳐 88년 청문회에서  
비로소 진상의 일부가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  
에 이르기까지 5.18의 진상이 모두 밝혀졌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다른 지역에는 보다 복합적인 침묵이 드리워져 있  
었다. 초기에는 5.18에 대하여 군사정권의 통제로 그  
들이 발표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접할 수 없  
었고 그들의 독점적 언술의 영향 또한 적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며 입과 입을 통해 5.18의 진상이 전해졌  
을 때 타지역 사람들에게 그 얘기는 터무니없는 것이

1) 이 글은 1997년 5월 8일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5.18 학술 심포지움>에 발표하기 위하여 쓴 것입니  
다. 연구에 엄청난 도움과 영감을 주신 손호철 교수와 안종철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있고 그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가족이나 친구에게 쉽게 전할 수 없는 엽기적인 것이었다. 5.18은 오랫동안 流毒通信의 주제였다. 이윽고 88년 청문회에서 많은 실제 경험들이 전해지자 대부분 사람들은 공수부대의 만행에 분개하였다. 그러나 5.18에 대한 얘기가 퍼지며 동시에 진행된 재야와 학생운동권 그리고 노동운동의 확산과 그들 언어의 과격화의 흐름에서 5.18에 대한 얘기 자체는 운동권의 독점물이 되고 우려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타지역 중산층들이 결코 군사정권을 지지했기 때문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 스스로 5.18 증언을 듣고 분개한 경험에 근거하여 5.18에 대한 얘기는 듣는 사람을 과격하게 만들고 사회를 불안하게 할 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을 것이다. 나아가서 5.18의 승리의 순간 예를 들어 TV에서 보아온 차량시위의 壯觀은 타지역 중산층에게는 불안한 驚異였다. '민중'은 새로운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민중은 가끔 소란을 일으키지만 5.18에서 그들은 武裝하였고 그리고 국군 최정예 공수부대를 물리쳤다는 사실에서 민중의 새로운 힘은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서구 선진국의 중산층들도 나름대로 '군중'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었고 이 공포는 민주화와 사회 개혁의 동기로 작용하였다. 광주시민들이 5.18에서 진정한 민족공동체를 경험했다면, 타지역 중산층들은 5.18을 통해 민족을 異質적으로 보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87년의 민주화에서 이 민중에 대한 공포는 큰 역할을 하였고 따라서 이 시대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와 민족공동체를 대가로 이루어졌다. 타지역의 중산층은 5.18의 합성과 민주화에 동의하고 그 시절 광주시민들과 공감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5.18에 대한 피상적 이해로 민중과 호남 사람들을 불편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 정치에서 차라리 민중에 대한 공포는 호남에 대한 공포에 비해 無害할지 모른다.

5.18 이후 호남지역의 철저한 집단투표 그리고 私

席에서 농담반으로 들은 '전라민국', '전남공화국' 얘기는 타지역 사람들을 은연중에 압박하고 있다. 5.18에 관한 한 타지역 중산층들은 아직 '두 마음'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침묵은 광주를 탄압하고 방조한 사람들만의 몫은 아니다. 군사정부의 탄압은 차제하고 5.18 당사자나 목격자치고 언어의 좌절을 맞보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광주시민들은 5월 19일 밤 광주역 광장에서 눈 앞에 벌어진 모습에 "이게 꿈이나 생시나며 서로 껴안고 치를 떨며 울부짖었다"(전사연 1988, III-9, 198). 그들의 경험은 너무나 엄청난데 말하려 하면 가슴의 응어리에 숨이 막히고, 담배를 몇 대를 피워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몰랐을 것이다. 어렵사리 꺼내고 나면 그 말은 너무나 سنگ워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증언했지만 그들이 겪은 현실에 비해 언어는 너무나 矮小했으리라. 말은 초라한 배신자로 전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건을 규정하는 타인의 폭력적 언어 앞에 5.18의 경험은 찌그러지고 마는 것이 5.18 담론의 현실이다. 아직도 광주와 5.18은 고독과 침묵에 싸여 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는 이전의 시간과 다르고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과도 다른 시간으로 간주되어왔고 이 시대 구분은 군부와 광주시민 등 모두에게 공통적이다. 그 시대를 일컫는 말은 다양하게 제기되어 아직도 갈등하고 있으며 그런 이유에서 본 학술회의는 그 시대를 '5.18'이라는 발가벗은 달력의 숫자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5.18'이라는 '중립적' 이름이 여기서 처음 쓰이는 것은 아니다. 80년 5월 22일 해방광주에서 처음 만들어진 공식 조직은 5.18수습대책위원회였다. 이 수습위원들은 18일부터의 시간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며 총을 모두 거두어 계엄군에게 반납하면 마치 없었던 일로 '몰릴' 수 있다고 믿었다. 사건을 중립적으로 일컫는다는 것도 이

미 하나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주로 쓰인 이름은 '광주사태', '광주시민의거', '광주민중항쟁', '광주학살', '광주민중혁명', '5.18민주화운동', '5.18민중항쟁' 등이 있으며 이 말들은 각각 고집스레 그 시대를 규정해왔다. 현정부는 공식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정부를 따르지 않는 또는 보수적이 아닌 사람들은 주로 '민중항쟁'이라는 말을 쓴다. 전자는 현정부로서 자신이 5.18의 適者이며 5.18 또한 현정부의 이념에 따라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입장을 담고 있다. 후자는 비교적 시대의 현실감을 살린 서술적 이름이며, 이에 '민중'이라는 말은 민주주의 연합세력으로의 의미와 그 시대 투사들의 계급적 의미를 동시에 내포한다. '광주사태'라는 말은 80년 5월 21일 『동아일보』에서 처음 사용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사회의 일상대화에서 그 시대를 일컫는 가장 익숙한 말로 쓰이고 있다. 이렇듯 용어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갈등해온 것은, 5.18은 예를 들어 4.19나 5.16에 비해 대단히 복잡한 경험이며 한 가지 말로 규정하기 힘든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1980년 5월의 그 열흘은 누구에게나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그러나 해석의 다양성은 아직 5.18의 침묵을 깨지 못했다. 군사정권의 담론 기제들 특히 유언비어론은 아직도 작동하며 세인의 입을 막고 있으며, '진보적' 정치집단들도 나름대로 도그마(dogma)를 만들어 담론의 골을 지켜왔다. 오늘에도 5.18은 결코 아무나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지난 17년간 제시된 여러 해석들에는 상충되는 면들이 있었지만 논쟁이 제기된 적은 별로 없었다. 한편으로 5.18 해석은 말의 다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실제 폭력이나 권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고, 다른 한편 군사정권 외의 여러 입장들은 민주화 투쟁의 전우로서 언쟁을 피해왔다. 이 글은 5.18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여러 담론들을 분석하여 어떻게 구조되어왔는가를 밝

히고 사건 자체의 다양성과 깊이를 배경으로 담론들의 한계를 드러내어 5.18에 관한 학술 논쟁의 판을 벌이고자 한다. 5.18 해석, 특히 규정적 해석들은 그간 정치적 권력의 언술과 투쟁의 이념으로 제시되어 왔고 그 와중에 사건 자체는 歪曲되어 왔다. 5.18이 순수한 精神이 되기 위하여는 망자들은 이제 하늘로 떠나 보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이제 고집스런 산자들끼리의 말이 아니라 망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이 죽은 이유와 하늘로 떠나야 하는 이유를 서로 말해주어야 할 것이다. 산자가 망자의 입으로 말하여 屍身을 다시 찢어놓을 것이 아니라 산자는 산자의 입으로 말하고 망자는 망자의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산자와 죽은자의 입을 가르고 대화하도록 하는 일에는 학문과 글의 다름이 없다. 17년이란 세월은 한 사건을 역사로 묻기에는 너무 짧은 세월이며 5.18에 대한 연구는 아직 과학적 엄밀성을 기하기에는 이르지 못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후일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지금, 아직 기억이 생생할 때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2. 폭력의 전선과 언어의 전선

광주에서 80년 5월 15일~16일에 걸친 학생시위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명쾌한 언어를 일련의 시국선언문에 담고 있었다. 그러나 18일부터는 전남대 교문 앞에 이어 공용터미널 및 금남로에 공수부대가 투입되어 살육을 벌이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에 대항해 싸워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엄청난 폭력은 언어 또한 크게 바꾸어 놓았다.

17 폭력과 투쟁의 언어: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초기에 군부는 18일부터 광주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일체 보도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였고 광주의 『전남일보』는 20일부터 휴간하였다. 계엄사의 첫 발표는 20일 오후에 있었고 이는 저녁 7시 지방 TV 뉴스에 보도되었다. 이 발표는 18, 19일 소요로 경미한 피해가 있었고 연행한 176명은 모두 귀가시켰다고 하였고 중앙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이 발표로 광주시민들은 방송국 보도에 분개하여 이날 밤 방송국에 방화하였다.<sup>2)</sup>

최초로 일간지에 보도된 계엄사 발표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었고 이 시점에는 이미 헬기로 도청 철수가 준비되고 있었다.<sup>3)</sup> 21일 석간과 22일 조간 1면 하단에 3단 정도로 보도된 이 발표는 민간인 1명, 군경 5명이 사망했으며 “당국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서울을 이탈한 학원소요 주동학생 및 강패 등 현실 불만세력이 대거 광주로 내려가 사실무근한 유언비어를 날조해 퍼트린 데 기인했다”고 하였다. 이 계엄사의 발표는 첫째 5.18을 이전의 학생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둘째로 “강패 등 현실 불만세력”을 핵심 집단으로 지목하였다. 이 담론의 핵심은 유언비어론이었고 8가지 예를 들었다. 유언비어론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수부대의

- 2) MBC 방화에 대하여는 異論이 있다. 많은 증언들은 방화한 것은 시민들이 아니라 계엄군 측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시민들은 화염병을 던졌고 방화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
- 3) 왜 이 시간에 계엄사가 정책을 바꾸어 사건에 대해 발표했는가는 의문이 남는다. 하나의 가설은 일단 철수 후에 다시 진입한다는 전략이 이미 세워졌고 이에 중화기를 사용한 제진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 4) 19일 저녁 8시경 광주 출신 예비역 장성과 유지들은 공수부대의 진압 방법에 관하여 계엄본소에 항의하였다(현사연 1990a, 38). 이에 따라 20일 아침 새로 투입된 3공수여단은 나름대로 다른 태도를 보이려 노력했다. 이 시점에서 공수부대의 만행에 대하여 군부는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었을 것이며 유언비어론은 군부에서 이 문제를 역이용하려는 의도에서 고안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5) 구속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투사회보』에 대한 조사는 거의 끝에 가서야 이루어졌고 이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형량도 대체로 가벼웠다. 반면 무장투쟁에 직접 연루된 사람들은 사형등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다(현사연 1990a, 4004: 859). 계엄사는 5월 31일 사건 진모에 대한 발표문에서 정치적 음모집단의 역할을 강조하며 당시 “용의주도하게 만들어진 전단과 심지어는 지하신문(18일 26일 사이에 9호까지 발행)까지 발행하면서”라고 『투사회보』의 역할을 ‘유언비어’의 역할과 더불어 조직적 음모의 예로 부각시킨 바 있다(전사연 1988, 11-4, 173).

만행을 선수를 쳐서 부정하고 그 책임을 다른 집단에 전가하고,<sup>4)</sup> 무엇보다 정치적 음모와 지역감정을 연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러 왔다’는 말은 특정한 집단이 만든 말이지만 이 말이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광주시민들이 지역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발표의 추론이었다. 군부는 흡사 폭력 못지 않은 언어의 힘에 놀란 듯 유언비어론을 제시했지만 실은 그들은 언어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sup>5)</sup>

이 발표가 있는 후 같은 날 오후에는 계엄사령관의 담화가 있었고 이는 22일 조간과 석간 1면에 보도되었다. 발표문은 사건을 ‘광주사태’라는 불렀고 사건의 원인을 오전과는 다르게 제시하였다.

지난 18일 수백명의 대학생들에 의해 재개된 평화적 시위가 오늘의 엄청난 사태로 발전된 것은 상당수의 타 지역 불순인물 및 고침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 파괴, 방화, 장비 및 재산 약탈 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난동행위를 선도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번 사태를 악화시키기 위한 불순분자 및 이에 동조하는 강패 등 부랑자로서 급기야는 경찰

의 무기고와... 궁극적인 목표는 너무도 자명하며 사태의 악화는 국가민족의 운명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 발표는 오전 발표를 수정하여 학생시위와 5.18을 전혀 관계없는 사건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여기에는 ‘현실 불만세력’은 뒤로 빠지고 대신 최초로 ‘불순인물 및 고침’이 주요 음모 조직으로 등장한다. 나아가서 무력을 사용할 것을 확인하였다. “부득이 자衛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폭도는 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심지어 “고장이 황폐화되어 생업과 가정이 파탄되지 않도록 자중 자애”해야 한다는 협박을 가하였다. 이 발표는 도청 앞 집단 발표 이후에 나온 것이었다. 또한 일간지 같은 면에 ‘김대중씨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보도되었다. 이 발표는 김대중과 5.18을 직접 연결시키지는 않았으나 대학생 등 소요 배후조종 혐의라 하여 5.18과 연결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초기 군부 담론의 주된 내용은 음모집단이 있으며 이들은 의도적으로 광주시민들을 ‘유언비어’로 자극했다는 것이다. 유언비어론은 한편으로 현실을 은폐하고 진실을 말하려는 시도를 국가권력으로 억압하는 장치이자 동시에 사건 저변의 잠재적 動因으로 광주시민들의 지역감정을 지목하고 있다. 지역감정을 악용한 음모조직의 의도는 反국가적이며 그들의 正體는 아직은 可變的이었다. 담론의 일부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있었지만 기본 방향과 구도는 일관되어 있었다.

한편 광주시민들에게 18일에서 21일까지는 몸서

- 6) 황석영은 ‘노동삼권 보장하라!’는 식의 구호도 널리 쓰였다고 하지만 이는 과장된 것이다(황석영 1985).
- 7) 당시 유인물의 하나인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다」(전사연 1988, II-3)를 예를 들어 분석하며 고은 시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전단은 일체의 수식어가 거부된 채 사실만을 극명하고 숨가쁘게 절규하고 있다. 수식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형제여! 싸우다 죽자!’라고 절망적 전투의지를 부기(附記)한 것뿐이다. 이 전단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정보는 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광주민중항쟁이 무장투쟁으로 비약하는 과정의 불타오르는, 무조건적 전의가 넘치는 박진감은 흡사 시적 언어의 절대검약에 방불하다”(고은, 『광주5월민중항쟁 이후의 문학』, 현사연 1990b, 226).

리치는 폭력이 지배적 현실이었고 따라서 언어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극도로 감정적이었다. 눈 앞에서 벌어지는 잔악한 폭력에 공포와 분노에 말이 나오지 않는 지경이었다. 그들의 언어는 거의 함성과 느낌표(!)의 연속이었고 이전의 세련된 ‘민주주의’ 등의 언어는 잊혀져버렸다. 당시 시위대가 외쳤던 구호는 대표적으로 ‘전두환 물러가라!’ ‘김대중씨 석방하라!’가 주종이었고 싸움이 격화되며 ‘전두환 찢어죽여라!’ ‘공수부대 다 때려죽여라!’라는 식으로 폭력화하였다. 이 변화는 단순히 폭력화뿐이 아니었다. ‘물러가라!’는 통상적 데모 구호의 형태로 전두환 본인에게 그리고 전국민에게 전달하는 말이지만 ‘찢어죽여라!’는 전두환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동료 시민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독려하는 말이다. 이로써 언어 형태에서 聽衆의 범위 즉 언어의 상대가 제한되고 ‘찢어죽여라!’는 행위의 대상은 同意를 구하는 언어의 상대에서 제외된 것이다. 또한 ‘찢어죽여라!’는 평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 말의 청중들이 극도로 폐쇄적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일부터는 ‘우리 다같이 죽읍시다!’ ‘내 아들 살려내라!’라는 식의 절규로 변화하였다.<sup>6)</sup>

19일부터 당장 여러 종류의 유인물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윤상원의 들불야학팀이 만든 『투사회보』 이전의 『호소문』, 『선언문』 외 많은 유인물이 있었고 그들은 위에서 지적한 언어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sup>7)</sup> 유인물들은 모두 공수부대의 만행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나아가서 이 유인물은 공수부대의 만행과

계엄 확대 그리고 김대중 체포를 근거로 '전두환 일파'를 敵으로 규정한다. 그들이 敵인 것은 간단히 공수부대의 만행은 '공산당과 다를 바가' 없고, 공산당보다, 倭警보다 더 잔인했기 때문이다.<sup>8)</sup> 敵과의 싸움에 동참할 것을 외치는 유인물들은 하나같이 광주 시민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유인물에는 적개심을 전달하기 위해 '쌍소리'가 적나라하게 쓰이기도 했다.<sup>9)</sup> 상황이 급속히 전개되자 21일 아침 윤상원은 그간 여러 이름으로 제작되던 유인물들을 『투사회보』로 통합하였다(전사연 1991, 254-7). 『투사회보』는 5.18 유인물의 상징이 되었다.<sup>10)</sup> 윤상원의 예리한 현실감은 '민주' 등의 현학적 수식어를 빼고 당시 분위기에서 직접 가슴을 때리는 『투사회보』라는 단 네 글자로 바꾸었고 이는 대성공이었다. 당시 시위대에서 가장 널리 불리던 노래는 '투사의 노래'로 이는 낙동강 전투에서 만들어진 '전우의 시체를 덮고 넘어' 하고 시작되는 작가미상의 軍歌의 가사를 바꾸어 부르던 노래였고 『투사회보』라는 이름은 윤상원이 '투사의 노래'에서 착안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광주 시민들의 5.18 투쟁의 자세와 담론은 4.19보다는 낙동강 전투의 맥을 잇고 있었던 셈이다.

21일부터 『투사회보』는 號數를 지켜 체계를 유지하여 신뢰를 주며 투쟁을 독려하는 것 뿐만 아니라

8) 윤상원의 들불야학 팀이 만든 (전사연 1991, 236~7) 19일자 「호소문」은 다음과 같이 외쳤다. "이들이 공산당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전 시민이 하나로 뭉쳐 청년 학생들을 보호하고, 유신잔당과 극악무도한 살인마 전두환 일파의 공수특전단 놈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쳐부수는 길뿐입니다. / 우리는 이제 다 보았습니다. 다 알게 되었습니다. / 왜 학생들이 그토록 소리 높여 외쳤는가를, 우리의 적은 경찰도 군대도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전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바로 유신잔당과 전두환 일파, 그 자들입니다" (전사연 1988, II-1, 107).  
9) 19일 조선대 민주투쟁위원회 명의의 「민주시민아 일어서라」는 "저 개같은 최규하, 신현확, 유신잔당 놈들과 유신독재자의 아들 전두환 놈"이라고 썼다. (전사연 1988, II-2, 107) 23일 한 시민대표 명의의 「민주시민 여러분」이라는 글에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사람의 목숨을 쉽게, 참혹하게, 처참하게, 파리를 죽이듯 살인하는 저 흉악무도한 전두환 개새끼를 타도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같은책, II-32, 130).  
10) 21일 저녁 전투가 일단 끝난 후 25일에 이르러 윤상원은 다시 『투사회보』를 「민주시민회보」로 바꾸고 號數는 그대로 연결시켰다. 즉 9호부터 「민주시민회보」가 되었고 17호까지 제작되었다.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려 하였다." 『투사회보』에 실린 정보는 대개 두 가지였다. 첫째는 군부대의 움직임이었고, 둘째는 투쟁의 전개였다. 후자의 경우는 투쟁이 전남 일대에 파급되었다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는, 대부분 과장이었다. 이러한 과장은 물론 투쟁을 독려하기 위해서였지만 이러한 과장이 용인된 것은 무엇보다 당시 시민들의 투쟁의 동기는 일차적으로 敵의 존재에 있었고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는 생각해볼 겨를도 없었고 별 의미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敵, 흉악한 짐승, 마귀, 악귀들이 쳐들어왔고 이들의 무차별 살육으로부터 우리 고장과 젊은 생명들과 가족들을 지키는 일은 모든 광주 시민에게 "愛國"이었다. 시민들은 자신을 둘러싸는 공포의 벽을 뚫고 동료 시민들과 투쟁의 대열에 섞이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자유를 얻어 완벽한 공동체로 융화하였다. 이 무한한 애정의 공동체는 바로 '민족'으로 느껴졌다. 이러한 언술의 연속에서 총을 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민군'이 되었다. 광주 시민들은 공수부대에 대하여 고장을 자기 손으로 지키기 위해 싸우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고 민족으로 하나 되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다. 시위대에서 종종 들리던 '김일성은 오판 말라!'는 어울리지 않는 구호는 그들이 보았던 '우리나라'는 군부와

공수부대가 지배하는 나라도 아니지만 북한은 더욱 아니라는 항변이었다. 이 모든 피어린 항쟁의 종말은 '찢어진 깃폭'으로 상징되었다.

2) 유착과 명분: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해방의 벽두에 광주에는 분명히 혁명의 냄새가 나고 있었다. 광주 시민들은 그들의 투쟁의 과정에서 민족공동체와 '우리나라'를 보았고, 이는 '민주의 나라'로 "애국심"으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민족 민주주의 혼"이었다. 이 '우리나라'의 모습은 계엄군이 물러가자 더욱 현실적이 되었다. 그들의 '우리나라'는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對抗國家, 또 하나의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진정한 애국"은 이제 대한민국 군대에 대항한 武裝鬪爭이었다. 해방광주의 시민들은 스스로 革命과 反逆의 문턱에 있음을 발견했다.

22일 최초의 움직임은 아침 8시 10분 부지사 주재 하에 도청 간부 수습대책회의였다(현사연 1990a, 81). 이 회의에 이어 부지사는 지역 유지들과의 일련의 회의를 가졌고 정오 즈음에는 일단 5.18수습대책 위원회가 15인의 유지들로 구성되었다. 12시 상무대를 방문한 수습위원들은 협상에서 나름대로 담론의 정치를 시도하였다. 위원들은 무기를 회수하는 대가로 "공수부대의 지나친 진압을 인정하라"고 요구했고 전교사 사령관은 "현장 설명을 듣고 과잉 진압임을 시인한다"고 하였다. 또한 수습위는 "자극적인 어휘 사용 금지(예: 폭도)"를 요구했고 계엄사 측은 "순수

11) 이 협상의 결과는 당일 오후 5시 켈기대회에서 발표되어 논란을 일으켰다. 여기에서 인용된 부분은 5월 24일 5.18사태 수습대책위원회 일종의 명의로 배포된 「계엄분소 방문협의 결과보고」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전사연 1988, II-23, 124). 여기에서 사용된 어휘들은 심사숙고를 거쳐 제한된 표현일 것이다.  
12) 무기 반납에 반대했던 김종배씨의 증언에 따르면 무기 반납파인 김창길씨는 회의 석상에서 "김종배 저 놈은 수상한 놈이다. 저 놈 말을 들으면 안된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무기 반납파는 상대를 '불순분자'로 몰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김종배씨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상황실장 박남선씨가 경호원을 불러주었다는 것이다(현사연 1990a, 1014: 207).

한 시민을 폭도라 한 것이 아니요, 악용하는 자를 말하며 상부에 부드러운 어휘를 사용토록 진정했다"는 답을 얻었다.<sup>11)</sup> 수습위원들은 항쟁의 일차적 동기인 공수부대의 만행을 "지나친 진압"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하여 군인들을 자극하지 않고 양보를 얻어내려 했고, 계엄사는 "과잉진압"이라는 말로 현실감을 더욱 중화시켜 양보했다. 또한 '폭도'라는 말에 대해 항의한 것도 시민들을 자극하면 안된다는 제삼자적 입장에서 나온 것이었다. 나아가서 공수부대의 만행과 폭도론을 분리하여 문제삼은 것을 보아도 수습위원들은 투쟁에 참가했던 시민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지사의 주선으로 조직된 이 위원회는 구성되자마자 계엄분소와 회담하였고 전교사 사령관은 그들의 입장을 지원해주었다. 이 위원들의 입장은 혁명적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무조건 신속히 무기를 회수하고 반납하고 5.18을 없던 일로 '물리자'는 것이었다. 이 입장은 곧 시민켈기대회에서 '투항주의'라는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시민군들의 입장은 별로 남아 있지 않으나 반발하였고 이들은 특히 저녁때 별도로 조직된 학생수습위원회와는 첨예하게 충돌했다. 이들의 주장은 지난 양일간 투쟁의 대열에서 빠진 대학생들은 더 이상 이 사태에서 역할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와중에서도 무기 회수는 여러 이유와 명분에서 계속 진행되었고 특히 보수적인 입장은 복귀위협론을 의식하고 있었다. 25일 아침 '독침사건'은 이들의 입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sup>12)</sup>

한편 적극적으로 명분을 찾은 사람들은 주로 계속

투쟁해야 한다는 입장에 선 사람들이었다. 당시 YWCA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윤상원의 주도 하에 23일 오후 3시 김태종의 사회로 시민결기대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김태종은 "이 나라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고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하였고 그는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현사연 1990a, 97; 4007: 876). 이 발언은 무장투쟁과 민주주의라는 당시 멀리 있던 두 주제를 연결하여 민주주의를 5.18의 명분으로 세운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 발언 이후 도청 앞 분수대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을 결의하고 민주화를 그리는 많은 글과 시들이 낭독되었고 『투사회보』에도 23일 5호로부터 민주화 구호가 빠지는 적이 없었다.

그러나 민주화 요구 외에 공수부대의 만행과 잔인함의 고발은 계속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시민들의 일차적인 투쟁의 이유이기도 했지만 계엄사의 유언비어론과 폭도론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25일 광주사태 수습대책위원회 명의로 쓰여진 「광주사태 원인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는 "공수 특전단의 살상 만행이 80만 시민을 분노케 하고 정당방위로써 시민봉기(의거)에로 유도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전사연 1988, II-25, 128).<sup>13)</sup> 여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분노에서 정당방위는 자연스러운 논리 전개가 아니라는 점이다. 분노가 강한 감정 상태를 나타낸다면 정당방위는 법적인 개념이며 냉철한 이성으로 행하는 공격적 방어다. 김현채씨는 23일 시내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시민들은 계속 도로를 치우고 있었다. 도로마다 널려

있는 전흔과 곳곳의 상처들을 치우고 때꾸어가고 있었다. 길거리를 치우는 시민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확실한 믿음이 서려 있었다. 많은 피를 흘리고도 눈물에 얼룩져 있거나 무작정 분노에 휘말리지 않는 묘한 평온의 인상이었다(오창동 1987, 107).

투쟁이 정당방위가 된 것은 공수부대와 군부가 광주 시민의 敵으로, 이성으로 싸워야 할 대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21일 계엄군이 물러가자 곧 우리 고장은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였고 앞으로 우리 고장과 젊은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 또한 당시에 계엄사에서나 말했음직한 '이성을 찾으시오', '평상 생활로 돌아갑시다'라는 말도 바로 이 맥락에서 계속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이 제시되었다.<sup>14)</sup> 나아가서 항쟁파들이 제기한 '투쟁으로 얻는 민주주의'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 것으로 보인다. 23일 이후에 제기된 민주주의는 5.18 이전의 민주주의와 같은 의미라 볼 수 없다. 이전의 민주주의는 피와 눈물 그리고 화약연기 속에 잊혀졌고 투쟁의 논리에서 태어난 敵으로부터 고장을 지켜야 한다는 鄉土防衛의 숭고한 명분은 시민군을 만들어내고 이제 민주주의는 敵으로부터 피로 지켜진 고장의 모습이었다. '고향을 우리 손으로 지키다'와 민주주의는 두개의 5.18의 투쟁의 명분이었다. 그러나 후자는 논리적으로 전자에서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8 이전의 민주화 학생 시위와의 일관성 그리고 당시 우리 사회의 지배적 정치 이념임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천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주 시민 측의 5.18 담론에는 '투쟁으로 얻는 민주

13) 당시 수습위로서 25일이라는 시점에서 이러한 입장을 개진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고 보인다. 예를 들어 최초의 5.18수습대책위원회를 포함하여 무기 회수를 주장하는 입장은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 여기에 수습대책위는 22일 계엄분소를 방문했던 수습대책위는 다른 것이라 보여진다. 당시는 여러 개의 수습위가 활동하고 있었고 서로 갈등을 겪으며 매일 개변되고 있었다고 한다.

14) 23일 「민주 시민 여러분」이라는 글은 젊은이들을 보호해야 하며, 피해를 복구하고,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전사연 1988, II-32, 130). 『투사회보』들도 시민들에게 계속 이와 같은 행동지침을 전했다.

의'와 우리사회의 보편적 정치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혼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혁명론은 현실적으로 곧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광주시민들과 운동권은 이른바 '남동성당파'와 보조를 맞추어 광주 시민들, 결기대회 군중들의 일반적인 요구를 따르게 되었다. 시민들은 이른바 '피의 값'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외상이 없는' '피의 값'은 광주 시민들의 名譽回復이었다. 명예회복이란 구체적으로는 사건의 원인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피해 보상 등을 말하며 원칙적으로는 현정부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윤리적 優越性을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확보하는 일이었다. 이 윤리적 優越性을 확보하는 요구에는 다시 이 우월성의 지표로 민주화 요구가 포함되었다.<sup>15)</sup> 해방광주는 투쟁의 담론으로부터 전쟁과 혁명의 담론을 거쳐 기어이 공동체의 담론으로 돌아온 것이다. 광주 시민들은 무기를 놓고 전쟁 당사자임을 포기하고 국가의 지배로 복귀하는 대가로 현 정부와 군부 그리고 공수부대에 대한 윤리적 優越性을 확보하려 하였다. 일반적으로 국가로서 시민 공동체에 윤리적 우월을 인정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일 것이다. 그러나 군부로서 당시 공수부대의 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sup>16)</sup> 국민에 대한 그같은 행위는 윤리적 劣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人倫에 대한 犯罪였기 때문이다. 광주 시민들은 '피의 값'을 받지 않고서는 무기를 놓고 투항할 수 없었고 그 이유는 무엇보다 공수부대에 의해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고 영원히 '폭도'로 남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광

주는 절해의 고도였다. 항쟁을 결의한 젊은이들에게 마지막 언명은 '광주 死守'였다. 계엄군의 군사력 앞에 그들은 도청을 지킬 수도 없고, 광주를 지킬 수도 없고, 사과를 받아낼 수도 없고, 민주화를 이룰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외상 없는 '피의 값'을 위해, 언젠가 광주 시민의 명예회복과 부활을 위하여는 누군가 거기서 죽어야만 하는 것을 알았다. 살아남은 자들의 십자가는 그들이 용감하게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젊은이들을 희생양으로 하여 그들은 인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계엄분소에서 '폭도'라는 말을 자제하고 '과잉진압'을 시인했듯이 이 기간 동안 계엄사는 광주 시민들을 자극하지 않고 투쟁의 열기를 식혀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진력하였다. 계엄사는 일단 언론에 보도된 이상 언론사들로 하여금 기사와 사설을 쓰도록 하고 공식 발표나 성명은 정부에서 이루어지게 하였다. 첫번째는 23일의 신임 박충훈 국무총리 담화였다. 그는 광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송정리에서 브리핑을 받은 후 담화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선량한 시민을 '폭도'와 구분하고, 이 '폭도'들은 학생들이 아님을 지적하고 그리고 군은 자제하였고 현재 광주는 '치안부재' 상태를 강조하였다. 그는 계엄사의 입장을 지지하며 시민들을 자극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폭도'라는 말의 수차례 사용에 시민들은 더욱 흥분하였다. 이 시기에 일반적인 언론의 태도는 선량한 시민들의 수습 복구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대조적으로 그간에 파괴된 시가지 사진, 검

15) 민주화 요구는 당시 23일부터 모든 유인물, 성명서에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엄사에 대한 공식적인 무기 반납의 조건으로 포함된 것은 공소장에 따르면 25일 저녁 항쟁 지도부의 설립과 함께 윤상원의 제의에 의한 것이었다(현사연 1990a, 109).

16) 80년 6월 육군본부의 「광주사태의 진상」은 '유언비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언비어의 근원지는 말할 것도 없이 국민총화를 깨뜨리고 사태를 악화시켜 전복시키려는 북괴간첩들의 농간과 불순시위 주동자, 현실 불만세력들의 막연한 추측에서 날조된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내용들은 수많은 의신을 통하여 한국이 마치 공포와 불안의 도가니인 양 보도되어 국위(國威)를 실추시켰고 북괴의 대남모략, 비방선전에 이용됨으로써 그들의 적화전술에 그대로 부합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다" (전사연 1988, II-13, 223) 이 말은 당시 군부의 처부를 실토하고 있다고 보인다.



은 연기가 치솟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한편으로 정부와 언론이 시민들을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소수의 '폭도'들을 시민들과 분리시키려 하였다. 이 시기에는 신문에 18일 부더의 간단한 사건 일지가 실렸고 여기에는 공수부대 얘기는 전혀없고 친편일률적 폭동일지였다. 사건일지들 중에서 그나마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동아일보』 정도였다.<sup>17)</sup> 일간지 7면에는 시민들이 거리 청소하는 기사, 무기를 회수하며 질서를 찾으려는 노력에 대한 기사들이 게재되곤 했고 대학생들은 선량한 집단으로 보도하였다. 이 기간에 신문들은 5.18을 사실에서 취급하였고 이들의 입장은 유사했다. 공통적으로 모두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유언비어'를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지만 『조선일보』는 23일, 25일 사설에서 "당장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문제이므로 조속한 해결을 주장한 반면 『동아일보』는 24일 사설에서 아무런 설명없이 "통환", "통분" 등의 말을 쓰며 "大徑大道 아닌 미봉책은 禁物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무언가 말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시점의 대표적인 담론은 25일 저녁 최규하 대통령 특별담화였다. 이 글은 광주시민들을 자극시키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시민들을 걱정하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매끄럽게 쓰여진 글이었다. 그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복귀 도발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국가안보와 時間의 논리는 정부와 언론의 담론의 핵심이었다. 대통령 담화문 바로 옆에는, 광주도청에는 25일 저녁 항쟁파가 주도권을 잡았다는 기사가 실렸고 살벌한 분위기가 극에

달했다는 흑색선전이 대조를 이루었다. 이 대조적인 지면에서 독자들은 무력진압이 임박했음을 직감했다. 이에 앞서 24일 석간과 25일 조간에는 서울역에서 남파간첩이 검거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의 남파 임무는 광주에 침입하여 선동하는 것이며 특이한 점은 강렬한 파괴활동을 위해 환각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sup>18)</sup>

5월 27일 새벽 계엄군 작전에 대한 기사는 활자시켰지만 내용은 별로 없었다. 이후에는 1면보다는 주로 7면 사회면에서 광주문제를 다루었고 내용은 복구 노력과 이에 대한 정부 지원 그리고 전국적인 광주시민 돕기 운동에 관한 것이었다.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 질서를 지켜온 선량한 광주시민들의 노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기간에 눈에 띄는 기사가 있다면 29일과 30일의 『중앙일보』 7면 기사였다. 29일에는 결코 물질적 지원으로 해결되지 못할 무거운 광주의 분위기와 해명 촉구에 당혹스러워하며 떠나는 도지사의 모습을 통해 무언가 커다란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날에는 무정부상태의 광주에는 강력사건은 거의 없고 오히려 미덕이 꽃피는 도시였다는 그간의 보도와는 상반되는 소식을 전했다.

### 37 심판의 시대

5.18은 27일 무력진압으로 열흘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늘에는 수많은 코브라 헬기들이 무력시위를 하며 고성능 확성기를 통해, 시민들은 집에 있을 것, 공무원들은 일찍 출근할 것, 그리고 '폭도'들은 지수

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고 누구에게 힘이 있는가를 눈과 귀로 확인시켰다. 5월 18일부터의 열흘간의 시대가 무엇이었는데를 定義할 수 있는 특권은 이제 군부가 독점했고 31일 계엄사는 「광주사태」를 발표했다. 이 발표의 전문과 해설은 모든 일간지에 1면에 보도되었고 이 기사 옆에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설치에 대한 기사가 눈길을 모았다. 계엄사 발표는 면밀하게 짜인 논술이었다.

우선 이 글은 계엄 확대 후 유독 광주에서만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켰음을 강조한다. 그리고는 현실의 무게를 느낀 듯 '과잉진압'에 대하여 기가막힐 표현으로 인정하고 동시에 기각하였다. "다같이 혈기 왕성한 젊은 군인과 학생들은 감정이 폭발, 욕설과 고향으로 대항하기에 이르렀으며"라고 상황을 묘사하였다. 나머지 부분은 이미 발표된 시나리오를 확대한 것이었다. 우선 종전대로 '유언비어'에 모든 시민들의 힘을 전가하였다. "냉철한 이성으로써는 상상할 수 없는 지역감정을 촉발·선동하는 말들이 삼시간에 전 광주 시내에 퍼져, 시민들을 흥분시키고 시위양상을 극렬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시민들을 선동한 것은 "고침과 불순분자의 계획적 소행"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교도소 앞 충돌 그리고 『투사회보』 등을 들었다. 그리고 '폭도'의 대부분은 "불량배와 특정 정치 목적을 가진 불순분자"들이며 학생은 30% 정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후세력으로는 두 가지를 지목하고 있다. 첫째는 불순분자와 간첩이며, 둘째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소요 사태를 배후조종해온 김대중이 광주시의 전남대와 조선대 내 추종세력(주로 복학생 중심)들을 조종·선동하여온 것이 소요사태의 발단이 되었고 사태의 악화와 폭동의 과정에서 광주 시내 골수 추종분자들이 단계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를 격화시킨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계속 판명되고 있는 것이다."(전사연 1988, III-

4, 173~5) 이로써 군부는 음모 정치집단에 대해 두개의 선택의 여지를 갖게 되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민간인 사망자는 144명으로 내용 분석은 대단히 흥미롭다. 교도소 앞에서 28명이 사망했고 이들은 죄익수들을 풀어주려 한 '불순분자'이며, 다음 "음주 및 과속으로 인한 전복 충돌 등의 교통사고 32명"이며 이 숫자는 '무법천지'의 결과이며, 자체 오발사고 15명, 폭동저지 과정 17명 - 이 숫자는 27일 재진입시에 발표된 사망자와 동일한 숫자로 그 이전에는 한 명도 사망한 사람이 없다는 억지이며,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자체 강은파 간의 충돌에 의한 살인 자행"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제시하였다. 이 마지막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계산해보면 무려 52명이나 된다.

긴 침묵 끝에 6월 2일 발간을 재개한 『전남일보』는 5.18관련 시리즈를 게재했다. '무등산은 알고 있다'라는 너무나 익숙한 유행가 가사 같은 제목은 광주시민들의 울음보를 터트렸다. 끝없는 진실의 심연과 지면을 가리고 있는 특호 활자들의 어색한 침묵 사이에는恨의 강이 흘렀다. 이 말 못하는 기사가 계속 부르짖은 말은 '시민'이었다. 반복되는 '시민', '광주시민'이라는 말은 5.18 동안 광주시민들이 뜨겁게 느꼈던 공동체의 이름이었고 이 이름은 또한 전국의 모든 언론들이 찬양하는 대상이기도 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무장폭도'나 '현실 불만세력'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유족회는 그 이름에 '의거'라는 말을 썼고 그 이유는 5.18을 4.19와 맥을 잇기 위함이었다. 6월에는 5.18의 진실에 대한 자자미상의 유인물들이 나들기 시작했고 이 유인물들은 5월 31일 계엄사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들이었다. 6월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의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은 공수부대의 만행을 고발하고 투쟁기간 동안의 높은 시민정신을 여러 증거를 통해 주장하였다(전사연 1988, III-5, 177~

17) 예를 들어 22일에 나온 사건일지에는 "19일부터는 전시민이 가담하는 태도", "전시민적 항거의 형태를 띤 채", "같이 죽자고 외치고", "극심한 방법을 써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시민들의 가세 계기를 주었다"는 등의 말은 폭동일지 뒤에 무엇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일지는 어떤 이유에서 날짜를 역으로 추적하여 작성되었다.

18) 이 기사의 경중은 신문마다 달랐다. 특기할 사항은 대구 『메일신문』은 24일 광주에 대한 기사 바로 옆에 매우 크게 이를 보도하고, 그 밑에는 '군중이 잡은 3명 고정간첩 판명'이라는 기사로 '전옥주 여인 등 3명'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의 경우는 5.18에 대한 모든 기사는 합동과 동양 두 통신사에서 배급받은 것임을 매번 잊지 않고 밝혔다.

9). 80년 6월중에 배포된 5.18에 관한 대표적인 글은 작자미상의 「찢어진 깃폭」과 「광주시민들의 진상」이었다. 이 두 글은 대조적인 톤과 시각에서 쓰여진 것이지만 모두 계엄사 발표문을 반박하는 의도를 명백히 하고 있다. 전자는 개인의 경험을 소상히 추적하며 자신이 겪었던 감정을 상세하게 극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들이 싸운 것은 가장 원초적 인류에 근거한 것이며 이러한 윤리적 판단은 뜨거운 투쟁의 공동체로 응집되고 확인되었다. 이 투쟁의 비극적인 종말과 재림의 약속은 길거리에 총맞아 죽은 어린이 손에 들려 있는 “찢어진 채 퍼터이는 피에 묻은 깃폭, 구멍 뚫린 저 태극기”의 모습으로 상징되었고 그 피비린내 나는 투쟁의 뭉은 태극기 그리고 고향의 “어머니의 젓가슴”같은 땅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상징되었다(전사연 1988, Ⅲ-8, 186~91). 한편 「광주시민의 진상」은 하나의 본격적 학술논문이었다. 5.18은 돌발적 사태가 아니라 “박정권 18년 독재 하에 성장한 민주역량의 구체적 표현”이라 주장한 후 70년대부터의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재정리한다. 그리고 공수부대의 만행을 면밀히 예를 들어 고발하고 정부발표 특히 폭도론, 불순분자론 그리고 지역감정론을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나아가서 저자는 자유주의자로서 최초로 미국에 대한 시각 전환을 주장하였다. 우리는 미국의 수없는 명분 없는 행위에 눈감아왔다. 그러나 5.18에서 미국이 동족 대량 살육에 동의한 것은 용서할 수없으며 “우리는 미국을 새로운 눈으로 주시해야 한다”고 하였다(전사연 1988, Ⅲ-9, 193~207). 이 글은 5.18 담론의 새로운 장을 연 중요한 작품이다. 첫째로 5.18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의 민주화투쟁의 역사에서 파악하였고 나아가서 미국은 이제 단순히 우리의 혈맹이라는 일차원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계몽하였다.

6월에는 육군본부 명의로 「광주시태의 진상」이라는 또 한 차례 발표가 있었다. 이 글은 위에 제시된 글들과 전략적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며 동시에 5월 31일의 계엄사 발표를 수정 보완하는 목적도 가진 것이었다. 우선 ‘폭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흑색선전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20일에 ‘불순분자’들은 소총들을 탈취하여 “무차별 사격을” 가하고, LMG 두 정을 설치 난사하여 12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밤이 되자 난동폭도들은 탈취한 총으로 시내 곳곳에서 총격전을 벌렸”다는 등 이전의 발표보다 더욱 劇化하였다. 그러나 주된 변화는 발단과 원인에 관한 것이었다. “5.17조치 이후 서울에서의 반정부활동이 불가능해지자 김대중 추종세력들을 포함한 서울 학생시위를 주도해온 서울대, 고대 등 재경대학의 호남 출신 문제학생들과 깡패들까지 합세, 광주로 잠입하여 그 지역 깡패들과 어울려 정부에 대한 오해가 팽배해 있는 현지 민심을 선동하여”라고 하여 일차적 정치세력을 ‘불순분자, 고첩’에서 ‘김대중 추종 세력’으로 교체하여 김대중을 스타덤에 올려 놓았다. 그리고 “고정간첩 등 용공분자들”은 이번에는 조연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물론 다시 ‘유언비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 ‘유언비어’와 선동에 다른 요소를 첨가시켰다. “잘사는 놈들은 모두 잡아 죽여야 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구두담이, 녀마주이, 양아치, 공원, 전과자, 무직자 등 불만세력의 참여를 유도시켰고”라고 하여 이 도시 ‘룸펜’들을 김대중에 이어 스타로 부상시켰다. 배후세력으로는 1) 김대중 추종자, 2) 깡패 및 룸펜, 3) 용공 간첩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나아가서 ‘과잉진압’에 대하여는 궤변을 늘어 놓았다. 물론 난동으로 화하기 직전 일부 군의 과잉제지가 시민의 감정을 선동하였다고 하여 잘잘못을 가리려는 시비론도 대두하였지만 마치 사태악화의 원인이 지역감정의 폭발에 있는 것 같이 알려지는 것은 대국

적으로 보아 크게 잘못된 것이며 일부 불순분자들이 지역감정을 촉발 악용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달성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계산하에 저질러진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장은 군부의 지적 수준을 가늠케 하는 예로 그 의도는 공수부대의 만행과 유언비어, 지역감정을 묶어 공수부대의 만행을 들먹이면 광주시민들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도록 담론들 간의 연계 고리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연행자 730명을 분류하고 있다. 학생은 이 중 18%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무직, 공원, 날품팔이 등 노동자 그리고 녀마주이들”이라는 사실을 강변하였다(전사연 1988, Ⅲ-13, 221~6). 이 글은 장기적 계획 하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5.18을 불순분자, 고첩들의 작품으로 매도한 후에 이번에는 ‘김대중 추종세력’을 그 자리에 넣어 김대중을 불순분자로 5.18과 한 배에 태워 보내고, 5.18을 ‘시민의거’로 보는 시각에 재를 뿌리기 위해 도시 룸펜, 우범자 집단을 ‘폭도’의 추종세력으로 부각시켰다. 이는 중산층으로 하여금 5.18에서 정을 떼도록 하는 방책이었다.

당시 5월까지 광주시민층의 담론이 투쟁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과정이었다면 군부의 담론은 통제되고 전략적으로 구상된 것이었다. 광주시민들의 담론은 결국 투쟁의 명분과 의미를 연결시키는 데 있어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그들은 해방기간을 통해 담론의 딜레마를 헤쳐나오는 데 긴 여정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반면 후자는 당시에 군사력과 폭력 수단의 조건에 따라 톤이 조절되고 있었고, 힘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는 담론을 자제하는 전술도 구사하였다. 그러나 모든 힘의 문체가 마무리되고 사건을 규정할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은 원래의 시나리오로 돌아가 가차없이 심판하였다. 유언비어론은 5.18에 대해 떠돌고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는 권력을 동원했고, 불순 정치집단론은 구속한 사

람들에게 자백을 강요할 고문 능력을 배경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지역감정론은 사건의 궁극적 원인을 광주시민들 가슴 속에 깊이 내재하는 것으로 5.18과 같은 사건을 통하지 않고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潛在된 성향으로 지목하였다.

### 3. 부활의 언어

1980년 6월 이후 5.18에 대한 얘기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물론 그것은 주로 5공 정부의 탄압 때문이었다. 그에 대한 얘기는 83년 말의 학원자율화 조치에 따른 학생운동권의 부흥과 함께 다시 시작되었다. 4년간의 정적에서 심오한 변화가 준비되고 있었다. 학생운동권은 5.18을 통해 세상을 보고 그를 연구하여 투쟁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들의 존재를 정당화해 오고 있었고 84년과 85년을 통해 5.18을 다시 해석하는 글들을 발표하였다(강신철 외 1988, 95). 이 시기에 5.18 담론은 학생운동권에 의하여 독점되었다. 금지된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그들뿐이었다.

84년 5월 19일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 「아, 5월이여! 영원한 민주화의 불꽃이여!」는 5.18에서 민중을 발견하여 투쟁의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였다. 민중은 세가지 ‘민’의 세번째이자 앞의 두 ‘민’을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80년 5월의, 독재를 타도했던 ‘민주’는, 외세를 배격하고 통일을 외치던 ‘민족’은,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 했던 ‘민중’은 5월 광주의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히 살아 있다”(민문협 1985, 428). 민족이 통일의 주체라면, 민중은 “민주화 운동의 주체”였다. 민중에는 노동자, 청년, 학생, 농민, 종교인 등 “극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한 모든 대중”을 의미하는 즉 최소한의 지배층을 제외한 포괄적인 것이었고 위에서 제기하듯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 했

던" 계층을 의미한다. 민중은 동시에 계급적이며, 민족적이며, 정치적이자 경제적인 범주였다. 84년이 되면 운동권에서는 민주주의의 주체는 시민이 아니라 민중이었다. 민중론은 이미 상당한 설득력을 얻는다.<sup>19)</sup>

이어 85년 4월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의 명의의 「아! 광주여! 민족의 십자가여!」는 5.18은 학생 운동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고 하였다. 첫째, 한국 민중의 잠재력이며, 둘째는 미국의 문제이며, 세째는 진정한 투쟁의 자세이며, 네째는 조직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좀더 철저한 과학적 인식과 실천의 고도화를 일깨워주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른바 삼민주주의의 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의 운동의 목적은 첫째, "참다운 민주주의의 확립이며", 둘째는 "여러 외세들 사이에서 획득해야 할 민족 생존권의 보장이며", 세째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소외와 불평등을 제거하는 민중해방의 실현"이라는 것이다(전사연 1988, III-20, 262).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민족, 민주, 민중의 세 개념은 유기적인 통일체이며 따라서 이 세 가지 목표는 결코 단계론적 사고에 빠져서는 안되며 "동시에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글은 85년에 이르러 투쟁의 방향은 이미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혁명노선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삼민주주의는 85년을 전후하여 학생 운동권 및 재야운동권의 패러다임이었고 이들의 '철저한 과학적 인식'이라 함은 이 틀의 논리적 구조를

보완해나가는 것이었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三民'이 왜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며 단계론적 사고는 禁物인가는 논리적 설명이 없는 전체성주의의 도그마라는 점이다. 이 글이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도그마는 주체론이다. 주체론은 이 시기 학생운동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론의 틀을 벗어났다는 또하나의 지표였다. 마지막으로 85년에 이르르면 5.18 현실의 일부를 운동의 필요에 따라 과장하는 행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sup>20)</sup>

그 해 5월투쟁의 와중에 두 개의 5.18에 대한 해석이 제시되었다. 전국민주학생연맹의 「광주민중항쟁의 현대사적 재조명」과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학술부의 「5.18민중혁명성 고찰」이라는 두 편의 글은 대단히 과감한 해석이었다. 전자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5.18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광주지역의 경제적 계급적 특수성을 분석한다. 그러나 이 해석의 특징은 민중은 피동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의 운동에 의하여 의식이 성숙된 단계에 있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민중들은 현실을 변혁하고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힘과 형식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장투쟁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며 민중의 무장과 폭력은 자기방어 수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전사연 1988, III-22, 273~81). 반면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학술부의 글은 5.18의 민중을 낭만적인 시각에서 그들의 혁명적 의식은 이미 충만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5.18은 남한에서

해방 이후 누적되어왔던 "반봉건, 신식민지로서의 정치, 경제적인 모순이 민중들에 있어서 혁명적 폭발"로 나타났다. 광주 민중은 제국주의의 모순과 반봉건체제의 모순이 누적된 상황에서 그들의 소외를 뚜렷이 의식하고 20일부터는 혁명적 투쟁을 창조적으로 전개해나갔다. 나아가서 그들은 이미 반미의식을 갖고 높은 혁명의식으로 "민중혁명의 최고 형태인 內戰으로 질적 비약"을 하게 되었다(전사연 1988, III-34, 389~402). 5주기를 맞아 발표된 이 글은 역사적 사실을 대가로 스러져간 망명들의 명예를 혁명의식으로 회복시켜주었다. 5.18은 단순히 학살당한 비극의 역사가 아니라 이 땅의 민중들이 우리 민족이 처한 모순에 대한 침예한 의식을 배경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싸운 혁명적 투쟁이라는 것이다.

85년 5월투쟁의 시기에는 한편으로 충격적인 선도투쟁이 준비되고 비약 발전한 학생운동은 5.18에 대해 과감한 해석을 경쟁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84년에 제기된 해석의 기저에 깔려 있는 방향이었다. 85년 5월은 이미 설정된 방향이 좀더 선명히 부각되고 대중화하는 시기였다. 아울러 이 시기에 「광주민중항쟁의 현대사적 재조명」은 최초로 '민중항쟁'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제기하였다. 민중은 5.18 안에서 발견되어 5.18 자체를 다시 규정한 셈이다. 그러나 '민중항쟁'이라는 말은 민중이 영웅적 투쟁을 벌였음을 강조하는 말로써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민중이 피해자임을 강조할 경우에는 '광주학살'이라는 말을 따로 사용해야 했다. 5월 23일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은 사회전체에 충격을 던졌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비로소 5.18은 공공의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 5월 30일 신민당은 광주 사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6월 7일 윤성민 국방부장관은 국회 국방위

원회에서 '광주사태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보고는 80년 6월의 발표 이래 정부가 제출한 처음이자 마지막 보고였고 그 내용은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폭도'라는 말 대신 '난동자'라는 말을 썼고 80년 6월에는 과잉진압론을 일축했던 데 비해 다시 수용했다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7월부터 월간지들은 미문화원 사태와 관련지어 '광주사태'를 경쟁적으로 언급했다.

1987년 6월항쟁은 5.18 담론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첫번째 요인은 대통령 선거였다. 여당으로서는 김대중을 복권시켜 김영삼과 경쟁시키는 한 노태우의 당선이 가능하였고 김대중이 복권된다면 당연히 5.18도 복권되어야 했다. 6월 항쟁 이후 정치가들은 앞다투어 5.18과 민주화에 대한 견해를 밝혔고 노태우 역시 7월 2일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12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 88년 2월에는 민주화합추진위원회(민화위)가 결성되어 증언을 청취하는 등 활동을 시작하였다. 정부는 민화위의 권고에 따라 4월 1일 「광주사태 치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과잉진압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였다. 나아가서 5.18은 민주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공식적으로 일부 복권시켰고 부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발표하였지만 책임자 처벌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5.18에 대한 모든 글들은 광주시민의 시각에서 쓰여지고 있었고 80년을 통해 계엄사가 발표한 5.18 담론들은 대부분 잊혀져가는 듯했다. 이 시기는 5.18 담론의 확산과 함께 학생운동권과 재야운동권 그리고 노동운동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그들의 언어는 과격화되어 가던 때였다.<sup>21)</sup>

1989년 「노동해방 문학」 5월호에 실린 이정로의 「광주봉기에 대한 혁명적 시각 전환」은 5.18 해석의 정치적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논술이다. 이 글이

21) 당시 5.18과 관련하여 과격하고 감정적인 언어를 구사하던 대표적인 단체는 민통련이었다. 그들은 결코 과격한 이념을 표방

19) 5.18 4주년을 맞이하여 5.18광주거주족회회장 전계량은 「추모사」에서 "그러나 가신 님들의 뜻이 목숨을 버리고 의를 따름이 오직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갈라진 땅의 통일이었다면 진정한 민중의 승리만이 참된 보상이요, 위안이요 위대한 찬사임을 압니다" (민문협 1985, 432)라고 하여 '민중의 승리'가 곧 역사의 목표임을 내세웠다.

20) 예를 들어 "광주민중항쟁은 이러한 한국민중의 민주화에의 열망을 5.17군사 쿠데타로 무참히 짓밟은 정치군부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일어났다. 30만 광주민중들은 5.17 군사 쿠데타에도 굴하지 않고 <계엄철폐>, <최규하 과도정부의 즉각적 퇴진>, <전두환 물러가라>, <김대중 및 민주인사, 학생들의 즉각적 석방>, <구국 민주과도 정부의 수립>, <광주시내에 배치된 계엄군의 즉각적 철수> 등을 주장하면서 평화적 시위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전두환 군부세력은 공수특전대를 파견 유혈 탄압을 지시함으로써 민족사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긴 광주대학살극을 연출한다" (전사연 1988, III-20, 260).

과연 독창적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다. 기본 골격은 상당 부분 이미 85년의 해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5년의 글이 운동권 내부자료의 성격을 지닌 간략한 글이었다면 이정로의 글은 전국의 노동계와 지식인들을 향한 글이었고 나아가서 그간 서로 가르치 않고 공존해왔던 민주화론 시각의 민중론을 과감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정로는 시민군, 민중들의 "투쟁주력이 노동자계급"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미 민중은 84년부터 계급적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당시의 포괄적 성격을 강조하여 군사정권에 대한 폭넓은 동맹체를 형성하려 하였고 따라서 뿌리부르주아 집단들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다. 반면 이정로는 6월 항쟁 이후 운동권 세력의 확대를 의식한 듯 이제 투쟁의 주역은 노동자계급임을 선언하였다. 5.18 민중이 투쟁적이었다면 그것은 노동자계급이 주역이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5.18은 한국적 특수성에서 벗어나 마르크시즘의 계급투쟁과 혁명의 논리로 연결되었다. 나아가서 민중을 피해자로 그리고 군부의 사전조직된 사건임에 분개하여 저항한 '순진한' 사람들로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들을 비난한다. 이정로는 5.18의 노동계급은 지도기관을 갖고 있었고 이들은 "반란"을 조직하였고 기어이 "임시 혁명권력"을 창출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시간의 제약에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명백한 계급적 적대감과 투쟁의지 그리고 혁명 의식을 갖고 있었다. 나아가서 이정로는 5.18의 무장봉기를 그들의 혁명투쟁의 의지를 꽃피운 백미로 보고 5.18의 핵심적 교훈은 "권력의 문제"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부르주아 집단과는 결별하여 노동자계급의 주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

하지는 않았고 다만 민주화운동의 틀에서 선동적 언어를 구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주주의'와 '월기하라'는 선동적 언어는 서로 어울리지 않으며 이른바 '계야'와 '운동권'은 당시 무언가 '민주화'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민민연 1989).

정로 1989, 24~36).

이 시기에 이르러 운동권의 5.18 해석은 계급혁명론으로 그리고 무장투쟁을 찬양하는 입장으로 치달았다. 89년에 일어난 중요한 담론의 발전은 5.18의 사회과학의 영역으로의 확대였다. 한편으로 이 변화는 5.18의 광주시민 입장에서의 해석이 사회에서 정론으로 자리잡은 결과이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운동권의 5.18 해석이 극단적 혁명론으로 나아감에 따라 5.18 담론의 확산이 과격화 경향에 의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5.18 담론의 사회과학으로의 확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운동권의 지하의 언어에서 대학의 강단으로 올라왔고 또한 사회과학은 논술의 형식을 갖는 이른바 '高級' 담론으로서 5.18 담론은 이제 우리사회 지식인 전체를 청중으로 말하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회과학자들이 5.18 논의에서 과학적 엄밀성을 충족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그들은 아직 민중의 개념의 모호성과 이중성에 대해 깊이 천착한 바없으며 정확한 정의 없이 '파시스트', '파쇼'라는 말 등을 자유롭게 쓰고 있는 점은 5.18 사회과학의 한계를 드러낸다. 후자들의 경우 어감이 강하다는 것 또 아주 나쁜 사람들이나 정권을 칭한다는 것으로 감정 표현의 의미 외에 이론적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18에 대해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노골적으로 그들의 목적은 5.18 정신을 계승하여 계속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는 사회과학의 범위에서도 여전히 5.18 담론은 정치적 또는 실천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하여 주도되어왔다는 것을 뜻한다. 89년 이후에 나타난 사회과학적 5.18 담론은 이전에 85년까지 제기된 학생운동권의 시각을 거의 벗어나지 못

하고 있으며 오히려 88년 이후에 등장한 예리한 혁명주의 이론으로부터는 퇴보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회과학자들의 5.18 담론은 그 출발에서부터 사회과학 방법론으로부터 도그마를 설정하였다. 어쩌면 이 도그마는 학생운동권의 '신식민국독자' 도그마를 사회과학방법론으로 보충한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사회과학자들은 5.18 해석은 구조주의적 설명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sup>22)</sup> 5.18은 한국의 해방 이후 근현대사의 모순구조의 하나의 표출이며 이 모순구조는 민족적 모순과 계급적 모순으로 이루어지며, 이 모순은 세계자본주의체제와 독점자본주의체제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이 양대 모순구조는 한편으로는 10.26 이후 신군부에 의한 극단적 민주화운동 탄압을 초래했고 또한 이 구조로 인해 광주는 모순이 중첩되어 폭발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다.<sup>23)</sup> 그러나 5.18이 왜 필연적으로 일어났어야만 하는, 방지할 수 없었던 구조적 원인에 의한 사건이었다는 점은 5.18이라는 사건의 경험적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라기보다는 사회과학의 언어구조 특히 맑시스트 정치경제학적 언어구조에 근거하고 있다. 즉 5.18에 대한 사회과학 담론은 서양의 실증주의 사회과학 담론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담론은 5.18을 특정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여러 사건의 하나 또는 '구조적 조건'의 발현으로 보아 사건으로서의 5.18을 매몰시켜왔다는 사실이다. 우

리 사회에서 마르크시즘에 경도되어 있는 사회과학은 분명히 5.18의 소산이다. 5.18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고 거대한 투쟁과 혁명을 기대하고 그 가능성을 생각하던 시점에서 마르크시즘의 경제결정론과 계급투쟁론은 우리 지식인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5.18에서 태어난 우리 사회과학은 역사를 다시 쓰며 그 모태를 구조에 매장해버렸다.

1993년 5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5.18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담화는 나름대로 5.18을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추구한 운동으로 복권시켰다. 우선 5.18은 '광주민중화운동'이라는 6공 시절의 定意를 반복하였다. 그 말은 우선 '의거'나 '항쟁'과 같이 피비린내 나는 격렬한 투쟁이 아니라 무슨 평화적 시위 같은 것으로 재현하고 있다. 나아가서 5.18을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군사독재에 오랫동안 저항해온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 놓고 있다. 김 대통령은 5.18의 위치를 比喩로 "우뚝한 봉우리를 차지하고", "광주의 유형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라는 앞송달송한 말로 제시하였다. 그리고는 진상규명에 관하여는 "훗날의 역사"에 맡기자고 하여 진상규명은 포기하는 것으로 입장을 굳혔다. 이 담화문에서 대통령은 자신도 5.18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에 대해 고초를 겪었으며 지금의 '신한국'은 5.18의 適者이며 5.18의 "정신은 신한국 창조를 향한 참여와 창의를 열린 정신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5.18 정신에 대한 재론의 여지를 '신

22) 일례로 김진균, 정근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광주민중항쟁을 전체 민족 운동사의 시각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은 사건이 직접적 원인보다는 그것이 발생한 구조적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현대 한국사회의 계급지배와 투쟁양상의 변모 속에서 민중항쟁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김진균, 정근식, 「광주5월민중항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현사연 1990b, 65~6).

23)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1989년 토론에서 서중석은 5.18을 "민족사의 분수령으로" 즉 광주에서 "폭발"하여 다른 역사의 흐름으로 가는 계기로 보고 있으며 토론에 참가한 조희연의 경우 5.18은 "지배권력의 폭력적 성격"을 드러낸 계기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5.18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진리가 현현한 순간이라는 것이다. 나아가서 "광주항쟁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 모순의 일반적 표현이고, 민중의 자기해방 과정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정치적 진출의 한 표현"이라는 것이다(최장집 외 1989, 26~75).

한국으로 틀어막은 것이다. 현정부는 5.18을 복권시켰지만 '민주화운동'이라는 부르주아 이념으로 결박하여 발톱과 이빨을 뽑은 셈이다. 이러한 또하나의 권력 담론의 등장은 89년 이래 우리 사회과학에 5.18 담론이 자리잡았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사회 전체에서 보면 고립되어 있는 상황의 반증일 수 있다.

약속대로 5.18은 부활했다. 오랜 고독과 정적에서 단련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부활한 모습은 전과 같지 않았고 그의 새 이름은 민중이었다. 민중은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었다. 우선 민중은 독점자본들과 그들의 用兵들을 제의한 수많은 사람들, 금남포에 모였던 끝없는 인파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지만 '말이 필요없는' 절대적 사랑의 공동체였고 여기서 광주시민들은 민족을 살갓으로 느꼈다. 민중의 다음 모습은 사회의 맨 아래의 천덕꾸러기, 도시빈민, 룸펜으로 당시 공수부대와 맞서 격렬하게 싸웠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항거하다 죽은 그 사람들이었다. 한편으로 민중은 아름다운 사랑의 화신이었고 다른 한편 용맹한 투사였다. 시민이 묻혔던 자리에서 민중이 부활한 것은 민중은 이 두 얼굴을 같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지식인들은 아름다운 민중, 민주화를 위한 거대한 공동체를 원했고 투쟁의 대열에 선 운동권은 용감한 새 나라의 공수부대를 원했다. 이 두 얼굴은 바로 그 兩價性에 의해 마치 하나의 존재인 것처럼 하나의 이름으로 불렸다.

운동권과 사회과학자들이 모두 5.18을 말하며 집착했던 '구조적 조건'은 5.18 민중의 육신의 復活을 비는 儀式的 呪文이었는지 모른다.

24) 해방광주를 질서와 평온함으로, 즉 하나의 유토피아로 표현하는 것에 반대한 전형적인 예는 김양오(1988)라 할 수 있다.

#### 4. 담론과 현실

##### 17 폭도론

오늘날 폭도론의 현실성을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개념의 문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폭도'라는 말은 19일부터 계엄군 선무방송과 홍보물에서 사용된 말이며 나중에 5공정부도 사용을 자제한 말이다. 일단 폭력 행위를 하거나 폭력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은 폭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폭력 사용자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폭력 행위를 윤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행위 주체를 윤리적으로 비난하는 말이다. 광주시민들이 이 말에 분개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이 말이 공개적으로 쓰인 것은 폭도라 부른 대상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고 이 담론은 권력을 배경으로 제시된 것이다. 나아가서 폭도의 마지막 의미는 예를 들어 박충훈 국무총리가 "무장폭도들 저 자들이 문제입니다"라고 불렀던 사람들, 단순히 부당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아니라 늘 그런 폭력이나 사용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실 불만세력'이라 불렀던 깡패, 녀마주이, 무직자, 노동자, 구두땀이, 거지 등의 룸펜 프롤레타리아 계층을 말한다. 이들은 사회계층으로서 갖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원한을 어떤 기회를 틈타 폭력과 방화로 해소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5.18은 엄청난 사태로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폭도론은 이들 계층이 계엄사의 선전과는 달리 시민정신을 발휘했다는 사실로 충분히 반박된다.<sup>24)</sup> 이들은 사회의 最下位에 있었지만 계엄사의 발표와는 달리 시민정신을 발휘했다. 그렇다면 역으로 이들이 투쟁의 선봉에 서고 또 시민정신을 발휘한 것은 이들이 사회에서 最下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계급혁명

논리 또한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이들 계급이 시민정신의 화신이 된 것은 일차적으로 상황과 사회체제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5.18은 전시민적 투쟁이었다. 학생,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구타당하고 어린이들까지 학살당하는 극도의 非常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체적 힘과 싸움에 익숙하고 자신 있는 사람들이 투쟁에 스스로 앞장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민정신일 것이다. 만약 투쟁이 글이나 말의 싸움이었다면 당연히 교수나 대학생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며 또 그들은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당시 광주시민들의 자발적 분업체제와 즉흥적 조직은 놀라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이다. 도시빈민들이 가두투쟁에 앞장서고 조직 폭력배들도 시민들의 자치활동에 협조할 것을 선언하는 일은 시민정신의 발로였고 5.18 정신에 조금도 누가 되지 않는다.

##### 2) 불순 정치집단론

불순 정치집단론은 21일 오후 총격전이 벌어진 시점에서 계엄사가 제시한 설명이며 이는 군부가 수사권과 법적 권력 그리고 물리적 폭력장치를 독점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시위대에 극단적 폭력의 위협을 가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서 시민들

25) 김상윤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나중에 송기숙 교수의 얘기를 들으니 보안대 모 중령이 광주를 여순처럼 빨갱이의 폭도로 규정하면 그 후유증이 크고 정권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빨갱게 물들이는 데 반대했다고 했다. 그래서 김대중 씨 내란음모로 묶은 것이었다. 나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가 되어..."(현사연 1990a, 3014: 559). 또한 김대중의 국회 증언에 따르면 5월 17일 저녁에 연행되어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처음 약 20일 동안(6월 초까지)은 정동년과의 관계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김대중은 수처에 걸쳐 정동년은 1985년까지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학민사 1989, 63). 이 증언은 계엄사가 '불순분자 및 고첩' 대신 김대중을 5.18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6월 초에 결정된 사항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26) 윤상원은 5월 국민연합 전남지부 실무자의 역할을 신당 창당의 경우 사임할 것을 조건으로 수락하였다. 또한 5.18 중 19일 아침에 국민연합 측의 청년이 윤상원을 찾아와 전국 시위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다. 물론 19일은 이미 김대중이 연행된 후였다(전사연 1991, 197, 230; 현사연 1990a, 4011: 889).

27) 흥미있는 경우는 23일 서울역에서 검거되었다는 남파간첩의 예일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그는 환각제를 소지하고 있었다. 물론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당시 공수부대와 맞싸울 수는 없다는 판단은 당연한 것이었다.

을 이간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계엄사의 일연의 발표에서 핵심적 '불순 정치집단'은 변하고 있었다. 최초에는 '고첩 및 불순분자'에서 후에는 '김대중 추종집단'으로 대체되었고 이 변화는 정치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보인다.<sup>25)</sup>

우선 구속자 중에 간첩으로 기소된 사람은 없었다. 군부는 많은 구속자들을 고문하여 간첩으로 몰려 했지만 정책을 바꿔 '김대중 추종집단'으로 기소하였다. '김대중 추종자'의 수괴로 기소된 사람들보다 오히려 윤상원은 국민연합측과 지속적 연계가 있었고 5.18의 전개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sup>26)</sup> 그러나 윤상원은 이미 노동자들과 빈민들을 위한 운동에 깊이 참여하여 사회정치적 의식을 갖춘 상태이며 결코 누구의 사주나 공작금에 의해 움직였다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광주시민들이 김대중이나 고첩이나 남파간첩의 조작에 따라 싸웠다는 설명은 5.18의 전체적 현실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 반문하면 누구에게 공작금을 얼마나 받으면 또 얼마나 사주를 받으면 과연 공수부대와 맞싸울 수 있는가?<sup>27)</sup> 이 설명은 이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시위대를 선동하여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식의 보조적 역할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선동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면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한에 서만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불순 정치집단

론은 어떤 식으로 변형되어도 사료나 증거의 문제를 떠나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북한 공작에 관하여는 연구의 여지를 남겨 놓아야 할 것이다. 비록 공작의 실제 효과에 대하여는 회의적이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시도했을 것이다. 많은 증언들에 따르면 당시 북한 방송은 5.18을 중계 하다가 피 보도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상당수의 요원이 활동하고 있었음에는 틀림없을 것이다(현사연 1990a, 2034; 2038; 3078, etc.).

### 3) 유언비어론

유언비어론은 군부의 5.18 담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단계적으로 유언비어론은 공수부대의 만행을 선제공격으로 은폐하고 이에 대한 분노를 다른 집단에게 전가하기 위함이다. 계엄사는 21일 발표에서 8가지 유언비어의 예를 들었고 이는 거의 공수부대의 만행에 대한 것이었다. 우선 이에 관하여는 시민들의 증언을 통해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결코 '유언비어'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 유언비어론의 기능은 5.18의 진실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국가권력으로 처벌하는 것이었고 실제 여러 명의 언론인들이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유언비어론의 최대의 문제점은 이 설명은 광주시민들의 지역감정을 설정하고 그것을 5.18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는 사실이다. 누군가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말하자면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러 왔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선동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지역감정은 광주시민들 마음 속 깊은 곳에 자기도 모르게 恨으로 응어려져 있었던 것으로 결코 객관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성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상도 군인들이...'는 누가 만들었는지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 모른다. 계엄사에서 만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광주 내 어떤 집단에서 지어낸 것인지 또는 광주시민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결국 밝힐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많은 공수대원들은 경상도 억양으로 큰 소리로 '전라도 새끼들 다 죽인다'고 소리치고 다녔고 지휘자나 지휘관들도 확성기를 통해 경상도 억양으로 작전을 지휘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설명 역시 시민들의 투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많은 증언에 따르면 18일 19일 친지나 친구를 통해 이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흥분하여 시위에 참여할 만큼 미련한 광주시민은 거의 없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사실인가 확인하려 하였고 대부분 이를 위하여 길거리에 나섰다. 여기서 결정적인 부분은 길에서 공수대원들은 그 말이 거의 사실임을 행동으로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이다. 광주시민들 중에 '유언비어'만 듣고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나름대로 확인한 연후에 가담한 것이다. '경상도 군인...' 외에 다른 종류의 '유언비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현사연 1990a, 2031; 3042, etc.).

### 4) 과잉진압론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이지만 '과도'도 아니고 '과잉'(過剩)이라는 말이 '진압'과 어색하게 붙게 된 것은 이 말은 일방이 깊이 생각해서 만든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은 5월 22일 계엄분소를 찾아간 수습위원들이 "지나친 진압"에 항의하자 전교사 사령관이 즉석에서 군대식 術學主義로 '문자를 써서' 만든 말이었다. 이 담론은 대화 과정의 합의에서 탄생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합의는 힘의 교착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일말의 객관성과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 합리성이 혼재된 것이다. 군부는 힘을 회복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이는 다시 '6공'의 힘의 균형 상황에서 재론되었다. 이 담론을 '兩

是論'으로 파악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 담론은 적어도 정당화나 흑색선전은 아니며 일말의 진리를 담고 있다. 우리는 시민들의 투쟁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이 말이 지시하는 상황으로 들어가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결국 진압이 '너무 심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시 전교사 참모장은 후일 5.18 진압은 결코 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sup>28)</sup> 그런가 하면 당시 광주시민들 눈에 공수부대는 "광주에 데모 진압하러 온 놈들이 아니"었다(유족회 1989, 68). 공수부대는 사람 죽이러 온 것이지 데모 진압이 목적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수부대의 진압은 경찰의 방식이나 특히 미군 방식을 따를 수 없었다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발포하는 것은 4.19의 경험에서 정권의 끝장을 의미하며 처음에는 발포를 예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마사태와 5.18 공수부대는 특이한 진압책을 사용했고 이는 공수부대의 특성과 잘 맞았을 것이다. 공수부대의 데모 진압은 展示的(demonstrative) 폭력이었다. 붙잡힌 사람에게 사정없이 폭력을 가하여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다니는 데모는 커녕 얼씬대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공수부대의 폭력은 당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sup>29)</sup> 5.18 광주는 폭력 劇場이었다. 죽거나

살거나가 문제가 아니라 처참하고 눈뜨고 볼 수 없게 패고 찌르고 찌르고 엽기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진압의 기본 원칙이었고 이를 위해 이미 4월에 특수진압봉을 주문했고 처음부터 대검을 사용했다(광주광역시, 22). 공수부대의 만행은 우리 사회의 특이한 국가권력의 폭력 사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악용한 것이었다. 우리 사회는 發砲는 용서하지 않지만 통상적 폭력, 예를 들어 구타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관대한 면을 악용한 것이다. 말하자면 '총을 쏘면 안된다'는 윤리적 기준을 군부는 '총만 안쏘면 된다'로 뒤집은 것이다.

이러한 폭력은 시위 진압이라 할 수 없으며 통상적 폭력도 아니었다. 이는 視覺的 言語였고 명쾌한 뜻을 전하고 있었다. 즉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며, 악귀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언어였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이들의 폭력 특히 전설처럼 남아있는 엽기적 행위는 결코 인간의 공격적 본능이나 분노의 표현이나 환각제의 효과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되고 오랜 연습을 통해 익힌 專門技術이며 주로 월남전에서 갈고 닦은 것이었다. 공수부대는 문명이 理性으로 만들어낸 野蠻이었다. 광주시민들의 처절한 저항이 낙동강 전투를 계승하고 있었다면 공수부대의 만행은 월남전과 맥을 잇고 있었다.<sup>30)</sup> 공수부대의 이러한 폭력으로 부마사태는 간단히

28) 그는 조갑제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위진압교육을 할 때 보여주는 미군의 필름이 있었다. 계엄령 하에서의 진압법을 가리킨 것이다. 이 영화에 따르면 시위자를 일단 붙들려 끌어앉혀놓고서, 반항하면 진압봉으로 목 밑에 있는 쇠골을 부러뜨려 행동을 제약하며, 그래도 달아나면 사살한다는 식이다. 광주사태 진압은 영화보다는 훨씬 온건하게 한 것이다"(조갑제, 「공수부대의 광주사태」, 『월간조선』 1988년 7월, 192).

29) 당시 7공수 군의관이었던 위계통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진압방법은 맨처음에는 시위대에 무서움과 공포증을 주어 시위대를 흩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시범으로 몇 명을 잡아 사정없이 닥달하여 시위군중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다.

데모를 진압하더라도 병력을 한군데에 집결시켜 놓고 데모는 데모대로 하면서 서로 선무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하는데 그런 여유조차 주지 않고 진압해버리니까 일이 그렇게 크게 터져버린 것이다"(현사연 1990a, 8001: 1532).

한 증언록은 다음과 같이 관찰하고 있다. "공수부대의 살육은 분명히 의도적인 듯 했다.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이 모는 앞에서 그와 같은 살육을 자행하고 시민들이 이 광경을 보며 분노와 안타까움에 발을 구르면 더 신이 나서 해대는 것이었다"(유족회 1989, 67).

해결되었다. 그러나 5.18의 경우 어떤 조건에서 광주 시민들은 저항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결정적인 답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광주시민들의 저항을 공수부대의 저항에 대한 반작용 또는 폭력의 주체 즉 동물로서의 인간의 反應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일단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억울함, 不義(injustice)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구타당하고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고 엄청난 분노를 느꼈음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분노와 동시에 공포를 느꼈고 이 공포는 바로 공수부대의 폭력이 기대하는 것이었다. 일부는 공포를 극복하고 투쟁에 참가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선 도망갔고 어떤 사람들은 그후 기분이 몹시 상해 술을 마셨다고 한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구타당하는 장면,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들이 구타당하고 희롱당하는 장면, 즉 약자에 대한 잔인함에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는 눈에 많이 띄는 표현이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분노한 것은 공수부대가 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이었다. '개패듯 패고', '개처럼 질질 끌고와 트럭에 싣고' 등의 표현은 증언록 어디서나 발견된다. 다음 단계의 감정은 처참한 광경에 공포에 질려 우선 도망은 후 느낀 자책감이었다.

저들이 이 나라, 국토방위의 성스러운 사업에 동참하는 대한민국 군인입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이 알량한 목숨을 위해 그토록 끔직한 광경을 숨어서 엿보던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항거할 수 없는 자신의 비굴함을 보고 참으로 치사한, 한 인간의 모습이 확인될 때 자신에게 얼마나 환멸감을 느꼈는지 모

30) 강길조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5월 20일 전남대 강의실로 끌려가자, "공수대원들은 상당수가 월남전 얘기를 입에 올리기를 잘했는데, 그중 한 명은 대검을 빼어들고, '이 대검은 월남에서 베트남 여자 유방을 사십 개 이상 자른 기념 칼이다' 라고 자랑하며 그 대검으로 앞사람의 턱머리를 탁쳤다.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면서 스포츠 머리처럼 되었다" (현사연 1990a, 7134: 1451).

른다. 배가 갈라져서 죽어가는 그 여인을 보고 분함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비굴하고도 용렬한 모습에서 최초로 자기부정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전사연 1988, III-8, 187).

이 심정은 루소가 말하는 불행한 동료에 대한 동정심(pitié)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데 대한 분노와 분노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수치와 분노였다. 공수부대는 인간을 짐승처럼, 짐승보다도 못하게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그 폭력이 지향했던 그 폭력을 본 사람들 또한 인간 이하로 전락시켰다. 분노는 이중적인 것이었다. 심지어 많은 경우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저주스러웠다고 토로하고 있다.

자기 자신이 인간 이하라는 수치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이 인간 이하임을 폭력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다는 분노는 광주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공수부대와 싸워야만 했던 운명이었다. 광주시민들이 투쟁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폭력의 메시지는 폭력을 당하는 인간과 이것을 보는 인간, 나아가서 그 시대 그 땅의 모두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광주시민들은 이에 대한 분노로 理性을 잃고 死線을 넘었다. 그들은 투쟁의 대열에 참가함으로써 짐승의 수치에서 해방되어 존엄한 인간이 되었고 투쟁의 대열에 선 사람들은 모두 서로 존엄한 인간임을 축복했다. 우리는 이제 5월 25일 김성용 신부의 강론의 뜻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1) 우리는 이제 네 발로 기어다녀야 하며 개나 도야지와 같이 입을 먹이 그릇에 처박아 먹어야 하며, 짐승과 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유신

잔당이 우리를 짐승같이 취급, 때리고, 개를 죽이듯이 끌고 가고, 찌르고, 쏘았기 때문입니다.

2) 두 다리로 걷고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 생명을 걸고 민주화 투쟁에 몸을 던져야 한다. 과거의 침묵, 비굴했던 침묵의 대가를 지금 우리들은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현사연 1990a, 1008: 177).

인간의 존엄성은 기본적 人倫이며 어느 훌륭한 思想家가 글로 써서 알려진 '민주주의', '자유', '평등', '인권' 같은 시대적 이념적 가치를 넘어 어느 사회에서나 기본이 되는 인간 본성의 가치인 것이다. 광주시민들이 공수부대의 폭력에 저항한 것은 그들의 동물적 본능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며 그것은 인간의 일말의 기본적 가치를 위한 것이었다.

### 57 민주화론

민주화론이야말로 5.18 때부터 지난 17년간 끈질기게 제시되어온 가장 일반적인 설명이자 우리 사회의 5.18의 定論(orthodoxy)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도 理論으로 제시된 적은 별로 없었고 민주화를 요구해온 정치세력들이 스스로 5.18의 후어로 자처하며 美化하는 가운데 定論으로 자리잡은 경우라 보여진다. 이 담론이 내세우는 근거는 5.18의 출발은 16일까지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들에 의하여 발단된 것이며 공수부대가 투입된 경위 또한 민주화 요구를 신속히 진압한다는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21일 계엄군이 물러간 후에 발표된 수많은 글에 민주화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였다는 사실은 이 담론의 결정적 증거이며 아울러 많은 5.18 참가자들이 후

일 자신들의 투쟁을 민주화로 설명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이 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담론에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차원이 있다.

그러나 5.18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간단치 않다. 김영삼 대통령은 5.18을 우리 민주화운동의 "우뚝한 봉우리"라 했지만 조비오 신부는 5.18을 "하나의 시련이고 역사적 소용돌이"라 하였다.<sup>31)</sup> 우선 5.18은 사건의 현실감에서 민주주의와는 격차가 있다. 18일 이후의 현실은 공수부대와의 목숨을 건 투쟁이었고 공수부대는 '전두환 일파'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김대중을 체포하며 파견한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민주주의의 반대인 독재라는 것이 알려진 바였다. 독재와 싸우는 것은 민주화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라는 보장은 없다. 더구나 많은 시민들은 전두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시위의 구호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민주화 요구는 5.18의 발단이었지만 사건 전체에서 보면 밀그림, 배경에 불과했다. 사실 민주화 요구는 공수부대가 물러간 이후 22일 또는 23일까지도 잊혀졌던 문제라 보여진다. 그 후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부르짖었을 때 그 민주주의는 5.18 이전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다. 학생들과 지식인들은 민주화를 누구보다도 크게 외쳤지만 마지막까지 항전한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들이 死守하려 했던 가치는 정확히 표현되지 못했지만 민주주의라는 말로는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특히 그 가치는 정치적 협상과 타협을 통해 얻는 그런 민주주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다.<sup>32)</sup>

광주시민들 특히 해방광주시민들에게 민주주의는

31) 「'광주'를 어떻게 풀 것인가: 5.18 당사자들이 말하는 80년 '광주'와 그 수습방안」, 『월간조선』 1987년 8월, 291.  
32) 84년 7월 김영삼 민주협 공동의장은 『Far Eastern Economic Reivew』와의 회견에서 '민주회복을 공약하는 조건이라면 광주사태를 제쳐놓을 용의가 있다' 라고 발언한 데 대하여 5.18 유관단체들은 분개하여 「사과요구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말과 붓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도록 술한 인명이 살상되고 피와 눈물, 서러움과 압제로 점철된 역사의 아픔을 이 나라의 어떤 개인이 무슨 자격으로 왈가왈부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것도 엄청난 비극의 와중에서 그 아픔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도 않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수부대의 만행은 독재에서 비롯된 것이며 민주주의를 확립함으로써만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는 폭력을 없앨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우선 공수부대를 폭력으로라도 우리고장에서 몰아내야 한다. 이 경우 민주주의는 하나의 제도적 수단이며 다시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목적이 되며 따라서 현실적 수단과 궁극적 목표 사이의 二次의 가치이자 二次의 수단이 된다.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모든 것처럼 나타나지만 폭력과 관계에서 애매하고 이중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민주혁명론에 해당된다. 둘째, 민주화 요구는 해방광주시민들로서는 의도치 않았던 혁명적 분위기에 처한 담론의 딜레마와 고독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론은 5.18 이전의 평화적 학생시위와 연결시켜주며 또한 우리사회 전체의 보편적 정치이념과 맥을 이어 준다. 결국 5.18의 민주주의는 두 개의 관념이 공존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혁명의 논리와 맞닿아 있는 '민주의 나라'를 힘으로도 만들고 지켜야 한다는 논리이며, 둘째는 보편적 우리나라의 정치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첫째는 5.18 민주주의의 현실적 관념으로 둘째는 딜레마에 처한 광주시민들의 담론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한 정치적 목적의 정치담론이었다.

6/ 민중론

'민중'이라는 말은 이미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식으로 쓰여져온 말이기 하지만 사회정치적 의미를 갖던 말은 아니었다. 이 말이 사회정치적 의미를 갖고 등장한 것은 84년 전후였고 5.18 해석에서 등장한 독창적 개념이다. 이는 외국 사회과학 이론에서 도출된 개념이 아니라 5.18 경험의 진테제(Synthese)로 등장한 것이었고, 이 말은 바로 5.18 부활의 깃발이었다.<sup>35)</sup> 광주시민들 모두, 거의 모두를 포괄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5.18의 막바지 투쟁의 경험에 근거한 배타성을 갖는 양날을 가진 독창적 개념이다. '민중'이라고 5.18의 군중과 투사들을 부른 것은 기존의 시민 관념을 부정한 것이며 시민의 부정은 애초에 80년 5월 계엄사의 최초 발표에서부터 6월까지 계속 그 무게가 증가되어오던 '현실 불만 세력'에 썩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엄사는 시위 군중의 대부분은 깡패, 녀마주이, 무직자, 공원 등 사회 최하층이라는 주장으로 5.18을 중산층으로부터 유리시키려 하였다.<sup>36)</sup> 계엄사 발표에서 '불순 정치세력'이 - 고첩 및 불순분자들이거나 김대중 추종세력이거나 어떤 경우에도 - 폭력 극장의 연출자라면 이 최하층 집단은 무대의 主演이었고 공수부대의 상대역이었다. 84년경 운동권은 5.18에서 이 '현실 불만

사람이 마치 사건의 중심인물인 것처럼 행동하고 발언할 수 있다는 말인가? / 김영삼씨! / 도대체 무슨 의도로 감히 광주의 거를 정치적 흥정의 계물로 삼는 그 따위 망인을 내뱉을 수 있다는 말인가? 죽음, 부상, 투옥, 노예적 압박 등 얼룩진 상처를 아물게 할 허동의 방책도 없는 상태라면 광주의거라는 엄연한 사실을 적당히 넘어가려는 정치적 언동은 일체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을 죽은자들을 대신하여 우리는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민문협 1985, 436~7).

- 33) 85년 미문화원 접거사태 중인 신문에서 민중 개념의 利藏性에 관하여 약 9년의 공산주의 서적 불은문서 전문가인 홍성문씨는 이전에 없던 개념으로 만든 말이라고 대답하였다(『미문화원 사건 재판 중인 신문 조서 (자료)』 『월간조선』 1985년 10월, 187~8).
- 34) 당시 윤상원의 최측근이던 김상집(녹두서점 김상윤의 동생)은 계엄사는 의도적으로 교묘한 술책을 써서 도시민민, 룸펜의 역할을 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지만 그들은 주동학생들 외에는 많은 학생들을 혼방시켰다. 1980년 당시 내가 직접 YWCA 앞에서 분대 편성을 했던 학생들이 실제로 구속되지 않았던 것만 보아도 확실하다." 아울러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민중론, 민중혁명론을 재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현사연 1990a, 4011: 897).

세력'을 민중으로 부활시켰고 이러한 의미에서 민중론 또한 일방이 부과한 담론이라기 보다는 대화와 교신의 과정에서 태어난 담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애초에 민중론은 포괄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민중은 5.18에 참여하지 않았던 반민주적 정치세력과 대부분 비협조적이었던 부르주아들만을 제외하고, 5.18에 참여한 모든 사회계층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약간의 배타성이 가미된 포괄성으로 인해 민중은 기존의 민주, 민족과 삼발이를 이루었다. 민중은 三民 중의 마지막에 등장한 세번째 다리였지만 가장 중요한 다리였다. 이 다리로 인해 민주와 민족은 시적 운율을 맞춰 비로소 일어설 수 있었고 또한 그의 배타성으로 인해 투쟁의 주체, 민족 自淨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특히 6월 항쟁 이후에 민중 개념은 5.18 때 최후까지 항쟁했던 기층민들을 더욱 부각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들이 부활한 것은 그들만이 격렬하게 공권력에 맞서 맹렬하게 싸울 수 있는 새 나라의 공수부대로서였다.<sup>35)</sup> 5.18을 '민중항쟁'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은 85년에 처음 제기되었고 87년, 88년에 이르르면 사건의 통칭을 바꾸어놓기에 이르렀다.<sup>36)</sup>

무엇보다 민중 개념의 강점이자 약점은 이 개념은 계급적이며 동시에 정치적·경제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우선 경험적으로 5.18의 군중은 객관적으로

계급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주관적으로 계급으로서 투쟁하였는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일 수 없다. 경제적 문제, 특히 분배의 문제에 관한 요구나 구호는 해방광주에서도 극히 드물었고 당시 앞선 투쟁의식을 대표하던 『투사회보』도 시민들에게 '평상 생활로 돌아갈 것'을 권했다. 이러한 사회개혁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은 딜레마를 이루었다. 민중의 투쟁 의지는 가라앉고 5.18 이전으로 '몰릴 수 있다'는 무장해제파들의 논리를 논박할 수 없었다. 민중은 계급으로서 계급의 利害에 따라 싸운 것은 아니었다. 5.18에서 민중이, 계급으로서 민주화를 요구하여 투쟁한 것인가에 대한 답 또한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5.18의 민중이 계급으로서, 여러 계급의 집합으로서 참여했다면 그것은 계급의 利害라기보다 계급의 에토스(ethos) 또는 하비투스(habitus)에 의한 것으로 理解해야 할 것이다. 투쟁의 주체로서의 민중계급에 '구조적 요인'이 있었다면 그것은 경제적 요인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요인에 기반하여 오랜 시간을 통해 이루어진 계급의 세계관과 생활양식에 있을 것이다(Bourdieu 1985). 5.18의 상황에서 개인이 투쟁에 참가할 것인가의 문제는 분노가 공포를 극복하고 공동체에 합류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 것인가의 결정이었다. 가족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르주아들은 특유의 개인주의와 합리주의적 사고로 스스로 분노

35) 88년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민중을 5.18의 주역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민중항쟁'이라 명명하고 '민중이 주체가 된 민주화운동'이었다고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서 시민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천시민이 투쟁에 참여했다는 것과 기층민중이 전면에서 서서 적극적으로 싸웠다는 사실을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다"(천주교 1988, 10, 39).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은 1984년까지도 '광주의거'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했다(천주교광주대교구사제단, 「광주의거 4주기를 맞이하여」, 민문협 1985, 435).

36) 유족회의 경우는 88년 '5.18광주의거유족회'에서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로 명칭을 바꾸었다(현사연 1990a, 3072). 한편 86년까지만 해도 '5.18광주의거청년동지회'가 만들어졌고 87년에는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가 결성되었다. 같은 해에 '5.18광주의거부상자동지회'는 호헌 지지 문제로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가 분리되어 만들어졌고 이 단체들은 95년에 후자의 이름으로 재통합되었다(나간재: 정태신 1996). 1987년부터 '민중항쟁'이라는 명칭이 일반화한 것으로 보인다. 87년 '5.18광주의거청년동지회'는 '5.18광주민중항쟁 증언록 I'을 출판하였다. 88년 초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광주시민의 28.7%가 '의거'라 불러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반면 56.3%는 '민중항쟁'이라는 명칭을 선택했다(천주교 1988, 33).



의 감정을 통제하고 집 밖에 나가지 않든지 피신할 것이다. 한마디로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이 계급적인利害나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를 더 갖고 있었기 때문 이라기보다는 시위에 참가하지 않고 시위대에 협조 할 것을 꺼렸던 부르주아들은 타산적이고 개인주의 적 성향에 의하여 육체적 폭력 앞에 도저히 용기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 참가 비율은 낮았을 것이다. 교육의 기본 원리는 지식 습득 이전에 감정을 통제하고 권위에 대한 복종을 익히는 規律(discipline)에 있기 때문이다. 롬펜 프롤레타리아트의 경우는 가족이나 재산이 없고 또한 감정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데 익숙치 않으며 더구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를 테면 '의리라면 끝내주는' 생활 방식에 젖어있어 갈등없이 시위에 참여했을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사회의 밑바닥 계급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공수부대의 폭력에 누구보다도 분개했을 것이며 이들로서는 투쟁에 앞장서서 다른 계층들과 동등한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 또한 커다란 보상이 아닐 수 없었다.

5.18에 나타난 '민중의(혁명적) 역동성'은 바로 이곳으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들 기층민 계급은 구체적으로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어떤 경제적 보상을 원하기 이전에 일상적으로 인간 존엄성 박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이며 이들 계급의 생활 양식과 세계관은 위에서 논의한 5.18 광주시민들의 투쟁 동기가 유발된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격심한 분노를 유발할 것이다. 나아가서 도시 롬펜 계층으로서 는 투쟁의 일선에 나섬으로써 잃을 게 없으며 또한 그들로서 시민들의 환호와 성원을 받는 것은 '살맛나는' 일이다. 제 세상을 만난 도시 롬펜 계층들과 또한 이 계층들의 평소답지 않은 '거만한 모습'을 거부감

을 가지고 바라보는 중산층들은 모두 5.18에서 '민중의 역동성'이 파도치는, 세상이 뒤바뀌어가는 질은 혁명의 분위기를 느꼈을 것이다. 이들과 무장한 청소년들에 대한 불안감은 총기 회수의 주요한 동기였고 시민군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5.18 광주시민들의 투쟁 동기는 '악귀' 같은 공수부대가 등장한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 투쟁에 즉각 반응했던 민중의 '역동성'은 상황에 따른 것 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것이며 이를 이해하는데 '계급의식' 등의 낡고 무딘 도구에 의존한 필요는 없다. 사회계급의 존재는 일차적으로 사회에서 부여되는 인간 존엄성의 차이에 있는 것이며 경제적인 것은 그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77 혁명론

혁명론은 민중론을 통해 도출되었다. 이론적으로는 89년에 전개되었지만 민중론은 출발점에서 이미 혁명론으로 방향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7)</sup> 혁명론의 요지는 민중은 1980년경 이미 혁명 의식을 갖추어가고 있었고 이 와중에 5.18이 발발했다는 것이다. 어떤 혁명론도 민중이 먼저 혁명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5.18의 와중에 민중, 노동계급은 혁명을 의식적으로 시도하고 조직적으로 무장반란을 꾀했다는 것이다. 물론 혁명론은 5.18 현실을 과장하고 있다는 점은 계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이론은 대단히 중요한 측면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다. 첫째, 광주시민은 '순진한' 백성들로 어떤 조직도 없이 자발적으로 투쟁에 임했다는 자유주의자들의 백성 옹호에 대한 비판은 타당한 것이다. 광주시민들의 공동체는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둘째, 5.18에는 분명히 혁명의 냄새

가 나고 있었다. 5.18은 결코 민주화를 요구하는示威나 데모가 아니었다. 시민들은 무장하여 전투를 벌였고 한때 광주를 해방시켰다. 그러나 5.18과 혁명의 문제는, 혁명은 단순히 무력에 의하여 짓밟힌 것이 아니며, 또한 의식의 미발달로 인해 좌절된 것도 아니었다. 혁명은 광주시민들에 의하여 강하게 거부되었고 이로 인해 5.18 담론은 딜레마에 빠지고 해독하기 어려운 형태로 발전했다.

초기부터 조직적 활동을 벌인 사람들은 윤상원이 이끄는 녹두서점, 들불야학팀, 그리고 광대팀 등 소수였다. 윤상원은 18일 오후부터 유인물과 화염병을 제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저항을 독려했다(전사연 1991, 226). 녹두서점은 항쟁 초기 일종의 상황실이 었다. 그러나 윤상원 중심의 조직이 5.18의 전개에 지도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계엄군이 퇴각하자 그들은 전면에 나설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였고 결국 YWCA를 중심으로 도청과는 거리를 두고 활동하게 되었다. 25일 저녁 분위기가 무기반납과 쪽으로 기우는 상황에서 윤상원은 청년들을 이끌고 도청으로 진입하여 항쟁지도부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sup>38)</sup> 5.18을 통해 효율적인 정치체제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광주시민들의 공동체였다.<sup>39)</sup> 이 공동체는 20일 저녁부터 공수부대가 수세에 몰리고 시민들의 활동 공간이 확보되었을 때 모습을 드러낸다. 김양오는 20일 저녁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오합지졸의 티를 벗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날뛰어 보았자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되었던 것이다.

38) 22일 지금 운동권이 한 명이라도 나가면 '작살난다'는 입장의 근거는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하여는 증언록에 일체 언급이 없다(현사연 1990a, 4011: 891~2).

39) 여기에서 광주시민들의 공동체는 부르주아 시민사회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다. 공동체란 오히려 전통적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서로 알고 편하게 격의없이 교류하며 지내는 사회를 말한다.

우선 스피커가 필요했다. 곧바로 모금운동이 전개되었다. 동전에서 지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도 20만원 가까이 걷혔다. 이것은 <시민군>이 태동하기 시작하는 첫 징조였다. 이렇게 해서 신생 <광주 공화국>의 출범은 공감대로 모아진 성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형스피커가 마련되고 시위대는 점차 조직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김양오 1988, 88).

20일 저녁부터는 즉흥적 조직활동이 벌어지고 전옥주 등은 전문적으로 시민들을 동원하고 투쟁을 선동했다. 시장에서는 아낙네들은 김밥을 만들고 주먹밥을 만들고 각종 음식과 음료수를 시위대에 장만해주었다. 당시 광주시민들은 모두 각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적합한 일을 찾았고 젊은 기층민들은 시위대 전면에서 교대로 밤을 지새며 싸웠다. 무엇보다 20일 저녁에 등장한 차량시위대는 민중의 등장이나 노동자계급이라기보다는 공동체에 기반한 조직이었다. 운전기사들이 살해당했다는 것이 계기가 되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무엇보다 광주시민 전체의 투쟁에 자신들의 강력한 무기를 동원하여 참여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거사는 차주들의 협조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으며 몇몇 차주들의 비협조를 과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당시 공동체 활동의 결정적인 지표는 헌혈이었다. 술집 아가씨들의 '깨끗한 피'의 일화는 당시 공동체의 지위를 드러낸다. 피는 시민들이 서로의 생명을 살리고 나누는 몸의 일부이자 당시 처절한 투쟁의 상징이었다.

군부와 공수부대를 敵으로 규정한 것은 비단 몇몇 유인물 뿐만이 아니었다. 광주시민들은 입을 모아 '우리 교장과 가족들을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고

37) 1984년 초 학생운동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소책자 『깃발 1』은 이미 "민중봉기에 의한 폭력혁명" 노선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이 책자는 5.18 해석서는 아니었다(강신철 외 1988, 66).

하였고 이러한 담론은 '생존권 수호', '살기 위해 싸워야 한다', '정당방위' 등 여러 문구로 표현되었다. 이 말들은 명백히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정치 담론이었다. 살아남기 원했다면 도망가거나 숨어 있어야 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 특히 부르주아들은 그렇게 행동했다. '살기 위해 싸운다'는 말은 이미 삶과 죽음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차원으로 규정되었음을 뜻하며 이 말투 또한 이러한 生死의 규정을 당연한, 의문의 여지 없는, 三尺童子도 아는 상식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sup>40)</sup> 공수부대의 만행을 보고 '도저히 같은 민족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다'는 말 또한 유사한 정치 담론이었다. 공동체는 敵과 我를 가르는 칼 슈미트(Carl Schmitt)식 정치행위를 수행하였고 모든 시민들은 삶과 죽음을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로 느끼고 있었다. 공동체의 敵 규정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공수부대가 敵이며 다른 민족임은 '도저히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공수부대의 작전은 광주시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때려잡는 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공수부대는 인권의 敵이며 동시에 공동체의 敵이었다. 시민들과 공수부대의 투쟁은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절대전(Absolute War)으로 치달았다. 이 싸움에는 어떠한 규칙도 규범도 없었고 광주는 "암흑의 도시"로 변했다는 말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한 말이었다. '정당방위'라는 표현은 공통의 규범을 두고 한 말이었지만 '죽어간 아들 딸들의 한을 풀어주자!'는 復讐의 언어는 법의 不在를 확인하는 담론이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

하기 위한 광주시민들의 투쟁은 여기에서 공격적 본능을 폭발시켰다.

공동체 정치는 지도자나 이론가 없이 모든 시민들의 일상적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졌다. 광주시민들의 공동체는 삶과 죽음을 공동체 단위로 규정했고 공동체의 삶 그리고 生命과 人倫을 보호하기 위해 군부와 공수부대를 敵으로 규정했다. 그리고는 敵에 대항하는 我, '우리'의 모습을 '애국시민', '민족', 태극기, 애국가로, 기존의 國家의 論理와 상징체계에서 표출했다. 국군과 대항하여 싸우는 공동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국가의 논리와 상징체계로 나타냈다는 것은 한편으로 야만스런 공수부대가 '우리나라 군대'임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정통성을 내세우는 정통성 투쟁을 기존의 국가주의 담론을 무기로 벌였음을 뜻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는 독자적인 언어와 상징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敵을 규정하자 국가주의 담론체계에 흡수되어 버렸음을 뜻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공동체는 敵을 규정하자 국가주의 담론체계의 꼴을 따라가 버린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정치는 투쟁의 담론을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적이었지만 일단 광주를 해방시키자 달려마에 치할 수밖에 없었다. 국군의 일부를 국가의 언어와 상징체계를 동원하여 물리친 이상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가권력과 대응하는 또하나의 국가권력, 또하나의 主權은 해방광주의 환호이자 惡夢이었을 것이다. 모든 시민들과 시민군들은 새 나라의 시민이자 개국공신으로 '애국심'에 충천했고 혁명의 냄새는 이곳에서 강하게 풍겼다. 해방광주시민들이 간첩 용의

40) 당시 의무전경이던 박시훈씨는 20일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시민들은 본능적으로 일체감이 형성되는 듯했다. '광주를 지켜야 한다. 우리 손으로'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나왔고, 사방에서 들전해오는 시위대는 할아버지에서 어린아이가까지 폴폴뭉쳐 있었다"(현사연 1990a, 8002: 1536). '광주를 지켜야...'는 시위 구호로는 적합한 말은 아니며 그런 외침을 직접 들었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박시훈씨는 광주 출신으로서 당시의 모습을 후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경우에 '광주를 지켜야...'라는 말은 모두의 입에서 나오는 당연한 말이었으며 아마 시위대가 모두 그렇게 생각했을 게 당연하다는 확신에서 이렇게 증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를 찾고, 민족과 대한민국에 충성을 맹세하고, 이성을 되찾고, 평상의 생활로 돌아갈 것을 외친 것은 자기 안에서 '또 하나의 국가'와 혁명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은 무기 회수였고 이는 5.18의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돌리자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시민군들과 대다수 시민들은 이에 크게 반발했고 이 혁명과 반혁명의 부딪침에서 많은 담론의 파편들이 여러 방향으로 튀었다. 그들은 원점으로 돌아가 고향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5.18의 벽두에 울리던 민주화의 외침을 반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듯 反逆의 문턱으로 내몰은 군부독재에 대한 詛咒를 통해 광주시민들은 이 절곡을 벗어나려 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여러 맥락에서 계속 등장했다. 일부는 투쟁을 장기화하여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가 하면 시민들은 총을 쏜 채 대학생 데모로 돌아가 조국 민주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화 담론은 이들에게 고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이었고 또한 운명을 예감하고 남긴 투사들의 遺言이기도 했다.

결국 혁명의 문턱에서 벗어나고 담론의 절곡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광주시민들로서는 국가주의 담론에서 공동체로서의 담론으로 主體를 바꾸는 일이었다. 더 많은 피를 볼 것이 아니라 그간의 '피의 값'을 받아내고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여 국가권력의 지배로 복귀하는 일이었다. '피의 값'을 받는 길은 이른바 名譽回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 원칙적으로는 정부로부터 광주시민들의 윤리적 優越性을 공식적으로 증명받는 일이었다. 그러나 군사정부는 공수부대의 만행을 부담할 수 없었다. 광주시민들과 기업사의 협상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결국 명예회복과 '광주 死守'는 시민군들

41) 김준봉씨의 증언에 따르면 상무대에 잡혀가자 수사관들은 '전남공화국 동지 잘으셨습니까'라고 하며 모질게 구타하였다(현사연 1990a, 1020: 234).  
42) 80년 5월 20일 조선대학교 민주투쟁위원회 명의의 「전두환의 광주 살육작전」에서 인용하였음(전사연 1988, II-4, 109).

의 마지막 명분이었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는 누군가 그 자리에서 희생되어야 했다. 5.18 투사들은 공동체의 윤리적 우월성을 지키고, 5.18의 부활을 기약하고 또한 이름없는 혁명의 胎兒를 지키기 위해 운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5.18과 혁명의 관계에 관한 한 도청을 死守했던 젊은이들은 적어도 혁명의 拒否를 죽음으로 拒否한 셈이다. 군부는 5.18의 이들을 '불순분자', '전남공화국의 동지'로, 反逆으로 몰았다.<sup>41)</sup>

일련의 혁명론들은 5.18의 遺孑子였다. 그러나 그들은 5.18의 適者라기 보다는 5.18의 투쟁담론의 산물이었다. 사회주의 혁명론은 5.18 담론의 비극적 상황을 민감하게 느끼고 다른 현실로 逃避한 지성적 精神分裂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통일 조국'의 담론은 추상적인 만큼 회색양을 잡아가며 현실에서 인주한 경우이며, '전라민국'의 경우는 5.18의 투쟁의 담론에서 고집스레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하루하루 살로 쥐는 고향과의 교감을 통해 명정함을 유지하며 도달한 또하나의 세상, 환타지의 悲感한 弄談이 되었다. 물론 이 모든 비극은 "베트남전쟁에서 양민을 학살했던 만행의 실례를 이렇게도 같은 형제들에게 보여"준, 민주화 요구를 짓밟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탈취하려던 신군부의 야욕에서 비롯된 것이다.<sup>42)</sup>

5. 맺음말

담론은 투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정치는 권력의 문제이며 이 권력의 핵심은 폭력이라는 것은 서구 근대 정치 담론의 핵심이다. 5.18에서 극적으로 표출된 신군부의 폭력 만능주의 또한 이러한 서구 근대 담론과

그 현실태인 군국주의적 근대국가와 자본주의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현재 정치학계에도 팽배한 이러한 정치 관념은 정치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단적으로 폭력만을 숭상하던 당시의 신군부는 계속 무력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5.18 광주시민들의 비명과 함성 그리고 신음과 분노의 힘, 다시 말하면 5.18의 망명들의 원성을 견딜 수 없었다. 신군부는 도저히 언어로 정당화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고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고 나아가서 언어 자체를 말살시키려는 헛된 노력을 기울였다. 사실 그들의 폭력도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며 악귀다'라는 언어였다. 신군부의 80년 5월 18일에서 6월에 이르는 기간의 담론의 목적은 수치를 가리고 폭력을 정당화하고, 나아가서 또 다른 폭력을 사용하여 현실을 다시 한 번 가려보려는 시도였다. 폭도론, 불순 정치집단론 그리고 유언비어론은 대표적으로 군부가 자신의 권력을 의식하며 만든 일방적인 담론이었고 이제는 타당성을 결코 주장할 수 없는 빈말로 잊혀지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5.18에 대한 모든 얘기는 광주시민들 시각에서 쓰여왔고 광주시민들은 이제 5.18의 진리를 독점하는 상황이 되었다. 물론 이 상황은 그들이 목격자, 경험자, 당사자라는 위치에서 출발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광주시민들이 군사정권과의 투쟁과 우리나라 민주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집단임도 여기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에 이르러 광주를 중심으로 많은 학술기관과 단체들은 5.18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말이 5.18의 가장 정확한 증언이겠지만 5.18 전반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담론이라는 근거는 없다. 그들은 당사자들이며 당사자로서의 입장과 감회와 변론은 그들의 담론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5.18 담론을 분석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당시 열흘간에 이루어진 광주시민들의 담론이다. 이에 비하면 계엄사의 담화와 5.18을 해석하는 담론들은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폭력적 사태를 맞아 투쟁하고, 동료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신들의 투쟁을 정당화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언어들은 폭력적 현실과 기존의 우리 사회의 담론구조의 제약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기존의 국가주의 담론의 그물망은 敵을 정의하자 我에 또 하나의 국가의 모습을 씌우고 '우리'가 나라의 이미지를 갖자 국가권력과 반공의 이념은 그들을 반역의 문턱으로 몰아세웠다. 해방광주는 혁명의 분위기에서 혁명의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다수의 광주시민들은 모든 혁명의 담론을 거부했다. 해방광주는 담론의 소용돌이였고 결국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 손에 총을 쏜 채 고향에 대한 사랑과 조국 민주화를 외쳤다. 내 고향에 대한 사랑은 5.18 이후 문학과 예술활동에서 계속 형상화되었고, 조국 민주화의 담론은 광주시민을 학살한 독재에 대한 증오와 더불어 5.18의 遺言으로 남게 되었다.

5.18의 遺腹子는 革命兒로 자라났고 5.18 遺言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모든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에게 계승되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5.18의 遺言이 실현된 것이었지만 실제로 遺腹子의 힘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유복자는 유언에 따라 쫓겨나고 진정한 遺産을 받은 遺腹子들은 현재의 민주주의와 민주화론에 대해 결코 편안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5.18의 광주시민들이 남긴 최후의 담론, 그들의 유언은 민주주의이며 이는 현재 '5.18의 정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5.18의 무장항쟁의 현실과 사랑과 민주주의의 담론의 격차는 결국 5.18을 새로운 고독으로 빠뜨리고 있다. 그들의 민주화의 담론은 특히 고독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었다. 혁명 담론이 거부되고 딜레마에 빠진 5.18 용사들은 5.18 이전의 민

주화 요구 시위와 그들의 무장투쟁을 연결하고 우리 사회의 지배적 정치 담론인 민주화와 연결시킴으로써 시간과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의 위치를 확보하려 하였다. 5.18 투사들의 유언은 당시의 고독한 현실을 否定하는 담론이며 투쟁을 再現하는 담론이라 볼 수는 없다. 遺言은 후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일 뿐이다. 한편 5.18의 遺腹子, 革命兒 또한 투쟁의 의미나 정신이라기보다는 투쟁의 담론의 소산이었을 뿐이다. 무엇보다 5.18의 투사들이 그들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 요구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주의, 혁명 등의 우리 정치이념의 촌스러운 '메뉴판'의 양식이 아니라 고유의 명예회복과 윤리적 우월성이었고 이는 결코 궁한 구걸이 아니었다.

5.18 담론은 군부와 광주시민들 양 당사자에게 독점된 것은 아니다. 과잉진압론은 군과 광주시민 대표들의 대화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민중론과 혁명론 또한 긴 시간의 대화의 산물이다. 계엄사의 폭도론은 결국 민중론으로 부활했고 또한 혁명론은 불순분자론을 뒤집는 말이었다. 결국 이 세 개의 담론은 좌우의 입장 차이를 차제하고 나름대로 5.18 진실의 일편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분석과 비판은 쌍방에 공유되었던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5.18에 광주시민들이 싸워야만 했던 이유는 여러 글 이곳저곳에 흩어져 남아 있다. 광주시민들의 투쟁은 事前에 준비된 어떤 이념이나 명분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또한 어떤 利害 당사자로서의 설명, 예를 들어 수탈, 착취, 매수, 배후조정, 어떤 방법으로라도 인간의 물질적 욕망으로서는 공수부대의 목숨을 건 투쟁을 결코 설명할 수 없다. 또한 공수부대의 폭력에 맞대응한 폭력으로, 본능적 폭력의 폭발로도 볼 수도 없다. 개인적 차원에서 광주시민들이 분노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폭력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인간의 존엄성까지 짓밟는 폭력이었다. 그들이 투쟁한 동기는 바로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이기 위해서였다. 시민들간의 공동체는 공포를 극복하고 짐승의 수치에 해방된 존엄한 인간들에 대한 존경과 인간애에서 오는 것이었고 이러한 공동체는 개인과 공동체가 완벽하게 융화되어 공존하는 것이었다. 결국 투쟁 동기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은 궁극적으로 개인적일 수 없는 것이었다. '나'와 '매맞고 죽음을 당하는' 동료시민의 존엄성은 같은 운명에 있으며 투쟁에 참가함으로써 존엄성을 되찾은 기쁨은 옆에서 싸우는 전우의 기쁨 속에서 확인되는 것이었다. 광주시민들이 '폭도'라는 말에 그토록 激怒한 것은 바로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싸운 존엄한 인간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체 차원의 투쟁의 동기는 생명의 보호였다. 광주시민들의 공동체는 삶과 죽음을 공동체 차원으로 정의했고 광주시민들은 서로가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젊은이들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연약한 여자들을 지키고, 어린아이들을 지키고, 광주 땅과 그 땅의 모든 생명을 지키고 사랑하기 위해서였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투쟁이 공포와 분노와 해방감에서 이루어졌다면 생명을 보호하고 고향을 지키는 투쟁은 냉철한 결의에서 일관되었다.

광주시민들이 5월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名譽回復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해방광주의 새로운 상황 속에서 국가주의 담론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공동체 담론으로 제자리를 잡으며 광주시민들은 그들이 투쟁해온 진정한 동기와 가치를 '피의 값'으로 느꼈다. 그들은 야수들의 침입으로부터 고향과 공동체와 가족을 지키고 스스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하여 엄청난 피를 흘렸다. 그 피는 대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알량한 목숨'을 위해 흘린 피도 아니고, 다만 인간이기 위하여, 인간으로서의 道理를 다하기 위해서였다. 그 많은 피를 흘리고도 '짐승'으로 '폭도'로 남는다면 또는 공수부대와 똑같은 '兩屍'로 남는다면 우리는 더 많은

피를 흘려야만 할지도 모른다. 그들이 총을 놓는 조건으로 원했던 것은 다만 그들은 싸우던 그 모습, 바로 인간이었던 모습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5.18이 저물어가던 시점에서 존엄성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모습이 되었다. 광주시민들은 자신과 동료시민들의 인간임을 위하여 싸웠지만 그 투쟁의 계절을 통해 광주시민 모두의, 공동체의 존엄성을 발견한 것이다.

광주시민들의 투쟁 동기는 결코 민주주의라는 근대의 정치 이념이나 제도에 대한 요구로 귀착되지 않는다. 人倫과 공동체의 존재에 대한 가치는 東西古今の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굳이 글로 써서 알릴 필요도 없는 인간 본성 차원에 있는 것이다. 5.18은 민주화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광주시민들은 인륜과 공동체를 위한 처절한 투쟁에서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관통하여 獨裁의 그 깊은 곳에 있는 핵심적 毒素과 맞부딪쳐 그를 만천하에 파헤친 것이다. 5.18을 통해 비로소 독재는 비민주적 정치제도임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폭력으로 드러났고 서구 정치이념이었던 민주주의는 미로소 이 땅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인륜과 공동체의 근본적 가치는 민주주의로 흡수되지 않는다. 80년대 어두웠던 시절 우리의 민주화 투쟁은 민주주의 이념의 힘이래기보다는 5.18의 처절한 경험 그리고 각종 고문사건 등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가 깨어졌던 모습에 대한 분노를 통해 진전되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는 人權이라는 근대서구의 법 개념으로 대체될 수도 없다. 5.18에서 보여진 인륜과 공동체를 지키는 정신은 결코 이 시대에 국한되지 않는, 역사와 문화를 뛰어넘어 태초에 인류가 탄생한 이래 알 수 없는 미래까지 울려 퍼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것이다. 어쩌면 5.18의 정신은 우리가 민주주의, 이 비극적 시대의 가치를 뛰어넘을 도약의 장대가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아마 5.18의 얘기들은 巨人들의 모험이야기로 읽힐 것이다.

5.18 광주시민들의 투쟁의 현실과 정신은 아직 체계적으로 말이 되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 시절 광주시민들에게 이런 가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또 한편 우리 사회의 협소한 정치 담론과 이념의 장에서 이 원초적 가치를 일컬을 말을 찾지 못했음 뿐이었다. 그러나 5.18의 정신은 글로 새겨지지 못했는지 몰라도 눈 앞에 커다란 모습으로 이미 형상화되어 있다. 망월동 신묘역의 기념탑은 바로 그들이 싸웠던 의미를 언어를 초월하여 새겨주고 있는지 모른다. 땅에서 불끈 솟은 우뚝한 두 줄기 기상은 말없는 생명, 생명의 원형을 드높은 곳에서 굳게 지키기 위함이다.

## 참고문헌

### 1. 우리말 자료

#### 1) 일간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문』 (대구)  
『전남일보』 (광주)  
『조선일보』  
『중앙일보』

#### 2) 월간지

『신동아』  
『월간조선』

#### 3) 단행본 및 논문

- 강신철 외. 1988. 『80년대 학생운동사: 사상이론과 조직노선을 중심으로 80~87』. 서울: 형성사.  
광주광역시. 『광주여! 무등산여! 이나라 민주주의의 십자가여!: 5.18광주민중항쟁약사』. 미출판.  
광주매일 「정사 5.18」 특별취재반(광주매일). 1995. 『정사 5.18』. 서울: 사회평론.  
김 문. 1989. 『찢어진 깃폭: 5.18 투쟁 체험기』. 광주: 도서출판 남풍.  
김양오. 1988. 『광주 보고서』. 서울: 도서출판 청음.  
김영진. 1989. 『충정작전과 광주항쟁: 청문회를 통해 본 역사적 진실과 그 의의』 (上下). 동광출판사.  
김영택. 1988. 『10일간의 취재수첩』. 서울: 사계절.  
김용기; 박승욱. 1989. 『한국 노동운동 논쟁사: 8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 현장문학사.  
나간재; 정태신. 1996. 『항쟁이후 광주지역의 5.18운동: 운동단체를 중심으로』. 『5.18운동의 평가와 계승: 심포지움』, 민주화를 위한 광주 전남 교수협의회, 전남사회연구회, 광주매일. (5월 16일)  
동아일보사. 1994. 『5공화국 평가 대토론』. 서울: 동아일보사.  
문병란, 이영진 편. 1987. 『누가 그때 큰 이름 지우랴: 5월 광주항쟁 시선집』. 서울: 도서출판 인동.  
미쇼, 이브(Michaud, Yves). 1990. 『폭력과 정치』, 나정원 옮김. 서울: 인간사랑.  
민족민주연구소(민민연) 편. 1989. 『민통련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평가서』.

- 민중문화운동 협의회(민문협) 편. 1985. 『80년대민중민주운동 자료집』. 민중문화운동협의회.
- 박남선. 1988. 『오월 그날: 시민군 상황실장 광주 상황 보고서』. 광주: 도서출판 샘물.
- 박일문. 1992. 『살아남은 자의 슬픔』. 서울: 민음사.
- 손호철. 1995.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서울: 새길.
- 『역사와 현장』, 창간호 (1990년 5월), 「특집: 5.18 광주민중항쟁과 민주민족운동의 전망」(5.18 9주년 학술대회).
- 5.18광주민중항쟁 유족회(유족회) 편. 1989. 『광주민중항쟁 비망록: 망월동 묘비명』. 광주: 도서출판 남풍.
- 5.18광주의거청년동지회(오청동) 편. 1987. 『5.18광주민중항쟁 증언록 I』. 광주: 도서출판 광주.
- 1989. 『5.18광주민중항쟁 증언록 - 무등산 깃발』. 광주: 도서출판 남풍.
- 윤계철 편. 1988a. 『광주, 그 비극의 10일간』. 서울: 글방문고.
- 1988b. 『작전명령 - 화려한 휴가』. 서울: 실천문학사.
- 이삼성. 1993.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 광주항쟁, 민족통일, 한미관계』. 서울: 한길사.
- 이종범. 1988. 『5.18의 영향, 한계, 계승』, 『전대신문』, 1988년 5월 19일.
- 이정로. 1989. 『광주봉기에 대한 혁명적 시각전환』, 『노동해방문학』 통권 제2호 (5월, 노동절기념 특대호): 14-57.
- 임낙평. 1987. 『광주의 빛: 박관현』, 故 박관현열사추모사업회 편. 광주: 사계절.
- 임혁백. 1994. 『시장, 국가, 민주주의: 한국민주화와 정치경제 이론』. 서울: 나남.
- 전남사회문제연구소(전사연) 편. 1988. 『5.18 광주민중항쟁 자료집』. 광주: 광주.
- 편. 1991. 『들불의 초상: 윤상원 평전』, 박호재; 임낙평 정리. 서울: 풀빛.
- 정상용 외. 1990. 『광주민중항쟁: 다큐멘터리 1980』. 서울: 들베개.
- 정해구 외. 1990. 『광주민중항쟁연구』. 서울: 사계절.
- 조비오 신부. 1994. 『사제의 증언』. 광주: 빛고을출판사.
-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 1988. 『광주시민 사회의식조사: 광주의거자료집4』. 광주: 빛고을출판사.
- 최장집. 1989a. 『한국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 서울: 까치글방.
- 외. 1989b. 『광주항쟁의 민족사적 의미: 발제와 토론』, 『역사비평』 제간 5호(여름): 26-75.
- 1996.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나남.
- 피터슨, 아놀드 A. (Arnold A. Peterson). 1995. 『5.18광주사태』, 정동섭 옮김. 서울: 풀빛.
- 학민사 편집실(학민사) 편. 1989. 『1980년의 진실: 광주특위 증언록』. 학민사.
-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현사연) 편. 1990a. 『光州五月民衆抗爭史料全集』. 서울: 풀빛.
- 1990b. 『광주 5월민중항쟁: 광주 5월 민중항쟁 10주년기념 전국 학술대회』. 서울: 풀빛.
- 한승원 외. 1987. 『일어서는 땅: 80년 5월 광주항쟁 소설집』. 서울: 도서출판 인동.
- 1990. 『부활의 도시: 광주민중항쟁 10주년 기념 작품집』. 서울: 도서출판 인동.
- 한 용 외. 1989. 『80년대 한국사회와 학생운동』. 서울: 청년사.

- 황석영. 1985.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서울: 풀빛.
- 외. 1996. 『5.18 그 삶과 죽음의 기록』. 서울: 풀빛.

## 2. 외국어 자료

- Arendt, Hannah. 1963. On Revolution. New York: The Viking Press.
- 1969. On Violence.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Aron, Raymond. 1961. Peace and War: A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Translated by Richard Howard & Annette Baker Fox.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7.
- Ball, Terence. 1988. Transforming Political Discourse: Political Theory and Critical Conceptual History. Oxford: Basil Blackwell.
- Bourdieu, Pierre. 1985.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Translated by Richard N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lausewitz, Carl von. 1976. On War, Indexed Edition, Edited and Translated by Michael Howard & Peter Pare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tten, J.-P. 1990. "Violence", Les Notion Philosophiques: Dictionnaire II, Volume dirigé par Sylvain Auroux. Paris: PUF: 2735~43.
- Dunn, John. 1972. Modern Revolutions: An Introduction to the Analysis of a Political Phenomen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non, Franz. 1963. The Wretched of the Earth, Preface by Jean-Paul Sartre, Translated by Constance Farrington. New York: Grove Press.
- Girard, Ren. 1972. Violence and the Sacred.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77.
- Gurr, Ted Robert. 1970. Why Men Rebe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ffner, Sabastian. 1967. Failure of a Revolution: Germany 1918~1919, Translated by Georg Rapp. Chicago: Banner Press, 1986.
- Lacan, Jacques. 1977. Ecrits: A Selection, Translated by Alan Scherida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Lukes, Steven, ed. 1986. Power.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Marx, Karl & V. I. Lenin. 1940. Civil War in France: The Paris Commune.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 1963.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 Nietzsche, Friedrich. 1966. Beyond Good and Evil: Prelude to a Philosophy of the Future, Translated, with Commentary, by Walter Kaufmann. New York: Vintage Books.

## 법집행관리의 직무집행강령

조 광 회

### UN총회는,

UN헌장에 선언된 목적들이 인권 및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이 없는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고무함에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의 성취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특히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강령을 상기하고,

또한, 1975년 12월 9일 결의 3452(XXX)로 UN총회에서 채택된 고문방지협약을 상기하고,

공공질서와 풍속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법의 기능의 본질이 사회전체는 물론 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법집행관리들이 인권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그리고, 품위있게 수행하는 중요한 직무를 의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의 실행이 수반하는 남용의 가능성을 의식하고,

법집행관리의 직무집행강령을 확립하는 것이 그러한 관리들이 봉사하는 시민의 모든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 중의 단지 하나임을 인식하고,

법집행기능의 인도적인 수행을 위한 추가적인 중요한 원칙과 선행조건, 즉

(a) 형사사법체계의 모든 기관과 마찬가지로 모든 법집행기관은 전체 지역공동체를 대표하고, 그에 응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b) 법집행관리들의 윤리적인 기준의 효과적인 유지는 잘 고안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리고 인도적인 법률체계의 존재에 의존한다는 것.

(c) 모든 법집행관리는 범죄의 방지와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일부뿐이고, 그 체계 안에서 모든 공무원의 행동은 전체 체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

(d) 모든 법집행기관은 여기에 규정된 원칙과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집행관리의 행위는 그것이 심사위원회, 내각, 대리인, 사법부, 음부즈만, 시민위원회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행하여지든, 또는 다른 심사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든 공적인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

(e) 이러한 기준들은 그 내용과 의미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그리고 감시를 통하여 모든 법집행관리의 신조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

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 결의에 대한 부속서류에 기술된 법집행관리 직무집행강령을 채택하고, 각국의 입법과 실무의 골격 내에서 법집행관리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각 정부에 이를 송부할 것을 결정한다.

1979년 12월 17일 106차 본회의

— 1974. The Gay Science, With a Prelude in Rhymes and an Appendix of Songs, Translated, with Commentary by Walter Kaufmann. New York: Vintage Books.

Ortega y Gasset, Jos . 1985. The Revolt of the Masses, Translated, Annota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Anthony Kerrigan, Edited by Kenneth Moore, With a Foreword by Saul Bellow.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Rud , George. 1988. The Face of the Crowd: Studies in Revolution Ideology and Popular Protest, Selected Essays of George Rud , Edited by Harvey J. Kaye. Atlantic Highlands, NJ: Humanities Press.

Sartori, Giovanni. 1987. The Theory of Democracy Revisited. Chatham, NJ: Chatham House Publishers.

Schmitt, Carl. 1932. Der Begriff des Politischen. Berlin.

Shapiro, Michael J., ed. 1984. Language and Politic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Sorel, Georges. 1950. Reflections on Violence, Translated by T. E. Hulme, Introduction by Edward A. Shils. New York: Collier Books.

Violence et Dialogue. 1981~83. Comprendre: Revue de Politique de la Culture 47~48. Venise: Soci t europ enne de culture.

Weber, Max. 1978. Economy and Society 2 Vols, Edited by Guenther Roth & Claus Wittich.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illiams, Roger L. 1969. The French Revolution of 1870~1871.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부속서류

### 법집행관리 직무집행강령

#### 제1조

법집행관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의 직무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책임에 따라 공동체에 봉사하고, 모든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함으로써 법이 그들에게 부여한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주석:

(a) “법집행관리”라는 용어는 임명된 자이든 선출된 자이든, 경찰권을 행사하는 자, 특히 체포와 구금의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공무원을 포함한다.

(b) 제복을 착용하였든 아니하였든, 경찰권이 군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나라, 또는 국가 안전 무력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나라에서는 법집행관리의 개념은 그러한 역무를 제공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c) 공동체에 대한 역무는 특히 개인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또는 긴급한 이유로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한 지원역무의 실행을 포함한다.

(d) 이 규정은 모든 폭력적인, 약탈적인 그리고 해로운 행위를 망라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금지의 모든 범위에 확대된다. 이것은 형사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의 행위에까지 확대된다.

#### 제2조

법집행관리는 그들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키고 옹호하여야 한다.

#### 주석:

(a) 문제되는 인권은 각국의 법과 국제법에 의하

여 확인되고 보호된다. 이에 해당하는 것에는 세계인권선언, A규약, B규약, 고문방지협약 등이 있다.

(b) 이 규정에 대한 개별국가의 주석들은 이러한 권리들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지역적인, 국가적인 규정들을 지적하여야 한다.

#### 제3조

법집행관리는 꼭 필요한 경우에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석:

(a) 이 규정은 법집행관리의 물리력의 사용은 예외적이어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법집행관이 범죄를 방지하거나 범죄인 또는 혐의자의 합법적인 체포를 실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필요한 물리력을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의미하지만 그 이상의 물리력은 사용될 수 없다.

(b) 국내법은 통상 법집행관리의 물리력의 사용을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제한한다. 그러한 국내법상의 비례성의 원칙은 이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규정은 달성하고자 하는 합법적인 목표에 비례하지 않는 물리력의 행사를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c) 무기의 사용은 극단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무기의 사용, 특히 어린이에 대한 무기의 사용을 회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기의 사용은 범죄혐의자가 무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달리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덜 극단적인 수단으로는 용의자를 제압하거나 체포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하여질 수 없다. 무기가 사용된 모든 경우에는 즉시 소관 관서에 보고되어야 한다.

#### 제4조

법집행관리가 알게된 비밀은 의무의 이행과 정의의 요청이 엄격하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지켜져야 한다.

#### 주석:

직책의 본질상, 법집행관리는 사생활에 관계되거나 사익에 잠재적으로 해로운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한 정보를 보호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하며, 정보는 의무의 이행이나 정의의 요청에 따라서만 공표될 수 있다. 그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정보의 공표는 전적으로 부적절하다.

#### 제5조

어떠한 법집행관리도 고문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비인간적인 처우, 처벌을 가하거나 선동하거나 묵인할 수 없으며, 상관의 명령 또는 전쟁, 전쟁의 위협,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내정의 불안, 기타 다른 비상사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들어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 주석:

(a) 이러한 금지는 UN총회가 채택한 고문방지협약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그러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이고, UN헌장의 목적에 대한 부정으로서 또한 세계인권선언(기타 국제인권에 관한 문건)에서 선언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비난될 것이다.”

(b) 고문방지협약은 다음과 같이 고문을 규정한다.

“고문은 공무원이나 그 선동에 의하여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 그 사람로부터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거나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는 이유로, 또는 그 사람

이나 제3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고의로 행하여지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가혹한 고통이나 괴로움을 뜻한다. 그것은 오로지 선천적이거나 우발적인, 그리고 재소자의 처우에 대한 최소표준규칙에 다른(?) 적법한 제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c)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비인간적인 처우나 처벌”이라는 용어는 총회에 의하여 정의되지 않았으나,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직권남용에 대하여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보호를 위하여 확장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 제6조

법집행관리는 구금중인 사람의 건강을 완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의학적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주석:

(a) “의학적 응급조치”라 함은 자격 있는 개업의, 군의관을 포함한 의료요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역무를 뜻하며, 필요하거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장되어야 한다.

(b) 의료요원이 법집행 작용에 참가할 때 법집행관리는 의료요원이 구금중인 사람에 대하여 법집행 작용 외부의 의료인력의 적절한 처우나 상담이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요원들의 판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c)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범죄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도 법집행관리는 의학적 응급조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7조

법집행관리는 부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반대하고 싸워 나가야 한다.

주석: 부패행위 또는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a) 부패행위는 다른 직권남용행위와 마찬가지로 법집행관리의 직무와 양립할 수 없다. 정부가 만일 그들의 관리나 그들의 기관 내에서 법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기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법은 부패행위를 저지른 법집행관리에 대하여 완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b) 부패행위의 개념은 국내법에 따르겠지만, 그것은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 약속, 인센티브의 공여나 수수에 응하여 이루어진 작위나 부작위 또는 그러한 행위가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는 도중에 이들을 불법적으로 수수하는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c) 위에 언급한 "부패행위"라는 표현은 그 미수행 위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제8조

법집행관리는 법규와 이 강령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을 다하여 법과 이 강령의 위반을 막고, 엄정하게 그 위반에 반대하여야 한다.

법집행관리는 이 강령의 위반이 발생하거나 발생하려 한다고 믿을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급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거나 치유할 권한이 있는 다른 적당한 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석:

(a) 이 강령은 국가의 입법이나 실무로 구체화되는 경우에 준수되어야 한다. 만일 입법이나 실무가 이 강령보다 엄격한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b) 이 조항은 공적 안정이 광범위하게 의존하고 있는 내부적인 규율에 대한 요청과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를 취급하여야 한다는 요구 사이의 균형을 보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법집행관리는 명령계통 내에서 침해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다른 치유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효과없는 경우에만 명령계통 외에서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집행관리는 이 강령의 침해나 침해가 있으려 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적 제재등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c) "심사하거나 치유할 권한이 있는 다른 적당한 기관"은 법집행기관의 내부에 있든, 독립한 기관이든, 국내법상의 것이든, 제정법에 의한 것이든, 관습상의 것이든, 이 강령의 범위 내의 침해로부터 발생한 불만이나 고충을 심사할 권한을 가진 관서나 기관 기타 힘을 말한다.

(d) 어떤 나라들의 경우에는 대중매체가 위 (c)에 기술된 것과 유사한 고충심사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법집행관리는 그 나라의 법규와 관습, 그리고 이 강령의 4조의 규정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그 침해를 대중매체를 통한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e) 이 강령을 준수하는 법집행관리는 다른 법집행관리는 물론 지역공동체와 그들이 종사하는 법집행기관의 존중과 완전한 지원과 협조를 받을 자격이 있다.

## 법집행관리의 직무집행강령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지침

###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결의에 대한 부속서류에 기술된 법집행관리 직무집행강령을 채택한 1979년 12월 17일의 총회의 결의 34/169를 상기하고,

범죄의 방지와 통제를 위한 위원회의 제10차 Session의 보고서를 고려하고,

이 강령의 이행을 증진하려는 바램에 의하여,

1. 본 결의에 부속된 범죄의 방지와 통제를 위한 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법집행관리의 직무집행강령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지침을 채택하고,

2. 범죄의 방지와 범죄자의 처우에 대한 제8차 UN회의와 그 준비모임에 대하여 그 지침을 고수하는 것을 고무할 방법과 수단을 탐구할 것을 권유한다.

1989년 5월 24일 15차 본회의

### 부속서류

법집행관리의 직무집행강령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지침

#### 1. 강령의 적용

##### A. 일반원칙

1. 강령에 구현된 원칙은 각국의 입법과 실무에 반영되어야 한다.

2. 강령 1조와 그 주석에 기술된 목표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법집행관리"의 정의는 가능한 한 가장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3. 강령은 그 관할권에 상관없이 모든 법집행관리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4. 각국 정부는 인권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문건은 물론 이 강령과 관련된 국내의 입법 규정에서 기본적인 훈련과 모든 부차적인 훈련, 재충전과정에서 법집행관리들에게 가르칠 필요한 수단을 채택하여야 한다.

##### B. 특정 사안

1. 선발, 교육과 훈련: 법집행관리의 선발, 교육 그리고 훈련에 가장 큰 중요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지역적인 그리고 간지역적인 수준에서 관념의 효과적인 교환을 통하여 교육과 훈련을 증진시켜야 한다.

2. 급여와 근로조건: 모든 법집행관리에게는 적절한 보수를 받아야 하고, 적당한 근로조건이 주어져야 한다.

3. 규율과 감독: 법집행관리의 감독은 물론 내부적인 규율과 외부적인 통제를 위하여 효과적인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4. 공중의 구성원들로부터의 소청: 위 제3문단에



서 언급된 체계 내에서 공중의 구성원들로부터의 법집행관리에 대한 소청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규정의 존재는 공중에게 인지되어야 한다.

## II. 강령의 이행

### A. 개별국가 수준에서

1. 이 강령은 모든 법집행관리와 관계기관이 그들의 언어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각국 정부는 이 강령과 이에 효력을 부여하는 국내법규를 일반적으로 공중이 이 강령에 포함된 원칙과 권리를 인지하게 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강령을 보급한다.
3. 이 강령의 적용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을 고려함에 있어서 각국 정부는 인권의 보호와 범죄의 방지에 있어서 법집행관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포지움을 조직하여야 한다.

### B. 국제적인 수준에서

1. 각국 정부는 본 강령의 이행의 정도에 대하여 최소 5년 이내의 적당한 간격으로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은 경제사회이사회에 대하여 자문하는 위치에서 전문기관과 적절한 국가간의 조직, 비정부기구의 준수와 협조에 대하여도 기술된, 이 강령의 이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진전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이에 언급된 보고서의 한 부분으로서, 각국 정부는 강령의 적용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정보는 물론 법규의 요약, 규정, 강령의 적용에

대한 행정적 수단, 기타 그 이행에 대한 적절한 정보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사무총장은 적절하다면 범죄 방지와 통제를 위한 위원회에 대하여 검토와 계속적인 조치를 위하여 위에 언급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사무총장은 UN의 공식언어로 이 강령과 지침들이 각국과 관련된 국가간 기구 그리고 비정부기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UN은 지원 서비스와 기술적 협조 그리고 발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 (a) 이 강령의 규정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과 지역적 또는 간지역적 조언자를 요청하는 각국 정부에 대하여 이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b) 인권의 보장과 범죄를 방지에 있어서 이 강령과 법집행관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국가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훈련 세미나와 기타 모임을 증진하여야 한다.
7. UN의 지역 기구는 당면한 어려움과 지역의 각국에서 이 강령이 이행되는 범위내에서 이 강령에 대한 세미나와 훈련과정을 조직하는 것과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장려받아야 한다.

## 법집행관리의 물리력과 무기의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 부속서류

#### 법집행관리의 물리력과 무기의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 제1조

법집행관리의 적절한 직무를 보장하고 제고하는 회원국의 과제를 돕기 위하여 정식화된 아래의 기본원칙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그들의 입법과 실무의 골격 내에서 고려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판사, 검사, 변호사, 행정부의 구성원, 입법부, 그리고 공중은 물론 법집행관리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 일반규정

1. 각국 정부와 사법기관은 법집행관리의 개인에 대한 물리력과 무기의 사용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채택하고 이행한다. 그러한 규칙과 규정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사법기관은 물리력과 무기의 사용과 관련된 윤리적인 쟁점이 부단히 심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각국 정부와 사법기관은 가능한 한 수단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며, 법집행관리로 하여금 다양한 종류의 무기와 탄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는 치명적이지 않으면서 대상을 무력화시키는 무기의 개발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무기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패, 헬멧, 방탄조끼 등과 같은 자기보호장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3. 치명적이지 않으면서 대상을 무력화시키는 무기의 개발은 무관한 사람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의깊게 평가되어야 하며, 그 사용은 신중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4. 의무수행중인 법집행관리는 가능한 한 물리력과 무기에 의존하기 전에 비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러한 수단이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의도한 결과를 이룰 수 없을 경우에만 물리력과 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물리력과 무기의 합법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법집행관리는,

(a) 그 사용을 억제하고, 침해정도와 달성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의 비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b) 손해와 상해를 최소화하고, 인명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c) 가장 빨리 부상자들에게 원조와 의학적 도움이 행하여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d) 상해를 입은 사람이나 피해자의 친지나 친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6. 물리력이나 무기의 사용으로 사상이 발생한 경우에 법집행관리는 이를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각국 정부는 물리력이나 무기가 자의적으로 사용되거나 남용된 경우에 이를 형사상 범죄로 처벌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8. 내정의 혼란, 기타 비상사태와 같은 예외적 상황으로 이 기본원칙으로부터의 이탈을 정당화할 수

없다.

### 특별규정

9. 법집행관리는 생명 또는 중대한 상해의 절박한 위험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생명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수반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경우, 그러한 위험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권위에 저항하는 자를 체포하기 위한 경우, 또는 도주를 저지하기 위한 경우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덜 극단적인 수단이 효율적이지 못한 때 외에는 사람에게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10. 제9항과 같은 경우에 법집행관리는 그 행위가 법집행관리를 위협에 처하게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심각한 해를 입힐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특정 상황에서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충분한 시간을 주어 무기를 사용하려는 의도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를 하여야 한다.

11. 법집행관리의 물리력과 무기의 사용에 관한 규칙과 규정은 다음의 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법집행관리가 무기의 휴대를 허가받을 수 있는 상황의 특정과 그 무기와 탄약 종류의 명시
- (b) 무기가 적절한 상황에서 그리고 불필요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c) 부당한 상해를 초래하거나 부당한 위협을 보여주는 무기와 탄약 사용의 금지.
- (d) 법집행관리가 그들에게 공급된 무기와 탄약을 산정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 무기의 통제, 저장, 공급을 규칙화하는 것.
- (e) 적절하다면, 무기가 발사되기 전에 경고를 하는 것.

(f) 법집행관리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언제나 보고를 하는 체계의 제공.

### 불법집회의 치안 유지

12. 세계인권선언과 B규약에 구현된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각국 정부와 사법경찰기관 및 법집행관리는 물리력과 무기는 제13, 14항에 따라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13. 불법적이거나 비폭력적인 집회를 해산시킴에 있어서 법집행관리는 물리력의 사용을 회피하여야 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4. 폭력적인 집회의 해산에 있어서 법집행관리는 덜 위험한 수단이 부적절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법집행관리는 제9항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 구금된 자에 대한 치안유지

15. 법집행관리는 구금된 자와의 관계에서 시설 내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개인적인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외에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

16. 법집행관리는 구금된 자와의 관계에서 사망 또는 중상이 발생할 즉각적인 위협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제9항에 언급한 위협을 현시하는 구금된 자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17. 선행한 원칙들은 "재소자의 처우에 대한 최소 표준규정"에 열거된 교도관리의 권리, 의무, 책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자격, 훈련, 전문

18. 각국정부와 사법경찰기관은 모든 법집행관리가 적절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되고,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도덕성, 심리적, 신체적 자질을 가지고 있고, 계속적이고 철저한 직업상의 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직무수행에 대한 그들의 적합성은 주기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

19. 물리력의 사용에 있어서 적절한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되고 심사되어야 한다.

20. 법집행관리의 훈련에 있어서, 각국 정부와 법집행기관은 경찰윤리와 인권, 특히 조사과정의 문제에 관하여, 물리력과 무기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관점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군중행동의 이해, 그리고 기술적인 수단은 물론 설득, 협상, 중재의 방법을 포함한 물리력과 무기의 사용에 대한 대안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집행기관은 그들의 훈련 프로그램과 운영절차에 대하여 특정한 사건의 견지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21. 각국정부와 법집행기관은 물리력과 무기가 사용되는 상황에 처한 법집행관리가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 보고 및 심사절차

22. 각국정부와 사법경찰기관은 제6항 및 11(f)항에 언급된 모든 사태에 대한 효율적인 보고 및 심사 절차를 확립하여야 한다.

23. 물리력이나 무기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사람들 및 그 대리인은 사법절차를 포함한 독립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24. 각국정부와 사법경찰기관은 상급공무원이 그 명령 하에 있는 법집행관리가 불법적인 물리력과 무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이를 방지하는 등 그들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

25. 각국정부와 사법경찰기관은 법집행관리의 직무집행강령과 이 기본원칙에 따라 물리력이나 무기를 사용하라는 명령을 수행하기를 거절하거나 다른 공무원에 의한 사용을 보고한 법집행관리에 대하여 형사처벌등의 제재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26. 법집행관리가 사망이나 중상을 야기하는 물리력 또는 무기를 사용하라는 명령이 명백히 불법임을 알았고, 그에 따르는 것을 거절할 합리적인 기회가 있었다면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은 항변이 되지 아니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은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 상관에게도 있다.

# 법 집행에서의 국제 인권 기준: 경찰 인권수첩

번역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연대 소중한 사람들'  
감수 조시현(국제법 박사)

## 일반 원칙

- 국제 인권법은 모든 국가와 법집행 공무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구속한다.
- 인권은 정당하게 국제법의 적용과 국제적인 감시를 받는 문제이다.
- 법집행 공무원은 인권에 관한 국제 기준을 알고 적용할 의무를 진다.

##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행동

- 인권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지는 존엄성에서 비롯된다.
- 법집행 공무원 어느 때에나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법집행 공무원은 그들의 직무상 요청되는 막중한 책임에 부합하게 공동체에 봉사하고 모든 사람들

을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언제나 법이 부과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법집행 공무원은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들은 부정한 행위에 쫓겨 맞서 싸워야 한다.
- 법집행 공무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유지하고 옹호하여야 한다.
- 법집행 공무원은 인권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법률, 법전, 일련의 원칙들의 위반사례를 보고하여야 한다.

- 모든 경찰 행동은 합법성, 필요성, 무차별, 비례성과 인간성의 원칙들을 존중하여야 한다.

## 민주주의에서의 경찰의 직무

모든 사람은 권리와 자유의 행사에 있어서 오직 법에 의해서 정해진 제한만을 받는다.

역자주: 이 자료는 유엔 인권센터가 그 동안 각 국가의 법집행 공무원들과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포함된 민간경찰요원들을 훈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한 경찰 훈련 프로그램의 하나로 경찰관들이 언제나 쉽게 퍼볼 수 있고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인권수첩입니다. 원본은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Centre for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for Law Enforcement. A Pocket Book on Human Rights for the Police", Uni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1996 (HR/P/PT/5/Add.1)이고 지면관계상 각주는 생략하였습니다. 이 원본은 Centre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8-14 avenue de la Paix, 1211 Geneva 10, Switzerland로 편지하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 권리와 자유의 행사에 대한 제한은 오직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민주 사회에서의 도덕, 공공 질서, 일반 복리의 정당한 요청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기 나라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국민의 의사는 정부가 가지는 권한의 기반이 된다.
- 국민의 의사는 보통, 평등의 선거권에 따른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해 표명되어야 한다.

- 모든 법집행 공무원은 전체 공동체를 대표하고 공동체의 뜻에 따라야 하며 공동체에 책임을 져야 한다.

- 모든 사람은 의견,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경찰 공무원은 공동체의 일부이며 공동체에 봉사할 의무를 지닌다.

## 법 집행에서 차별하지 않을 것

-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 법집행 공무원은 공동체에 봉사하고 모든 사람들을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언제나 법이 부과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법집행 공무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유지하고 옹호하여야 한다.

-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차별 없이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법집행 공무원은 공동체를 보호하고 봉사함에 있어서 인종, 성별, 종교, 언어, 피부색, 정치적 의견, 국적,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지위를 이유로 불법적

로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 법집행 공무원이 (임산부와 아이를 갖 낳은 사람을 비롯한) 여성, 미성년자, 노약자 등과 같이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사람들의 특별한 지위와 필요를 돌보기 위해 마련된 몇 가지 특별조치를 하는 것을 불법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 경찰관리의 신규채용, 고용, 업무분장과 승진에 관한 정책들은 어떠한 형태의 불법한 차별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 경찰 수사

- 수사, 증인·피해자 및 피의자의 신문, 신체 수색, 차량과 가택수색, 서신과 통신의 감청에 있어서:
- 모든 사람은 신변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공정한 재판으로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 누구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인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

- 누구도 명예나 명성에 불법적인 훼손을 받아서는 안된다.

- 정보를 얻으려고 피의자, 증인 또는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압력 -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 도 가해서는 안된다.

- 고문과 다른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는 절대로 금지된다.

- 피해자와 증인은 연민과 사려 깊은 마음으로 대우하여야 한다.

-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언제나 비밀을 보장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누구도 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

도록 강요받아서 안된다.

- 수사활동은 오직 합법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 자의적이거나 지나치게 강압적인 수사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 수사는 유능한 사람에 의하여 철저하고 신속하며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수사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찾아내고 범죄의 동기, 수법, 장소와 시간을 밝혀내어 범인을 찾고 체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 범죄 현장은 조심스럽게 처리하고 증거는 주의 깊게 수집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체포

-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와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 누구도 법으로 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체포된 사람은 누구나 체포되었을 때 체포의 이유를 통지받아야 한다.

- 체포된 사람은 누구나 그에 대한 혐의사실을 신속하게 통지받아야 한다.

- 체포된 사람은 누구나 신속하게 재판기관의 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체포된 사람은 누구나 그의 체포나 구금의 적법성을 심사받을 목적으로 재판기관에 출두할 권리를 가지며 구금이 불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석방되어야 한다.

- 체포된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기간 안에 재판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 재판중의 구금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어야 한다.

-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은 누구나 변호사 또는 다른 법적인 대리인과 접견하고 통신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 모든 체포는 기록되어야 하고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체포 이유, 체포 시간, 구치소로 옮겨진 시간, 재판기관 앞에 출두한 시간, 관련 공무원의 신원, 구금 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세부 심문 사항.

- 체포 기록은 구금된 사람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 체포된 사람의 가족은 그의 체포와 구금 장소를 신속하게 통지받아야 한다.

- 누구도 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아서 안된다.

- 필요한 경우 심문이 계속되는 동안 통역자가 부여되어야 한다.

### 구금

-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모두 인도적이며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지는 존엄성을 존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 형사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누구나 공정한 재판으로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 구금된 사람은 누구도 고문 또는 다른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나 형벌, 또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나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

- 구금된 사람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구금 장소에서만 구금되어야 하고 그의 가족과 법적 대리인은 모

든 정보를 통지받아야 한다.

- 미성년자는 성인과, 여성은 남성과, 미결수는 기결수와 격리되어야 한다.

- 구금의 기간과 합법성에 대한 결정은 재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

- 피구금자는 구금의 이유와 그에 대한 공소의 내용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 피구금자는 외부세계와의 접촉, 가족들의 방문 및 법적 대리인과 사적이며 직접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피구금자는 건강을 보존하도록 설계된 인도적인 시설 속에 구금되고 충분한 음식, 물, 주거, 피복, 의료서비스, 운동과 개인위생도구를 제공받아야 한다.

- 피구금자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신념은 존중되어야 한다.

- 모든 피구금자는 재판기관 앞에 출두하고 구금의 적법성을 심사받을 권리를 가진다.

- 여성과 미성년 피구금자의 권리와 특별한 지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 누구도 피구금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하도록 피구금자의 상황을 이용할 수 없다.

- 규율과 질서를 위한 조치는 법과 규칙에 정하여진 것이어야만 하고 안전한 감금을 위해 필요한 조치 이상을 넘어서 수 없으며 비인도적이어서도 안된다.

### 물리력의 사용

- 모든 사람은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비폭력적인 수단이 우선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 물리력은 꼭 필요한 때에만 행사되어야 한다.

- 물리력은 합법적인 법집행의 목적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 물리력의 불법적인 행사에 대한 어떠한 예외나 항변도 허용될 수 없다.

- 물리력의 행사는 언제나 합법적인 목적에 비례하여야 한다.

- 물리력의 행사에는 자제력이 행사되어야 한다.

- 재물파괴와 인명피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 차별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 폭넓게 마련되어야 한다.

- 모든 경찰관은 차별적인 물리력의 행사의 다양한 수단의 사용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 모든 경찰관은 비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훈련받아야 한다.

### 물리력과 무기(총포) 사용에 대한 책임

- 물리력 또는 무기(총포)가 사용된 모든 사건은 보고되고 상급관리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상급관리는 권한이 남용됨을 알았거나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지휘를 받는 경찰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 불법적인 상관의 명령을 집행할 것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벌 받지 않아야 한다.

- 이러한 규칙들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상급자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을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

### 무기 사용이 허용되는 상황

- 무기(총포)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

다.

- 무기는 살해나 중상해의 급박한 위협으로부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을 방어하기 위하여

또는

-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수반하는 특히 중대한 범죄를 막기 위하여

또는

- 그러한 위협을 하고 위협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저항하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또한

-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보다 덜 극단적인 수단이 불충분할 때에만 무기의 사용이 허용된다.

- 고의적인 물리력과 무기의 치명적인 사용은 오직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피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무기 사용의 절차

- 경찰관은 자기자신을 경찰공무원이라고 신분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 경찰관은 분명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 경찰관은 경고를 따르는 데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 이러한 것이 요구되지 않는 상황은 지체하면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의 죽음이나 심각한 부상의 결과들을 올 것이 확실한 경우

또는

- 그렇게 하는 것이 상황에 비추어 명백히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이다.

### 무기 사용 이후

- 의료 지원이 부상을 입은 사람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

- 부상을 입은 사람의 친족이나 친구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조사는 조사가 요청되거나 (법률상) 필요한 경우에 허용되어야 한다.

- 사건에 대한 완전하고 상세한 보고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 소요사태

-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조치는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 질서의 회복은 차별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 권리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 취해진 모든 행동과 권리에 대한 모든 제한은 오로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게 할 목적과 도덕성, 공공 질서 및 일반복리의 정당한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

- 취해진 모든 행동과 권리에 대한 모든 제한은 민주 사회가 요청하는 것과 일치하여야만 한다.

- 생명권,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노예제도의 금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투옥 금지, 사후소급입법의 금지, 모든 사람을 법 앞에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할 것, 또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 어떤 예외조치도 허용될 수 없다.

- 생명권,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노예제도의 금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투옥 금지, 사후소급입법의 금지, 모든 사람을 법 앞에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할 것, 또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 어떤 예외조치도 허용될 수 없다.

- 비폭력 수단이 물리력을 행사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 물리력은 오직 엄격하게 필요할 때에만 행사되어야 한다.

- 물리력은 오직 합법적인 법집행을 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 사용되는 물리력은 합법적인 법집행의 목적과 비례하여야 한다.

- 재물파괴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모든 시도는 손상과 부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차별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 폭넓게 마련되어야 한다.

- 언론, 집회, 결사 또는 이동의 자유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이 부과될 수 없다.

- 사상의 자유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부과될 수 없다.

- 사법부의 독립적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 부상을 당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모든 사람은 즉시 치료 받아야 한다.

### 비상사태

- 비상사태는 오직 법에 따라서만 선포되어야 한다.

- 비상사태는 오직 공공의 비상사태가 국가의 존립에 위협이 되고 통상적인 조치들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에만 선포될 수 있다.

- 비상사태는 예외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기 전에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 모든 예외적 조치는 상황의 급박성에 비추어 엄격하게 요청되는 것이어야 한다.

- 모든 예외적 조치는 국제법이 부과하는 다른 요구사항과 불일치하여서는 안된다.

- 모든 예외적 조치는 단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 생명권,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의 금지, 노예제도의 금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감금 금지, 사후소급입법의 금지, 모든 사람을 법 앞에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할 것, 또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관한 어떠한 예외조치도 허용되지 않는다.

- 누구도 행위가 있었을 때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 누구도 범죄가 행해졌을 때 적용되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범죄에 대한 형벌이 범죄가 행하여진 후의 법률에 따라 가볍게 된 경우 범죄인은 가벼운 형벌을 받는다.

- 누구도 행위가 있었을 때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 범죄에 대한 형벌이 범죄가 행하여진 후의 법률에 따라 가볍게 된 경우 범죄인은 가벼운 형벌을 받는다.

### 무력충돌

- 무력충돌과 점령 기간 동안 경찰은 정식으로 군대로 편입되지 않는 한 비전투원으로 취급된다.

- 경찰은 양심상의 이유로 점령 하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사정이 그들의 지위의 변경을 가져와서는 안된다.

- 인도법은 모든 무력충돌 상황에 적용된다.

- 인간성의 원칙들은 모든 상황에서 지켜져야 한다.

- 비전투원과 부상, 질병, 포획 또는 다른 원인으로 적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한다.

- 전쟁의 영향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차별이 없이 도움을 받고 보살펴져야 한다.

-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지되는 행위는:

- 살인
- 고문

- 신체형
- 절단
- 개인의 존엄성의 유린
- 인질을 잡는 것
- 집단적 형벌
- 정식 재판이 없이 이루어지는 사형집행
- 잔인하고 모욕적인 대우

를 포함한다.

- 부상자, 병자, 조난자, 의무원과 의료업무, 전쟁 포로, 민간인, 민간물자와 문화재, 자연환경 그리고 위험한 힘을 담고 있는 시설에 대한 보복은 금지된다.

- 누구도 인도법이 부여하는 보호를 포기할 수 없고 포기를 강요받아서 안된다.

-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보호국(이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립국) 또는 국제 적십자사(ICRC) 또는 기타 다른 공정한 인도적 단체에 언제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 청소년의 보호

- 어린이는 어른에게 주어지는 모든 인권보장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다음과 같은 규칙이 어린이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 어린이는 이들이 존엄하고 가치롭다고 느낄 수 있도록 촉진하고, 이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쉽게 하고 어린이가 가지는 최상의 이익을 반영하며 그 나이의 사람이 가지는 요구를 감안하는 방식으로 대우 받아야 한다.
- 어린이는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나 형벌, 신체형, 석방의 기회가 없는 종신형을 받을 수 없다.
- 어린이의 구금이나 감금은 최후의 극단적인 조

치이어야 하고 모든 구금은 가능한 한 가장 짧은 기간 동안이어야 한다.

- 어린이는 성인 구금자들과 격리되어야 한다.
- 구금된 어린이는 가족의 방문과 서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형사책임을 지는 최소 연령이 법으로 정하여져야 한다.
- 비사법적 절차와 교도소 감호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어린이의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하고, 기록은 완벽하고 안전하게 보전하고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
- 어린이에 대한 신체적 제한과 물리력의 행사는 예외적이어야 하고, 다른 모든 통제 조치를 다하였으나 실패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가능한 한 가장 짧은 기간 동안이어야 한다.
- 소년원에서 무기 휴대는 금지된다.
- 혼육은 어린이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고, 정의감과 자기를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 청소년을 다루는 공무원은 특별히 훈련되고, 개인적으로 그러한 목적에 알맞은 사람이어야 한다.

- 청소년 시설은 불시에 그리고 정기적으로 감독관의 방문을 받도록 한다.

- 부모는 모든 체포, 구금, 이감, 질병, 부상이나 죽음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한다.

### 여성의 인권

- 여성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그리고 다른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인권의 동등한 향유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무엇보다 생명권, 평등, 신체의 자유와 안전, 법 앞의 평등, 차별로부터의 자유, 도달

가능한 최상의 정신적 신체보전, 정당하고 우호적인 노동 조건과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나 형벌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신체적, 성적이거나 심리적 인 것일 수 있고 구타, 성적 학대, 지참금과 관련된 폭력, 남편의 강간, 유해한 전통적 관행, 배우자에 의하지 않은 강간과 폭행, 성추행, 강요된 매춘, 인신매매 그리고 착취와 관련된 폭력을 포함한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어떤 형태이든 여성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침해하고 손상시키거나 무효화한다.

- 경찰은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행위가 공직자나 사인에 의해 자행됐건 가정, 공동체나 공공기관에서 행해졌건 묻지 않고 이를 방지하고 수사하며 이를 이유로 체포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경찰은 여성이 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경찰의 태도나 여성문제에 민감하지 못한 집행 관행의 결과로 다시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은 범죄이며 가족 내에서 일어날 때를 포함하여 그렇게 다루어져야 한다.

- 체포되거나 구금된 여성은 차별 받지 않아야 하며 모든 형태의 폭력이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여성 구금자는 여성 관리와 직원에 의해 감독받고 수색되어야 한다.

- 여성은 남성 구금자와 분리되어 구금되어야 한다.

- 임신한 여성이나 젖먹이의 어머니는 구금중에 특별한 시설을 제공받아야 한다.

- 법집행 기관은 채용, 고용, 수습, 임명, 승진, 봉급이나 다른 경력과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성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 법집행기관은 공정하게 공동체가 대표되고 여성

피의자, 피체포자와 구금자의 권리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여성을 채용하여야 한다.

### 난민

- 모든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박해로부터의 피난처를 찾고 누릴 권리를 가진다.

-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근거가 충분한 두려움 때문에 그의 본국 -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 그가 상시 거주한 나라로 돌아갈 수 없거나 그럴 의사가 없는 사람이다.

- 난민은 몇몇 정치적 권리를 제외한 모든 기본적 인권을 가지지만 불법적으로 어느 나라의 영역에 머무는 경우 그 나라의 공공질서와 보건을 위해 이동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

- 난민은 자유로운 결사, 종교, 초등교육, 공적 부조, 법원절차의 이용, 재산권과 주택과 같은 기본적 권리들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내국인에게 주어지는 것과 적어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누구도 그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될 수 있거나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돌려보낼 수 없으며 난민을 그러한 나라로 보낼 가능성이 있는 제3국으로도 돌려보낼 수 없다.

- 어느 나라의 영역에 불법적으로 머무는 난민은 박해하는 나라로부터 직접 왔고 당국에 지체없이 출두한 경우 형벌을 받지 않는다.

- 박해하는 나라에서 직접 온 난민이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조차 거절하여서는 안된다.

- 어느 나라의 영역에 합법적으로 머무는 난민은 이동과 거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그 영역에 합법적으로 머무는 난민은 여행 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을 수 있다.

- 피난처를 찾는 사람은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 제공되어야 하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체류하는 것이 허락되어야 한다.

- 어느 난민도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추방당하지 않는다.

- 추방 이전에 난민은 증거를 제출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받고 상급기관에 상고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 자국민이 아닌 사람

- 자국민이 아닌 사람은 외국인과 국적이 없는 사람을 포함한다.

- 자국민이 아닌 사람은 그 나라의 법체계에 따라서 입국한 경우 또는 그들이 유효한 거주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영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머무는 것이다.

- 자국민이 아닌 사람은 특정한 정치적 권리를 제외하고 모든 기본적 인권을 가진다.

- 자국민이 아닌 사람은 자국민과 같이 그 나라를 떠나고 이주할 권리를 가진다.

- 그 영역에 합법적으로 머무는 자국민이 아닌 사람은 그 나라에 강한 애착감을 가지고 이를 자기 자신의 나라로 여기는(가정을 이루고 그 나라에서 태어나거나 오랫동안 살아온) 경우 추방당하지 아니한다.

- 자국민이 아니면서 그 영역에 합법적으로 머무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 이들은 오직 법에 따라 결정되고, 그러한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으며 절차적 보장이 제공된 경우에만 추방될 수 있다.

- 추방에 대한 절차적 보장은 진술할 권리,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재심을 받을 권리,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상급 기관에 상고할 권리, 구제수단을 다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향유할 권리, 상고가 있는 기간중 체류할 권리와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 대하여 통보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 몇몇의 절차적 보장에 대한 예외는 오직 국가 전체에 대한 정치·군사상의 위협과 같은 급박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집단적이거나 대량 추방은 금지된다.

- 그 영역에 합법적으로 머무는 자국민이 아닌 사람의 배우자와 나이 어린 부양 자녀들은 그 자국민이 아닌 사람과 합류하는 것이 허락되어야 한다.

- 자국민이 아닌 사람은 누구나 그들의 영사관이나 외교공관과 자유롭게 교신할 수 있어야 한다.

- 추방당한 자국민이 아닌 사람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어떤 국가로든 갈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그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나라로 보내져서는 안 된다.

### 피해자

- 범죄, 권한 남용이나 인권침해의 피해자는 모두 연민과 존중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 피해자는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신속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

- 배상절차는 신속, 공정, 저렴하고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 피해자는 배상과 보호를 추구함에 있어서 가지는 권리에 대한 통보를 받아야 한다.

- 피해자는 정식 소송절차에서 그들이 가지는 역할, 절차의 범위, 시간과 진행과 그들의 사건 처리에 대하여 통보를 받아야 한다.

- 피해자는 개인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느낌을 제출하는 것을

보장받아야 한다.

- 피해자는 필요한 모든 법적, 물질적, 의료,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지원을 받아야 하고 이들이 이용 가능한지에 대한 통보를 받아야 한다.

- 사건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불편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안전은 보호받아야 한다.

- 피해자들의 사건을 다루는 데 불필요한 지연은 피하여야 한다.

- 범죄자는 적절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정부는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금전배상은 범죄자가 하여야 하고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하여야 한다.

- 경찰은 피해자의 필요에 대해 훈련을 받아야 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받아야 한다.

### 경찰 지휘체계와 운영

- 법집행 공무원은 직업상 요구되는 고도의 책임에 합당하게 공동체에 봉사하고 모든 사람들을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언제나 법에 의해 그에게 부여된 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법집행 공무원은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이들은 모든 그러한 행위에 깨끗이 맞서 싸워야 한다.

- 법집행 공무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유지하고 옹호하여야 한다.

- 모든 법집행 기관은 전체로서의 공동체를 대표하고 공동체의 뜻에 따라야 하며 공동체에 책임을 져야 한다.

- 경찰기관의 신규채용, 고용, 업무분장과 승진에 관한 정책들은 어떠한 형태의 불법한 차별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 수사, 체포, 구금, 물리력과 무기의 사용, 피해자 구조 및 경찰활동의 모든 사항들에 대한 명확하고 완벽하며 정확한 기록이 만들어져야 한다.

-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찰활동의 모든 문제에 대한 훈련과 지침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 경찰기관은 차별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수단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그 사용에 관하여 경찰관을 훈련시켜야 한다.

- 물리력 또는 무기가 사용된 모든 사건은 보고되고 상급관리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상급관리는 권한이 남용됨을 알았거나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지휘를 받는 경찰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 불법적인 상관의 명령을 집행할 것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

- 비밀정보는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모든 경찰 지원자들은 적합한 정신적 신체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모든 경찰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보고하고 심사절차에 복종하여야 한다.

- 경찰은 효과적이고 합법적이며 인권을 존중하는 법집행을 위한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 공동체 치안

- 경찰과 법을 준수하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제휴할 것

- 공동체 관계 정책과 행동 계획을 채택할 것

- 공동체의 모든 계층에서 신규인원을 선발할 것

- 여러 가지 상황을 다룰 수 있는 경찰관을 훈련할

- 공동체와 긴밀한 연결을 갖고 공공정보 프로그램 만들 것
- 공동체의 모든 집단과 정기적으로 연락할 것
- 범집행이 아닌 활동을 통해 공동체와의 관계 구축
- 상설적인 방법 초소에 경찰관 배치
- 치안 활동과 공동체에 기반한 공중 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체의 참여 증대
- 문제와 관심을 파악하고 다루는 데 공동체를 참여시킬 것
- 특정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비전통적인 전술과 전략을 포함하여 창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만들 것
- 다른 정부기관 그리고 비정부단체와 정책, 전략과 활동을 조정할 것

### 경찰의 인권침해

- 범집행 공무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유지하고 옹호하여야 한다.
- 범집행 공무원은 전체로서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범집행 공무원의 효율적인 감독과 내부 규율과 외부의 통제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지는 범집행 공무원은 그 문제를 보고하여야 한다.
- 일반 대중이 범집행 공무원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규정은 공포되어야 한다.

-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며 적임자에 의하여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수사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찾아내고 범죄의 동기, 수법, 장소와 시간을 밝혀내어 범인을 찾고 체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 범죄 현장은 조심스럽게 처리되어야 한다.
- 상급관리는 권한이 남용됨을 알았거나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지휘를 받는 경찰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 경찰은 불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기소되거나 징계에 회부될 수 없다.
-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은 경찰에 의해 자행된 침해행위에 대한 항변이 되지 않는다.

## 한국 경마 환급금 제도의 문제점

김도형

### 1. 한국마사회가 발표한 마권(복승식) 매출액 사용내역

- ① 세금 20% - 지방세 10%, 교육세 5%, 농어촌특별세 2%, 법인세 및 기타소득세 3%
- ② 사회발전기금 5% - 축산발전기금, 농어민자녀 장학기금 등
- ③ 마사회 운영비 3%
- ④ 환급금 72%

### 2. 세금

#### (1) 지방세법

제152조 【납세의무자】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 사업자와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는 그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각각 경주·마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53조 【과세표준】 경주·마권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제154조 【세율】 경주·마권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2)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6.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경주·마권세액: 100분의 50

부칙 제2조 【적용시한】 ② 제5조 제1항 제6호(중전의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1년 1월 1일부터는 중전의 세율(100분의 20)로 환원한다.

#### (3)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경주·마권세액: 100분의 20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4년 6월 30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4) 법인세 및 기타소득세

가. 법인세

한국마사회가 납부할 법인세에 대하여는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한국마사회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일반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게 됨.

과세표준: 익금(수익) - 손금(비용) = 소득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세율: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 6백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8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

나. 기타소득세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 또는 승자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 실제 환급금에 대한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배당률이 100배 이상인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을 터이나 찾지 못하였음.

다. 문제점

법인세 및 기타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마권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와는 달리 마권 발매금총액이 아님.

따라서 마권 발매금총액의 사용내역으로 그중 3%를 법인세 및 기타소득세로 납부한다는 한국마사회의 발표는 전혀 법규정과 맞지 않고 실제 현실과도

일치하지 않음.

특히 유념하여야 할 것은 기타소득세는 어디까지나 환급금에서 추가로 공제되는 것(따라서 배당률이 100배 이상일 때에는 환급금의 비율이 72%를 훨씬 밀둘게 됨)이지, 환급금은 72%로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에서 기타소득세 부분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임.

3. 사회발전기금

(1) 관련 법규정

축산법 제6장 축산발전기금

제5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마사회로부터의 납입금

제55조 【기금의 조성】 ③ 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중 한국마사회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한국마사회법

제42조 【손익금의 처리】 ①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3 이상의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특별적립금에의 적립

②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 제4호의 특별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 제3호의 경마사업확장적립금, 제1항 제2호의 이익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은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축산진흥, 농어민 자녀장학사업 기타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⑤ 마사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 시행령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마사회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적립금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축산법에 의한 축산진흥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자녀의 장학사업 기타 농어촌사회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문제점

마사회가 납입하는 축산발전기금의 경우에도 법규정상으로는 마권 발매금 총액 중에서 일정액을 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 최종적으로 적립하는 특별적립금에서 축산발전기금과 농어민자녀의 장학사업 기타 농어촌사회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마사회가 발표한 1995년도 한해동안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민자녀장학사업, 농어촌사회복지증진사업 등 사회발전기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보면 총 550억 5천여만원임. 그런데 마사회의 1995도 총 매출액은 거

의 2조원에 달하였는바(정확한 자료를 구하지 못했음), 결국 3%에도 못 미치는 금액임.

즉, 마사회는 마권발매금 총액의 5%를 사회발전기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

#### 4. 환급금의 법적 정의

##### (1) 관련 법규정

한국마사회법

제8조 【환급금】 ① 마사회는 승마투표적중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경주에 대한 마권의 발매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교부한다.

제9조 【발매수득금】 마사회는 마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경마시행에 따른 운영경비로 수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득금액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동 시행령

제10조(환급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마투표적중자(이하 "적중자"라 한다)에게 교부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마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마권발매수득률) 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권발매수득율을 정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개시 2월전까지 이를 마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1】 환급금 산출방식(제10조 관련)

1. 각 승마투표방법에 있어서의 환급금 총액  
마권총발매금액 × (1 - (마권발매수득률 + 마권발매과세율))

【별표 2】 환급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금 산출방식(제10조 관련)

$$\text{세금} = ((\text{환급금 총액} - \text{적중단위마권 발매총액}) \times \text{환급금에 대한 과세율}) \times \frac{1}{\text{적중단위마권수}}$$

(2) 법적으로 올바른 마권(복승식) 매출액 사용내역

① 세금 17% - 지방세 10%, 교육세 5%, 농어촌특별세 2%

② 발매수득금(운영경비) - 11%

③ 환급금 72% - 단 배당률이 100배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3) 마사회가 매출액 사용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분석

안 그래도 지나치게 과도한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발매금총액의 11%를 마사회의 운영경비로 징수한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면 경마인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법인세 및 기타소득세로 3%, 사회발전기금으로 5%를 내고 마사회의 운영경비는 3%에 불과하다고 호도, 선전하는 것에 다른 아닌 것으로 보임.

#### 5. 결론 - 경마인이 내는 세금은 엄청나고 환급률은 지나치게 작다

교육세의 경우 종전 발매금 총액의 2%를 납부하

던 것이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5%를 납부하도록 개정되었는바, 교육세법상 가장 높은 세율임.

그리고 마사회 운영경비로 징수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은 마사회 스스로 운영경비 징수율을 실제의 3분의 1 이하로 축소하여 공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명백하게 증명된다고 할 것임.

참고로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 제국의 경우 경마 환급율을 살펴보면 80~90% 수준임.

편집자 주: 이 자료는 지난 6월 9일에 신한국당 여성위원회가 주최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방향과 내용

이 백 수

## 1. 개정방향

1987년 12월 4일 제정(법률 제3989호)된 남녀고용평등법은 그간 2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2차례의 개정과정을 통하여 특정성의 근로자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법 제2조의 2 제3항),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시 신체적 조건 등의 용도제한 금지(법 제6조 제2항), 남녀동일임금규정(법 제6조의 2), 육아휴직제도 및 보육시설의 실효성보장(법 제11, 12조), 사업주의 입증책임 부담(법 제19조) 등의 획기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음.

그러나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간접차별 규제,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의 예방 및 피해구제, 육아휴직비용의 공적 부담, 보육시설 설치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 현실적이고 당연한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상태임.

이번 개정작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고 이미 수차례 걸쳐 논의되고 쟁점화하였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 2. 주요 개정내용

### 17 간접차별 금지(개정안 제2조의 2 제6항)

• 내용  
사업주에 의한 인사제도나 고용형태가 표면적으로는 차별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정성의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이익하게 적용될 경우 합리적인 사유에 의하여 정당화할 수 없는 때에는 차별로 본다.

• 이유  
현행법은 간접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특정 인사제도나 고용형태가 차별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함. 현재 대다수의 기업이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른바 '신인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봄(현행법은 직접차별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만 인정하고 있어 그 필요성은 크다고 봄).

• 입법례  
스웨덴의 남녀고용평등법, 영국의 성차별금지법, 벨기에의 경제개혁법, 독일(베를린주)의 평등법 등 다수

### 2)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구제의무(개정안 제8조의 2)

• 근거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 제3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성희롱의 예방등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개인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과 연관성이 많은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이에 대한 예방 및 피해구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내용  
사업주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의 실시, 피해구제위원회 설치,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 규정의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필요에 따라 별첨조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의 목적보다는 위 조항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간접강제의 의미에 한정되는 것임. 또한 성폭력특별법의 '성폭력범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결과에 있어 큰 차이가 없으므로 위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음.

### 3) 육아휴직비용의 공적 부담(개정안 제11조의 2)

• 근거  
현행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임금이나 기타 비용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봄. 이 부분은 국가의 예산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아직은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이에 대한 장래 국가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내용  
육아휴직비용의 부담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였으나 이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의료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외국의 경우 위 비용부담은 국가, 사업주, 근로자가 일정한 비율로 분담하고 있는 실정임.

### 4) 직장보육시설의 문제(개정안 제12조)

• 문제점  
현행법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육아보육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육아보육법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매우 엄격하므로 현실적으로 위 기준에 맞는 보육시설 설치는 어려운 상태이고 더우기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그 혜택을 거의 누릴 수 없는 실정임.

• 해결방안  
이번 개정작업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하여는 한시적으로 영육아보육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만들었음. 물론 약간의 법체계상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영육아보육법의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여짐. 보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보건복지 등 관계부서의 협력을 받아 영육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 5) 사업주의 입증책임 부담(개정안 제19조)

• 법조항의 문제점

현행법은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라고 규정. 사업주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과하였음. 이는 현실적으로 법적용상에 문제가 있고 분쟁당사자 일방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따라서 위 조항의 취지를 살리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이해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하려고 하였음.

• 내용

근로자는 사업주의 차별 의도를 입증할 필요는 없고 단지 특정의 조치가 결과적으로 차별을 초래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됨. 사업주는 그러한 조치의 성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격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또는 기업운영상 필요불가결한 조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원래 입증책임은 실제법의 영역이 아닌 절차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 입법에서 이를 규정하는 예가 드물고 규정하는 경우라도 일부분에 한정되는 것인데 위 조항은 포괄적인 입증책임 문제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따라서 좀더 자세한 법이론적 검토가 요망됨.

3. 그밖의 개정내용

17 사업주의 범위(개정안 제2조의 2 제2항)

현행법은 '사업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양자가 실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 동일한 의미로 함.

2) 모집과 채용(개정안 제6조)

• 현행법은 이 부분에 있어 여성에 대한 기회평등만을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고 남·녀 모두 채용기회, 면접, 고용형태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였음.

• 옹모한 근로자가 차별로 인하여 채용이 거부된 경우 사업주에게 3월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위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3월로 제한.

3) 고용평등위원회의 권한(개정안 제18조)

•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 - 분쟁관련 사실의 직접조사권, 관할지방노동청장에 대한 시정요청권.

4)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함(개정안 제6조의 2 제2항)

4. 결론

남녀고용평등법은 다른 법률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선진화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제정 당시 고용관행과 실정을 무시하였고, 근로자와 사업주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우리의 현실과는 많은 괴리가 있었음.

향후 개정은 선거용 입법이 아닌 실제 적용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사업 및 업무보고 (97년 5월 1일~5월 31일)

I. 모임 현황보고

회원 현황 : 본부 194명, 부산·경남지부 27명  
총 221명

II. 모임 주요활동 및 사업 보고

- (1) 제10차 정기총회 개최 - 6월호 참조
- (2) 회원 친목을 위한 테니스대회 개최 / 6. 14 (토) 반포그린테니스장(이수교 반포소방서 뒷편)
  - 회원 12명 참석, 김선수·조광희 조 우승
  - 민변 정식 동호회 모임으로 발족 / 위원장 임종인, 간사 김원일 회원
- (3) 성명서 발표
  - ① '대선자금의 전면공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성명서 발표 / 5. 30 (금)
  - ② '한총련의 혁신과 학생운동의 거듭남을 촉구한다' 성명서 발표 / 6. 5 (목)
  - ③ 검찰의 김현철씨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 6. 6 (금)
  - ④ 영흥도 화력발전소 반대운동 관련 구속자 석방 촉구 탄원서 서명 / 백승헌 사무국장
  - ⑤ 정보통신부의 컴퓨터통신아이디(ID) 사용금지 및 게시물 삭제 조치에 대한 성명서 발표 / 6. 10 (화)
  - ⑥ 서울지방법원 형사담당판사들의 한총련 관련 강의 수강에 관한 논평 발표 / 6. 16 (월)
- (4) 6.10 민주항쟁 10주년 기념 국민 마라톤대회 참가 / 백승헌 사무국장 등 10명
- (5) 6.10 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인권상담 부스 설치 운영(인권운동사랑방 공동) / 회원 6명 참여
- (6) 민변 제10차년도를 맞이한 집행위원회 단합대회

개최 / 6. 25 (수) 오후 7시 부산회집

- (7) 날치기법 관련 국회의장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변론기일 지정 / 7. 2 (수) 10:00 가동 409호 법정
  - (8) 서울법대학생회, 사회연수학교 실시 / 6. 23 (월)~6. 27 (금)
    - 민변 소개, 인권 강의, 법률운동 강의, 법정 견학, 사무실 견학 등 실시
  - (9) 서울지방변호사회, 제5회 시민인권상 후보로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를 추천함
  - (10) 변론배당
    - ① 진윤구 (광운대 2년) : 집시 등 / 오세훈 회원
    - ② 김목원 (한신대 1년) : 노동절 전야제 참가 - 집시 / 하영석 회원
    - ③ 오진석 외 8명 (한국노동청년연대 사건) / 시 민중합법률사무소(김도형 회원 외)
    - ④ 전은영 외 4명 (서울대 애국청년 조직사건) / 정연순 회원
    - ⑤ 윤호준(고대부총학생회장) 외 13명 : 고려대구국선봉대 사건 - 국보 / 전해철, 선병주, 이백수, 차홍권, 김종률 회원
    - ⑥ 무분별한 불심검문 사례(장홍석)에 대한 기획 변론 진행 예정
    - ⑦ 민경우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 나라중합법률사무소(이종걸 회원 외)
    - ⑧ 이진백(건국대) 외 81명 (한총련 출범식 관련) / 이유정 회원 외 48명
- III. 상임위원회 보고
- 가. 기획위원회
- (1) 회의 : 6. 20 (금) 19:00 시민종합
    - 검찰중립회방안 자료집 발간 논의

나. 회원위원회

- (1) 대전지부 결성작업 진행중
- (2) 지부의 본부분담금 제도 정비
- (3) 정성철, 양성기 회원 탈퇴

다. 출판홍보 위원회

- (1) 회의 : 6. 5 (목) 18:30 민변 사무실
  - 『이달의 민변』 6월호 진행, 7, 8월호 편집안, 민변 홍보보로서 제작, 출판사 등록 보고
  - 소규모 토론회 조직, 소책자 발간
  - 『이달의 민변』 공간과 관련하여 9월호부터 반(半)공간 기간을 1년 정도 가지기로 함
- (2) 회의 : 6. 24 (화) 18:30 민변 사무실
  - 『이달의 민변』 8, 9월호 편집안 논의
  - 민변 홍보보로서 제작 논의
  - 객원편집위원 섭외 논의
  - 출판위원회 책임교열위원으로 정연순 위원이 결정됨
  - 염규홍 위원이 원고집필원칙 마련

라. 대외협력위원회

- (1) 민주연대 활동 참가
  - ① 대선자금 관련 대통령 수사촉구 결의대회 / 6. 5 (목) 오후 1시 홍사단 강당
  - ② 정치개혁 관련 공동청원서 제출 작업 진행중
  - ③ 날치기 안기부법 쟁점화를 위한 의견서 및 공개질의서를 각 정당, 언론사 및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작업 진행중
  - ④ 안기부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사찰사태 취합 및 안기부 피해사태 보고대회 검토
  - ⑤ 대선자금 진실규명과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실시
  - ⑥ 전자주민카드문제와 관련하여 김기중 변호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자주민카드시행반대와 프

- 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공대위 사업에 적극 협력키로 함
- (2) 가정폭력방지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제5차 집행회 회의 / 6. 12 (목) 오전 10:30 여연
  - 임시국회에서 가정폭력방지법 통과를 위한 전략 논의
  - 연회비 10만원 납부 요청
- (3) 공선협 참여 계속 여부의 건
  - 계속 참여 여부를 대외협력위원회의 결정에 맡기기로 함
- (4) 과거청산국민위
  - ① 제14차 연석회의 : 6. 23 (월) 오후 7시 인권운동사랑방
    - 사면에 대한 대응 방법
    - 각 위원회 활성화 방안
  - ②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출판기념회 및 제2회 인권피해 증인의 장 / 6. 27 (금) 오후 7시 성공회대성당 대회의실

마. 국제연대위원회

- (1) 인권협 회의 : 6. 3 (화) 16:00 민변 사무실
  - 동티모르 탈식민지화 촉구 성명서 서명
  - 홍콩시민단체 NGO 회의 초청(6. 5~7)에 조시현씨 참가
  - 국민인권기구팀 운영
  - 대선팀 사업계획
  - 우토로방문보고서 박연철 변호사가 작성중
  - 김형찬군 사건 보고와 한총련 문제 등에 대한 논의
- (2) 회의 : 6. 10 (화) 19:00 민변 사무실
  - "Working Group on Arbitray Detention" / 참여연대 최미경 간사 발제
- (3) 회의 : 6. 24 (화) 19:00 민변 사무실
  - "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 "Procedur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 "Basic Principles on the Role of Lawyers"
- "Guidelines on the Role of Prosecutors" / 이상 한정화 위원 발제
-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 차지훈 위원 발제

IV. 상설특별위원회

가. 노동위원회 / 매주 수요일 12시 회의

- (1) 회의 : 6. 4 (수) 12:00 서라벌
  - 10차년도 사업계획 : 김선수, 정재성, 이원재 위원으로 작성팀 구성
  - 노동위 확대개편대회를 6. 28 (토) 오후 4시 민변 사무실에서 갖기로 함
  - 노동전담간사 운영을 위한 특별회비 자동이체
  - 노동판례백서 발간 작업중
  - 의노협 관련 차지훈, 김진국 위원이 담당하고, 류호식 간사가 보조하기로 함
  - 민주노총, 노동부의 제3자개입과 관련한 행정지침에 대한 법적 대응방침을 정태상 위원이 검토하기로 함
  - 『이달의 민변』 판례모니터링을 도재형 위원이 전교조 면직처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돈희 대법관 주심)을 쓰기로 함
- (2) 회의 : 6. 11 (수) 12:00 서라벌
  - 노동전담간사 운영을 위한 특별회비 자동이체, 10차년도 사업계획, 노동위원회 확대개편대회 준비 등을 검토
  - 노동판례백서의 제호를 『노동판례비평』으로 하

기로 함

- 삼미특수강설명회(6. 11)에 이원재 위원장 참가기로 함
- 민주노총 합법화를 위한 공청회(6. 27) 발제를 시민종합에서 맡기로 함
- 민주노총 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한 행정심판은 노동위원들이 대리인을 맡되, 최영도 회장도 대표로서 참여하기로 함. 단, 행정소송은 행심의 추이를 보아 가며 하기로 함
- 『이달의 민변』 모니터링 7월호를 맡기로 했던 도재형 위원이 8월호를 맡고, 7월호는 천낙봉 위원이 맡기로 함

(3) 회의 : 6. 18 (수) 12:00 서라벌

- 고용안정과 삼미특수강 공대위에 참여키로 결정
- 서울지방변회 제5회 시민인권상 후보로 노동위에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추천하기로 함

(4) 회의 : 6. 25 (수) 12:00 서라벌

- 6. 28 (토) 노동위원회 확대개편대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로 함
- 고용안정과 삼미특수강 공대위 참여 방침 논의 : 민변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하되 공동대표는 안 맡기로 하고, 실무는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5) 노동위원회 확대개편대회 예정 / 6. 28 (토) 오후 4시 민변 사무실

나. 언론위원회

- (1) 회의 : 6. 12 (목) 19:00 새길합동법률사무소
  - 대선 TV토론에 관한 원칙 및 발표(박형상 위원) 및 토론
  - 『한국논단』 발행인의 민변 관련 '좌익세력' 운운에 대한 법적 대응절차 진행 / 조광희 위원
  - 『월간조선』의 윤이상씨 편지조작사건 관련 법

적 대응절차 진행 / 박형상, 차병직, 백승헌 위원

다. 경제정의위원회

라. 환경위원회

(1) 회의 : 6. 11 (수) 20:00 민변 사무실

- 여천공단 건강피해 관련 손해소송 진행경과 보고 / 이상경 위원
- 시화호 무단방류금지처분신청사건 진행경과 보고 / 윤종현 위원
-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배출량에 대한 환경부 발표 관련 법적 대응책 검토 / 오종한 위원장

마. 사법위원회

바. 통일위원회

(1) 회의 : 6. 11 (수) 19:00 민변 사무실

-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 전국협의회 결성 참가 결정 / 실무 김인희 위원
- 대한변협 인권위 산하 북한인권소위원회에 이 상호, 유효석 위원이 참여하기로 결정
- 백두산 기행을 7월 26일에 출발하기로 함
- 자평통민족회의, 8월 통일행사 참여요청 건 검토

(2) 회의 : 6. 25 (수) 19:00 민변 사무실

사. 일본특별위원회

(1) 회의 : 6. 12 (목) 18:30 민변 사무실

- 최은순 간사 후임으로 이유정 간사 선임
- 2회 이상 결석시 본인 의사 확인하여 탈퇴 처리
- 특위의 명칭에 대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함
- 일본의 교육시스템에 관한 발표 / 야마시타 영애 (山下英愛)씨

V. 임시특별위원회

가. 민변 1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나. 정보통신위원회

(1) 회의 보고 : 6. 5 (목) 12:00 민변 사무실

- 사회단체 아이디(ID)사용정지에 대한 법적 대응 논의
- (2) 통신법위법 번역 작업중

다. 통합전자주민카드 대책 특별위원회

(1)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에 관한 전문가 워크샵 개최 / 5. 29 (목) 14:00 민변 사무실

라. 5.18 특별위원회

(1) 회의 : 5. 25 (수) 18:00 민변 사무실 / 5.18 재판 평석자 회의

- 5.18 판례 평석을 7. 10까지 원고 수정하여 7월중 발간하기로 함

마. 정치개혁임시특위

(1) 위원회 구성

- 6. 9 (월) 집행위 의결에 따라 임시특위 구성
- 김주원, 최승수, 박형상, 백승헌, 이찬진, 김진욱 위원

(2) 회의 : 6. 13 (금) 12:00 민변 사무실

① 업무분담

- 대선자금 : 공개거부에 대한 후속조치
  - 법률적 검토, 고발장 - 이찬진 위원
  - 특검제 입법청원 - 김주원, 백승헌 위원, 참여연대
- 대선후보 언론기관토론회 등 관련 제도개선 작업(공정선거를 위한 돈안드는 선거실현방안으로 서의 언론기관의 운영 그리고 언론기관의 대선

관련 중립성 확보 방안) - 박형상 위원

- 부패방지법 관련 - 김주원 위원

- 정치개혁입법 관련 - 최승수, 김진욱, 류중원 위원

② 일정 - 결과물은 최소한 임시국회 개최 초기에 제출하기로 함

(3) 회의 : 6. 19 (목) 12:00 민변 사무실

- 대선후보 TV토론회 / 박형상 위원 발제
- 정치개혁 입법 : 7개 법률안 개정 대상 법률로 상정하고 법률안 작업 착수
- 부패방지법: 다음 회의시까지 논점별 정리하여 입장 정리하기로 함
- 특검제 : 참여연대와 공동청원한 법률안을 필요시 수정하기로 함
- 대선자금 공개 거부에 따른 후속조치 : 이찬진 위원이 안 마련
- 과제 : 헌법개정의 문제와, 헌법과 모순되게 운영되는 각종 제도개선작업 착수하기로 하고, 사법위원회 간사인 천낙봉 회원의 결합을 요청하기로 함

(4) 회의 : 6. 26 (목) 12:00 민변 사무실

사. 형사자료집발간팀

## 성명서

### 이번 불행한 사태를 계기로 한총련의 혁신과 학생운동의 거듭남을 촉구한다

우리는 먼저 시대의 아픈 상처를 안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고 이석씨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뜻하지 않게 자식을 잃고 비탄에 잠겨 있을 유기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10년 전 우리 사회 민주화의 전기를 마련한 6월민주항쟁의 주역이었던 학생운동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오늘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실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또한 먼저 학생시절을 보낸 선배세대로서 오늘의 비극적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평화적 집회를 약속한 한총련 출범식을 무리하게 원천봉쇄한 공권력의 남용에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태가 노동법·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 한보사건을 통해서 확인된 김영삼정부의 부패상,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의 국정농단,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 거부 등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된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하며 부패·무능한 정권을 규탄하는 학생들의 주장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할 지라도 열차 운행을 중단시키는 등 국민정서를 무시한 한총련의 이번 투쟁은 그 주장의 정당성과 순수성을 훼손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비록 프락치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시민을 폭행하고 마침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일부 학생들의 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총련이 이번 사건을 통해 철저한 반성에 기초하여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학생운동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한총련 지도부는 이번 상황에 대해 끝까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정부당국도 한총련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여 출범식을 무기한 연기하고 모든 수사 협조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번의 불행한 사태가 증폭되지 않고 수습될 수 있도록 사망 사건과 무관한 학생들의 평화적 해산을 보장하여, 희생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1997. 6.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 성명서

### 검찰의 김현철씨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검찰은 1997. 6. 5.자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현철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역이란 있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우선 최근의 한보사건이나 김현철씨 사건에서 핵심적인 쟁점이자 국민적 관심사는 대선자금의 규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한보사건에서와 같이 김현철씨 사건에서도 대선자금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자금의 전체규모, 제공자, 제공명목, 대가관계, 사용내역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는 문제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과 부패구조를 청산함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천문학적인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을 조성한 대통령이라면 이미 그 시초에서부터 정경유착과 부패구조를 청산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편법에 의존하여 오직 당선만을 목표로 권력투쟁에만 골몰하는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치, 경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온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관계법을 비롯한 제도개혁은 현실적으로 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의거하여 진행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국민적 합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단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번 김현철씨 사건에서도 김현철씨가 대선자금 중 잉여금 120억원을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김현철씨 사건 외에도 한보관련 수사나 전·노비자금사건 수사 등을 통하여 이미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을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회피한다면 이는 정치, 경제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의사보다는 집권자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판단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우리는 갖게 된다. 김영삼 대통령에 대하여는 선거비용 부정지출등 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됨으로써 임기 만료 후 소추가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이 만일 차기 정권으로 대선자금 문제를 떠넘긴다면 짧은 공소시효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형사소추가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역은 있을 수 없으므로 우리는 검찰이 김현철씨에 대해 추가로 대선자금에 대해 추궁함은 물론 대선자금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 다음으로 우리는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하여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동법은 안기부직원(운영차장도 포함됨)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김기섭 전 차장은 김현철씨에게 안기부 차장으로서 지득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은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김기섭 차장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보다 그 형량이 높은 범죄이고 따라서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우리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포기했는지 또는 수사를 했는데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인지 명백히 밝히기를 촉구하며 만약 수사를 포기했다면 이제라도 수사하여 추가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3. 마지막으로 김현철씨에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하면서 금원을 제공한 기업인들 역시 김현철씨와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 권력층에게 청탁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들은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엄중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가기소를 할 것을 촉구한다.

1997. 6.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 성명서

### 정보통신부의 컴퓨터통신 아이디(ID) 사용 중지 및 게시물 삭제 조치에 대한 성명서

지난 5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경찰청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부는 컴퓨터통신업체인 나우누리등에 대하여 그 업체의 통신망을 이용중이던 재야단체를 비롯한 수십개의 단체와 개인의 아이디(ID)를 사용 중지시키고, 이들이 올린 컴퓨터통신상의 게시물들을 삭제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나우누리등이 그 명령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통신공간에서 이 문제에 대한 파문이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다.

민변은 정부의 이러한 행위가 이미 일반화된 컴퓨터통신이라는 새로운 매체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는 커녕 도리어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매체의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근대적인 억압을 부활시키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그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컴퓨터통신은 정보통신시대를 맞이하여 활짝 핀 새로운 의사소통수단으로서 그 과정에서 주고 받거나 게시하는 통신물들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표현물임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의 원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바, 정부에 의한 사전검열의 금지,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와 같은 원칙들이 엄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명령의 근거가 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동 시행령 제16조는 이른바 '불온통신의 단속'이라는 미명 아래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포괄적인 제한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이번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 그러므로 민변은 정부가 컴퓨터통신과 관련된 기존 규정을 헌법의 정신에 맞추어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요청을 받고 내려진 정보통신부의 이번 명령은 형식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명문의 규정에 근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헌법에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즉시 취소되고 제한조치는 모두 원상복구되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통신상의 이와 같은 언론의 자유의 탄압은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되어 점점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컴퓨터통신은 정보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이 출현한 여론의 산실이며, 다양한 개인과 단체들이 그 의사를 공중에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토양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구분별한 통제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국민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위와 같이 밝히는 바이다.

1997. 6.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 성명서

### 서울지방법원 형사 담당 판사들의 한총련 강의 수강에 관한 논평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담당 판사들이 서울지검 공안 2부장으로부터 한총련에 관하여 강의를 받았다고 한다.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며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지식의 습득도 사법부의 독립이나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번의 경우

첫째, 이러한 교육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것도 법원이 검찰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판사 개개인의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고,

둘째, 아직 구체적인 사건이 공소제기 되기도 전에 이루어져 소위 공소장일본주의의 원칙을 침해하고 판사들에게 예단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배반하는 것이며,

셋째, 그것도 공소 제기자이며 공소를 담당할 공안 2부장으로부터 강연을 들음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판사는 세간의 평가에 관계 없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 증거에 의하여 사실판단을 하여야 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엄정한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공소제기도 되기 전에 검찰로부터 집단적으로 강연을 받은 것은 스스로 그 공정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 모임은 한총련의 최근의 활동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한총련의 혁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사들의 강연 건은 한총련 활동의 문제와는 별론으로 위와 같은 비판을 받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앞으로 한총련 관련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담당할 판사들은 이번의 강연내용을 사건 심리시 반영하지 않아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1997. 6.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 이달의 민변 정기구독회원 모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연구·조사, 변론, 여론 형성 및 연대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직된 전문 법률가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이루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소속회원들의 성과물을 매월 『이달의 민변』이라는 월간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외부 인권단체 자료와 법학자, 인권운동가의 글도 함께 게재함으로써, 법률·인권지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변 회원들에게만 배포되던 『이달의 민변』을, 통권 제10호(97년 7월호)부터 비회원에게도 판매합니다.

책값 권당 3,000원 / 1년 정기 구독료 30,000원

### 새노동법 해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96년 12월 26일 새벽 날치기 통과된 개정 노동법은 노동계의 총파업등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혔다.

결국 국회에서는 1997년 3월 13일에 앞서 날치기 통과시킨 노동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4개의 법률, 즉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아 '개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새 노동법은 이미 공포·시행되어 노사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새 노동법 해설」 발간을 통해 새 노동법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신국판 250쪽 / 값 3,000원

### 1996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996 노동판례비평」은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회원들과 젊은 노동법 교수, 노동법 전공 판사들의 1996년 대법원 노동판결 분석서이다.

책의 제1부에서는 1996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노동판결 중 판례공보에 게재된 134건의 판결성향을 분석하고 분석대상이 된 판결의 목록을 게재하였으며, 제2부에서는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을 수록하였다.

시민법의 형식적 평등원리를 실질적 평등원리에 따라 수정하여 불완전한 시민사회를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란다.

신국판 392쪽 / 값 8,000원

## 이달의 민변 97년 7월호(통권 제10호)

발행일 97년 7월 16일

발행인 최영도

편집인 출판홍보위원회

박원순 이석태 조응환 박성호

차병직 이백수 정연순 염규홍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소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전화 522-7284 팩스 522-7285

천리안 m321

나우누리·하이텔 minbyun7

\* 위 책의 정기구독 및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구좌로 입금하시고 민변 사무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상업 431-07-107297 최미희 / 구입문의: 민변 사무국(02-522-7284)